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nce)을 반영하여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도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역외탈세 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정상가격에 의한 경정청구 시 납세의 무자가 제출해야 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입증서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금융정보자동교환 대상 금융자산의 범위를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신설하며,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을 위한 정보제공명세서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2. 27. ~ 3.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정상가격에 의한 경정청구 시 제출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6조 제2항제1호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법 제6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입증 서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제5호에 따른 서류는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를 “영 제11조”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75조제9항”을 “제75조제12항”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5조제1항제2호”를 “영 제75조제5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

② 영 제75조제8항에 따른 정보제공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36조제6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거래: 별지 제36호서식

2. 법 제36조제6항제2호에 따른 거래: 별지 제36호의2서식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00조제1항”을 “영 제100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61조 중 “국제적으로 합의한 소득과 자본에 관한 경제협력개발기구모델조세조약(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 제5조제8항”을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채택된 「소득과 자본에 관한 표준조세조약(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 제5조제8항”으로 한다.

제62조제2항제2호가목 중 “기업의 매출액”을 “기업”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전단의 “부수적”을 “전단에 따른 부수적”으로, “기업”에 따른 기업의 매출액”을 “기업”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기업의 매출액”을 “기업”으로 한다.

다. 영 제102조제1항제7호가목3)에 따른 기업. 이 경우 해당 기업의 매출액에서 같은 목 2) 후단에 따른 부수적 활동에서의 매출액은 제외한다.

제67조제2항제2호 중 “당기 과세될”을 “과세될”로 한다.

제69조를 삭제한다.

제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2(글로벌최저한세가액 기준) 영 제112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
· 결손 금액이 조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6조제1항 단서
2. 법 제76조제3항
3. 법 제76조제4항
4. 영 제104조제1항제7호
5. 영 제104조제1항제8호
6. 영 제104조제1항제15호
7. 영 제104조제1항제16호
8. 제80조제1호(다만, 제80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방회계가액이 사용된 경우로 한정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112조제1항제1호의2나목3)에서 “국내원천결손 또는 외국납부세액과 관련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국내원천결손[국외원천소득(해당 구성기업 소재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피 지배외국법인, 고정사업장, 혼성기업 또는 역혼성기업의 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외하면 결손인 경우의 그 결손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것과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하여 당해 사업연도로 이월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사업연도에 국내원천결손 및 외국납부세액과 관련하여 설정하는 글로벌최저한세 목적상 이 연법인세자산(이하 이 조에서 “대체이월결손금이연법인세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71조제1항제1호 중 “소재지국 세법에서 국내원천결손”을 “국내원천결손”으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기 이전에”를 “그 소재지국 세법상 과세소득 및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계산에서”로, “국내원천결손 금액”을 “그 국내원천결손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당 사업연도에 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결손이 있을 것

제71조제1항제3호 중 “발생한”을 “있는”으로, “산출세액”을 “세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라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에 포함되는 이연법인세자산”을 “대체이월결손금이연법인세자산”으로, “적은 금액으로 설정하고 영 제13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조정한다”를 “작은 금액으로 산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발생한”을 “있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내 세율”을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다시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세율”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발생한 사업연도에 제1항제1호”를 “있는 사업연도에 제1항제1호”로, “발생한 사업연도에 국외원천소득”을 “있는 사업연도에 국외원천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12조제1항제1호다목”을 “영 제112조제1항제1호의2다목”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영 제111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의 적용

제7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2(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의 계산 등) ① 영 제113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단위(이하 이 항에서 “계정”이라 한다) 또는 영 제113조의2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단위(이하 이 항에서 “계정그룹”이라 한다)로 사업연도별 이연법인세부채의 변동 금액을 추적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이연법인세부채 잔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이연법인세부채 잔액에 비하여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액을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최초적용연도 개시 전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환원된 것으로 본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이연법인세부채 잔액 중 먼저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부터 환원되는 것으로 보는 방법. 다만, 최초적용연도 개시 전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가 모두 환원된 이후의 환원 금액은 직전 다섯 번째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가 환원된 것으로 본다.

2.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이연법인세부채 잔액 중 나중에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부터 환원되는 것으로 보는 방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제1항제1호에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계정 단위로 이연법인세부채를 추적하는 경우
 2. 계정그룹 단위로 이연법인세부채를 추적하는 경우로서 개별 자산 및 부채 또는 계정에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가 환원되는 기간의 차이가 2년 미만인 경우
 3. 계정그룹 단위로 이연법인세부채를 추적하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계정그룹에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그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전부 환원되지 아니하는 이연법인세부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이연법인세부채”라 한다)가 적정하게 환입될 것으로 관련 거래의 성격 및 세법에 따라 소명될 수 있는 경우
- ③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는 영 제113조의2제2항 각 호의 단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④ 계정그룹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계정그룹의 각 계정 또는 개별 자산 및 부채는 같은 재무상태표계정(재무상태표에서 구분되어 표시되는 자산 및 부채의 단위를 말한다)에 속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재무상태표계정에 하위 재무상태표계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정그룹의 각 계정 또는 개별 자산 및 부채는 같은 하위 재무상태표계정에 속하여야 한다.
 2. 계정그룹에는 그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전부 환원되는 이연법인세부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

이연법인세부채”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개별 자산 및 부채 또는 계정과, 장기이연법인세부채를 발생시키는 개별 자산 및 부채 또는 계정이 포함될 수 있다.

3. 계정그룹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정 또는 개별 자산 및 부채는 포함될 수 없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 또는 부채가 포함되어 있는 계정과 그 외의 계정

- 1) 회계상 상각 대상이 아닌 무형자산
- 2) 회계상 상각 대상인 무형자산으로서 내용연수가 5년을 초과하는 것
- 3)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발생하는 채권 및 채무

나. 이연법인세자산만 발생하는 계정 또는 개별 자산 및 부채

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한 순액이 시점에 따라 이연법인세자산 또는 이연법인세부채로 상호 교차할 수 있는 계정(swinging accounts)

⑤ 계정 또는 계정그룹의 구성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동 전의 계정 또는 계정그룹에 대하여 산정된 다음 각 호의 금액이 중복하여 산입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해당 금액을 변동 후의 계정 또는 계정그룹에 배분하여야 한다.

1. 비적격잔액

2. 영 제113조의2제1항의 계산식 중 “A”금액

3. 최초적용연도 개시 전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로서 환원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으로 보는 금액

4. 변동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5개 사업연도 중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 금액

⑥ 영 제113조의2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계정 또는 계정그룹에 속한 자산 및 부채의 성격과 경제적 특성 등을 기초로 해당 이연법인세부채가 모두 단기이연법인세부채임을 소명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⑦ 단기이연법인세부채 및 단기이연법인세자산(그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전부 환원되는 이연법인세자산을 말한다)만 발생하는 계정 또는 계정그룹에 대해서는 영 제113조의2제3항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제3호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같은 호 나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계정그룹이 제4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제6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영 제113조의2제3항을 적용한 경우에는 해당 계정그룹의 이연법인세부채와 관련된 이연법인세비용을 조정대상조세에 산입할 수 없다.

⑨ 영 제112조제1항제1호의2나목4) 후단의 5년선택 적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계정 또는 계정그룹 단위별로 각각 그 이연법인세부채 전체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2. 직전 사업연도까지 5년선택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나 해당 사업연도부터 5년선택을 적용하는 경우 그 이후 사업연도에 환원되는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이 해당 5년선택이 적용되지 아니하였던 이연법인세부채의 환원인 경우에는 이를 그 환원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 산입한다.

3. 최초적용연도부터 5년선택을 적용한 경우 그 선택을 취소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에 대해서는 해당 5년선택이 적용되는 계정 또는 계정그룹의 모든 이연법인세부채의 발생 금액과 환원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5년선택이 적용되는 계정 또는 계정그룹의 이연법인세부채에 최초 적용연도 개시 전에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정 또는 계정그룹에서 환원되는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은 최초적용연도 개시 전에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부터 환원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그 환원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 산입한다.

4. 직전 사업연도까지 5년선택을 적용하였으나 해당 사업연도에 5년선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 사업연도에 환원되는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이 해당 5년선택이 적용되었던 이연법인세부채의 환원인 경우에는 이를 그 환원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5조제11항제1호 중 “영 제108조제1항제1호나목”을 “영 제108조제1항제2호”로, “주주구성기업에 배분되는”을 “적격지분보유자에게 배분되

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을 “잔여 적격인건비 금액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을 제1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 및 제1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법 제7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구성기업이 같은 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차감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실질기반제외금액을 해당 구성기업의 적격인건비 금액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text{실질기반제외금액} = A \times B \div C$	
A:	해당 구성기업의 적격인건비 금액 또는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
B:	법 제7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차감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C:	법 제7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차감되기 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⑭ 제70조의2에 따라 재무제표에 계상된 자산 및 부채의 가액과 다른 가액으로서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에 반영된 금액은 적격인건비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7조제1항제4호 중 “항”을 “이 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해당 모기업”을 “해당 모기업”으로 한다.

제5장제3절에 제7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2(소득산입보완규칙의 소유지분 비율) 영 제125조의2의 계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란 제60조에 따라 계산된 비율을 말한다.

제79조 중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이”를 “글로벌최저한세결손이”로 한다.

제8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32조제1항”을 “영 제132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무제표를”을 “재무제표(이하 이 장에서 “적격재무제표”라 한다)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재무제표에 하방회계가액 조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2023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각 사업연도에 대한 해당 재무제표에도 하방회계가액 조정이 포함되어 이를 기초로 국가별보고서가 작성되었거나 해당 재무제표의 대상 전환기 사업연도에 대하여 해당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하방회계가액 조정이 의무화된 경우로 한정하여 해당 재무제표를 적격재무제표로 인정할 수 있다.

제86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3항,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른”을 “따른 간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른 재무제표(이하 “적격재무제표”라 한다)”를 “적격재무제표”로, “법인세비용”을 “법인세비용(직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추정액과 해당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확정액의 차이를 포함한다)”으로, “금액”을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간이대상조세”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재무제표가 적격재무제표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2021년 12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소유지분 이전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업권의 손상이 해당 구성기업의 해당 재무제표에 이익의 감소로 계상된 때에는 영 제138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요건을 적용할 때 그 금액을 세전손익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38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적용할 때 해당 영업권의 손상과 관련하여 이연법인세부채의 환원이 있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또는 증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 적격재무제표의 사용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138조를 적용할 때 필요한 정보는 구성기업별 또는 국가별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는 적격재무제표에서 추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격재무제표가 아닌 자료(재무보고, 규제당국보고, 세무신고 또는 내부관리목적의 재무자료를 말한다)에서 추출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가. 제58조제1호의 사유로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 구성기업의 경우

나. 고정사업장의 경우

2. 영 제138조를 적용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에 대한 정보는 제1항 각 호의 서로 다른 호에 해당하는 적격재무제표에서 추출할 수 있다.

⑦ 2022년 12월 16일 이후 체결된 약정[2022년 12월 15일 이전에 체결된 약정(이하 이 호에서 “기존약정”이라 한다)이 2022년 12월 16일 이후 변경 또는 이전되는 경우 및 2022년 12월 16일 이후 기존약정상의 권리 및 의무의 이행이 그 전에 비하여 달라지거나 기존약정에 관한 회계처리가 그 전에 비하여 달라지는 경우의 해당 약정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이하 이 조에서 “혼성거래약정”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구성기업, 공동기업, 공동기업자회사 및 적격재무제표가 있는 구성기업이 아닌 기업(이하 이 조에서 “구성기업등”이라 한다)이 다른 구성기업등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신용을 공여하거나 투자하는 약정으로서 해당 다른 구성기업등이 비용 또는 손실(이하 이 조에서 “비용등”이라 한다)을 인식하지만 해당 구성기업등은 해당 비용등에 상응하는 수익 또는 이익을 인식하지 않거나 해당 약정 기간 동안 해당 비용등에 상응하는 과세소득의 증가가 없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약정. 다만, 영 제104조제1항제18호에 따른 기타기본자본 또는 제한기본자본과 관련된 약정은 제외한다.
2. 비용등을 서로 다른 구성기업등이 중복하여 인식하는 약정. 다만, 비용등을 인식하는 구성기업등 모두가 해당 비용등에 상응하는 수익을 인식하여 해당 수익이 해당 비용등과 상계되는 경우의 해당 약정은 제외한다.
3. 구성기업등이 인식한 비용등이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등의

과세소득에서 공제되는 약정. 다만, 비용등을 인식하는 구성기업등이 해당 비용등에 상당하는 수익을 인식하고 해당 비용등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다른 구성기업등이 해당 비용등에 상당하는 과세소득을 산입하는 경우의 해당 약정은 제외한다.

4. 법인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둘 이상의 구성기업등의 조정대상조세 또는 간이대상조세에 중복하여 산입되는 약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약정은 제외한다.

가. 해당 법인세비용의 산출과 관련된 이익이 해당 둘 이상의 구성기업등에게 인식되는 경우

나. 법 제6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른 구성기업등에게 배분될 법인세비용이 해당 구성기업등의 간이실효세율 계산에서 간이대상조세에 산입되는 경우

- ⑧ 제7항의 혼성거래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정한다.

1. 제7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등을 세전손익금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등을 인식한 어느 한 구성기업등의 해당 비용등은 세전손익금액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2. 제7항제4호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비용을 해당 국가의 제6항제1호의 법인세비용에서 차감한다.

-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7항제1호의 “해당 약

정 기간 동안 해당 비용등에 상응하는 과세소득의 증가가 없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소득이 이월결손금이나 해당 구성기업등의 소재지국 세법에 따른 이자비용공제한도를 초과하여 해당 사업연도로 이월된 이자비용과 상계되는 등의 경우

가. 해당 이연법인세자산이 평가 조정 또는 인식 조정이 된 경우
나. 해당 과세소득이 없었더라면 해당 이연법인세자산이 해당 사업연도에 평가 조정 또는 인식 조정이 되었을 경우

2. 어느 한 구성기업등의 비용등으로 인식되는 지급이 그 거래 상대방인 구성기업등이 소재하는 다른 국가의 세전손익금액 산정에서 공제되지는 않지만 해당 거래 상대방인 구성기업등과 같은 국가에 소재하는 다른 구성기업등의 과세소득에서 공제되는 경우

⑩ 제9항제2호를 적용할 때 투시과세기업의 비용등을 그 투시과세기업의 주주인 구성기업등이 인식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시과세기업은 해당 비용등을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8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 전단 중 “법 제77조의2제1항”을 “법 제77조의2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4호1) 중 “투자구성기업이”를 “투자구성기업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5호나목 중 “제86조제4항제1호”를 “제86조제6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81조제1항”을 “법 제67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62조에 해당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이 적격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적격재무제표를 기초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적격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있었다라면 포함하였을 총수입금액 및 세전손익금액을 포함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법 제83조에 따라 제출한 경우에는 적격국가별보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보아 영 제138조제1항을 적용한다.

제89조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또는 처분 손익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기업에게 해당 기초자산이 회계상 이전되는 것으로 취급되는 총수익스왑

제9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영 제142조제1항 전단”을 “영 제142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142조제1항제2호가목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세액계산내역서” 및 같은 호 나목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세액배분지정서 및 지정합의서”란 별지 제57호서식을 말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제75조제9항”을 “제75조제12항”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작성방법 중 “이 서식에서 정한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표(1~5)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를 “이 서식에서 정한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로 하고, 붙임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제5항”을 각각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제8항”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1호의2서식 부표 외의 부분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1호의2서식 부표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3호서식부터 별지 제5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제12조제1항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
2.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

3. 제45조제2항,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개정규정 제2조(정상가격에 의한 경정청구 시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경정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4항제3호, 제75조제12항, 같은 조 제14항, 제86조, 제88조제2항, 제89조제2호마목, 제9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83조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84조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또는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의 계산을 위한 회계상 순손익의 조정사항별 세부 기준 및
방법(제63조 관련)

1. 순조세비용의 가산

순조세비용의 가산금액은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마목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가. 다음의 금액(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대한 대상조세를 포함한다)

- 1) 대상조세로서 비용으로 계상된 금액
- 2)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로서 법인세비용으로 계상된 금액

나. 법 제70조제5항에 따른 적격소재국추가세액으로 비용으로 계상된 금액

다. 법 제67조제5항의 글로벌최저한세제도에 따른 세액으로서 비용으로 계상된 금액
라. 영 제109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적격환급가능귀속세액으로서 비용으로 계상된 금액

마.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과 관련하여 계상된 이연법인세자산 금액(해당 이연법인세자산 금액이 가목2)의 법인세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배당수익의 차감

가. 배당수익의 차감금액은 다음의 금액으로 한다.

- 1) 구성기업이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대한 이익의 배당금과 그 밖의 분배금 수익
- 2) 복합금융상품(자본적 요소와 부채적 요소가 혼합된 소유지분 및 이와 유사한 금융상품으로서 발행기업이 인정회계기준에 따라 자본과 부채로 각각 구분하여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에 의한 수익 중 자본적 요소로부터 지급받거나 발생한 수익

나. 다음의 소유지분에서 발생한 배당수익은 가목에 따른 차감금액에서 제외한다.

- 1) 단기분산투자지분: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유지분

가)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보유한 소유지분에 수반되는 이익·자본금·준비금 또는 의결권에 대한 권리비율(종류가 같은 소유지분별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모든 구성기업이 보유한 소유지분을 합산한 것의 비율을 말한다)이 배당지급일 또는 처분일 현재 100분의 10 미만일 것(이하 그 소유지분을 “분산투자지분”이라 한다)

나) 해당 구성기업의 분산투자지분에 대해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한 보유기간이 배당지급일까지 1년 미만일 것

- (1) 구성기업이 최소한 12개월 동안 중단 없이 소유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1년간 소유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 (2) 구성기업 간에 법 제76조제3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조직재편이 있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중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3) 종류가 다른 분산투자지분에 대해서는 분산투자지분의 종류별로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 (4) 배당지급일 이전 1년 이내의 기간에 처분한 지분이 있는 경우 가장 나중에 취득한 분산투자지분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79조제6항에 따른 선택이 적용되는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소유지분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신고구성기업은 구성기업이 보유하는 분산투자지분에 대한 배당수익을 해당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선택은 구성기업별로 할 수 있으며, 그 선택에 관하여는 영 제102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3. 정책적 부인비용의 가산

가. 정책적 부인비용의 가산금액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계상된 금액으로 한다.

- 1) 뇌물 및 불법사례금 등과 같은 불법적 지출
- 2) 5만유로 이상의 벌금 및 과태료

나. 가목2)의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해 주기적으로 부과되는 경우: 부과되는 벌금 및 과태료를 연도별로 합산하여 산정할 것
- 2) 동일한 유형의 반복적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경우: 부과되는 벌금 및 과태료별로 산정할 것

4. 지분손익의 조정

가. 지분손익의 조정금액은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보유하는 소유지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음의 이익은 차감하고 손실은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분산투자지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1) 및 3)에 해당하는 손익은 차감하거나 가산하지 않는다.

- 1) 공정가치평가에 따른 손익
- 2) 지분법 회계처리에 따른 손익
- 3) 처분에 따른 손익

나. 신고구성기업은 환위험 회피수단에서 발생하는 구성기업의 손익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손익을 가목에 따른 손익에 포함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선택은 구성기업의 소재지국별로 할 수 있으며, 그 선택에 관하여는 영 제102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1) 소유지분(분산투자지분은 제외한다)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위험회피수단에서 발생하는 외화평가손익에 해당할 것
- 2) 회계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될 것
- 3)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이 되는 공인회계기준에서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위험회피수단에서 발생한 손익에 해당할 것

다. 구성기업이 아닌 투시과세기업이 처음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및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또는 해당 투시과세기업에게 발생하는 그 외의 세액공제(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및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는 세액공제로서 영 제110조제2호나목에 따른 비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그 투시과세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하나 이상의 투시과세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보유하는 구성기업에게 그 소재지국의 세법에 따라 투과되는 것은 해당 구성기업이 그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금액만큼 처음 취득 또는 양도하거나 해당 구성기업에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구성기업의 법 제66조에 따른 글로벌 최저한세소득·결손 및 법 제67조에 따른 조정대상조세를 계산한다. 이 경우 그 외의 세액공제는 구성기업인 투시과세기업에게 발생하는 것인 때에도 또한 같다.

라. 가목에도 불구하고 신고구성기업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않는 선택(이하 “지분투자손익포함선택”이라 한다)을 구성기업의 소재지국별로 할 수 있으며 해당 선택을 하는 때에는 다목의 본문 중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및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에 관한 부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해당 투시과세기업이 처음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및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가 해당 구성기업에게 지분법 회계처리에 따른 손익에 포함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그 선택에 관하여는 영 제102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르며, 지분투자손익포함선택이 적용되는 사업연도 중 해당 소유지분으로 인한 손실을 그 소유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의 계산에 포함할 때에는 해당 선택을 취소할 수 없다.

- 1) 구성기업이 보유한 소유지분이 분산투자지분에 해당하지 않을 것
- 2) 1)의 소유지분과 관련한 가목1)부터 3)까지의 손익이 해당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과세되는 것일 것

마. 신고구성기업이 지분투자손익포함선택을 하는 경우 구성기업이 아닌 법 제79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투시과세기업(이하 “투시과세기업”이라 한다)의 소유지분(투자하는 구성기업 소재지국의 세무상 소유지분으로 취급되고 해

당 투시과세기업 소재지국의 공인회계기준상 소유지분으로 취급되는 경우의 소유지분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서 적격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하나 이상의 투시과세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보유하는 구성기업이 해당 적격소유지분과 관련하여 회계상 인식하는 다음의 손익은 해당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 이 경우 구성기업에 투과되는 이익과 관련하여 구성기업이 계상하는 조세비용은 그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에 포함하지 않는다.

1) 가목1)부터 3)까지의 손익

2) 해당 구성기업에 투과되는 손익

바. 마목 전단에 따른 적격소유지분(이하 “적격소유지분”이라 한다)은 구성기업이 직접 또는 하나 이상의 투시과세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보유하는 해당 투시과세기업의 소유지분으로서 해당 구성기업이 해당 투시과세기업에 대한 투자를 실행할 때 해당 투자의 조건 등 객관적 사실 및 정황상 해당 소유지분으로부터의 총수익(해당 투시과세기업으로부터의 분배, 해당 투시과세기업의 결손으로 인한 조세혜택 및 해당 투시과세기업으로부터 해당 구성기업에 투과되는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를 포함하며,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외의 세액공제는 제외한다)이 해당 구성기업의 투자가액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그 투자가액의 일부가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외의 세액공제 형태로 회수되어야 하는 경우의 소유지분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투시과세기업의 소유지분은 적격소유지분으로 보지 않는다.

1) 투자자가 해당 소유지분을 실질적으로 소유하지 않는 경우

2) 투자자가 해당 투자에 따르는 손실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3) 개발자(투시과세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하면서 사업을 기획·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3)에서 같다) 또는 투자자가 그 소재지국에서 글로벌최저한세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투시과세기업의 세액공제 효과가 그 소유지분을 통해 해당 개발자 또는 투자자에 투과되는 경우

사. 적격소유지분을 통해 구성기업에 투과되는 적격투과조세혜택[해당 구성기업에 투과되는 조세혜택으로서 세액공제(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및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는 제외한다) 금액 또는 해당 투시과세기업의 결손으로서 해당 구성기업에 투과되는 금액에 해당 구성기업에 적용되는 명목세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및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금액, 투시과세기업으로부터의 분배 및 자본의 회수 금액, 적격소유지분 매각대가의 취급은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적격투과조세혜택,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및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금액, 분배 및 자본의 회수 금액, 적격소유지분 매각대가는 해당 구성기업의 투시과세기업에 대한 투자가액이 영이 될 때까지 그 투자가액을 감액한다.
- 2) 1)에 따라 해당 구성기업의 투시과세기업에 대한 투자가액을 감액한 적격투과조세혜택으로서 회계상 법인세비용의 감액으로 처리된 금액을 해당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에 가산한다. 다만, 해당 구성기업의 투시과세기업에 대한 투자가액이 영이 된 후에 발생하는 적격투과조세혜택은 그렇지 않다.
- 3)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및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금액, 분배 및 자본의 회수 금액 또는 적격소유지분 매각대가로서 해당 구성기업의 해당 투시과세기업에 대한 투자가액이 영이 된 후에 받는 것은 해당 투자가액이 영이 될 때까지 그 감액에 사용된 적격투과조세혜택 금액을 한도로 해당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를 감액한다.

아. 사목에도 불구하고 적격소유지분에 투자하는 구성기업이 회계상 각 사업연도의 적격소유지분에 대한 투자가액의 회수액 결정에 대해 비례상각법(회계상 세액공제 등에 비례하여 장부상 투자가액을 감액해 나가는 방법을 말한다)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하여 투자가액을 감액한다.

자. 아목에 따른 비례상각법을 적용하지 않는 구성기업은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적격소유지분에 대한 투자가액의 회수액 결정에 대해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방법을 적용하여 투자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해당 적격소유지분에 대한 투자가액을 감액하는 적격투과조세혜택으로서 회계상 법인세비용의 감액으로 처리된 금액은 해당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에 가산한다.

$\text{해당 사업연도의 적격소유지분에 대한 투자가액의 회수액} = A \times B \div C$ A: 적격소유지분에 대한 투자가액 B: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적격투과조세혜택 금액 C: 해당 적격소유지분에 대한 투자기간 중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적격투과조세혜택 금액 총액
--

차. 자목에 따른 선택은 해당 구성기업이 해당 적격소유지분에 투자하는 사업연도 또는 해당 구성기업 소재지국의 법 제67조제5항에 따른 최초적용연도에 그 이후 사업연도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그 선택을 취소할 수 없다.

5. 재평가손익의 조정

재평가손익의 조정금액은 회계상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재평가이익(재평가이익에 따른 대상조세의 증가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을 말

한다)에서 재평가손실(재평가손실에 따른 대상조세의 감소 금액을 가산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이 양수일 때는 이를 가산하고 음수일 때는 음의 부호를 뺀 금액을 차감한다.

가. 정기적으로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을 공정가치로 재평가할 것

나. 가목에 따른 유형자산 재평가 금액의 증감을 기타포괄손익 항목으로 계상할 것이다. 나목에 따라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된 손익이 해당 사업연도 후의 사업연도에 회계상 손익으로 대체되지 않을 것

6. 비대칭외환손익의 조정

비대칭외환손익의 조정금액은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에 사용된 기능통화(이하 이 호에서 “회계상기능통화”라 한다)와 세무상 소득금액 계산에 사용된 기능통화(이하 이 호에서 “세무상기능통화”라 한다)가 서로 다른 경우 발생하는 외환손익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가. 회계상기능통화와 세무상기능통화 간의 환율 변동에 따른 외화환산손익이 구성 기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경우 외화환산이익은 가산하고 외화환산손실은 차감할 것

나. 회계상기능통화와 세무상기능통화 간의 환율 변동에 따른 외화환산손익이 구성 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에 포함되는 경우 외화환산이익은 차감하고 외화환산손실은 가산할 것

다. 회계상기능통화와 제3의 외국통화(회계상기능통화나 세무상기능통화가 아닌 외국통화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간의 환율 변동에 따른 외화환산손익이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에 포함되는 경우 외화환산이익은 차감하고 외화환산손실은 가산할 것

라. 세무상기능통화와 제3의 외국통화 간의 환율 변동에 따른 외화환산손익의 경우 해당 손익이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외화환산이익은 가산하고 외화환산손실은 차감할 것

7. 연금손익의 조정

연금손익의 조정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연금조정액을 가산하거나 차감한 금액(사외적립자산에서 지급하지 않고 직접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이 양수일 때는 이를 차감하고 음수일 때는 음의 부호를 뺀 금액을 가산한다.

$$\text{연금조정액} = A + B$$

A: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회계상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

B: 해당 구성기업이 납입한 사외적립자산기여금

8. 주식기준보상비용의 조정

가. 신고구성기업은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 소재지국별로 적용하는 영 제102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5년선택(이하 “5년선택”이라 한다)으로 회계상 계상된 주식기준보상비용(이하 “회계상주식기준보상비용”이라 한다)을 대신하여 해당 국가의 세무상 손금으로 공제되는 주식기준보상비용(이하 “세무상주식기준보상비용”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나. 5년선택을 한 경우로서 주식기준보상이 행사되지 않고 소멸되는 때에는 소멸되는 사업연도 이전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을 계산할 때 공제된 주식기준보상비용 총액을 소멸되는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에 가산한다.

다. 5년선택 사업연도 이전 사업연도에 주식기준보상비용을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기준보상비용 총액(이전 사업연도에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을 계산할 때 공제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해당 이전 사업연도에 해당 선택이 적용되었다면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을 계산할 때 공제되었을 세무상주식기준보상비용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선택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에 가산한다.

라. 5년선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1)의 총액에서 2)의 총액을 뺀 금액을 해당 취소가 적용되는 첫 번째 사업연도(이하 “취소사업연도”라 한다)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에 가산한다.

1) 취소사업연도의 개시일 당시 행사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거나 소멸되지 않은 주식기준보상에 대해 해당 선택에 따라 해당 취소사업연도의 이전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을 계산할 때 공제한 주식기준보상비용의 총액

2) 해당 이전 사업연도의 회계상의 주식기준보상비용의 총액

9. 그룹내부금융약정비용의 조정

둘 이상의 구성기업 간에 체결된 것으로서 고율과세거래상대방[저율과세기업의 해당 그룹내부금융약정의 상대방으로서 저율과세국가(법 제69조에 따라 계산한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국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국가 또는 해당 그룹내부금융약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또는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그 실효세율을 계산했다면 저율과세국가가 아니었을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을 말한다]이 저율과세기업(저율과세국가 또는 해당 그룹내부금융약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또는 비용을 고

려하지 않고 실효세율을 계산했다면 저율과세국가가 되었을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을 말한다)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신용을 공여하거나 투자하는 약정에 따른 결과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저율과세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을 계산할 때 해당 약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목에 따른 증가비용을 차감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비용에 대해 영 제104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조정할 때에는 이를 차감한다.

가. 저율과세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을 계산할 때 공제되는 비용을 증가시킬 것

나. 고율과세거래상대방의 과세소득 금액을 가목의 금액만큼 증가시키지 않을 것

10. 총자산처분이익의 조정

신고구성기업이 국가별로 선택하는 경우 매년선택이 적용되는 사업연도의 총자산처분이익금액[선택연도에 구성기업들이 해당 국가에서 보유하는 부동산(이하 이 호에서 “현지부동산”이라 한다)을 처분함에 따른 처분 이익의 합계액이 처분 손실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으로서 그룹에 속하는 기업 간의 처분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에서 차감하고 해당 사업연도 및 그 직전 4개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조정한다. 이 경우 직전 4개 사업연도의 법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과 법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추가세액을 다시 계산한다.

가. 선택연도에 구성기업의 자산처분순이익금액(현지부동산 처분에 따른 이익 합계액이 손실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으로서 그룹기업 간 처분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또는 자산처분순손실금액(현지부동산 처분에 따른 손실 합계액이 이익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으로서 그룹기업 간 처분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한 대상조세는 해당 선택연도의 조정대상조세 계산에서 제외한다.

나. 선택연도의 총자산처분이익금액을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가장 빠른 손실연도(구성기업들의 자산처분순손실금액의 합계액이 자산처분순이익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에 자산처분순손실이 발생한 구성기업의 자산처분순손실금액과 비례적으로 상계하여 해당 상계 금액을 해당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에 가산한다.

다. 나목에서의 가장 빠른 손실연도의 이후 손실연도에 조정자산처분이익금액(총자산처분이익금액에서 이전 손실연도에 구성기업의 자산처분순손실 금액과 상계된 금액의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해당 이후 손실연도에 자산처분순손실이 발생한 구성기업의 자산처분순손실 금액과 비례적으로 상

계하여 해당 상계 금액을 해당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에 가산한다. 이 경우 해당 비례적 상계는 빠른 손실연도부터 적용한다.

라. 나목 및 다목을 적용한 후에도 조정자산처분이익금액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 1) 해당 조정자산처분이익금액을 선택연도 및 그 직전 4개 사업연도에 균등하게 배분한다.
- 2) 해당 선택연도에 배분된 조정자산처분이익금액은 해당 선택연도에 자산처분순이익이 발생한 구성기업에 자산처분순이익금액과 비례적으로 배분하고 배분된 금액을 해당 선택연도의 해당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이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해당 자산처분순이익금액을 차감한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금액을 말한다)에 가산한다.
- 3) 선택연도 직전 4개 각 사업연도에 배분된 조정자산처분이익금액은 특정 구성기업(선택연도에 자산처분순이익이 발생한 구성기업으로서 그 직전 4개 각 사업연도에 존재한 구성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배분한다.

$$\text{특정 구성기업별로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에 가산될 금액} = A \times B \div C$$

A: 선택연도 직전 4개 각 사업연도에 배분된 조정자산처분이익금액

B: 해당 특정 구성기업의 선택연도의 자산처분순이익금액

C: 모든 특정 구성기업의 선택연도의 자산처분순이익금액의 합계액

- 4) 3)에 따라 배분된 금액은 해당 직전 4개 각 사업연도의 해당 특정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에 가산한다. 다만, 직전 4개 각 사업연도에 특정 구성기업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에 배분된 조정자산처분이익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존재한 구성기업에 균등하게 배분하고,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에 가산한다.

11. 채무면제이익의 조정

신고구성기업의 매년선택에 따라 회계상 이익으로 계상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면제이익은 해당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의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법원(그 밖의 사법기관을 포함한다)이 감독하거나 독립적인 관리인이 진행하는 회생 또는 파산 절차에 의해 채무가 면제되어 발생하는 채무면제이익

나.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 대한 채무(이하 이 호에서 “제3자채무”라 한다)가 포함된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되고, 그 약정에 따라 제3자채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면 채무자가 12개월 이내에 지급불능이 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의 채무면

제이익(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를 포함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채무면제이익 외의 제3자채무의 채무면제이익의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 1) 초과부채금액(해당 채무가 면제되기 직전의 부채금액 합계가 자산의 공정가액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말한다)
- 2) 해당 채무면제이익 중 채무자 소재지국에서 결손, 세액공제 또는 자산가액 등의 세무사항을 감액하는 금액

12.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및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금액의 조정

가. 구성기업이 수혜 조건을 갖춘 때부터 4년 이내에 현금 또는 현금등가물로 지급되는 세액공제(이하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라 한다) 금액으로서 그 수혜 조건을 갖춘 사업연도의 회계상 순손익을 계산할 때 수익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은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을 계산할 때 가산한다.

나. 가목을 적용할 때 부분적으로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는 구성기업이 수혜 조건을 갖춘 때부터 4년 이내에 현금 또는 현금등가물로 지급받는 범위로 한정하여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할 때 제67조에 따른 적격귀속세액 또는 비적격환급가능귀속세액 중 환급되거나 세금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라. 회계상 자산으로 취급되고 이를 처음 취득한 자(해당 세액공제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양수한 자가 대상조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세액공제(이하 이 호 및 제13호에서 “세액공제 자산”이라 한다)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세액공제(이하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라 한다) 중 구성기업이 처음 취득하는 사업연도의 회계상 순손익을 계산할 때 수익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은 이를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을 계산할 때 가산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일부 금액만이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금액만을 가산한다.

1) 양도가능성 요건

가) 세액공제 자산을 처음 취득한 자: 해당 세액공제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5개월 이내에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을 것

나) 세액공제 자산을 양수한 자: 해당 자산을 양수한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해당 자산을 양도할 때 그 자산을 처음 취득한 자보다 더 엄격한 법적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양도가능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2) 시장성 요건

가) 세액공제 자산을 처음 취득한 자: 해당 세액공제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5개월 이내에 기준가격[세액공제를 허용하는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사업연도(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발생한 사업연도로 한다)에 발행되고 해당 세액공제의 사용 기한과 그 만기(5년을 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세액공제 금액의 순현재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상의 가격으로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산을 양도할 것. 다만,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세액공제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5개월 이내에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에 해당 세액공제 자산과 유사한 세액공제 자산이 기준가격 이상의 가격으로 거래되어야 한다.

나) 세액공제 자산을 양수한 자: 해당 자산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기준가격 이상의 가격으로 양수했을 것

마. 기준가격을 산정할 때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하며, 순현재가치 계산에 반영되는 매 사업연도의 현금흐름 금액은 세법상 해당 매 사업연도에 해당 세액공제를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금액으로 한다.

- 1) 세액공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발생한 세액공제 금액
- 2) 세액공제를 사용한 경우: 사용하고 남은 금액

바.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구성기업은 그 회계상의 처리를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에 반영할 수 있다.

- 1) 구성기업이 취득하거나 건설하는 자산과 관련하여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또는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가 발생할 것
- 2) 해당 구성기업이 회계상 그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금액 또는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금액만큼 취득하거나 건설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하거나 회계상 이연수익금액을 계상할 것

13. 세액공제 자산의 양도 등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의 조정

가.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가 발생한 사업연도(이하 이 호에서 “발생사업연도”라 한다)에 발생한 세액공제금액을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의 계산에 포함한 구성기업이 해당 세액공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을 조정한다.

- 1) 발생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5개월 이내에 해당 세액공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발생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의 계산에 포함된 해당 세액

공제 금액을 그 양도가액(해당 세액공제 자산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 대체할 것

2) 발생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5개월 후에 해당 세액공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과 세액공제 금액의 차액(이하 이 호에서 “양도차액”이라 한다)을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의 계산에서 손실로 산입할 것

3) 제12호바목에 따라 그 회계상의 처리를 반영하는 경우: 양도차액 만큼 취득·건설하는 해당 자산 가액을 증액하거나 해당 이연수익금액을 감액할 것

나. 세액공제 자산을 양수하는 구성기업은 양수한 해당 자산의 세액공제 금액과 그 양수가액(해당 세액공제 자산을 양수하고 지급한 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차액 중 대상조세의 납부에 사용한 해당 세액공제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이하 이 호에서 “실현이익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의 계산에서 소득으로 산입한다.

다. 세액공제 자산을 양수한 구성기업이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양도차손익금액을 그 양도하는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의 계산에 산입한다

$\text{세액공제 자산의 양도차손익금액} = A - (B + C - D)$ A: 세액공제 자산의 양도가액 B: 세액공제 자산의 양수가액 C: 실현이익금액 D: 양수한 세액공제 자산 금액 중 사용한 세액공제 금액
--

라. 발생한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용되지 않아 해당 세액공제 자산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소멸하는 금액을 소멸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호에서 “소멸사업연도”라 한다)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의 계산에서 손실로 산입한다. 이 경우 제12호바목에 따라 해당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가 발생했을 때 그 금액만큼 해당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의 발생과 관련하여 취득하거나 건설하는 자산 가액을 감액하거나 이연수익을 계상한 때에는 그 소멸하는 세액공제 자산 금액만큼 취득하거나 건설하는 해당 자산 가액을 증액하거나 해당 이연수익 금액을 감액한다.

마. 양수한 세액공제 자산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용되지 않아 해당 세액공제 자산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소멸손실금액을 소멸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의 계산에서 손실로 산입한다.

$$\text{양수한 세액공제 자산의 소멸손실금액} = A + B - C$$

A: 세액공제 자산의 양수가액

B: 실현이익금액

C: 양수한 세액공제 자산 금액 중 사용한 금액

바.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에 대한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의 조정에 관하여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4. 전기 오류수정 또는 회계정책 변경에 따른 조정

구성기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회계상 순손익의 증가 또는 감소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을 계산할 때 기초자본의 증가분은 가산하고 기초자본의 감소분은 차감한다.

가. 해당 사업연도의 이전 사업연도(글로벌최저한세 과세제도가 적용된 사업연도로 한정한다)에 발생한 회계상 오류를 수정

나.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하는 회계원칙 또는 회계정책을 변경

15. 구성기업 간 연결회계조정 결과의 반영에 따른 조정

신고구성기업이 구성기업의 소재지국별로 적용하는 5년선택에 따라 같은 국가 내의 연결납세대상 구성기업 간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비용·이익 및 손실을 제거하기 위해 실시하는 연결회계조정은 해당 국가에 소재한 연결납세 대상 구성기업(투자기업, 소수지분구성기업 및 공동기업은 제외한다)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을 계산할 때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택을 하거나 취소할 때에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의 각 항목이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16. 실현주의의 적용에 따른 조정

가. 신고구성기업은 연결재무제표상 공정가치평가 및 손상차손평가 회계처리의 대상이 되는 자산 및 부채에 대해 그 자산이 양도되거나 부채가 상환되는 등의 시점에 손익을 인식하는 것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택은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구성기업의 소재지국별로 적용하는 5년선택으로 하며,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에 대해 적용한다.

나. 신고구성기업은 가목에 따른 선택의 적용을 구성기업의 유형자산 또는 투자구성기업의 자산 및 부채로 한정할 수 있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실현주의의 적용을 선택하는 경우 해당 자산 및 부채에 대해 회계상 계상된 공정가치평가 또는 손상차손평가에 의한 손익 중 이익은 차감하고 손실은 가산하여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을 계산한다.

라. 해당 자산이 양도되거나 부채가 상환되는 등 자산 및 부채와 관련된 손익이 실현

되는 경우 실현손익(양도 또는 상환 사업연도에 회계상 계상된 실현손익은 제외한다) 중 이익은 가산하고 손실은 차감하여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을 계산한다. 이 경우 실현손익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선택사업연도의 개시일과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채의 경우 발생일) 중 늦은 날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마.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선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의 C가 양수이면 해당 금액을 가산하고 C가 음수이면 음의 부호를 뺀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취소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을 계산한다.

$C: A - B$ A: 취소사업연도 개시일의 자산의 공정가치 금액에서 부채의 공정가치 금액을 차감한 금액 B: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 이 경우 장부가액은 라목 후단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

17. 정상가격 및 동일가격 원칙의 적용에 따른 조정

가.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 간 거래의 당사자인 구성기업은 회계상 순손익을 계산할 때 사용한 해당 거래의 가격에도 불구하고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거래에 대해 정상가격원칙(과세목적상 구성기업 간의 거래가격의 결정과 비교가능한 제3자 간 거래에서 설정되었을 조건을 적용하는 원칙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가격을 사용해야 한다.

나. 가목을 적용할 때 다음의 일방적인 조정이 있는 경우에도 정상가격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

- 1) 일방적 이전가격사전합의(과세소득의 계산에 적용할 정상가격원칙에 따른 가격에 관한 해당 기업과 그 소재지국 과세당국 간의 합의로서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일방적 사전승인을 포함한다)에 따른 과세소득의 조정
- 2) 정상가격원칙 적용을 위한 해당 구성기업의 과세소득의 신고 또는 수정신고에 따른 과세소득의 조정
- 3) 정상가격원칙 적용을 위한 소재지국 과세당국에 의한 과세소득의 조정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원칙에 따른 가격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거래 당사자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을 계산할 때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동일한 가격을 사용해야 한다.

- 1) 해당 구성기업에 적용되는 명목세율이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경우
- 2) 해당 구성기업에 적용되는 명목세율이 최저한세율 이상이더라도 그 소재지국이 해당 과세소득 조정대상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 모두 저율과세국가였던

경우

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을 계산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 간 거래에도 정상가격원칙에 따른 가격을 사용해야 한다.

- 1) 자산의 판매·양도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로 인해 회계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해당 자산이 거래가 발생한 사업연도 중 다국적기업그룹 외의 자에게 다시 판매·양도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가 되지 않는 경우
- 2) 거래 당사자 중 소수지분구성기업이 있는 경우
- 3) 거래 당사자 중 투자구성기업이 있는 경우

18. 보험계약자 관련 손익의 조정

가. 보험구성기업(소재지국에서 보험회사로 규제받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구성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는 수익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을 그 회계상 순손익의 계산에서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보험구성기업이 보험계약자에게 청구하는 금액 중 해당 세금에 대한 금액은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나. 보험계약자에 귀속되는 수익 중 보험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의 계산에서 수익으로 계상되지 않은 수익(해당 수익에 상당하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채무 증감이 해당 보험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을 계산할 때 손익으로 계상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해당 보험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의 계산에 포함한다.

19. 그 밖의 기본자본 등에 대한 배당에 따른 조정

은행업의 자본 건전성 규제 또는 보험업의 지급 여력 규제에 따라 발행되는 기타기본자본(은행업을 영위하는 구성기업이 발행하는 금융상품으로서 금융위기 등 특정사건이 발생할 경우 손실을 흡수하기 위해 자본으로 전환되거나 상각되도록 설계된 것을 말한다) 및 제한기본자본(보험업을 영위하는 구성기업이 발행하는 금융상품으로서 대형사고 등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지급 여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본으로 전환되거나 상각되도록 설계된 것을 말한다)에 대해 지급하거나 지급할 배당 또는 수취하거나 수취할 배당은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을 계산할 때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조정한다.

가. 기타기본자본 또는 제한기본자본을 발행한 구성기업이 그에 대해 지급하거나 지급할 배당이 해당 구성기업의 회계상 자본의 감소로 계상된 경우: 그 금액을 비용으로 보아 차감할 것

나. 기타기본자본 또는 제한기본자본을 취득한 구성기업이 그에 대해 수취하거나 수취할 배당이 해당 구성기업의 회계상 자본의 증가로 계상된 경우: 그 금액을 소득

으로 보아 가산할 것

20. 그 밖에 연결조정 사항의 반영에 따른 조정

구성기업의 별도 회계상 계상되지 않는 연결조정 사항으로서 내부거래의 제거 및 매수법회계 적용 목적 외의 연결조정 사항은 해당 수익 또는 비용이 귀속되는 구성기업을 일관되고 신뢰성 있게 추적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그 금액을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을 계산할 때 반영할 수 있다.

(붙임)

개별기업보고서

(사업연도: . . . ~ . . .)

제출연월

(주) 법 인 명

개별기업보고서 목차

자료의 내용	쪽	미제출·작성 사유
I 법인의 개요		
1. 법인에 대한 소개		
2. 경영구조		
3. 경영 관련 보고를 받는 담당자		
4. 법인의 사업 및 사업전략에 대한 자세한 설명		
5. 주요 경쟁업체		
II 특수관계 거래에 대한 설명		
1. 국외특수관계인 현황		
2. 국외특수관계인의 법적 소유구조		
3. 지배 구조도		
4. 중요한 특수관계 거래에 대한 설명과 거래 발생 배경		
5. 특수관계 거래별 특수관계인 내역 및 특수관계인 간 관계		
6. 특수관계 거래에서 발생하는 지급액 및 수취액		
7. 특수관계 거래와 관련한 납세의무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비교가능성 및 기능 분석		
8. 거래 종류별 가장 적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해당 방법 선정 이유		
9.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및 선정 이유에 대한 설명		
10.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 시 사용된 중요한 가정들의 요약		
11. 다년도 분석을 수행한 이유		
12. 비교가능 제3자 거래(내부 또는 외부) 목록 및 전반적인 설명		
13. 정상가격 산출 시 적용된 비교가능성 차이 조정에 관한 설명		
14. 정상가격 산출 시 사용된 법인의 재무정보		
15. 검토 결과		
III 재무제표, 계약서 등 참고 자료		
1. 법인의 재무정보와 관련한 보고서		
2. 상기 특수관계거래와 관련하여 다른 과세당국에서 승인받은 일방·쌍방·다자간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APA) 승인 및 세법해석 질의회신		
3. 법인이 체결한 주요 특수관계거래 계약서 사본		
4.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적용된 재무자료가 해당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일치하는지를 보여주는 정보를 담은 표		

I. 법인의 개요

1. 법인에 대한 소개

- 법인의 조직도(그림 형태로 작성, 지점·연락사무소 포함)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2. 경영구조

- 법인의 의사결정 구조, 의사결정 담당자의 역할 등에 대하여 적습니다.

3. 경영 관련 보고를 받는 담당자

- 제2호의 경영구조에서 설명한 내용 중 주요 의사결정 담당자(법인 관련 주요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받는 자 포함)가 해당 법인 외에 다른 법인 등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담당자와 담당자가 속한 다른 법인의 상호 및 설립지 국가, 해당 법인이 주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소가 위치한 국가 등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4. 법인의 사업 및 사업전략에 대한 자세한 설명

- 해당 사업연도나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 법인이 참여하거나 영향을 받은 사업구조 개편 또는 무형자산 이전 거래가 있었는지와 있었던 경우 이러한 개편 또는 거래가 해당 법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5. 주요 경쟁업체

경쟁업체		업종	주요 취급품목 또는 브랜드
상호	국가		

II.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설명

1. 국외특수관계인 현황

상호 또는 성명	상호 또는 성명(약어)	국가	상세주소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 작성대상인 국외특수관계인의 사업 개요를 별도로 추가하여 적습니다.

2. 국외특수관계인의 법적 소유구조

- 제1호에서 설명된 국외특수관계인의 법적 소유구조에 관하여 적습니다.

상호 또는 성명	대주주(상위 3명)					
	상호 또는 성명	지분율	상호 또는 성명	지분율	상호 또는 성명	지분율

3. 지배 구조도

- 법인의 직·간접 지배회사 및 피지배회사(파트너십, 지점 포함)에 대한 지배 구조도를 작성합니다.

4. 중요한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설명과 거래 발생 배경

- (거래종류) 재화, 이자, 금전대여, 금전상환, (무형자산)사용료, (부동산, 장비)임대료, 증자, 출자, 유가증권 매입, 배당지급, 증여, 경영자문, 금융자문, 전산지원, 지급보증, 기술지원, 건설공사, 알선주선, 법무용역, 통역, 애프터서비스(AS), 일반용역, 판매상담, 교육, 임가공 등
- 해당 사업연도에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이고, 그 밖의 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특수관계 거래별 특수관계인 내역 및 특수관계인 간 관계

○ 제4호에서 작성한 거래의 종류별로 작성합니다.

가. 매출거래

거래종류	특수관계인의 상호 또는 성명	관계	거래내용 요약	계약서 유무

나. 매입거래

거래종류	특수관계인의 상호 또는 성명	관계	거래내용 요약	계약서 유무

○ 특수관계 거래가 있는 국외특수관계인의 손익을 요약한 내용은 ‘별지 제17호서식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에 작성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제출합니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

6. 특수관계거래에서 발생하는 지급액 및 수취액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모든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지급액 및 수취액은 ‘별지 제16호서식(갑) 국제거래명세서’에 작성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제출합니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

7. 특수관계거래와 관련한 납세의무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비교가능성 및 기능 분석

○ 직전 사업연도와의 비교분석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직전 사업연도와 변경사항에 대해서만 추가로 작성합니다)

8. 거래 종류별 가장 적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해당 방법 선정이유

거래 종류	정상가격 산출방법 (수익성 지표)	선정 이유

-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선정한 경우, 사용한 거래순이익률 지표의 선정근거에 대해서 ‘선정이유’에 적습니다.
- 거래 종류별로 가장 적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정한 이유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고, 선정하지 않은 방법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선정 이유’에 적습니다.
- 개별 거래별로 작성하되, 다수의 거래를 통합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이유를 ‘선정 이유’에 적습니다.
- 무형자산거래의 경우에는 거래가격 산정방식, 거래가격에 적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각 거래 주체의 수행기능, 부담위험 및 사용자산을 분석), 적용 이유에 대하여 자세히 적습니다.
 - 특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라 무형자산의 정상가격을 산출한 경우에는 미래의 현금흐름 예상액, 성장률, 할인율,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 등 제반 요소, 정상가격 산출내역 및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무형자산거래에 대해서는 ‘별지 제19호서식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작성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제출합니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
- 용역거래 중 지급보증 거래의 경우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선정 사유 및 계산근거를 상세히 적고 관련 첨부서류(계산근거가 나타나는 표, 금융기관 증빙서류 등)를 별도로 제출합니다.
 - 지급보증 거래에 대해서는 ‘별지 제16호서식(을) 지급보증 용역거래 명세서’를 작성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국제거래명세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 지급보증 용역거래 외에 기타 용역거래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자세히 적어야 합니다.
 - 발생원가를 구성하는 세부 항목 (용역 제공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비용을 구분하여 작성)
 - 직접 청구방식을 적용하는 용역의 경우 그 대상 및 선정 이유
 - 간접 청구방식을 적용하는 용역의 경우 합리적인 배부기준 및 선정 이유
 - 용역 제공자가 해당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제3자에게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여 수행할 것을 의뢰하고 대금을 한꺼번에 지급한 후 이에 대한 비용을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재청구하는 경우 재청구하는 금액 및 산출내역
 - 제공 용역별로 용역 제공자에게 이익을 발생시키는 경우 이에 관한 증명자료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7.33>

- 용역 제공자가 제공한 용역의 시장가치가 발생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이유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7.34>
- 그룹서비스센터를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배부할 그룹서비스 센터의 부서별 발생원가의 세부 항목·금액과 공통비용의 세부 항목·금액
- 지급보증 용역거래 외에 기타 용역거래에 대해서는 ‘별지 제18호서식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 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작성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제출 기한까지 제출합니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

○ 금전대차거래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세부 사항을 작성합니다.

(단위 : 원)

금전대차 거래 유형	계약 당사자		거래 개시일	거래 만기일	거래금액 (액면)	거래금액 (연평균)	이자등 수취· 지급액	이자율	보증 관련정보	이전가격 정책	자금의 용도
	제공자	수취자									

- 금전대차거래 유형: 하나의 특수관계법인과 여러 유형의 거래 또는 단일 유형의 거래를 여러 건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별로 작성합니다. 다만, 하나의 거래를 통하여 자금의 차입과 상환이 빈번히 발생하는 경우에는 거래 계약별로 작성합니다.
- 거래 개시일: 자동갱신 또는 연장되는 경우에는 최근 갱신일 또는 연장일을 적습니다.
- 거래금액(액면): 거래의 액면금액을 적되, 해당 과세연도의 평균환율(최초 고시)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평균환율"이란 해당 과세연도 매일의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의 합계를 해당 과세연도의 일수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 거래금액(연평균): 거래금액의 적수(금액×일수)를 해당 과세연도의 일수로 나눈 값을 적습니다.
- 보증 관련 정보: 금전대차거래별로 제3자 또는 특수관계인의 보증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이전가격 정책: 이자율 등이 산출된 근거를 상세히 적습니다. 별도의 근거가 없을 경우 실제 적용된 이자율을 적습니다.

9.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및 선정 이유에 대한 설명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선정 이유

10.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 시 사용된 중요한 가정들의 요약

-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과 관련하여 사용된 중요한 가정들이 있는 경우 이를 적습니다.

11. 다년도 분석을 수행한 이유

- 다년도 분석을 수행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12. 비교가능 제3자 거래(내부 또는 외부) 목록 및 전반적인 설명

- 정상가격 산출 시 사용된 독립된 제3자 거래의 탐색 방법, 탐색하여 획득한 정보의 출처 및 독립된 제3자 거래를 수행하는 기업의 재무정보 요약표(출처 포함)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 시점 또는 보고서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수집된 비교대상 수치들을 활용하여 작성합니다.

13. 정상가격 산출 시 적용된 비교가능성 차이 조정에 관한 설명

- 차이 조정이 특수관계 거래, 비교가능 제3자 거래 또는 양쪽 모두에 적용되었는지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14. 정상가격 산출 시 사용된 법인의 재무정보

- 정상가격 산출 시 사용된 비교대상법인의 재무정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 서식의 표준재무상태표 및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의 표준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 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양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및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 양식으로 작성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의 해외 현지법인 재무상황표의 요약재무상태표, 요약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양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15. 검토 결과

III. 재무제표, 계약서 등 참고 자료

- * 아래 재무정보와 관련한 보고서, 사전승인(APA) 승인서, 세법해석 질의회신, 특수관계 거래 계약서 등은 사본을 따로 제출합니다.

1. 법인의 재무정보와 관련한 보고서

일련번호	종류	회계기간	수량(쪽)
①			
②			
③			

- (보고서 종류) 해당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연결재무제표,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등
 - * 재무정보와 관련한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 또는 국세행정정보시스템 홈택스(hometax)를 통해 전자문서로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상기 특수관계 거래와 관련하여 다른 과세당국으로부터 승인받은 일방·쌍방·다자간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APA) 승인 및 세법해석 질의회신

- * 해당 사업연도 정상가격의 적정 여부와 관련이 있는 사전승인 및 세법해석 질의회신을 적습니다.
- * 상기 특수관계 거래와 관련하여 다른 국가 및 지역에서 진행 중인 불복절차가 있는 경우 그 내용(신청 날짜, 취지, 진행사항 등)을 별도로 추가하여 적습니다.

○ 일방·쌍방·다자간 APA

구분	과세당국	적용대상 거래	합의 적용기간	적용된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정상가격범위

○ 세법해석 질의회신

일련번호	과세당국(국가)	신청 날짜	주요내용
①			
②			
③			

3. 법인이 체결한 주요 특수관계거래 계약서 사본

- 주요 특수관계거래란 해당 사업연도에 국외특수관계인별 재화 거래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초과하거나 그 밖의 거래금액의 합계가 2억원 초과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계약서 일련번호	계약 상대방 상호	계약기간	계약의 주요내용
①			
②			
③			

- * 동일한 계약 상대방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이 일정한 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대표적인 계약서 사본과 동일내용 계약 명세(금액 등 내용이 다른 항목 반드시 기재)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과세당국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적용된 재무자료가 해당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일치하는지를 보여주는 정보를 담은 표

- 공시된 재무제표와 개별기업보고서상 이전가격 분석에 사용된 재무제표가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 사유가 기재된 표를 작성합니다.

- * 특히, 다음 ①과 ②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표를 작성하고 산출 근거에 대한 설명을 기재합니다.

- ①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시 국제거래별 구분손익계산서와 구분재무상태표를 사용한 경우

1) 국제거래별 구분손익계산서

(단위 : 원)

사업연도	분석대상 거래A	분석대상 거래B	분석대상 거래C	...	합계	비고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관리비						
영업이익						
차이조정						
이전가격 조정액						
조정후 영업이익						

2) 국제거래별 구분재무상태표

(단위 : 원)

사업연도	분석대상 거래A	분석대상 거래B	분석대상 거래C	...	합계	비고
자산						
부채						
자본						

- ②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시 공시된 손익계산서를 사용하지 않고, 이전가격 조정액이나 그 외 차이조정액을 반영하여 별도 작성한 손익계산서를 사용한 경우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비고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관리비		
영업이익		
차이조정		
이전가격 조정액		
조정후 영업이익		

정보제공명세서

(3쪽 중 제1쪽)

[① 정보수집기준연도:]

[② 제출구분:]

1. 제출인

암호화자산 사업자	③ 사업자명 (상 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소 재 지 (주 소)		⑥ 암호화자산사업자 식 별 번 호	
후원단체 · 중개기관	⑦ 법 인 명 (상 호)		⑧ 사업자등록번호	
	⑨ 소 재 지 (주 소)		⑩ 암호화자산사업자 식 별 번 호	

2. 암호화자산이용자

성 명	⑪ 개 인	성		명		⑫ 생 년 월 일	
	⑬ 단 체					⑭ 단 체 구 분	
거 주 지	⑮ 거주지국가코드					⑯ 거주지납세자번호	
주 소 지	⑰ 시 · 도					⑱ 시 · 군 · 구	
	⑲ 상 세 주 소						
	⑳ 우 편 번 호					㉑ 주소지국가코드	

3. 실질적 지배자

성 명	㉒ 개 인	성		명		㉓ 생 년 월 일	
거 주 지	㉔ 거주지국가코드					㉕ 거주지납세자번호	
주 소 지	㉖ 시 · 도					㉗ 시 · 군 · 구	
	㉘ 상 세 주 소						
	㉙ 우 편 번 호					㉚ 주소지국가코드	

4. 암호화자산 거래정보

암호화자산	③① 명 칭		③② 거 래 유 형		③③ 세부 거래유형	
취득정보	③④ 총 액		③⑤ 암호화자산 총 단위 수		③⑥ 거 래 횟 수	
처분정보	③⑦ 총 액		③⑧ 암호화자산 총 단위 수		③⑨ 거 래 횟 수	

5. 그 밖의 사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제공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작성방법

※ 이 서식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제8항에 따라 금융거래회사등에서 작성하여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 이 서식은 영문으로 해당 연도(이하 "정보수집기준연도")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① : 정보수집기준연도의 마지막 날을 적습니다.[연도(YYYY)-월(MM)-날짜(DD)](예: 2025-12-31)
3. ② : 신규는 '1', 보완은 '2', 삭제는 '3', 수정은 '4'를 적습니다.
가. 신규: 이전에 전송하지 않았거나 삭제 후 자료를 재전송할 때 사용합니다.
나. 보완: 권한 있는 당국의 자료 시정 요청에 대한 회신자료를 전송할 때 사용합니다.
다. 삭제: 자료 재전송이 필요할 때 이전에 제출된 기록을 삭제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라. 수정: 제출기한 이후 자료를 수정하여 전송할 때 사용합니다.
4. ③~⑤ : 암호화자산정보를 보고하는 암호화자산사업자의 사업자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재지(주소)를 적습니다.
5. ⑥ : 암호화자산정보 자동교환을 위해 부여된 식별번호를 적습니다.
6. ⑦~⑩ : 후원단체 또는 중개기관이 암호화자산사업자를 대신하여 보고를 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7. ⑪・⑫ : 개인의 경우 작성합니다.
8. ⑬・⑭ : 개인이 아닌 경우 단체와 관련된 사항을 작성합니다.
9. ⑭ :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단체의 구분 유형을 적습니다.
가. '1' 보고대상인
나. '2' 실질적 지배자가 보고대상인인 단체
다. '3' 보고대상인인 능동적 단체가 아닌 단체
9. ⑫~③⑩ : ⑭란의 단체구분 유형이 '2' 또는 '4'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10. ⑮・⑳・㉔・㉟ : 국가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ISO-3166 Alpha 2)에 따라 적습니다.
11. ㉑~㉕, ㉖~㉟ : 암호화자산이용자 또는 실질적 지배자의 조세 목적상 주소지에 관한 사항을 적고, 조세 목적상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암호화자산사업자가 암호화자산이용자 또는 실질적 지배자에게 연락을 취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주소를 적습니다.
12. ㉑~㉟ : 암호화자산 유형별로 거래정보를 기재합니다.
13. ㉑ : 암호화자산 유형의 정식 명칭을 적습니다.
14. ㉒ :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해당 거래유형을 적습니다.
가. '1' 암호화자산 간 교환거래로 인한 취득
나. '2' 암호화자산 간 교환거래로 인한 처분
다. '3' 법정통화를 지급하고 암호화자산 취득
라. '4' 법정통화를 취득하고 암호화자산 처분
마. '5' 암호화자산 이전으로 인한 취득
바. '6' 암호화자산 이전으로 인한 처분
사. '7' 외부지갑으로의 이전
아. '8' 보고대상 소매거래
15. ㉓ :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세부 거래유형을 적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㉒란의 거래유형이 '1', '2', '3', '4' 중 하나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분	㉒란 '1', '2', '3', '4'	㉒란 '5'	㉒란 '6'
세부 거래유형	가. '1' 스테이킹(Staking) 나. '2' 대출에 대한 지급·상환 및 대출로 인한 이익 (Crypto Loan) 다. '3' 래핑(Wrapping) 라. '4' 담보(Collateral)	가. '11' 에어드롭(Airdrop) 나. '12' 스테이킹에 따른 수입 (Staking income) 다. '13' 채굴에 따른 수입 (Mining income) 라. '14' 대출에 대한 지급·상환 및 대출로 인한 이익 마. '15'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화 자산사업자로부터의 이전 바. '16' 상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 사. '17' 담보 아. '18' 기타 유형	가. '21'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화 자산사업자로의 이전 나. '22' 대출에 대한 지급·상환 및 대출로 인한 이익 다. '23'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 라. '24' 담보 마. '25' 기타 유형

작성방법

16. ㉔・㉕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법정통화 기준으로 적습니다. 만약 여러 법정통화로 지급 또는 수령된 경우, 암호화자산사업자가 일관되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각 암호화자산거래 시점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단일 법정통화로 기재합니다. 단, ㉔란의 거래유형이 '5' 또는 '6'인 경우에는 ㉔란의 세부 거래 유형별로 기재합니다.
- 가. 암호화자산 간 교환거래로 인한 취득: 공정시장가치 총액
 - 나. 암호화자산 간 교환거래로 인한 처분: 공정시장가치 총액
 - 다. 법정통화를 지급하고 암호화자산 취득: 법정통화 총액
 - 라. 법정통화를 취득하고 암호화자산 처분: 법정통화 총액
 - 마. 암호화자산 이전으로 인한 취득: 공정시장가치 총액
 - 바. 암호화자산 이전으로 인한 처분: 공정시장가치 총액
 - 사. 외부지갑으로의 이전: 공정시장가치 총액
 - 아. 보고대상 소매거래: 공정시장가치 총액
17. ㉖・㉗ : 취득 또는 처분한 암호화자산의 총 단위 수를 적습니다. 단, ㉔란의 거래유형이 '5' 또는 '6'인 경우에는 ㉔란의 세부 거래 유형별로 기재합니다.
18. ㉘・㉙ : 보고대상 거래 수를 적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단, ㉔란의 거래유형이 '5' 또는 '6'인 경우에는 ㉔란의 세부 거래 유형별로 기재합니다.
19. 5. 그 밖의 사항란에는 '1. 제출인, 2. 암호화자산이용자, 3. 실질적 지배자 또는 4. 암호화자산 거래정보'를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일부의 내용을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해당 내용을 작성하지 못한 구체적인 이유 및 경위(예시: 암호화자산이용자가 본인확인서의 제출을 거부함, 실질적 지배자가 증빙자료의 제출을 지연함) 등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제출대상 연도 년	해외신탁명세서	제출 구분	☐ 정기	위탁자 유형	☐ 거 주 자
			☐ 수정		☐ 내국법인
			☐ 기한 후		

1. 위탁자 인적 사항

① 성 명 (법인명)	(한글)	②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영문)	③ 전화번호	
④ 주 소 (소재지)			

2. 해외신탁 보유 현황

⑤ 보유신탁 총수	개
-----------	---

3. 해외신탁별 명세 (단위: 현지 통화, 원)

보유 신탁 일련 번호 (1)	⑥ 신탁 명칭					
	⑦ 신탁 유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제1호 ☐ , 같은 항 제2호 ☐				
	⑧ 신탁 소재지	국가코드		국가명		
	⑨ 지분비율		%	⑩ 신탁 설정일 (재산 이전일)	년	월 일
	⑪ 신탁 계약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⑫ 신탁 관련자 정보	☐ 공동위탁자		☐ 공동수익자		☐ 공동수탁자
		수익자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지분비율	%	전화번호	
		주 소 (소재지)	(국가:)			
			수탁자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지분비율		%	전화번호	
		주 소 (소재지)	(국가:)			
			⑬ 신탁 재산	☐ 현금 ☐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 ☐ 주식(예탁증서) ☐ 채권 ☐ 집합투자증권 ☐ 보험상품 ☐ 가상자산 ☐ 그 밖의 자산		
	⑭ 신탁재산가액	(외화)	(통화:)	⑮ 시가산정기준일	년	월 일
	(원화)					

4. ⑮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인 신탁재산 보유 여부 여 ☐ 부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4항에 따라 해외신탁명세서를 제출하
며, 위 내용은 제출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출(법)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대리인	성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	--------	--	-------------------	--	------	--

작성방법

※ 제출대상 연도(20××년)를 적고 “제출 구분”란, “위탁자 유형”란의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 수정하여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처음에 제출한 해외신탁정보(2회 이상 수정하여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이전에 수정하여 제출한 해외신탁정보)를 위쪽에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고, 수정하려는 해외신탁정보를 아래쪽에 검은색 글씨로 작성합니다.

1. ①~④: 제출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① 거주자는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에 적혀 있는 영문 성명(full name)을 한글 성명과 함께 적습니다. ② 위탁자가 거주자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를 적습니다. 위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2. ⑤: 보유신탁의 총수를 적고 해당 신탁별 정보를 “3. 해외신탁별 명세”에 작성합니다. 보유신탁이 2개 이상인 경우 보유신탁 일련번호 2번 이하부터는 이 서식 3쪽의 해외신탁 명세서를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3. ⑥: 해외신탁의 명칭을 적습니다.(예시: ○○○ Trust)
4. ⑦: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보유한 신탁의 해당되는 란에 “√” 표시를 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제1호의 해외신탁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5항에 따라 위탁자가 해외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해외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등 위탁자가 해외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해외신탁을 의미합니다.
5. ⑧: 해외신탁이 소재하는 국가의 국가코드(ISO 3166-1, 알파벳 두 글자)를 적고, 국가명을 한글로 적습니다.(예시: US, 미국)
6. ⑨: 지분비율은 공동위탁자가 없는 경우 100을 적고, 그 외에는 위탁자의 해당 지분비율을 숫자로 작성합니다.
7. ⑩: 해외신탁 설정일을 적고, 재산을 이전한 경우 재산 이전일을 적습니다.(예시: 20××년 5월 15일)
8. ⑪: 해외신탁 설정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적습니다. 신탁 종료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종료일은 “9999년”으로 적습니다.
9. ⑫: 해당 신탁의 위탁자, 수익자, 수탁자가 각각 2명 이상인 경우 공동위탁자, 공동수익자, 공동수탁자의 해당란에 모두 “√” 표시를 하고, 공동수익자 중 지분비율이 가장 큰 수익자와 공동수탁자 중 지분비율이 가장 큰 수탁자에 관한 정보를 적습니다. 신탁 관련자 정보 주소란의 “(국가:)”에는 국가코드(ISO 3166-1, 알파벳 두 글자)를 적습니다.(예시: KR, US)
10. ⑬: 보유한 해외신탁재산이 해당하는 유형에 모두 “√” 표시를 합니다.
11. ⑭: 해외신탁명세서 부표2 “해외신탁재산 및 평가명세서”의 “③ 해외신탁재산 총재산평가액”을 외화 및 원화로 적습니다. 외화로 작성하는 경우 “(통화:)”에는 통화코드(ISO 4217, 알파벳 세 글자)를 적습니다.(예시: USD, CNY, EUR) 외화금액이 둘 이상의 통화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주된 단일 통화로 환산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외화의 원화 환산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릅니다.
12. ⑮: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제8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시가산정기준일을 적습니다. 위탁자가 해외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해외신탁(같은 항 제1호)은 해외신탁으로서 그 해외신탁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적고, 그 해외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해외신탁 종료일 현재를 적으며, 그 외의 해외신탁(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해외신탁 설정일 및 이전일을 적습니다.
1. ⑯: 보유한 해외신탁재산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신고대상인 해외금융계좌가 포함된 경우 “여” 란을, 포함되지 않은 경우 “부” 란을 선택하여 “√” 표시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단위: 현지 통화, 원)							
보유 신탁 일련 번호 ()	⑥ 신탁 명칭						
	⑦ 신탁 유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제1호 [], 같은 항 제2호 []					
	⑧ 신탁 소재지	국가코드		국가명			
	⑨ 지분비율			⑩ 신탁 설정일 (재산 이전일)	년	월 일	
	⑪ 신탁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⑫ 신탁 관련자 정보	[] 공동위탁자		[] 공동수익자		[] 공동수탁자	
		수익자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지분비율	%		전화번호	
		수탁자	주 소 (소재지)	(국가:)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지분비율			%		전화번호		
⑬ 신탁 재산	[] 현금 []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 [] 주식(예탁증서) [] 채권 [] 집합투자증권 [] 보험상품 [] 가상자산 [] 그 밖의 자산						
	⑭ 신탁재산가액 (원화)	(외화)	(통화:)	⑮ 시가산정기준일	년 월 일		

보유 신탁 일련 번호 ()	⑥ 신탁 명칭						
	⑦ 신탁 유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제1호 [], 같은 항 제2호 []					
	⑧ 신탁 소재지	국가코드		국가명			
	⑨ 지분비율			⑩ 신탁 설정일 (재산 이전일)	년	월 일	
	⑪ 신탁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⑫ 신탁 관련자 정보	[] 공동위탁자		[] 공동수익자		[] 공동수탁자	
		수익자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지분비율	%		전화번호	
		수탁자	주 소 (소재지)	(국가:)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지분비율			%		전화번호		
⑬ 신탁 재산	[] 현금 []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 [] 주식(예탁증서) [] 채권 [] 집합투자증권 [] 보험상품 [] 가상자산 [] 그 밖의 자산						
	⑭ 신탁재산가액 (원화)	(외화)	(통화:)	⑮ 시가산정기준일	년 월 일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제출대상 연도의 보유신탁이 2개 이상인 경우에만 보유신탁 일련번호 2번부터 차례로 작성합니다. (/)쪽
- 각 일련번호의 보유신탁마다 ⑥번 항목부터 ⑮번 항목까지 해당 사항을 각각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해외금융계좌 명세서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가. 해외금융계좌 보유 현황 (단위: 현지 통화, 원)

① 전체 신고계좌 총수								전체 보유계좌 잔액의 연중 매월 말일의 최고금액			
								② 기준일	③ 금액		
								(개)	(원)		

나. 해외금융계좌 명세

보유계좌 일련번호 (1)	④ 신탁재산 일련번호	⑤ 계좌종류	⑥ 금융회사명	⑦ 계좌번호	⑧ 계좌명의자	⑨ 국가	⑩ 표시 통 화	⑪ 기준일 잔액	⑫ 개설일	⑬ 해지일	⑭ 계좌 관련자 정보
								(외화)			[] 없음
								(원화)			[] 공동명의계좌
											[] 외국법인(100%소유)
											[]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계좌
보유계좌 일련번호 ()	④ 신탁재산 일련번호	⑤ 계좌종류	⑥ 금융회사명	⑦ 계좌번호	⑧ 계좌명의자	⑨ 국가	⑩ 표시 통 화	⑪ 기준일 잔액	⑫ 개설일	⑬ 해지일	⑭ 계좌 관련자 정보
								(외화)			[] 없음
								(원화)			[] 공동명의계좌
											[] 외국법인(100%소유)
											[]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계좌

다.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명세

관련자 일련번호 (1)	⑮ 보유계좌 일련번호		⑯ 계좌 관련자 유형		[] 유형1, [] 유형2, [] 유형3, [] 유형4	
	⑰ 관련자 정보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전화번호	
관련자 일련번호 ()	⑮ 보유계좌 일련번호		⑯ 계좌 관련자 유형		[] 유형1, [] 유형2, [] 유형3, [] 유형4	
	⑰ 관련자 정보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전화번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보유한 해외신탁재산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신고대상인 해외금융계좌가 포함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단, 해외신탁이 아닌 해외금융계좌를 추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신고대상인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기재할 수 있으며,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할 때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한 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2. "① 전체 신고계좌 총수"란: 신고계좌의 총수를 적고 해당 계좌별 정보를 “나. 해외금융계좌 명세” 및 “다.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명세”에 작성합니다. 신고계좌가 3개 이상인 경우 보유계좌 일련번호 3번 이하부터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3. "② 기준일" · “③ 금액”란: 「보유 중인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의 잔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합산했을 때 가장 큰 금액이 되는 날을 적고, 그 금액을 “원단위”로 “③ 금액”란에 적습니다.
4. "④ 신탁재산 일련번호"란: 신탁재산인 경우 해외신탁명세서의 “3. 해외신탁별 명세”에 기재한 보유신탁 일련번호를 적고, 신탁재산이 아닌 경우 “0”을 적습니다.
5. "⑤ 계좌종류"란: 예금, 적금, 주식, 파생상품, 채권, 집합투자증권(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합니다.) 보험, 가상자산 등 계좌에 의해 보유되고 있는 금융자산의 종류를 적습니다.
6. "⑥ 금융회사명"란: 영문(full name)으로 작성하며, 영문으로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한글로 작성합니다. 가상자산의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명을 적습니다.
7. "⑦ 계좌번호"란: 하이픈(-) 표시 없이 연속으로 숫자나 기호를 적습니다. 가상자산의 경우 계정명을 적습니다.
8. "⑧ 계좌명의자"란: 계좌주 명의를 영문으로 작성하며, 영문이 없는 경우에는 한글로 작성합니다. 법인의 지점이나 연락사무소의 경우에는 그 지점 및 연락사무소의 명칭을 포함합니다.
9. "⑨ 국가"란: 해당 계좌가 있는 금융회사의 소재지를 국가를 영문으로 작성하며, 영문으로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한글로 작성합니다. 가상자산의 경우 그 밖의 상세 주소란에 웹사이트 주소를 적습니다.
10. "⑩ 표시통화"란: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나 외국환은행의 환율 조회 사이트를 참고하여 영문 3문자 (예시: 미국 USD)로 작성합니다.
11. "⑪ 기준일 잔액"란: ②란의 기준일 현재의 해당 계좌의 외화표시 잔액(외화표시 잔액이 둘 이상의 통화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주된 단일 통화로 환산하여 적습니다.)과 이를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각각 (외화), (원화)란에 적습니다. 계좌 관련자가 있는 경우 공동명의자 또는 명의자·실소유자는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닌 해당 계좌의 전체 금액을 적습니다.
12. "⑬ 계좌 관련자 정보"란: 해당 계좌가 공동명의계좌인 경우, 내국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계좌인 경우에 해당란에 “√” 표시를 하고 “다.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명세”를 작성합니다. 공공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두 곳에 모두 “√” 표시를 하고 해당 관련자를 각각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13. "⑭ 계좌 관련자 유형"란: 공동명의자인 경우 “유형1”을, 내국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0%를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유형2”를, 신고인이 계좌 명의자이고 실소유자 정보를 적는 경우 “유형3”을, 신고인이 실소유자이고 계좌 명의자 정보를 적는 경우 “유형4”를 선택하여 “√” 표시합니다.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 뒤쪽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	-----

1. 신고인 인적 사항

①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② 전 화 번 호	
③ 법 인 명 (상 호)		④ 전 자 우 편 주 소	
⑤ 대 표 자 성 명		⑥ 소 재 지	
⑦ 사 업 연 도	. . . ~ . . .		
⑧ 신 고 인 유 형 구 분	1. 지정국내기업 (여 / 부) 2. 기업유형 선택 (ㄱ) 모기업 [] (ㄴ) 투시과세기업 [] (ㄷ) 혼성기업 [] (ㄹ) 고정사업장 [] (ㄴ) 그 외 구성기업 []	⑨ 신 고 구 분	1. 정기신고 [] 2. 수정신고 [] 3. 기한후신고 []

2. 신고 대리인 정보

⑩ 법 인 명 (상 호)	⑪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⑫ 담 당 자 성 명	⑬ 전 화 번 호	⑭ 전 자 우 편 주 소
-----------------	-----------------	-------------	-----------	---------------

신고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3조 1항 및 2항에 따라 이 서식 및 이 서식 부표의 내용을 신고하며, 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법인명)
신고인(대표자)

년 월 일
(인)
(서명 또는 인)

신고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신고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 고 안 내

이 서식 및 부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각 국내구성기업 또는 지정국내기업이 작성하여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합니다. 이 서식 및 부표에서 정하지 않은 작성 방법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교환을 위한 다자간 협정(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on Exchange of GloBE information, GIR MCAA) 및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을 위한 XML 작성지침에 따릅니다.

작 성 방 법

1. ①~⑥ 신고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⑦ 신고대상 사업연도의 개시일과 종료일을 작성합니다.
3. ⑧ 신고인이 지정국내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그리고 신고인의 유형에 따라 해당하는 란에 "√"표시를 합니다.
4. ⑨ 해당 신고 구분 란에 "√"표시를 합니다.
5. ⑩ ~⑭ 신고인을 대리하여 이 서식 및 부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신고 대리인에 대한 정보를 제출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연도	. . . ~ . .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지정국내기업 외 국내구성기업 인적사항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번 호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명 (상 호)	③ 대표자성명	④ 소재지	⑤ 전화번호	⑥ 전자우편주소		
1								
2								
3								
4								
5								
6								
7								
8								
9								

작성 방법

1. ①~⑥: 지정국내기업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 지정국내기업 외 각 국내구성기업의 인적 사항을 신고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뒤쪽의 신고안내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중 제1쪽)

사업연도	. . . ~ . .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제1장. 다국적기업그룹 정보

1.1 신고구성기업 정보

1. 최종모기업 여부	2. 신고구성기업 상호	3. 납세자 번호	4. 신고구성기업 지위	5. 신고구성기업 소재지국	6. 연례 자동정보 교환당사국 (해당되는 경우)
여/부					

1.2 다국적기업그룹 일반정보

1.2.1 다국적기업그룹과 신고대상 사업연도

1. 다국적기업그룹 명칭	2. 신고대상 사업연도 개시일	3. 신고대상 사업연도 종료일	4. 수정신고서 여부
	. . .	. . .	여/부

1.2.2 다국적기업그룹 일반 회계정보

1. 최종모기업 연결재무제표(유형)	2. 최종모기업 연결재무제표 회계기준	3. 최종모기업 연결재무제표 통화(ISO 코드)

1.3 기업구조

1.3.1 최종모기업

1. 최종모기업 소재지국	
2. 적용가능규칙	
3. 최종모기업 상호	
4. 최종모기업 납세자번호	
5. 신고 접수 국가에서 최종모기업에게 부여한 납세자번호 (4의 납세자번호와 다른 납세자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6. 글로벌최저한세 목적상 기업유형	
7. 제외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기업 유형	
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4항 적용 국가에 해당하는 경우	

1.3.2 그룹 기업(최종모기업 제외) 및 공동기업그룹 기업

1.3.2.1 구성기업 및 공동기업그룹 기업

변동사항	1. 직전 신고대상 사업연도 대비 변동 여부	여/부
소재지국	2. 소재지국	
	3. 적용가능규칙	
구성기업,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 자회사 정보	4. 구성기업,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 자회사의 상호	한글/영문 작성
	5. 납세자번호	
	6. 신고 접수 국가의 납세자번호(있는 경우)	
	7. 글로벌최저한세 목적상 기업유형	
구성기업, 공동기업 및 공동기업 자회사의 소유지분구조	구성기업,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 자회사의 소유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각 기업의 정보: 8. 유형 9. 납세자번호(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인 경우) 10. 소유지분 (%)	
구성기업이 부분소유모기업 또는 중간모기업인 경우 해당 구성기업에 적격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11. 모기업 유형	
	12. 최종모기업 또는 다른 중간모기업에 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최종모기업 또는 중간모기업의 납세자번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2조제3항 및 제4항)	
	13. 다른 부분소유모기업에게 적격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부분소유모기업의 납세자번호(「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72조제6항)	
해당 기업에 적격소득산입보완 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14. 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2조)	여/부
	15.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으로 보는 공동기업 및 공동기업의 자회사를 의미합니다)과 관련하여 적격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는 모기업이 보유하는 해당 구성기업의 소유지분(공동기업 및 공동기업의 자회사의 경우에는 추가세액배분액으로 합나다) 합계(%)	
	16. 최종모기업의 해당 구성기업(해당 공동기업그룹 기업) 소유지분(추가세액 배분액)이 해당 구성기업(해당 공동기업그룹 기업)과 관련하여 적격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는 모기업의 해당 구성기업(해당 공동기업그룹 기업) 소유지분 합계(추가세액 배분액 합계)보다 큰지 여부	여/부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1.3.2.2 제외기업

1. 직전 신고대상 사업연도 대비 변동 여부	여/부
2. 제외기업 상호	
3. 제외기업 유형	

1.3.3 신고대상 사업연도 중 기업구조 변동

a.	신고대상 사업연도 중 발생한 기업구조의 변동이 실효세율 계산이나 추가세액 계산 또는 배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작성하지 않는지 여부							여/부
1. 구성기업 (또는 다국적 기업그룹의 다른 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상호	2. 납세자번호	3. 변동효력 발생일	4. 변동전 글로벌최저한세 목적상 기업 유형	5. 변동후 글로벌최저한세 목적상 기업 유형	6. 변동 전 또는 변동 후 해당 구성기업(또는, 다른 기업) 또는 공동 기업그룹 기업의 소유 지분을 보유하는 기업	7. 변동 전 해당 구성기업 (또는 다른 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했던 기업의 소유지분(%)	8. 변동 후 해당 구성기업(또는 다른 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하는 기업의 소유지분(%)	

1.4 글로벌최저한세 정보 요약

1. 소재지국	2. 하위그룹 유형 (있는 경우)	3. 하위그룹 최상위기업 납세자번호 (있는 경우)	4. 글로벌최저한세 과세권이 있는 국가명	5. 적용면제 또는 제외 사유 (항목선택)	6. 실효세율 범위	7. 실질기반 제외소득 적용결과 추가세액 발생여부	8. 추가세액 (적격소재국 추가세) 범위	9. 추가세액 (글로벌최저한세) 범위
				관련항목 기입	관련항목 기입	여/부	관련항목 기입	관련항목 기입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제2장. 국가별 적용면제 및 제외

국가별 적용면제 및 제외 - 국가별 기재

신고구성기업은 글로벌최저한세 계산의 적용면제 및 제외가 적용되는 각 국가별로 제2장의 서식을 작성합니다.

2.1 국가별 기본사항

1. 소재지국 (국가명)	
2. 하위그룹 유형 (해당되는 경우)	
3. 하위그룹 최상위기업 납세자번호 (해당되는 경우)	
4. 과세권이 있는 국가	
5. 보고내용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	여/부

2.2 해당 국가별 적용되는 적용면제 및 제외 (추가세액=0)

2.2.1 적용면제 국가 선택

2.2.1.1 적용면제 선택

1. 적용면제 유형 선택	관련항목 기입(작성요령 참고)
---------------	------------------

2.2.1.2 일반적 적용면제

(a) 중요성이 낮은 구성기업에 대한 간소화 계산

	1. 해당 국가 내 중요성이 낮은 구성기업의 총수익금액 합계	2. 해당 국가 내 중요성이 낮은 구성기업의 간이세액 합계
a. 신고대상 사업연도		
b. 직전 사업연도 (해당시)		해당없음
c. 직전전 사업연도 (해당시)		해당없음
d. 3개 사업연도 평균 (해당시)		해당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2.2.1.3 적용면제

(a) 전환기 적용면제

1. 총수익금액	
2. 세전손익금액	
3. 간이 대상조세 금액(「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6조 제6항)	

(b) 소득산입보완규칙 전환기 적용면제

1. 법인세 명목세율	
-------------	--

2.2.2 최소적용제외 특례 선택

☐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대한 최소적용제외 특례 선택

☐ 중요성이 낮은 구성기업에 대한 간소화 계산을 하는 경우- 중요성이 낮은 구성기업 외의 일반 구성기업에 대한 최소적용제외 특례 선택

	1. 회계상 매출액	2. 글로벌최저한세규칙상 매출액	3. 회계상 순이익 (순손실)	4.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또는 결손)
a. 신고대상 사업연도				
b. 직전 사업연도 (해당시)				
c. 직전전 사업연도 (해당시)				
d. 3개 사업연도 평균 (해당시)				

2.3 해외진출 초기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 (해당되는 경우)

1.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초적용연도 개시일	
2. 준거국가	
3.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초적용연도에 준거국가에 소재하는 유형자산의 순장부가액 합계	
4.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초적용연도에 구성기업이 소재하는 국가 수	
5.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초적용연도에 준거국가 외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의 유형자산	a. 소재지국 b. 해당 소재지국의 모든 구성기업의 유형자산 순장부가액 합계
6.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 수	
7.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준거국가 외 국가에 소재하는 모든 구성기업의 유형자산 순장부가액 합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제3장. 글로벌최저한세 계산

글로벌최저한세 계산 - 국가별 기재

신고구성기업은 글로벌최저한세 계산의 적용면제 및 제외가 적용되지 않는 각 국가별(또는 별도 계산이 필요한 하위그룹별)로 제3장의 서식을 작성합니다.

3.1 국가별 글로벌최저한세 계산 기본사항

1. 국가명	
2. 하위그룹 유형(해당되는 경우)	
3.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 계산이 필요한 하위그룹의 최상위기업 납세자번호(해당되는 경우)	
4. 과세권이 있는 국가	
5. 실효세율	
6. 조정대상조세	
7.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8.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	
9. 당기추가세액가산액	
10. 과세권 국가에 납부하는 추가세액	
11. 국가별 선택	
1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에 따른 배분 후 당기법인세비용 합계	
13.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또는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법인세비용)	
14. 기타 세액공제(법인세비용)	
15. 이연법인세비용	
16.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또는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소득)	
17. 이월조정대상조세	
18. 최초적용연도에 대한 특례	

3.2 실효세율 계산

3.2.1 실효세율

a. 회계상 순이익 (또는 순손실)	b.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또는 결손)	c. 법인세비용	d. 조정대상조세	e. 실효세율
	$[A]$		$[B]$	$[C]=[B]/[A]$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2.1.1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 계산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배분 후의 회계상 순손익 합계 (국가별 소재한 모든 구성기업)	
2. 조정사항	순 조정금액
(a) 순조세비용의 가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1호)	
(b) 배당수익의 차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2호)	
(c) 지분손익의 조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4호)	
(d) 재평가손익의 조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5호)	
(e) 글로벌최저한세조직재편에 대한 특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항에서 제4항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8조제2항 및 제129조)	
(f) 비대칭외환손익의 조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6호)	
(g) 정책적 부인비용의 가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3호)	
(h) 전기 오류수정에 따른 조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14호)	
(i) 회계정책 변경에 따른 조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14호)	
(j) 연금손익의 조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7호)	
(k) 채무면제이익의 조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11호)	
(l) 주식기준보상비용의 조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8호)	
(m) 정상가격 및 동일가격 원칙의 적용에 따른 조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17호)	
(n)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또는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금액의 조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12호 및 제13호)	
(o) 실현주의의 적용에 따른 조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16호)	
(p) 총자산처분이익의 조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10호)	
(q) 그룹내부금융약정비용의 조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9호)	
(r) 구성기업 간 연결회계조정 결과의 반영에 따른 조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15호)	
(s) 보험계약자 관련 손익의 조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18호)	
(t) 그 밖의 기본자본 등에 대한 배당에 따른 조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19호)	
(u) 조직재편시 구성기업의 처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8조)	
(v)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에 대한 특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7조의2제2항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3조)	
(w) 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최종모기업에 대한 특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7조의2제1항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	
(x) 과세분배방법 적용 선택에 따른 조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9조제6항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7조)	
(y) 국제해운소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6조제3항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	
(z) 구성기업 간 자산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9조 제2호 및 제4호)	
3. 해당 국가간 순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	

3.2.1.2 조정대상조세 계산

(a) 조정대상조세 합계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에 따른 배분 후 당기법인세비용 합계	
2. 조정사항	순 조정금액
(a) 회계상 세전이익 계산에서 비용으로 계상된 대상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제1호가목)	
(b) 결손취급특례 선택에 따른 결손취급특례이연법인세 자산의 설정 또는 사용(「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7조제4항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3)	
(c) 이전 사업연도에 대상조세 차감으로 처리되었던 불확실한 세무처리 항목 관련 대상조세의 당기 납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제1호나목)	
(d) 당기법인세비용에서 차감된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또는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제1호다목)	
(e) 적격 소유지분에 의한 적격투과조세혜택(「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4호바목, 사목, 아목 및 자목)	
(f)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대한 당기법인세비용(「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제2호가목)	
(g) 당기법인세비용의 감액으로 처리되지 않은 비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비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또는 그 밖의 세액공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제2호나목 및 다목)	
(h)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및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를 제외한 대상조세 환급 및 세액공제로서 당기법인세비용 감액으로 처리되지 않은 금액(「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제2호라목)	
(i) 불확실한 세무처리 항목 관련 당기법인세비용(「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제2호마목)	
(j)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납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당기법인세비용(「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제2호바목)	
(k) 신고 후 조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 및 제2항)	
(l) 총자산처분이익 조정 선택을 한 경우의 자산처분순손익 관련 대상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10호	
(m)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의 대상조세 감액(「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3조 제3항 및 제4항)	
(n) 배당공제제도 적용 최종모기업의 차감된 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관련 대상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	
(o) 간주분배세액(「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4조제7항)	
(p) 과세분배방법 적용 선택(「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7조)	
(q)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7조제2항, 제3항 및 제7항)	
(r)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에 포함되고 과세대상인 손익과 관련된 대상조세 증감액에 대응되는 것으로서 회계상 자본 또는 그 밖의 포괄손익에 계상된 것(「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제3호나목)	
(s) 이월조정대상조세 발생(「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6조의2 및 제119조 제3항)	
(t) 이월조정대상조세 금액에 의한 조정대상조세 차감(‘0’을 한도로 한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6조의2 및 119조제3항)	
3. 조정대상조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b) 이월조정대상조세

1. 이전 사업연도에서 이월된 잔액	$[A]$
2. 신고대상 사업연도 이월조정대상조세 발생액	$[B]$
3. 신고대상 사업연도 이월조정대상조세 사용액	$[C]$
4.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는 이월조정대상조세 잔액	$[D]=[A]+[B]-[C]$

(c)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 관련 계산 (해당하는 경우)

1. 피지배외국법인소재지국	2. 하위그룹	3.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에 따른 대상조세로서 해당 하위그룹에 배분된 금액 합계
합계		

3.2.2 국가별 이연법인세회계 관련 계산**3.2.2.1 이연법인세 조정****(a) 요약표**

1. 재계산과 조정 전 글로벌최저한세 기준상 이연법인세비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2조제1항제1호)	a. 회계 계정상 기록된 이연법인세비용	$[A]$
	b. 글로벌최저한세 기준으로 계산된 장부가액이 회계상 장부금액과 다른 자산 또는 부채와 관련된 이연법인세비용	$[B]$
	c. 글로벌최저한세 기준으로 계산된 자산 또는 부채의 장부가액에 기초한 이연법인세비용	$[C]$
	d. 재계산과 조정 전 글로벌최저한세 기준으로 계산된 이연법인세비용	$[D]=[A]-[B]+[C]$
2. 총조정금액		$[E]$
3. 이연법인세비용을 최저한세율로 재계산	e. 재계산 전 글로벌최저한세 기준으로 계산된 이연법인세비용	$[F]=[D]+[E]$
	f.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계산된 이연법인세비용과 최저한세율로 재계산된 이연법인세비용 차이	$[G]$
	g. 최저한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계산된 이연법인세비용과 최저한세율로 재계산된 이연법인세비용 차이	$[H]$
4.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I]=[F]+[G]-[H]$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b) 조정내역

1. 이연법인세비용의 조정	순 조정금액
(a)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에서 제외되는 손익 항목 관련 이연법인세비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제1항제1호의2가목)	
(b) 불확실한 세무처리항목에 따른 이연법인세비용 등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 제1항 제1호의2 다목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제4항)	
(c) 미반영 선택 사항 관련 이연법인세비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 제1항 제1호의2 나목4)	
(d)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한 평가 조정 또는 인식 조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 제1항 제1호의2 나목1)	
(e) 법인세 세율 변동에 따른 재계산 관련 이연법인세비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 제1항 1호의2 나목2)	
(f) 이월 세액공제의 발생 또는 사용 관련 이연법인세비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 제1항 제1호의2 나목3)	
(g) 국내원천결손 관련 대체이월결손금 이연법인세자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h) 이전 사업연도의 이연법인세 미반영 선택 사항에 대한 법인세로서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납부한 금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제1항제2호가목)	
(i)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 환입액으로서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납부한 금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제1항제2호나목)	
(j) 회계상 인식 기준 미충족으로 계상되지 않은 신고대상 사업연도의 결손금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제1항 제3호)	
(k) 세율 인하에 따른 이연법인세비용 조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6조제1호)	
(l) 세율 인상에 따른 이연법인세비용 조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6조제2호)	
(m) 조직재편시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으로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0조제4호 및 제5호)	
(n)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의 이연법인세비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3조)	
(o) 배당공제제도 적용 최종모기업의 이연법인세비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	
(p) 구성기업 간 자산거래에 따른 이연법인세 조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9조제3호)	
2. 조정금액합계	[E]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c) 결손금 소급공제

	1. 결손금 소급공제로 인한 간주 이연법인세자산 금액	2. 결손금 소급공제와 관련된 대상조세 환급액
a. 이전 X사업연도		
b. 이전 Y사업연도		
:		
:		
c. 합계		

3.2.2.2 환입금액 계산

(a) 이연법인세부채 환입 적용대상인 연간 이연법인세부채 금액

1. 신고대상 사업연도 개시 전 다섯 번째 사업연도의 환입 적용대상 이연법인세부채 금액	
2. 신고대상 사업연도 개시 전 다섯 번째 사업연도의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으로서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환입되는 금액	
3. 신고대상 사업연도의 환입 적용대상 이연법인세부채 금액	

(b) 총 이연법인세부채 환입 계정

구 분	신고대상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a.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2제1항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의2제3항에 따른 최초적용연도 개시 전에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로서 환원되지 않고 남은 것으로 보는 금액		
b.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2제1항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의2제3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이연법인세부채 금액		
c.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2제1항에 따른 비적격잔액 금액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2.2.3 최초적용연도에 대한 특례

1. 최초적용연도

(a)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9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적용

이 연 법 인 세 부 채

1. 최초적용연도 개시일의 이연법인세부채	2. 최저한세율로 재계산한 이연법인세부채 (해당하는 경우)

이 연 법 인 세 자 산

3. 최초적용연도 개시일의 이연법인세자산	4. 최저한세율로 재계산한 이연법인세자산 (해당시)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제외되는 이연법인세자산	6. 글로벌최저한세 목적상 산입되는 이연법인세자산
[A]	[B]	[C]	[D]= [[A] or [B], 해당시] - [C]

(b)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9조의 적용

1. 처분기업 소재지국	2. 해당 자산거래 관련 납부세액	3. 해당 자산 처분구성기업의 회계상 반영된 순이연법인세자산(또는 부채)	4. 글로벌최저한세 목적상 해당 이전된 자산의 장부가액	5. 글로벌최저한세 목적상 취득구성기업의 해당 자산 관련 순이연법인세자산(또는 부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2.3 국가별 선택 (해당되는 경우)

3.2.3.1 국가별 선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적격분배과세제도 특례 외)

(a) 선택 내역

1. 매년 선택

- | | |
|---|--|
| a. 총자산처분이익 조정 선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10호) | |
| b. 대상조세의 경미한 감액에 대한 경정사업연도 반영 선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 |
| c. 실질기반제외소득 미적용 선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 제13항) | |
| d. 이월조정대상조세 처리 선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9조 제3항) | |

2. 5년 선택

- | | | |
|--|------------|------------|
| e. 지분투자손익포함 선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4호 라목) | 3. 선택 사업연도 | 4. 취소 사업연도 |
| f. 주식기준보상비용 세무조정 선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8호) | | |
| g. 실현주의 적용 선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16호) | | |
| h. 구성기업 간 거래에 대한 연결회계조정 결과의 반영 선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15호) | | |
| i. 국가간 이연법인세비용 미배분 적용 선택 | | |

5. 그 밖의 선택

- | | | |
|--|------------|------------|
| j. 결손취급특례 선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7조제4항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3) | 6. 선택 사업연도 | 7. 취소 사업연도 |
|--|------------|------------|

(b) 국가별 선택과 관련된 필요정보

1. 지분투자손익포함선택에 따른 지분손익 산입	
2. 적격소유지분에 대한 투자가액의 이전 사업연도 잔액	[A]
3. 적격소유지분에 대한 투자가액의 증액	[B]
4. 적격소유지분에 대한 투자가액의 감액	[C]
5. 적격소유지분에 대한 투자가액 잔액	[D]=[A]+[B]-[C]

3.2.3.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선택

1. 간주분배세액 선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	☐
--	--------------------------

(a) 국조법 시행령 제134조 제2항, 제4항부터 제8항까지 및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에 따른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의 운용 방법 등

1. 사업연도	2. 간주분배세액결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4조제2항)	3. 간주분배세액 환입계정				4. 간주분배세액 환입계정 잔액
		직전 3년차 사업연도	직전 전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신고대상 사업연도	
직전 4년차						
직전 3년차		해당없음				
직전 2년차		해당없음	해당없음			
직전연도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신고대상 사업연도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b) 간주분배세액 선택 구성기업의 이탈 등에 대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적용

1. 이전 사업연도 조정대상조세 감액	2. 추가세액 재계산에 따른 추가세액 증가액	3. 처분환입비율
[A]	[B]	[C]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2.4 구성기업(공동기업그룹 기업)별 계산

(a) 전환기 국가별 간소화 신고체계 선택

1. 귀 다국적기업그룹은 전환기 국가별 간소화 신고체계의 적용을 선택하십니까?

여/부

(b) 연결납세그룹에 대한 통합신고

1. 연결납세그룹(납세자번호)	2. 해당 연결납세그룹에 포함된 기업(납세자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2.4.1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

(a) 회계상 순손익에 대한 조정

1.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납세자번호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동법 시행령 제107조 및 제108조에 따른 배분 후 회계상 순손익

3. 조정사항

	가산액	차감액
(a) 순조세비용의 가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1호)		
(b) 배당수익의 차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2호)		
(c) 지분손익의 조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4호)		
(d) 재평가손익의 조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5호)		
(e) 글로벌최저한세조직재편에 대한 특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항에서 제4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9조)		
(f) 비대칭외환손익의 조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6호)		
(g) 정책적 부인비용의 가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3호)		
(h) 전기 오류수정에 따른 조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14호)		
(i) 회계정책 변경에 따른 조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14호)		
(j) 연금손익의 조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7호)		
(k) 채무면제이익의 조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11호)		
(l) 주식기준보상비용의 조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8호)		
(m) 정상가격 및 동일가격 원칙의 적용에 따른 조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17호)		
(n) 적격한급가능세액공제 또는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금액의 조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o) 실현주의의 적용에 따른 조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16호)		
(p) 총자산처분이익의 조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10호)		
(q) 그룹내부금융약정비용의 조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9호)		
(r) 구성기업 간 연결회계조정 결과의 반영에 따른 조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15호)		
(s) 보험계약자 관련 손익의 조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18호)		
(t) 그 밖의 기본자본 등에 대한 배당에 따른 조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19호)		
(u) 조직재편시 구성기업의 처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8조)		
(v)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에 대한 특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7조의2 제2항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3조)		
(w) 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최종모기업에 대한 특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7조의2 제1항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		
(x) 과세분배방법 적용 선택에 따른 조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9조제6항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7조)		
(y) 국제해운소득·결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6조제3항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		
(z) 구성기업 간 자산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9조 제2호 및 제4호)		

4.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

(b) 본점과 고정사업장간 손익의 국가간 배분 및 투과기업 손익의 국가간 배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6조제 4항부터 제7항, 동법 시행령 제107조 및 제108조)

1.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 또는 무국적구성기업 (납세자번호)	2. 조정전 회계상 순손익	3. 조정근거	4. 상대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 (납세자번호)	5. 상대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소재지국(ISO 코드)	6. 해당 구성기업에 대한 손익배분 가산액	7. 해당 구성기업에 대한 손익배분 차감액	8. 조정후 회계상 순손익

(c) 국가간 손익 조정

1.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 그룹 기업 (납세자번호)	2. 조정근거	3. 상대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 그룹 기업 (납세자번호)	4. 상대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 그룹 기업 소재지국 (ISO 코드)	5. 해당 구성기업에 대한 손익배분 가산액	6. 해당 구성기업에 대한 손익배분 차감액

(d)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7조의2에 따른 최종모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감액

1.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 (납세자번호)	2. 감액근거	3. 소유지분보유자 또는 배당수취자 정보	4. 직접보유비율(%)	5. 해당 구성기업의 소득차감액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2.4.2 조정대상조세

(a) 회계상 당기법인세비용 조정

1.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납세자번호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에 따른 배분후 당기법인세비용		
3. 조정사항	가산액	차감액
(a) 회계상 세전이익 계산에서 비용으로 계상한 대상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 제1호 가목)		
(b) 이전 사업연도에 대상조세 차감으로 처리되었던 불확실한 세무처리 항목 관련 대상조세의 당기 납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 제1호 나목)		
(c) 당기법인세비용에서 차감된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또는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 제1호 다목)		
(d) 적격 소유지분에 의한 적격투과조세혜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4호 바목, 사목, 아목 및 자목)		
(e)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대한 당기법인세비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 제2호 가목)		
(f) 당기법인세비용의 감액으로 처리되지 않은 비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비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또는 그 밖의 세액공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제2호나목 및 다목)		
(g)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및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를 제외한 대상조세 환급 및 세액공제로서 당기법인세비용 감액으로 처리되지 않은 금액(「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제2호라목)		
(h) 불확실한 세무처리 항목 관련 당기법인세비용(「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 제2호 마목)		
(i)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납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당기법인세비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제2호바목)		
(j) 신고 후 조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및 제2항)		
(k) 총자산처분이익 조정 선택을 한 경우에 대한 자산처분순손익 관련 대상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10호 가목)		
(l)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의 대상조세 감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3조 제5항)		
(m) 배당공제제도 적용 최종모기업의 차감된 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관련 대상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		
(n) 간주분배세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4조 제7항)		
(o) 과세분배방법 적용 선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7조)		
(p)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q)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에 포함되고 과세 대상인 손익과 관련된 대상조세 증감액에 대응되는 것으로서 회계상 자본 또는 그 밖의 포괄손익에 계상된 것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 제3호 나목)		
4. 조정대상조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b) 대상조세 국가간 배분

1. 구성기업, 공동기업그룹 기업(또는 무국적구성기업) 납세자번호	2. 구성기업(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배분전 대상조세	3. 조정 근거	4. 상대 구성기업(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 납세자번호	5. 상대 구성기업(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 소재지국(ISO 코드)	6. 해당 구성기업에 대한 손익배분 가산액	7. 해당 구성기업에 대한 손익배분 차감액	8. 조정 후 구성기업(또는 공동기업그룹의 기업)의 대상조세

(c) 이연법인세

1.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납세자번호		
2. 이연법인세비용 금액(글로벌최저한세 기준)		
3. 이연법인세비용의 조정	가산액	차감액
(a)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에서 제외되는 손익 항목 관련 이연법인세비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 제1항제1호의2가목)		
(b) 불확실한 세무처리 항목 등 관련 이연법인세비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 제1항 1호의2 다목)		
(c) 이연법인세부채 미반영 선택 사항 관련 이연법인세비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 제1항 1호의2 나목4))		
(d)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한 평가 조정 또는 인식 조정 관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 제1항 1호의2 나목1))		
(e) 법인세 세율 변동에 따른 재계산 관련 이연법인세비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 제1항 1호의2 나목2))		
(f) 이월세액공제의 발생 또는 사용 관련 이연법인세비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 제1항 1호의2 나목3))		
(g) 국내원천결손 관련 대체이월결손금 이연법인세자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h) 이전 사업연도의 이연법인세 미반영 선택 사항에 대한 법인세로서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납부한 금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제1항제2호가목)		
(i)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 환입액으로서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납부한 금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제1항제2호나목)		
(j) 회계상 인식 기준 미충족으로 계상되지 않은 신고대상 사업연도의 결손금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제1항제3호)		
(k) 세율 인하에 따른 이연법인세비용 조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6조 제1호)		
(l) 세율 인상에 따른 이연법인세비용 조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6조 제2호)		
(m) 조직재편시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으로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0조제4호 및 제5호)		
(n)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의 이연법인세비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3조)		
(o) 배당공제제도 적용 최종모기업의 이연법인세비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2조)		
(p) 구성기업 간 자산거래에 따른 이연법인세 조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9조 제3호)		
4. 최저한세를 보다 낮은 세율로 계상된 이연법인세비용과 최저한세율로 재계산된 이연법인세비용의 차이 금액		
5. 최저한세를 보다 높은 세율로 계상된 이연법인세비용과 최저한세율로 재계산된 이연법인세비용의 차이 금액		
6.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3.2.4.3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별 선택

1. 선택적용 대상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납세자번호			
2. 매년 선택	a. 중요성이 낮은 구성기업에 대한 간소화 계산 선택 (간소화 계산 적용)		
	b. 채무면제이익의 제외 선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11호)		
	c. 이연법인세비용 미반영 선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 제1항 제1호의2 나목4)		
3. 5년 선택		4. 선택 사업연도	5. 취소 사업연도
	d. 제외기업의 구성기업 간주 선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2조제4항)		
	e. 분산투자지분에 대한 배당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포함 선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2호다목)		
	f. 분산투자지분 외의 소유지분 관련 환위험 회피수단 발생 외환손익의 제외 지분손익 포함 선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4호나목)		
	g. 투자기업의 투시과세기업 취급 선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9조제5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6조)		
	h. 투자기업에 대한 과세분배방법 적용 선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9조제6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7조)		
	i. 이연법인세비용 미반영 선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 제1항 제1호의2 나목))		
6. 기타선택	j. 결손취급특례 적용 선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7조제4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3)		
k. 공정가액조정 선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6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9조제4항)			
1. 선택적용 대상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 납세자번호	2. 공정가액조정 적용 사업연도	3. (i)공정가액조정 적용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포함(「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9조제4항제3호가목) 또는 (ii)공정가액조정 적용 사업연도 및 이후 4개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포함 선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9조제4항제3호나목)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2.4.4 국제해운소득·결손 제외

(a) 국제해운소득·결손 제외

1. 본 소재지국 구성기업(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납세자번호		
국제해운소득·결손	2. 유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선택)	
	3. 수익	$[A]$
	4. 비용	$[B]$
	5. 국제해운소득·결손	$[C]=[A]-[B]$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결손	6. 유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선택)	
	7. 수익	$[D]$
	8. 비용	$[E]$
	9.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결손	$[F]=[D]-[E]$
실질기반제외소득에 대한 효과	10. 국제해운소득·결손 및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결손에 귀속되는 인건비	
	11. 국제해운소득·결손 및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결손 창출에 사용된 유형자산 장부가액	
대상조세	12. 국제해운소득·결손 및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결손에 귀속되는 대상조세	

(b)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결손에 대한 국가별 한도

1. 모든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국제해운소득·결손 합계	$[A]$
2. 50% 한도	$50\% \times [A]$
3. 모든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결손 합계	$[B]$
4. B가 A의 50%를 넘는 경우의 한도 초과액	$[B]-50\% \times [A]$

3.2.4.5 과세분배방법 적용 선택 관련 정보 (해당시)

과세분배방법 적용 선택

1. 선택대상인 주주구성기업 (또는 주주인 공동기업그룹 기업) (납세자번호)	2. 선택대상 투자기업 (납세자번호)	3. 투자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으로서 주주구성기업 (또는 주주인 공동기업그룹 기업)이 수취하거나 수취한 것으로 간주되는 분배금	4. 투자기업이 납부하는 대상조세로서 주주구성기업 (또는 주주인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분배금 등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금액	5. 투자기업의 미분배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잔액 중 해당 주주구성기업(또는 주주인 공동기업그룹 기업)에 귀속되는 금액

3.2.4.6. 그 밖의 회계기준

1.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회계기준 외의 회계기준에 따라 계산된 회계상 순손익을 사용하는 구성기업(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납세자번호	2. 적용하는 인정회계기준 또는 공인회계기준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3 추가세액 계산

3.3.1 추가세액

a. 추가세액 비율	b. 실질기반제외소득	c. 초과이익	d. 당기추가세액가산액	e. 적격소재국추가세액	f. 추가세액
$[A]=15\% - \text{실효세율}$	$[B]$	$[C]= \text{순글로벌 최저세율} \times \text{소득} - [B]$	$[D]$	$[E]$	$= [A] \times [C] + [D] - [E]$

3.3.2 실질기반제외소득의 계산 (해당시)

3.3.2.1 실질기반제외소득 합계

인건비 제외금액		유형자산 제외금액		합계
1. 적격종업원에 관한 해당기업 소재지국의 적격인건비	2.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반영 비율	3. 적격유형자산에 관한 해당기업 소재지국의 장부가액	4.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반영 비율	5. 실질기반제외소득
$[A]$	$[B]$	$[C]$	$[D]$	$[E]=[A] \times [B] + [C] \times [D]$

3.3.2.2 실질기반제외소득 계산 목적상 적격인건비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의 고정사업장 배분

1. 적격인건비	2.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	3. 고정사업장 소재지국	4. 고정사업장에 배분된 적격인건비	5. 고정사업장에 배분된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

3.3.2.3 실질기반제외소득 계산 목적상 투과기업의 적격인건비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의 배분

1. 적격인건비	2.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	3. 주주구성기업(또는 주주인 공동기업그룹 기업) 소재지국	4. 주주구성기업(또는 주주인 공동기업그룹 기업)에 배분된 적격인건비 (또는 실질기반제외소득 계산에서 제외되는 금액)	5. 주주구성기업(또는 주주인 공동기업그룹 기업)에 배분된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 (또는 실질기반제외소득 계산에서 제외되는 금액)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3.3 당기추가세액가산액

3.3.3.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9조제2항 외의 당기추가세액가산액

1. 관련 근거	2. 관련 사업연도	3. 당초신고 또는 재계산	4. 순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	5. 조정대상조세	6. 실효세율	7. 초과 이익	8. 추가세액 비율(%)	9. 추가 세액	10. 당기추가세액가산액
	이전 사업연도	a. 당초신고							
		b. 재계산							

3.3.3.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9조제2항에 따른 당기추가세액가산액

1. 소재지국 조정대상조세 (음수)	$[A]$
2. 소재지국 순글로벌최저한세결손	$[B]$
3. 조정대상조세 예상액	$[C]=[B] \times 15\%$
4. 당기추가세액가산액	$[D]=[C]-[A]$

3.3.4 적격소재국추가세액

1. 회계기준	
2. 적격소재국추가세액	
3.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 최저한세율 (15%보다 높은 경우)	
4. 실효세율 계산을 위한 소득 및 세금 합산 기준 (글로벌최저한세 규칙과 다른 경우)	
5. 사용 통화(연결재무제표 작성 통화와 다른 경우)	
6. 연결재무제표 작성 통화 또는 현지통화 사용여부 5년선택	통화 선택 사업연도 취소 사업연도
7. 실질기반제외소득 적용가능 여부	여/부
8. 최소적용제외 특례 적용가능 여부	여/부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4 추가세액 배분과 귀속

3.4.1 해당 국가에 대한 소득납입규칙의 적용

1. 추가세액 배분 그룹기업	a. 저율과세구성기업 또는 저율과세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납세자번호		
	b. 저율과세구성기업 또는 저율과세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A]$	
	c. 저율과세구성기업 또는 저율과세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추가세액	$[C] = [T] \times [A]/[A+B \text{ 등}]$	
2. 적격소득납입규칙을 적용해야 하는 모기업	a. 모기업 (납세자번호)	$[모기업 1]$	
	b. 모기업 소재지국	소재지국 B	
	c. 모기업 외의 다른 소유지분 보유자에게 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	$[D]$	
	d. 모기업의 소득납입비율	$[F] = ([A] - [D]) / [A]$	
3. 소득납입규칙 추가세액	a. 모기업의 추가세액배분액	$[G] = [C] \times [F]$	
	b. 소득납입규칙 추가세액배분액 차감한 금액	$[H]$	
	c. 모기업이 납부할 추가세액 합계	$[I] = [G] - [H]$	

3.4.2 해당 소재지국에 대한 소득납입보완규칙 추가세액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저율과세구성기업 또는 저율과세 공동기업그룹 기업 의 납세자번호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3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의 저율과세구성기업(또는 저율과세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 자회사) 추가세액에서 소득납입규칙 추가세액 납부액을 차감	
3. 해당 소재지국에 대한 소득납입보완규칙 추가세액 합계	

3.4.3 소득납입보완규칙 추가세액 배분

1. 소득납입보완규칙 시행국가	2. 소득납입보완규칙추가 세액배분액 전기이월액	3. 종업원 수	4. 유형자산 순장부가액	5. 소득납입보완규칙 배분비율	6. 신고대상사업연도 소득납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액	7. 소득납입보완규칙 시행국가의 구성기업에서 발생한 추가 현금조세비용	8. 소득납입보완규칙추가세액 차기이월액
합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작성 방법

제1장. 다국적기업그룹 정보

1.1 신고구성기업 정보

- 1.1.1 및 1.1.2 신고구성기업은 이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입니다. 여러 신고구성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1.1.2 ~1.1.5 신고구성기업이 최종모기업인 경우 작성하지 않습니다.
- 1.1.3 신고구성기업은 그 소재지국에서 대상조세 목적으로 사용되는 납세자번호를 작성하며, 납세자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나 법인등록번호와 같이 납세자번호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코드(번호)를 작성합니다.
- 1.1.4 다음 중 해당하는 것을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 지정신고기업, • 지정국내기업, • 구성기업
- 1.1.5 신고구성기업은 그 소재지국의 ISO-3166-1 Alpha 2에 따른 두 글자의 알파벳 국가코드를 작성합니다
- 1.1.6 신고구성기업은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의무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3조제3항에 상당하는 규정에 따라 해당 의무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정보교환에 의하여 이행된 것으로 간주하는 국가들을 식별하여 ISO-3166-1 Alpha 2 표준에 따른 두 글자의 알파벳 국가 코드를 작성합니다.

1.2 다국적기업그룹 일반정보

1.2.1 다국적기업그룹과 신고대상 사업연도

- 1.2.1.1 신고구성기업은 최종모기업이 연결재무제표 작성에서 사용하는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 1.2.1.2 신고구성기업은 신고대상 사업연도의 개시일을 작성합니다.
- 1.2.1.3 신고구성기업은 신고대상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작성합니다.
- 1.2.1.4 제출하는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가 수정신고서인 경우에는 '여'로 작성하며, 수정신고서가 아닌 경우에는 '부'로 작성합니다.

1.2.2 다국적기업그룹 일반 회계정보

- 1.2.2.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제4항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연결재무제표 유형 중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유형에 해당하는 호를 작성합니다. 같은 항 제4호의 연결재무제표 유형을 작성하는 경우 신고구성기업은 최종모기업의 식별을 위해 성실하게 합당한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 1.2.2.2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사용되는 재무회계기준을 작성합니다. 최종모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신고구성기업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제4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무제표에 사용되는 회계기준을 작성합니다.
- 1.2.2.3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사용되는 통화의 ISO 코드를 작성합니다. 최종모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신고구성기업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제4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무제표에 사용되는 통화의 ISO 코드를 작성합니다.

1.3 기업구조

1.3.1 최종모기업

- 1.3.1 신고대상 사업연도의 종료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인 경우에 신고구성기업은 각각의 최종모기업에 대하여 해당 란을 작성합니다.
- 1.3.1.1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의 ISO-3166-1 Alpha 2 표준에 따른 두 글자의 알파벳 국가 코드를 작성합니다.
- 1.3.1.2 신고구성기업은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이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적격소득산입규칙,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 또는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를 시행중인지 여부를 작성합니다. 다음 중 해당하는 번호를 작성하며, 둘 이상의 번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번호 모두를 작성합니다.
1.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저율과세구성기업에만 적용되는 적격소득산입규칙
2. 다른 국가와 모기업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저율과세구성기업 모두에 적용되는 적격소득산입규칙
3.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
4.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
- 1.3.1.1 및 1.3.1.2 신고구성기업은 최종모기업이 제외기업인 경우에는 이 정보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 1.3.1.3 신고구성기업은 최종모기업의 상호를 작성합니다.
- 1.3.1.4 신고구성기업은 최종모기업의 소재지국에서 대상조세 목적으로 사용되는 납세자번호를 작성합니다. 납세자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나 법인등록번호와 같이 납세자번호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코드(번호)를 작성합니다.
- 1.3.1.5 신고구성기업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는 해당 국가에서 최종모기업에 부여한 납세자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작성합니다.

작성 방법

- 1.3.1.6 다음의 기업 유형 중 해당하는 유형을 작성하며, 둘 이상의 기업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하는 유형 모두를 작성합니다.
 • 구성기업, • 투과기업-투과세기업, • 투과기업-역혼성기업, • 혼성기업, • 본점, • 투자기업, • 보험투자기업, • 제외기업
- 1.3.1.7 최종모기업이 제외기업인 경우에 신고구성기업은 다음 중 해당되는 유형을 작성합니다.
 • 정부기업, • 국제기구, • 비영리기업, • 연금펀드, • 최종모기업인 투자펀드, • 최종모기업인 부동산투자기업
- 1.3.1.8 신고구성기업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4항에 따라 최종모기업이 적격소득산업규칙을 적용하도록 하는 국가가 있는 경우 해당 국가를 작성 합니다.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의 ISO-3166-1 Alpha 2 표준에 따른 두 글자의 알파벳 국가 코드를 작성합니다.

1.3.2 그룹 기업(최종모기업 제외) 및 공동기업그룹 기업

1.3.2.1 구성기업 및 공동기업그룹 기업

- 1.3.2.1 신고대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공동기업 및 하나 이상의 공동기업 자회사로 이루어진 그룹을 '공동기업그룹'이라하고, 공동기업그룹에 속하는 기업을 '공동기업그룹 기업'이라 합니다.(이하 이 서식에서 같습니다.)
- 1.3.2.1.1 직전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제출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1.3.2.1.2부터 1.3.2.1.16까지 작성된 정보가 해당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대해 여전히 유효하고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부'라고 작성합니다.
 • '부'인 경우 신고구성기업은 1.3.2.1.2부터 1.3.2.1.16까지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 '여'인 경우 신고구성기업은 모든 구성기업과 모든 공동기업그룹 기업에 대해 1.3.2.1.2부터 1.3.2.1.16까지를 모두 작성합니다.
- 1.3.2.1.2 신고구성기업은 구성기업(최종모기업 제외),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 자회사 소재지국의 ISO 3166-1 Alpha 2 표준에 따른 두 글자의 알파벳 국가 코드를 작성합니다.
 최종모기업 외의 구성기업,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 자회사가 최종모기업의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최종모기업의 소재지국에 대해서도 작성합니다. 신고구성기업은 무국적 구성기업에 대하여는 "무국적"이라고 작성합니다.
- 1.3.2.1.3 다음 중 해당하는 번호를 작성하며, 둘 이상의 번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하는 번호를 모두 작성합니다.
 1.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저율과세구성기업에만 적용되는 적격소득산업규칙
 2. 다른 국가와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저율과세구성기업 모두에 적용되는 적격소득산업규칙
 3. 적격소득산업보완규칙
 4.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
 해당 규칙이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모든 구성기업 및 공동기업그룹 기업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 및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수와 관계없이 이 항목을 한 번만 작성합니다.
- 1.3.2.1.4 신고구성기업은 구성기업,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 자회사의 상호를 작성합니다.
- 1.3.2.1.5 신고구성기업은 구성기업,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 자회사의 소재지국에서 대상조세 목적으로 사용되는 납세자번호를 작성합니다. 납세자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나 법인등록번호와 같이 납세자번호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코드(번호)를 작성합니다. 신고구성기업은 무국적 구성기업의 식별을 위하여 그 기업이 설립된 국가에서 대상조세 목적으로 사용되는 납세자번호 또는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번호를 작성합니다.
- 1.3.2.1.6 신고구성기업은 그 소재지국에서 구성기업, 공동기업 및 공동기업 자회사에게 부여한 납세자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작성합니다.
- 1.3.2.1.7 다음의 기업 유형 중 해당하는 유형을 작성하며, 둘 이상의 기업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하는 유형 모두를 작성합니다.
 • 구성기업, • 투과기업-투과세기업, • 투과기업-역혼성기업, • 혼성기업, • 고정사업장, • 본점, • 소수지분모기업, • 소수지분자회사, • (독립형)소수지분구성기업, • 투자기업 • 보험투자기업, • 유동화회사, • 공동기업, • 공동기업 자회사, • 중요성이 낮은 기업
 어느 소수지분하위그룹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소수지분구성기업을 '(독립형)소수지분구성기업'이라합니다.(이하 이 서식에서 같습니다.) 신고구성기업은 1.3.2.1.7 란에서 작성되는 구성기업,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 자회사의 기업 유형이 그 주주구성기업 간에 서로 다른 경우 표 1.3.2.1을 각 주주구성기업별로 작성합니다(예를 들어, 어떤 주주구성기업은 투과기업을 투과세기업으로 취급하고 다른 주주구성기업은 해당 투과기업을 역혼성기업으로 취급하는 경우에 신고구성기업은 해당 투과기업에 대하여 표 1.3.2.1을 두 번, 즉 한번은 해당 투과기업을 투과세기업으로 취급하는 주주의 관점에서 다른 한번은 해당 투과기업을 역혼성기업으로 취급하는 주주의 관점에서 작성합니다).
- 1.3.2.1.8 신고구성기업은 구성기업,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보유하거나 제외기업 또는 그룹 외 기업을 통해 간접으로 보유하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중에 해당하는 기업의 유형 하나를 작성합니다.
 • 최종모기업, • 구성기업, • 공동기업, • 공동기업 자회사, • 제외기업(전체) 및 그룹 외 기업(전체)
 제외기업 또는 그룹 외 기업은 각각 일괄하여 작성합니다. 그룹 외 기업은 그룹 기업 및 공동기업그룹 기업에 속하지 않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 1.3.2.1.9 신고구성기업은 구성기업,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 자회사의 소유지분을 보유하는 구성기업,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 자회사의 납세자번호[납세자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나 법인등록번호와 같이 납세자번호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코드(번호)]를 작성합니다. 최종모기업이 아닌 제외기업과 그룹 외 기업은 각각 일괄하여 작성되므로 납세자번호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작성 방법

1.3.2.1.10	신고구성기업은 1.3.2.1.8 란에서 작성된 구성기업, 공동기업, 공동기업 자회사, 제외기업 및 그룹 외 기업이 각각 직접 보유하는 구성기업,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 자회사 소유지분의 백분율을 작성합니다. 신고구성기업은 그룹 외 기업들이 직접 보유하는 소유지분의 합계를 작성하여야 하고 여러 제외기업이 구성기업,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 자회사의 소유지분을 직접 보유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지분의 합계를 작성합니다. 그룹기업,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 자회사가 하나 이상의 제외기업 또는 그룹 외 기업을 통해 구성기업,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 자회사의 소유지분을 간접으로 보유하는 경우 신고구성기업은 해당 그룹기업,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 자회사가 직접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이들이 해당 제외기업 또는 그룹 외 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보유하는 소유지분을 추가하여 소유지분 비율을 작성합니다. 이 경우 중복 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제외기업 또는 그룹 외 기업이 직접 보유하는 구성기업,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 자회사의 소유지분 중 그룹기업 등이 간접으로 보유하는 소유지분으로 산입된 부분은 해당 제외기업 또는 그룹 외 기업이 직접 보유하는 소유지분의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구성기업이 고정사업장인 경우에는 1.3.2.1.8 에서 본점으로 작성하고 1.3.2.1.10에서 100%로 작성합니다.
1.3.2.1.11 ~ 1.3.2.1.13	이 란은 부분소유모기업 또는 중간모기업인 구성기업에 대하여 그 소재지국에서 적격소득산업규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공동기업그룹 기업 또는 다른 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전혀 보유하지 않는 기업은 모기업이 될 수 없으므로 이 란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1.3.2.1.11	모기업의 유형을 작성하되, 다음의 유형 중 해당하는 유형을 작성합니다. 부분소유모기업이란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아닌 자가 그 이익에 대한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20% 넘게 보유하고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의 다른 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모기업으로 정의됩니다. • 부분소유모기업, • 중간모기업,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4항에 따라 적격소득산업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는 모기업
1.3.2.1.12	신고구성기업은 다른 중간모기업의 소재지국에서 대상조세 목적으로 사용되는 납세자번호를 작성합니다. 납세자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와 같이 납세자 번호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코드(번호)를 작성합니다.
1.3.2.1.13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적격소득산업규칙을 적용해야 하는 다른 부분소유모기업이 해당 부분소유모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전부 보유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2조제6항에 따라 해당 부분소유모기업에 대해서 적격소득산업규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2조제6항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 해당 다른 부분소유모기업의 소재지국에서 대상조세 목적으로 사용되는 납세자번호를 작성합니다. 납세자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와 같이 납세자 번호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코드(번호)를 작성합니다.
1.3.2.1.14 ~ 1.3.2.1.16	신고구성기업은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 대하여 소득산업보완규칙에 따른 과세권을 가지는 국가가 없거나 해당 소재지국에 대하여 소득산업보완규칙 적용면제가 적용되는 경우 신고구성기업은 이 란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1.3.2.1.14	답변이 "여"인 경우 신고구성기업은 1.3.2.1.15 및 1.3.2.1.16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1.3.2.1.15	신고구성기업은 적격소득산업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는 모기업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의 합계가 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전체 소유지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로 작성합니다.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저율과세소득에 대하여 적격소득산업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는 모기업이 없는 경우 소유지분의 합계는 0이 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2조제4항 각 호 또는 제5항에 따른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중간모기업 또는 부분소유모기업을 통해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간접으로 보유하는 모기업이 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대해 적격소득산업규칙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 소유지분의 합계를 계산함에 있어 각 관련 소유지분은 단 한번만 산입되어야 합니다. 신고구성기업은 적격소득산업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는 모기업들의 해당 저율과세 공동기업 또는 저율과세 공동기업 자회사에 대한 추가세액 배분액의 합계가 최종모기업의 해당 저율과세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 자회사에 대한 추가세액 배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로 작성합니다.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 자회사의 저율과세소득에 대해 적격소득산업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는 모기업이 없는 경우 추가세액 배분액의 합계는 0이 됩니다. 모기업이 저율과세 공동기업 또는 저율과세 공동기업 자회사의 소유지분을 적격소득산업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는 다른 모기업을 통해 간접으로 보유하는 경우 추가세액 배분액의 합계를 계산함에 있어 각 관련 추가세액 배분액은 단 한 번만 산입되어야 합니다.
1.3.2.1.16	신고구성기업은, 최종모기업이 보유하는 해당 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해당 구성기업에 대하여 적격소득산업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는 모기업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모두 보유하는지 또는 해당 공동기업그룹 기업에 대하여 적격소득산업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는 모기업들의 추가세액 배분액의 합계가 공동기업그룹 추가세액(저율과세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 자회사에 대한 최종모기업의 추가세액 배분액을 말합니다.)의 잔액을 0으로 감소시키는지 여부를 작성합니다.
1.3.2.1.15 및 1.3.2.1.16	최종모기업이 해당 저율과세 구성기업(최종모기업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에 대하여 적격소득산업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 란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 외의 경우로서 적격소득산업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는 모기업이 해당 저율과세 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100% 보유하지 않은 때에만 이 란을 작성합니다.

작성 방법

1.3.2.2 제외기업

1.3.2.2	이 표는 신고대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으로 제외기업별로 작성합니다. 제외기업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2조제3항에 따른 기업입니다.
1.3.2.2.1	직전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제출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1.3.2.1.3, 1.3.2.2.2 및 1.3.2.2.3에 작성된 정보가 해당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유효하고 변동이 없는 경우 "부"로 작성합니다. 답변이 "부"인 경우 신고구성기업은 1.3.2.2.2 및 1.3.2.2.3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여"인 경우 신고구성기업은 그러한 제외기업에 대해 1.3.2.2.2 및 1.3.2.2.3을 작성합니다.
1.3.2.2.2	신고구성기업은 제외기업의 상호를 작성합니다.
1.3.2.2.3	신고구성기업은 제외기업에 대하여 다음의 유형 중 해당하는 유형을 하나만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 정부기업 • 국제기구 • 비영리기구 • 연금펀드 • 최종모기업인 투자펀드 • 최종모기업인 부동산투자기구,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7호가목에 따라 제외기업이 소유한 기업,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라 제외기업이 소유한 기업

1.3.3 신고대상 사업연도 중 기업구조 변동

1.3.3	신고대상 사업연도 중 구성기업(또는 다국적기업그룹의 다른 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에게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이 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신고구성기업은 그러한 변동이 신고대상 사업연도의 어느 시점에 실효세를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예: 소득 또는 세금의 국가 간 배분에 관여되는 구성기업에게 변동이 있는 경우) 또는 추가세액의 계산 및 배분에 영향을 미친 경우(예: 구성기업에 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는 범위가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이 란을 작성합니다.
1.3.3.a	신고대상 사업연도 중 발생한 변동이 신고대상 사업연도의 실효세를 계산, 추가세액의 계산 또는 배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표 1.3.3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로 작성합니다.(예: 변동 이전에 최종모기업이 그 소유지분을 전부 직접 보유하고 소득 또는 세금의 국가 간 배분에 관여되지 않았던 구성기업이, 최종모기업이 그 소유지분을 전부 직접 보유하는 다른 구성기업에 이전된 경우)
1.3.3.1	신고구성기업은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지분구조나 기업 유형의 변동이 발생한 모든 구성기업(또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다른 기업, 예: 제외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을 작성합니다.
1.3.3.2	신고구성기업은 구성기업(또는 다국적기업그룹의 다른 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소재지국에서 대상조세 목적으로 사용되는 납세자번호를 작성합니다. 납세자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나 법인등록번호와 같이 납세자번호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코드(번호)를 작성합니다.
1.3.3.3	신고구성기업은 구성기업(또는 다국적기업그룹의 다른 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소유지분 구조의 변동 또는 기업 유형의 변동 효력이 발생한 날(dd-mm-yyyy 형식 사용)을 작성합니다. 구성기업(또는 다국적기업그룹의 다른 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에 신고대상 사업연도 동안 둘 이상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각 변동사항별로 별도의 란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1.3.3.4	신고구성기업은 구성기업(또는 다국적기업그룹의 다른 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목적상 기업 유형에 변동이 있었던 날의 직전일 기준으로 기업 유형을 작성하며 다음의 기업 유형 중 해당되는 기업 유형을 모두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 구성기업, • 투과기업 - 투시과세기업, • 투과기업 - 역혼성기업, • 혼성기업, • 고정사업장, • 본점, • 소수지분모기업, • 소수지분자회사, • (독립형)소수지분구성기업, • 투자기업, • 보험투자기업, • 유동화회사, • 공동기업, • 공동기업 자회사, • 중요성이 낮은 기업, • 부분소유모기업, • 중간모기업, • 최종모기업,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4항에 따라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는 모기업, • 제외기업, • 그룹 외 기업
1.3.3.5	신고구성기업은 거래에 따른 변동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구성기업(또는 다국적기업그룹의 다른 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목적상 기업 유형을 작성하며 다음의 기업 유형 중 해당되는 기업 유형을 모두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 구성기업, • 투과기업 - 투시과세기업, • 투과기업 - 역혼성기업, • 혼성기업, • 고정사업장, • 본점, • 소수지분모기업, • 소수지분자회사, • (독립형)소수지분구성기업, • 투자기업, • 보험투자기업, • 유동화회사, • 공동기업, • 공동기업자회사, • 중요성이 낮은 기업, • 부분소유모기업, • 중간모기업, • 최종모기업,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4항에 따라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는 모기업, • 제외기업, • 그룹 외 기업
1.3.3.5~ 1.3.3.8	신고대상 사업연도 중에 구성 기업(또는 다국적기업그룹의 다른 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을 청산한 경우 신고구성기업은 1.3.3.4에 거래에 따른 변동이 발생한 날의 직전일 기준으로 글로벌최저한세 목적상 기업 유형을 작성하고, 1.3.3.5에는 '그룹 외 기업'으로 작성합니다. 신고구성기업은 1.3.3.6에 거래에 따른 변동이 발생한 날의 직전일 기준으로 구성기업(또는 다국적기업그룹의 다른 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하는 기업을 기재하고, 1.3.3.7에는 이러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해당 구성기업(또는 다국적기업그룹의 다른 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소유지분을 작성합니다. 그러나 신고구성기업은 1.3.3.8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작성 방법

1.3.3.6~8	신고구성기업은 변동이 발생한 날의 직전일 기준으로 제외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해서는 1.3.3.6 및 1.3.3.7을 작성하지 않으며 변동 이후에 제외기업이 된 기업에 대해서는 1.3.3.6 및 1.3.3.8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1.3.3.6	구성기업(또는 다국적기업그룹의 다른 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이 고정사업장인 경우에는 1.3.3.6에 그 본점을 작성하고, 1.3.3.7 또는 1.3.3.8에 100%로 작성합니다. 신고구성기업은 거래가 발생한 날의 직전일 또는 거래에 따른 변동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구성기업(또는 다국적기업그룹의 다른 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보유하는 모든 구성기업, 그룹기업, 제외기업, 공동기업그룹 기업 또는 그룹 외 기업을 작성합니다. 최종모기업이 아닌 제외기업과 그룹 외 기업은 일괄하여 작성합니다[예: "제외기업(전체)" 및 "그룹 외 기업(전체)"]. 신고구성기업은 거래가 발생한 날의 직전일 또는 거래에 따른 변동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구성기업(또는 다국적기업그룹의 다른 기업)의 소유지분을 제외기업 또는 그룹 외 기업을 통해 간접으로 보유하는 모든 그룹기업에 대해서도 작성합니다.
1.3.3.7	신고구성기업은 1.3.3.6에 보고된 구성기업, 제외기업, 공동기업그룹 기업, 그룹 외 기업이, 기업구조 변동이 발생한 날의 직전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던 해당 구성기업(또는 다국적기업그룹의 다른 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소유지분(백분율)을 1.3.2.1.10에 대한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1.3.3.8	신고구성기업은 1.3.3.6에 보고된 구성기업, 제외기업, 공동기업그룹 기업, 그룹 외 기업이, 거래에 따른 기업구조 변동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보유하는 해당 구성기업(또는 다국적기업그룹의 다른 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소유지분(백분율)을 1.3.2.1.10에 대한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1.4 글로벌최저한세 정보 요약

1.4	신고구성기업은 1.4.1에 기재된 국가에 대하여 어떤 국가도 과세권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즉, 1.4.4 란에 아무 기재가 없는 경우)에 1.4.2~1.4.9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1.4.1	신고구성기업은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하거나 공동기업그룹 기업이 소재하는 각 국가 및 별도의 실효세율 또는 추가세액 계산이 적용되는 각 하위그룹에 대하여 요약표를 작성합니다. 신고구성기업은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하거나 공동기업그룹 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의 ISO 3166-1 Alpha 2 표준에 따른 두 글자의 알파벳 코드를 작성합니다.
1.4.2	하위그룹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구성기업은 2.1.2 및/또는 3.1.2에 보고한 대로 각 하위 그룹을 작성합니다.
1.4.3	신고구성기업은 1.4.2에 기재한 각 하위그룹의 지분구조 상 최상위에 있는 기업의 납세자번호를 작성합니다.
1.4.4	1.4.1에 기재된 국가 및 1.4.3에 기재된 하위그룹(해당되는 경우)에 대해 과세권을 가지는 국가의 ISO 3166-1 Alpha 2 표준에 따른 두 글자 알파벳 국가 코드를 작성합니다. 과세권을 가지는 국가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4항에 따라 다른 나라에 소재하는 모기업에게 자국의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하도록 하는 국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떤 국가에 대해 계산된 국가별 추가세액에 대하여 글로벌최저한세규칙에 따른 과세 우선순위 원칙에 따라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이 그 소재지국에서 추가세액 납부 의무를 지게 되는 경우 해당 국가별 추가세액이 산출된 국가에 대해 그 다른 국가가 과세권을 가집니다. 특히,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 적용면제 국가 또는 국내 기업에 대하여도 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하는 국가는 그 스스로가 과세권을 가집니다. 또한 여러 국가가 같은 한 국가에 대하여 과세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종모기업과 부분소유모기업 모두가 제3의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에 대해 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최종모기업 소재지국과 부분소유모기업 소재지국을 모두 1.4.4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소득산입보완규칙을 시행하는 국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2조제8항에 따른 차감 후에도 추가세액 배분액이 0으로 감소되지 않는 국가에 대하여 과세권을 가집니다.
1.4.5	신고구성기업은 1.4.1에 기재된 소재지국 또는 1.4.3에 기재된 하위그룹(해당되는 경우)이 2.2.1에 작성된 적용면제 또는 2.2.2에 작성된 최소적용제외의 적용으로 추가세액이 0으로 감소되었는지 여부를 작성합니다. 적용면제 목적으로 지칭 2.2.1.1.1에 따라 선택한 유형을 작성합니다.
1.4.6	1.4.1에 기재된 국가 또는 1.4.3에 기재된 하위그룹(해당되는 경우)에 대해 3.2.1.e에 작성된 실효세율이 속하는 범위를 선택합니다. 범위에 대한 선택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구성기업은 다국적기업그룹(또는 하위그룹)이 해당 국가에서 글로벌최저한세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 란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국가(또는 하위그룹)에 대하여 '제3장'이 작성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신고구성기업은 이 란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a) 2.5% 미만 (b) 2.5% 이상 5% 미만 (c) 5% 이상 7.5% 미만 (d) 7.5% 이상 10% 미만 (e) 10% 이상 12.5% 미만 (f) 12.5% 이상 15% 미만 (g) 15% 이상 17.5% 미만 (h) 17.5% 이상 20% 미만 (i) 20% 이상 22.5% 미만 (j) 22.5% 이상 25% 미만 (k) 25% 이상 27.5% 미만 (l) 27.5% 이상 30% 미만 (m) 30% 이상

작성 방법

- 1.4.7 신고구성기업은 1.4.1에 기재된 국가 또는 1.4.3에 기재된 하위그룹(해당되는 경우)에 대한 실질기반제외소득의 적용으로 인해 해당 국가에서 추가세액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작성합니다. 해당 국가 또는 하위그룹에 대하여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이 산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로 표시합니다.
- 1.4.8 신고구성기업은 1.4.1에 기재된 국가 또는 1.4.3에 기재된 하위그룹(해당되는 경우)에 대해 3.3.1.e에 작성된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이 있을 경우, 그 금액이 속하는 범위를 선택합니다. 범위에 대한 선택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a) 추가세액 없음 | (f) 50백만 유로 이상 75백만 유로 미만 |
| (b) 1백만 유로 미만 | (g) 75백만 유로 이상 100백만 유로 미만 |
| (c) 1백만 유로 이상 5백만 유로 미만 | (h) 100백만 유로 이상 250백만 유로 미만 |
| (d) 5백만 유로 이상 25백만 유로 미만 | (i) 250백만 유로 이상 |
| (e) 25백만 유로 이상 50백만 유로 미만 | |
- 1.4.9 신고구성기업은 1.4.1에 기재된 국가 또는 1.4.3에 기재된 하위그룹(해당되는 경우)에 대해 3.3.1.f에 작성된 글로벌 최저한세 추가세액 범위를 선택합니다. 범위에 대한 선택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a) 추가세액 없음 | (f) 50백만 유로 이상 75백만 유로 미만 |
| (b) 1백만 유로 미만 | (g) 75백만 유로 이상 100백만 유로 미만 |
| (c) 1백만 유로 이상 5백만 유로 미만 | (h) 100백만 유로 이상 250백만 유로 미만 |
| (d) 5백만 유로 이상 25백만 유로 미만 | (i) 250백만 유로 이상 |
| (e) 25백만 유로 이상 50백만 유로 미만 | |
- 3.3.1.f에 보고된 금액과 다른 금액이 3.1.10에 보고된 경우, 신고구성기업은 3.3.1.f에 보고된 글로벌최저한세 추가세액의 범위와 1.4.1에 기재된 국가 또는 1.4.3에 기재된 하위그룹(해당되는 경우)에 대하여 과세권을 가지는 각 국가의 국내법에 따른 추가세액의 평균이 속한 범위로서 3.1.10에서 선택된 범위를 모두 작성합니다. 평균을 계산할 때에는 3.1.10에 보고된 각 국가의 금액을 해당 국가에 대한 추가세액 배분액(「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8항에 따른 차감 후)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3조제4항 및 이에 상당한 다른 나라의 규정에 따른 해당 국가에 대한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배분비율로 가중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작성 방법

제2장. 국가별 적용면제 및 제외

2.1 국가별 기본사항

2.1	신고구성기업은 다국적기업그룹에 구성기업이 있거나 공동기업그룹 기업이 소재하는 각 소재지국에 대한 정보를 작성합니다.
2.1.1	국가별로 ISO 3166-1 Alpha 2 표준에 따른 2자리 알파벳 국가 코드를 작성합니다. 무국적 구성기업인 경우 “무국적”으로 작성합니다.
2.1.2	본 란에서는 아래의 하위 그룹 중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 구성기업, • 소수지분하위그룹 (특정하여 명시할 것), • (독립형)소수지분구성기업, • 투자기업, • 공동기업그룹 (특정하여 명시할 것), • 무국적 구성기업, • 전환기적용면제-구성기업, • 전환기적용면제-공동기업그룹 (특정하여 명시할 것), • 소득산업보완규칙 적용면제 투자기업에는 투자구성기업 기준에 적합한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 자회사도 포함되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9조제5항에 따른 선택에 따라 투시과세기업으로 취급되는 투자기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수지분하위그룹은 공동기업그룹 기업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무국적구성기업에는 무국적(stateless)인 공동기업그룹 기업도 포함됩니다. 신고구성기업은 각 하위그룹별로 관련 정보를 작성합니다.
2.1.3	2.1.3에 작성된 하위그룹별로 소유지분 구조상 최상위 기업의 납세자번호를 작성합니다.
2.1.4	신고구성기업은 2.1.1에 명시된 국가와, 해당되는 경우 2.1.3에 명시된 관련 하위 그룹에 대해 ISO 3166-1 Alpha 2 표준에 기반한 2자리 알파벳 국가 코드를 사용하여 과세권이 있는 국가를 보고해야 합니다. 어느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해 과세권을 가진다는 것은,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에서의 규칙 적용 순서에 따라 그 다른 국가에서 계산된 추가세액이 이에 대한 과세권이 있는 국가에 소재한 구성기업에 대해 모델규칙의 과세조항에 따른 추가세액 납부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적격소재국추가세액 적용면제가 적용되는 국가 또는 자국내 기업에 대해서도 소득산업규칙을 적용하는 국가는 이런 경우 (다른 나라가 아닌) 자국에 대해 과세권을 가집니다. 또한, 여러 국가가 어느 하나의 다른 국가에 대해 과세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종모기업과 부분소유모기업이 제3의 소재지국에 위치한 구성기업에 대해 소득산업규칙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 최종모기업의 소재지국과 부분소유모기업의 소재지국을 모두 2.1.4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소득산업보완규칙을 적용하는 국가들은 모델규칙 2.5.(국조법 제73조제3항제1호)에 따라 추가세액이 0으로 되지 않는 국가에 대해 과세권을 가집니다. 여러 국가가 2.1.4에 보고되는 경우, 신고구성기업은 각각에 대해 2.1.5를 작성해야 합니다.
2.1.5	이 란은 2.1.4에서 제시되었던 과세권을 가진 각 국가별로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신고구성기업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대해 ‘여’로 작성합니다. 1. 다국적기업그룹이 제2장에서의 적용면제 또는 제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보고하고 있지만 추가세액의 과세권을 가진 국가의 국내법상으로는 동일한 적용면제 또는 제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2. 1과는 반대로, 다국적기업그룹이 제2장에서의 적용면제 또는 제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하고 있지만 추가세액의 과세권을 가진 국가의 국내법상으로는 동일한 적용면제 또는 제외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신고구성기업이 ‘여’로 작성한 경우에는, (i) 해당 적용면제 또는 제외와 관련한 제2장에서의 항목들의 작성을 완료하고, (ii) 해당 국가 또는 하위그룹에 대한 국가별 계산을 ‘제3장’의 관련 항목에 작성해야 합니다.

2.2 해당 국가별 적용되는 적용면제 및 제외(추가세액=0)

2.2.1	적용면제로 인해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에 대한 추가세액이 0으로 되는 경우 해당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과 관련하여 아래 작성방법에서 달리 명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장’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	---

2.2.1.1 적용면제 선택

2.2.1.1.1	해당 소재지국에 적용하기로 선택한 적용기준의 종류를 작성합니다. 하나 이상의 검증이 적용되는 경우 그 중에서 어느 검증을 사용할 것인지를 선택합니다. 다음 중 해당하는 검증의 종류를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a) 일반적 적용면제 - 소액 요건 (b) 일반적 적용면제 - 실효세율 요건 (c) 일반적 적용면제 - 초과이익 요건 (d) 적격소재국추가세 적용면제 (e) 전환기 적용면제 - 소액 요건 (f) 전환기 적용면제 - 간이 실효세율 요건 (g) 전환기 적용면제 - 초과이익 요건 (h) 소득산업보완규칙 적용면제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적용면제를 적용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이전 신고된 사업연도에 (e), (f) 또는 (g) 외의 선택을 한 경우 (e), (f) 또는 (g)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h)는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에서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2.2.1.1.1 (a), (b) 또는 (c)가 선택되고, 이에 따른 간소화된 계산이 글로벌최저한세 계산의 일부에만 적용되는 경우 간소화된 계산과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3장’을 작성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작성 방법

- 2.2.1.1.1 (a), (b) 또는 (c)가 선택되고, 그 선택이 2.1.3 에서 작성된 하위그룹의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일부에 적용되는 경우, 적용면제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모든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에 대하여 지침서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제3장'을 작성합니다.
- 2.2.1.1.1 (a), (b) 또는 (c)가 선택되고 해당 소재지국에서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구성기업은 그 국가에 소재한 관련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에 대하여 1.4.8~1.4.9, 3.3.1.d~3.3.1.f, 3.3.3, 3.4을 작성합니다.
- 2.2.1.1.1 해당 소재지국 또는 관련 하위그룹에 대해 적격소재국추가세 적용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d)를 선택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d)가 선택되더라도, 신고구성기업은 다른 검증의 종류 중 하나를 추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d)외에 다른 검증이 선택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구성기업은 해당 적용면제 국가에 소재한 모든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에 대해 적격소재국추가세액과 관련한 '제3장'의 계산 항목들을 작성해야 합니다(또는 적용면제 국가에 소재한 무국적구성기업에 대해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이 부과되는 경우 그 무국적구성기업에 대해서도 이를 작성합니다). 다국적기업그룹이 적격소재국추가세 적용면제와 함께 해당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또 다른 적용면제(또는 최소적용제외 특례)를 선택하는 경우, 신고구성기업은 적격소재국추가세 계산에 대한 '제3장'(또는 서식 2.2.2)의 관련 항목들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예외로서, 해당 국가의 적격소재국 추가세제도에서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을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기준으로 구성기업(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에 배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신고구성기업은 3.4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 에서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을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기준으로 구성기업(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에 배분하는 경우 신고구성기업은 3.4.1.1.a에서 3.4.1.1.c까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 2.2.1.1.1 (c) 또는 (g)가 선택되는 경우에는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과 관련하여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에 합당하도록 3.3.2(실질기반제외소득)을 작성합니다. 하지만 (g)가 선택되지만 해당 국가에 대해 2.2.1.3.(a).2에서 기재되는 이익이 없거나 손실인 것으로 보고하는 경우 신고구성기업은 3.3.2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2.2.1.2 일반적 적용면제

(a) 중요성이 낮은 구성기업에 대한 간소화 계산

- 2.2.1.2.(a). 1.a~d 2.2.1.1.1에서 (a), (b) 또는 (c)를 선택한 경우, 신고구성기업은 해당 국가에서 중요성이 낮은 구성기업에 대한 간소화 계산을 적용하기로 한 모든 중요성이 낮은 구성기업의 총수익금액을 작성합니다. 이때 보고하는 연도는 신고대상 사업연도, 그 직전 사업연도(해당되는 경우), 그 직전전 사업연도(해당되는 경우) 및 이들 3개 사업연도의 평균입니다. 2.2.1.1의 (a)를 선택하면서 중요성이 낮은 구성기업에 대한 간소화 계산을 사용하고, 그 간소화 계산 방식을 2.1.3에서의 하위그룹에 있는 일부 구성기업에만 적용하는 경우, 신고구성기업은 2.2.2도 작성해야 합니다.
- 2.2.1.2.(a).2 2.2.1.1.1의 (b)를 선택하면서 중요성이 낮은 구성기업에 대한 간소화 계산이 적용되는 경우, 신고구성기업은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대해 중요성이 낮은 구성기업에 대한 간소화 계산 적용이 선택된 국가에 소재한 모든 중요성이 낮은 구성기업에 대해 총 간소화 계산 세액을 작성합니다.

2.2.1.3 적용면제

(a) 전환기 적용면제

- 2.2.1.3.(a) 이 표를 완성하는 데 사용된 적격 재무제표가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사용된 회계 기준과 다른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된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별도 재무제표인 경우 3.2.4.6을 작성합니다.
- 2.2.1.3.(a).1 2.2.1.1.1에서 (e)가 선택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대한 다국적기업그룹의 적격국가별보고서(또는 공동 기업그룹 기업의 경우 적격 재무제표)에 따라 소재지국에 대한 총수익금액을 보고합니다. (e)는 소재지국에 매각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포함되어 있고 그 기업의 매출액과 총수익금액의 합계액이 1천만유로 이상인 경우에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 2.2.1.3.(a).2 2.2.1.1.1에서 (e), (f) 또는 (g)가 선택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대한 다국적기업그룹의 적격국가별보고서(공동기업그룹 기업인 경우 적격 재무제표)에 보고된 대로 소재지국의 세전손익금액을 작성합니다.
- 2.2.1.3.(a).3 2.2.1.1.1에서 (f)가 선택되는 경우 신고 구성기업은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6조 제6항에 따라 관련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에 대한 법인세비용을 작성합니다.

(b) 소득산입보완규칙 전환기 적용면제

- 2.2.1.3.(b).1 2.2.1.1.1에서 (h)가 선택되는 경우에는 적용면제 규정에 따라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의 법인세 명목세율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작성 방법

2.2.2 최소적용제외 특례 선택

- 2.2.2 투자기업 및 무국적구성기업은 최소적용제외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이 기업들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6조의 글로벌최저한세매출액 및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금액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소수지분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매출액 및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은 소재지국의 평균 글로벌최저한세매출액 및 평균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 시 다른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매출액 및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과 합산됩니다.
- 요건에 맞는 국가에 대해 최소적용제외 특례 적용을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대해 3.2.4.6(해당하는 경우)을 작성합니다.
- 해당 국가에서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구성기업은 추가적으로 1.4.8에서 1.4.9까지, 3.3.1.d에서 3.3.1.f까지, '3.3.3(당기추가세액가산액)', 그리고 '3.4(추가세액 배분과 귀속)'를 작성해야 합니다.
- 신고구성기업은 이 서식이 일반적으로 최소적용제외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것인지, 아니면 2.2.1.1 (a)의 선택으로 중요성이 낮은 구성기업에 대한 간소화 계산이 2.1.3에서의 하위그룹의 구성기업 중 일부에만 적용되는 경우 일반 구성기업(중요성이 낮은 구성기업이 아닌 구성기업)에 최소적용제외특례를 적용하기 위해 작성되는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 2.2.2.1 '제3장'에 따른 조정 전에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재무제표상의 매출액 합계를 작성합니다.
- 2.2.2.2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매출액 합계를 작성합니다.
- 2.2.2.3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작성합니다.
- 2.2.2.4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합계를 작성합니다.
- 2.2.2.a~c 신고대상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해당되는 경우) 및 직전전 사업연도(해당되는 경우)와 관련하여 관련 금액을 각각 작성합니다.
- 2.2.2.d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관련 매출액과 소득은 연환산하여 3개 사업연도의 평균액을 계산합니다.

2.3 해외진출 초기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 (해당되는 경우)

- 2.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고, 적격소득산입 규칙을 적용할 기업이 없는 경우 추가세액은 0이 되며, 관련 소재지국에 대해서는 2.1, 2.2, 또는 '제3장'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2.3.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는 2.3.1에 작성된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이 시행되는 시점에 적용대상이 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경우 2.3.1에 작성하는 날은 소득산입보완규칙이 적용되는 날로 합니다.
- 2.3.2 준거국가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0조제2호에 따른 준거국가(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연도에 그 다국적기업그룹이 소유한 국가별 유형자산의 순장부가액 합계가 가장 큰 국가)를 말합니다.
- 2.3.3 준거국가에 소재하는 모든 구성기업의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의 합계를 작성합니다.
- 2.3.4 공동기업 및 공동기업 자회사 또는 제외기업이 아닌 투자기업의 소재지는 다국적기업그룹이 구성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소재지국의 수를 결정하는 데 고려되지 않습니다.
- 2.3.5.a 신고구성기업은 최초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준거국가 외의 소재지국에 대해 ISO 3166-1 Alpha 2 표준에 따른 2자리 알파벳 국가 코드를 작성합니다. 준거국가 외의 소재지국의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2.3.5.b 신고구성기업은 최초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준거국가 외에 소재하는 모든 구성기업의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의 합계를 작성합니다.
- 무국적 구성기업의 유형자산은 다국적기업그룹이 해당 유형자산이 준거국가에 소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준거국가 외의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이 보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동기업 및 공동기업 자회사 또는 제외기업이 아닌 투자기업의 유형자산은 유형자산의 순장부가액 합계를 결정하는 데 고려되지 않습니다.
- 2.3.6 신고구성기업은 신고대상 사업연도 동안 다국적기업그룹이 구성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소재지국의 수를 작성합니다. 신고대상 사업연도가 다국적기업그룹이 최초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사업연도인 경우 이 정보는 2.3.4에 작성되므로 별도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 2.3.7 신고구성기업은 신고대상 사업연도 동안 준거국가 외의 모든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모든 구성기업의 유형자산 순장부가액 합계를 작성합니다.
- 신고대상 사업연도가 최초로 다국적기업그룹 그룹이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인 경우 이 정보는 2.3.5에 작성되므로 별도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작성 방법

제3장. 글로벌최저한세 계산

3.1 국가별 글로벌최저한세 계산 기본사항

3.1	구성기업이 있거나 공동기업그룹 기업이 있는 각 소재지국에 관한 정보를 작성합니다.
3.1.1	소재지국의 ISO 3166-1 Alpha 2 표준에 따른 2자리 알파벳 국가 코드를 작성합니다. 무국적 구성기업인 경우 “무국적”으로 작성합니다.
3.1.2	‘하위그룹’은 기업 유형별로 수행되는 글로벌최저한세 계산을 위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이 란은 여러 하위그룹을 두고 있습니다. • 구성기업 • 소수지분하위그룹 (소수지분하위그룹을 특정하여 명시할 것) • (독립형)소수지분구성기업, • 투자기업 • 공동기업그룹(공동기업그룹을 특정하여 명시할 것) • 무국적 구성기업 투자기업에는 투자기업 기준에 적합한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 자회사도 포함되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9조제5항에 따른 선택을 하는 경우의 투자구성기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수지분하위그룹의 구성원으로 공동기업그룹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무국적구성기업에는 무국적인 공동기업그룹 기업도 포함됩니다. ‘3.2(실효세율 계산)’에 하위그룹별로 관련 정보를 작성합니다.
3.1.3	3.1.2에 작성된 하위그룹별로 소수지분 구조상 최상위기업의 납세자번호를 3.1.3에 작성합니다.
3.1.4	신고구성기업은 3.1.1에 명시된 소재지국 및 해당되는 경우 3.1.3에 명시된 관련 하위 그룹에 대해 ISO 3166-1 Alpha 2 표준에 기반한 2자리 알파벳 국가 코드를 사용하여 과세권이 있는 국가를 작성해야 합니다. 어느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해 과세권을 가진다는 것은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에서의 적용 순서에 따라 후자의 국가에 대해 계산된 소재지국별 추가세액에 대한 납세의무가 전자의 국가에 소재한 구성기업에게 발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별한 사항은, 적격소재국추가세액 적용면제가 적용되는 국가 또는 자국내 기업에 대해서도 소득산업규칙을 적용하는 국가는 (다른 나라가 아닌) 자국에 대해 과세권을 가집니다. 또한, 여러 국가가 어느 하나의 다른 국가에 대해 과세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종모기업과 부분소유모기업이 제3의 소재지국에 위치한 구성기업에 대해 소득산업규칙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 최종모기업의 소재지국과 부분소유모기업의 소재지국을 모두 3.1.4에 작성해야 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소득산업보완규칙을 적용하는 국가들은 국조법 제73조제3항제1호에 따라 추가세액이 0으로 되지 않는 국가에 대해 과세권을 가집니다.
3.1.5 ~ 3.1.10	이 항목은 3.1.4에서 과세권이 있는 것으로 작성된 국가가 하나이거나, 적격소재국추가세액 적용면제가 3.1.1의 국가 또는 3.1.3의 하위그룹에 적용되는 경우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 항목은 3.1.4에서 과세권이 있는 국가 별로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별도 차이가 없으면, 신고구성기업은 “차이 없음”이라고 작성합니다.
3.1.5	3.1.1에 작성된 국가 또는 3.1.3에 작성된 하위그룹에 대해 3.1.4에 작성된 과세권이 있는 국가의 국내법을 기준으로 산정한 실효세율이 3.2.1.e에서 작성되는 실효세율과 다른 경우에는 3.1.4에서 작성된 과세권 있는 국가에서 산정한 실효세율을 작성합니다.
3.1.6	이 항목은 3.1.1에서 식별된 국가 또는 3.1.3에서 식별된 하위 그룹에 대해 3.1.5에서 다른 실효세율이 작성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신고구성기업은 3.1.4에서 식별된 과세권이 있는 관련 소재지국의 국내법에 따라 계산된 해당 소재지국 또는 하위 그룹의 총 조정대상조세를 작성합니다.(단, 이 금액이 3.2.1.d에서 작성된 금액과 다른 경우에만 해당)
3.1.7	이 항목은 3.1.1에서 식별된 국가 또는 3.1.3에서 식별된 하위 그룹에 대해 3.1.5에서 다른 실효세율이 작성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3.1.4에서 식별된 과세권이 있는 관련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계산된 해당 국가 또는 하위 그룹의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을 작성합니다.(단, 이 금액이 3.2.1.b에서 작성된 금액과 다른 경우에만 해당)
3.1.8	이 항목은 3.1.1에서 식별된 국가 또는 3.1.3에서 식별된 하위 그룹에 대해 3.1.10에 다른 납부해야 할 추가세액이 작성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3.1.4에서 식별된 과세권이 있는 관련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계산된 해당 국가 또는 하위 그룹의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을 작성합니다.(단, 이 금액이 3.3.1.b에서 작성된 금액과 다른 경우에만 해당)
3.1.9	신고구성기업은 3.1.1에서 식별된 국가 또는 3.1.3에서 식별된 하위 그룹에 대해 3.1.4에서 식별된 과세권이 있는 관련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계산된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을 작성합니다.(단, 이 금액이 3.3.1.d에서 작성된 금액과 다른 경우에만 해당)
3.1.10	신고구성기업 3.1.1에서 식별된 소재지국 또는 3.1.3에서 식별된 하위 그룹에 대해 3.1.4에서 식별된 과세권이 있는 소재지국의 국내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추가세액을 작성합니다. 단, 이 금액이 3.3.1.f에서 작성된 금액과 다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1.11	신고구성기업은 3.1.1에서 식별된 소재지국 또는 3.1.3에서 식별된 하위 그룹에 대해 3.2.3에서 작성된 선택 사항의 적용 여부와 3.1.4에서 식별된 과세권 있는 관련 소재지국의 국내법에 따른 선택 사항의 적용여부 간에 차이가 있는지 작성합니다.
3.1.12 ~ 3.1.15	신고구성기업은 3.1.4(‘과세권을 가진 관련 국가’)에 명시된 각 소재지국별로 이러한 정보를 별도로 작성합니다. 3.1.6에서 차이가 작성된 경우에만 질문에 답합니다. 주어진 질문에 차이가 없다면, 신고구성기업은 ‘차이 없음’이라고 작성합니다.

작성 방법

3.1.12	신고구성기업은 3.1.1에서 식별된 국가 또는 3.1.3에서 식별된 하위 그룹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제2항에 따른 배분 후 대상조세와 관련된 총당기법인세비용(3.2.1.2.(a).1 참조)을 3.1.4에서 식별된 과세권이 있는 관련 국가의 국내법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3.1.13	신고구성기업은 3.1.1에서 식별된 국가 또는 3.1.3에서 식별된 하위 그룹에 대해, 조정대상조세를 계산할 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제1호다목에 따라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또는 적격양도가가능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조정을 3.2.1.2.(a).2.(d)에 따라, 3.1.4에서 식별된 과세권이 있는 관련 소재지국의 국내법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3.1.14	신고구성기업은 3.1.1에서 식별된 소재지국 또는 3.1.3에서 식별된 하위 그룹에 대해 조정대상조세를 계산할 때, 당기법인세비용의 감소로 기록되지 않은 비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비적격양도가가능세액공제, 또는 기타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이루어진 조정(3.2.1.2.(a).2.(g) 참조)을 3.1.4에서 식별된 과세권이 있는 관련 국가의 국내법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3.1.15	신고구성기업은 3.1.1에서 식별된 국가 또는 3.1.3에서 식별된 하위 그룹에 대해, 이연법인세비용(3.2.2.1.(a).1 참조)을 3.1.4에서 식별된 과세권이 있는 관련 국가의 국내법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3.1.16~ 3.1.18	이 항목은 3.1.4에서 식별된 과세권이 있는 각 국가별로 개별 작성합니다. 차이가 없는 경우, 신고구성기업은 “차이 없음”이라고 작성합니다.
3.1.16	이 항목은 3.1.7에서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3.1.1에서 식별된 국가 또는 3.1.3에서 식별된 하위 그룹에 대해,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을 계산할 때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또는 적격양도가가능세액공제와 관련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라 이루어진 조정(3.2.1.1.2.(n) 참조)을 3.1.5에서 식별된 과세권이 있는 관련 국가의 국내법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3.1.17	신고구성기업은 3.1.1에서 식별된 소재지국 또는 3.1.3에서 식별된 하위 그룹의 향후 사업연도에 사용되는 이월조정 대상조세 잔액이 3.2.1.2.(b).4에서 작성된 금액과 다른 경우, 3.1.4에서 식별된 과세권이 있는 관련 국가의 국내법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3.1.18	이 정보는 신고대상 사업연도가 3.1.1에서 식별된 국가 또는 3.1.3에서 식별된 하위 그룹에 대한 최초적용연도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이 정보와 3.2.2.3에 작성된 정보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3.1.4에서 식별된 과세권이 있는 관련 국가의 국내법을 기준으로 3.2.2.3을 작성합니다.

3.2 실효세율 계산

3.2.1 실효세율

3.2.1.a	신고구성기업은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모든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에 대해 결정된 회계상 순이익 또는 순손실 총액을 작성합니다.
3.2.1.b	신고구성기업은 해당 국가에 대한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을 작성합니다. 소재지국에 둘 이상의 투자기업이 소재한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계산된 각 투자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배분의 합계를 작성합니다.
3.2.1.c	신고구성기업은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회계계정에 기록된 법인세비용 총액을 작성합니다.
3.2.1.d	신고구성기업은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모든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조정대상조세 총액을 작성합니다. 해당 국가에 둘 이상의 투자기업이 위치한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된 각 투자기업의 조정대상조세의 합계를 작성합니다.
3.2.1.e	신고구성기업은 해당 국가에 대한 실효세율을 작성합니다. 다국적기업그룹(또는 관련 하위 그룹)이 해당 국가에서 글로벌최저한세결손이 발생한 경우, 이 열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3.2.1.1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 계산

3.2.1.1.1	신고구성기업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본점과 고정사업장 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배분 및 투자기업으로부터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배분 후에 해당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의 총액을 작성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9조제5항에 따른 선택에 따라 투시과세기업으로 취급되는 투자기업 또는 보험투자기업으로부터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배분이 포함됩니다.
3.2.1.1.2.(b)	신고구성기업은 배당수익의 차감과 관련된 조정을 작성합니다. 보험회사 준비금의 변동이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으로부터의 배당인 제외배당(투자 관리 수수료는 차감합니다)과 경제적으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보험준비금의 변동을 3.2.1.1.2.(b)에 가산조정(회계상 순손익에 가산합니다)하는 금액으로 작성합니다.
3.2.1.1.2.(c)	지분손익과 관련된 조정금액을 작성합니다. 이러한 조정금액에는 환위험 회피수단에서 발생하는 외화평가손익을 지분손익의 조정에 포함하는 선택을 경우에는 해당 환위험 회피수단에서 발생하는 외화평가손익도 포함됩니다.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유한 유가증권의 제외지분 손익과 관련된 보험준비금의 변동으로 인한 비용은 3.2.1.1.2.(c)에 가산조정(회계상 순손익에 가산합니다) 금액으로 작성합니다. 조정금액에는 지분투자손익포함 선택에 따라 제외되지 않은 지분손익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작성 방법

- 3.2.1.1.2.(k) 신고구성기업은 구성기업이 채무면제 대상이고 소득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제11호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에 대한 차감금액을 작성합니다.
- 3.2.1.1.2.(n) 신고구성기업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12호 및 13호에 따라 회계상 순손익에 대한 조정을 작성합니다. 특히, 회계계정에서 당기법인세비용 또는 그 밖의 대상조세의 감소로 기록되어 있어 소득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금액은 가산조정으로 작성하며, 회계계정에서 소득으로 기록되어 있어 당기법인세비용 및 그 밖의 대상조세의 감소로 처리되어야 하는 금액은 감소조정으로 작성합니다.
- 3.2.1.1.2.(z) 신고구성기업은 구성기업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9조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조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에 대한 조정을 작성합니다.
- 3.2.1.1.3 신고구성기업은 해당 국가의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을 작성합니다.

3.2.1.2 조정대상조세 계산

(a) 조정대상조세 합계

- 3.2.1.2.(a).1 신고구성기업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하나의 구성기업에서 다른 구성기업으로 대상 조세를 배분한 후의 총당기법인세비용(소재지국의 모든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에서 발생하는 대상조세 관련)을 작성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9조제5항에 따른 선택에 따라 투시과세기업으로 취급되는 투자기업 또는 보험투자 기업으로부터의 대상조세 배분도 포함됩니다.
이 부표에서 작성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신고 후 조정에는 신고대상 사업연도가 아닌 다른 사업연도에 대한 실효세를 조정에 따라 이루어진 조정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신고 후 조정은 이전 사업연도의 대상조세에 대해 경미하지 않는 감액이 발생하는 경우의 조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선택을 하지 않았을 때 경미한 감액이 발생하는 경우의 조정을 의미합니다.
- 3.2.1.2.(a).2. (d) 신고구성기업은 회계계정에 당기법인세비용 또는 그 밖의 대상조세의 감소로 기록된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또는 적격 양도가세액공제 금액에 대해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제1호다목에 따른 조정금액을 작성합니다.
- 3.2.1.2.(a).2. (g) 신고구성기업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회계계정에 소득으로 처리되고, 당기법인세비용 또는 그 밖의 대상조세의 차감으로 처리되지 않은 비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비적격양도가세액공제 또는 다른 세액공제 금액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호라목에 따른 조정금액을 작성합니다.
- 3.2.1.2.(a).2. (h) 신고구성기업은 이전 사업연도에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에 따라 대상조세로 청구되었고, 당기 사업연도에 환급 또는 공제되는 대상조세 금액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제2호라목에 따라 작성합니다. 적격환급 가능세액공제 및 적격양도가세액공제는 이 규칙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3.2.1.2.(a).2. (s) 신고구성기업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6조의2 및 제119조제3항의 선택에 따라 당기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월조정대상조세 금액을 작성합니다. 동일한 금액을 3.2.1.2.(b).2.에도 작성합니다.
- 3.2.1.2.(a).2. (t) 신고구성기업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6조의2 및 제119조제3항에 따라 이월조정대상조세의 잔액과 관련하여 조정대상조세의 감소를 작성합니다. 감소되는 금액은 3.2.1.2.(b).3.에 작성되는 금액과 동일하며, 다른 조정에 따른 조정대상조세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3.2.1.2.(a).3 신고구성기업은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모든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조정대상조세를 작성합니다.

(b) 이월조정대상조세

- 3.2.1.2.(b).1 이전 사업연도로부터의 잔액은 아직까지 해당 국가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을 감소시키지 못한 이월조세대상조세의 남은 금액입니다.
- 3.2.1.2.(b).2 신고구성기업은 해당 국가의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이월조정대상조세 금액을 작성합니다.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9조제3항에 따른 매년선택을 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하여 발생하는 이월조정대상조세 금액은 같은 항에 따라 3.3.3.2.4에 작성하는 당기추가세액가산액과 같습니다. 결손에 기인하는 이월조정대상조세가 이전 사업연도로 소급되어 이전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경우 해당 이월조정대상조세 금액은 신고대상 사업연도의 이월조정대상조세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6조의2에 따라 다국적기업그룹의 특정 국가에서 음의 조정대상조세로 인해 최저한세율을 초과하는 추가세액비율이 발생하는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발생하는 이월조정대상조세는 해당 국가의 그 사업연도에 대해 계산됩니다. 이 경우 해당 국가의 이월조정대상조세는 음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절대값과 같습니다.
- 3.2.1.2.(b).3 신고구성기업은 해당 국가의 신고대상 사업연도로 이월되어 차감되는 이월조정대상조세를 작성합니다.
해당 국가에서 사용되는 이월조정대상조세 금액은 이월조정대상조세의 잔액과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대해 계산된 조정대상조세 중 작은 금액으로 합니다.
- 3.2.1.2.(b).4 신고구성기업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는 이월조정대상조세 금액은 해당 국가의 이전 사업연도 잔액에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이월조정대상조세를 더한 후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차감되는 이월조정대상조세를 공제한 값입니다.

작성 방법

(c)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 관련 계산 (해당하는 경우)

- 3.2.1.2.(c) 신고구성기업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전환기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가 적용되는 대상조세가
1. 구성기업 소재지국에 위치하고 해당 하위그룹에 속하는 주주구성기업으로부터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에 배분되거나
 2. 해당 구성기업에 위치하고 해당 하위그룹에 속하는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에 배분되는 경우에 이 란을 작성합니다.
- 3.2.1.2.(c).1 신고구성기업은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의 적용에 따라 대상조세가 배분되는 구성기업이 소재하는 국가를 ISO 3166-1 Alpha 2 표준에 따른 2자리 알파벳 국가 코드 형식으로 작성합니다.
- 3.2.1.2.(c).2 신고구성기업은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가 적용되는 대상조세가 배분되는 구성기업의 하위그룹을 작성합니다. 이 하위그룹은 3.1.3에서 작성된 것과 동일합니다.
- 3.2.1.2.(c).3 신고구성기업은 주주구성기업으로부터 3.2.1.2.(c).1에서 작성된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에게 배분되는 신고대상 사업연도의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 세액을 작성합니다.

3.2.2 국가별 이연법인세회계 관련 계산

3.2.2.1 이연법인세 조정

(a) 요약표

- 3.2.2.1.(a).1.a 신고구성기업은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모든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회계계정의 이연법인세비용 총액을 작성합니다. 이연법인세비용이 이연법인세비용 계정에 차변으로 기록된 경우, 해당 금액은 양수로 표시합니다. 이연법인세비용이 대변으로 기록된 경우, 해당 금액은 음수로 표시합니다
- 3.2.2.1.(a).1.b 신고구성기업은 재무제표에 기록된 이연법인세비용 중 글로벌최저한세 기준 장부가액과 회계상 장부가액이 다른 자산 또는 부채와 관련한 이연법인세비용을 작성합니다.
- 3.2.2.1.(a).1.c 신고구성기업은 해당 국가에 소재한 모든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자산 또는 부채 중 글로벌최저한세 장부가액과 회계상 장부가액이 다른 경우, 그러한 자산 또는 부채의 글로벌최저한세 기준 장부가액에 기초한 이연법인세비용을 작성합니다.
- 3.2.2.1.(a).1.d 신고구성기업은 재계산 및 조정 전 글로벌최저한세 기준에 따라 계산된 이연법인세비용을 작성합니다.
- 3.2.2.1.(a).1.2 조정 금액의 총합은 3.2.2.1.(b).2에 있는 조정금액 합계로 합니다.
- 3.2.2.1.(a).3.e 신고구성기업은 재계산 전 글로벌최저한세 기준의 이연법인세비용을 작성합니다
- 3.2.2.1.(a).1.f 신고구성기업은 최저한세율보다 더 낮은 세율로 기록된 글로벌최저한세 결손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제2항에 따라 최저한세율로 재계산하고, 최저한세율보다 더 낮은 세율로 기록된 이연법인세비용과 최저한세율 기준으로 재계산한 이연법인세비용 간의 차이를 작성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글로벌최저한세 결손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으로 인한 경우 음수로 표시하고, 해당 이연법인세자산의 환입으로 인한 경우는 양수로 표시합니다.
- 3.2.2.1.(a).3.g 신고구성기업은 최저한세율보다 더 높은 세율로 기록된 이연법인세비용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7조제2항에 따라 최저한세율로 재계산하고, 최저한세율보다 더 높은 세율로 기록된 이연법인세비용과 최저한세율을 기준으로 재계산한 이연법인세비용 간의 차이를 작성합니다. 재계산 이전 해당 사업연도의 이연법인세비용이 이연법인세계정에 대변으로 기록된 경우, 그 차이는 양수로 표시합니다. 재계산 이전 해당 사업연도의 이연법인세비용이 이연법인세계정에 차변으로 기록된 경우, 그 차이는 음수로 표시합니다.
- 3.2.2.1.(a).4 신고구성기업은 해당 국가에 대한 총이연법인세 조정금액을 작성합니다.

(b) 조정내역

- 3.2.2.1.(b) 신고구성기업은 재계산 이전에 결정된 조정내역을 표에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조정으로 인해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이 증가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양수로 표시합니다. 조정으로 인해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이 감소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음수로 표시합니다.
- 3.2.2.1.(b).1.(f) 신고구성기업은 대체이월결손금이연법인세자산 및 간주대체이월결손금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한 조정 전에 세액공제와 관련된 회계계정의 이연법인세비용 조정을 작성합니다.
- 3.2.2.1.(b).1.(g) 신고구성기업은 대체이월결손금이연법인세자산 및 간주대체이월결손금이연법인세자산과 관련된 조정을 작성합니다.
- 3.2.2.1.(b).1.(p) 신고구성기업은 구성기업 간의 거래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9조제3호의 적용에 따른 이연법인세비용에 대한 조정을 작성합니다.
- 3.2.2.1.(b).2 신고구성기업은 총조정금액을 작성합니다. 이 총액은 3.2.2.1.(a).2에서 작성된 금액과 동일합니다.

작성 방법

(c) 결손금 소급공제

3.2.2.1.(c).1.a,b 등	신고구성기업은 국내 세무상 결손금이 소급 적용됨으로써 이전 사업연도에 대해 사용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의 금액을 작성합니다.
3.2.2.1.(c).2.a,b 등	신고구성기업은 이전 사업연도로 소급되는 국내 세무상 결손금과 관련된 대상조세의 환급액을 작성합니다. 환급액은 이전 사업연도로 소급된 국내 세무상 결손금과 일치합니다.
3.2.2.1.(c).1.c	신고구성기업은 이전 사업연도에 대해 사용되는 것으로 보는 간주이연법인세자산의 총액을 작성합니다. 이 총액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라 국내 세무상 결손금과 최저세율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합니다.
3.2.2.1.(c).2.c	신고구성기업은 대상조세의 환급 총액을 작성합니다. 이 총액은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허용된 결손금 소급 공제와 관련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입니다.
3.2.2.1.(c).1.c 및 3.2.2.1.(c).2.c	3.2.2.1.(c).1.c와 3.2.2.1.(c).2.c의 차액은 결손금 소급공제와 관련한 신고대상 사업연도의 대상조세 조정 금액입니다. 해당 금액은 3.2.1.2.(a).2.(k)에 작성되는 조정으로서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대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조정에서 고려합니다.

3.2.2.2 환입금액 계산

3.2.2.2.(a).1	신고구성기업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7조제2항에서 고려되는, 신고대상 사업연도 전 다섯 번째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 포함되는 이연법인세부채 총액(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관련된 이연법인세부채의 변동금액 등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로 정하는 금액은 제외) 작성합니다.
3.2.2.2.(a).2	신고구성기업은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결정된, 신고대상 사업연도 전 다섯 번째 사업연도의 이연법인세부채 환입 금액 총액을 작성합니다. 이 금액은 3.3에서 식별된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의 작성요건과 관련하여 사용됩니다.
3.2.2.2.(a).3	신고구성기업은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7조제2항에 따른 이연법인세부채의 총액(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관련된 이연법인세부채의 변동 금액 등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로 정하는 금액은 제외)을 작성합니다.
3.2.2.2.(b)	신고구성기업은 집계 기준으로 추적된 이연법인세부채에 대해 이 표를 작성합니다. 즉, 총계정원장 계정 또는 계정그룹 단위로 추적하는 이연부채를 말하며, 개별 항목별로 추적된 이연법인세부채는 제외됩니다.
3.2.2.2.(b).a.1 및 3.2.2.2.(b).a.2	신고구성기업은 신고대상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 2제1항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의2제3항에 따라 계산한, 최초적용연도 개시 전에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로서 환원되지 않고 남은 것으로 보는 금액을 작성합니다.
3.2.2.2.(b).b.1 및 3.2.2.2.(b).b.2	신고구성기업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2제1항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계산한, 신고대상 사업연도 종료일 및 그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을 작성합니다.
3.2.2.2.(b).c.1 및 3.2.2.2.(b).c.2	신고구성기업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2제1항에 따라 계산한, 신고대상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의 비적격잔액 금액을 작성합니다.

3.2.2.3 최초적용연도에 대한 특례

3.2.2.3	이 항목 중 3.2.2.3.1을 제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대상 사업연도가 최초적용연도인 경우에만 글로벌 최저한세정보신고서에 작성하는 반면에 3.2.2.3.1(최초적용연도)은 매년 작성합니다.
---------	---

(a)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적용

3.2.2.3.(a).1	최초적용연도 개시일의 이연법인세부채는 해당 국가의 최초적용연도 개시일의 회계계정에 기록된 이연법인세 부채의 총액이며, 2021년 11월 30일 후부터 최초적용연도 개시 전에 구성기업 간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 간의 자산 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연법인세부채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9조제4항 적용과 관련된 사항을 표에 반영합니다.
3.2.2.3.(a).2	해당 국내 세율이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한세율로 재계산하지 않습니다.
3.2.2.3.(a).3	최초적용연도 개시 시 이연법인세자산은 최초적용연도 개시 시 해당 국가의 회계계정에 기록된 이연법인세 자산의 총액이며, 2021년 11월 30일 후부터 최초적용연도 개시 전에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 간의 자산 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연법인세자산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9조의 적용과 관련된 표에 반영됩니다.
3.2.2.3.(a).4	적용가능한 국내 세율이 최저한세율보다 낮다면 최저한세율로 재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연법인세자산이 글로벌최저한세결손으로 인한 것임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계산된 이연법인세 자산은 최저한세율로 재계산할 수 있습니다.
3.2.2.3.(a).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에서 제외되는 항목에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 중 2021년 11월 30일 이후 발생하는 거래에서 발생한 이연법인세자산은 제외합니다.
3.2.2.3.(a).6	글로벌최저한세 목적으로 고려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최초적용연도 개시 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 목적으로 인식되어야 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총액입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작성 방법

(b)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9조 적용

- 3.2.2.3.(b).1 신고구성기업은 2021년 11월 30일 이후부터 최초적용연도 개시 전에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이 소재하는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다른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에 자산을 처분한 경우 처분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이 소재하는 모든 국가를 나열합니다.
처분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이 소재하는 국가는 취득기업의 소재지국과 같은 소재지국일 수 있습니다. 신고구성기업은 처분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의 ISO 3166-1 Alpha 2 표준에 따른 2자리 알파벳 국가 코드를 작성합니다. 무국적구성기업인 경우 “무국적”으로 작성합니다.
- 3.2.2.3.(b).2 신고구성기업은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납부한 세액을 작성합니다.
- 3.2.2.3.(b).3 신고구성기업은 이전된 자산에 대한 처분구성기업(들)의 회계계정에 반영된 기존 이연법인세자산 총액 또는 이연법인세부채 총액의 순액을 작성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양수로, 이연법인세부채는 음수로 작성합니다.
- 3.2.2.3.(b).4 글로벌최저한세 목적상 이전된 자산의 장부가액은 최초적용연도 개시 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의 적용 목적 상 인식되어야 하는 이전된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입니다. 이 금액은 이전이 있는 날 이전된 자산을 처분할 때 회계상 장부가액을 조정하여 결정합니다. 처분할 때의 회계상 장부가액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9조 제2호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되어야 하며, 거래 이후부터 최초적용연도 개시 전까지 계상된 자본적 지출, 유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에 대해 추가로 조정됩니다.
- 3.2.2.3.(b).5 글로벌최저한세 목적 상 이전된 자산과 관련된 순이연법인세자산 및 순이연법인세부채는 이전된 자산과 관련하여 최초적용연도 개시 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 적용 목적 상 인식되어야 하는 총이연법인세자산 및 총이연법인세부채의 순액입니다. 이 금액은 처분구성기업이 이전된 자산과 관련하여 이전 전에 계상한 기존 총이연법인세자산 및 총이연법인세부채의 순액을 조정하여 결정됩니다. 기존 총이연법인세자산 및 총이연법인세부채의 순액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9조제3호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양수로, 이연법인세부채는 음수로 작성합니다.

3.2.3 국가별 선택 (해당하는 경우)

3.2.3.1 국가별 선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적격분배과세제도 특례 외)

- 3.2.3.1 국가별 선택사항은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모든 구성기업(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에 적용됩니다.

(a) 선택 내역

- 3.2.3.1.(a).1.c '3.3.2(실질기반제외소득의 계산 (해당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질기반제외소득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3.2.3.1.(a).1.c의 선택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 3.2.3.1.(a).3 5년선택의 경우에는 선택사업연도를 작성합니다.
- 3.2.3.1.(a).4 5년선택 후 그 선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사업연도를 작성합니다. 신고구성기업은 취소사업연도 및 취소사업연도 후 4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제출하는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에 취소사업연도를 작성합니다.
- 3.2.3.1.(a).5.j 신고구성기업은 결손취급특례는 해당 특례를 적용하는 해당 국가를 최초로 제출하는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에서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선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같은 해당 국가에 대해 다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3.2.3.1.(a).6 신고구성기업은 선택이 취소된 사업연도(해당하는 경우)를 작성합니다. 취소사업연도 및 취소사업연도 후 모든 사업연도에 대해 제출할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에 취소사업연도를 작성합니다.

(b) 국가별 선택과 관련된 필요정보

- 3.2.3.1.(b).1 지분투자손익포함선택을 하는 경우에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에 포함되는 지분손익을 작성합니다.
- 3.2.3.1.(b).2 이전 연도로부터의 적격소유지분에 대한 지분 보유자의 투자가액 잔액은 해당 국가의 적격소유지분에 대한 지분 보유자의 투자가액 중 수입으로 감액되지 않은 나머지 금액입니다.
- 3.2.3.1.(b).3 신고구성기업은 해당 국가의 신고대상 사업연도의 적격소유지분에 대한 지분 보유자의 투자 증가분을 작성합니다.
- 3.2.3.1.(b).4 신고구성기업은 해당 국가의 신고대상 사업연도의 적격소유지분에 대한 지분 보유자의 투자 감소분을 작성합니다. 감소분은 지분 보유자의 투자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투자액은 0 미만이 될 수 없습니다.
- 3.2.3.1.(b).5 적격소유지분에 대한 소유자의 투자가액 잔액은 이전 연도의 잔액에 추가 투자액을 더하고, 여기에서 신고대상 사업연도 중 발생한 적격소유지분으로부터의 수입을 공제한 후의 금액입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작성 방법

3.2.3.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선택

(a) 국조법 시행령 제134조 제2항, 제4항부터 제8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에 따른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 운용 방법 등

- 3.2.3.2.(a).2 신고구성기업은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이 설정된 사업연도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간주분배세액을 작성합니다.
- 3.2.3.2.(a).3 이후 각 사업연도 말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의 잔액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에 따라 구성기업(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이 납부한 세액, 해당 국가의 순글로벌최저한세결손에 최저한세율을 곱한 금액(환입계정결손금액) 및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환입계정결손이월금액의 순으로 감액하나, 0 미만은 되지 않도록 합니다.
- 3.2.3.2.(a).4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이 설정된 사업연도 종료 후 네 번째 사업연도의 종료일에 잔액이 있는 경우(해당 표의 첫 번째 행)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8조제2항이 적용됩니다. 구성기업(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이 다국적기업 그룹에서 이탈하거나 거의 모든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이탈 등”)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제2항부터 4항까지가 적용됩니다. 이 금액은 당기추가세액가산액 발생 여부를 판정하는 데 사용되며 그 결과는 3.3.3.1에 작성됩니다.

(b) 간주분배세액 선택 구성기업의 이탈 등에 대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적용

- 3.2.3.2.(b).1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의 잔액이 있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실효세율 또는 추가세액을 다시 계산하여야 하는 모든 이전 사업연도를 식별합니다.
- 3.2.3.2.(b).2 추가세액 증가분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제2항의 적용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계산되는 추가세액의 합계액입니다.
- 3.2.3.2.(b).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처분환입비율은 다음의 공식을 사용하여 각각의 이탈등 구성기업(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에 대해 결정됩니다.
[계산식] 이탈등 구성기업(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 해당국가의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3.2.4 구성기업(공동기업그룹 기업)별 계산

(a) 전환기 국가별 간소화 신고체계 선택

- 3.2.4.(a).1 신고구성기업은 국가별로 전환기사업연도 중에 전환기 국가별 간소화 신고체계를 적용하는 것을 선택한 경우는 “여”로 작성합니다. 이 경우
- 해당 국가에서 추가세액이 발생하고 이것이 각 구성기업별로 배분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국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및 해당될 경우 하위그룹의 일부)에 대해 3.2.4를 작성하게 됩니다(추가세액을 구성기업에 배분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항에 관하여는 3.4.1의 설명을 참조합니다)
 - 해당 소재지국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및 해당될 경우 하위그룹의 일부)은 3.2.4.1.(a).3.(e), 3.2.4.1.(a).3.(m), 3.2.4.1.(a).3.(u), 3.2.4.1.(a).3.(v) 및 3.2.4.1.(a).3.(z), 3.2.4.1.(c), 3.2.4.1.(d), 3.2.4.2.(c).3.(m), 3.2.4.2.(c).3.(p), 3.2.4.3, 3.2.4.4.(a) 및 3.2.4.4.(b)을 작성할 때 해당 부분에 대한 설명을 참조합니다.
 - 3.2.4.1.(a) 및 3.2.4.2.(c)에 조정된 순액을 작성합니다. 신고구성기업은 그 조정된 순액이 양수이면 가산액 항목에 작성하고 음수이면 차감액 항목에 작성합니다.
-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를 적용하는 국가가 적격소재지국추가세제도 적용면제를 적용할 때 전환기 국가별 간소화 신고체계를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 적용면제를 적용할 때 전환기 국가별 간소화 신고체계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b) 연결납세그룹에 대한 통합신고

- 3.2.4.(b) 신고구성기업은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연결납세에 따른 통합신고방식(3.2.4에서 연결납세를 적용하는 기업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구성기업으로 취급하는 신고방식을 말합니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납부되는 세금을 하나로 계산할 목적으로 연결납세 대상 구성기업의 익금과 손금을 통합(이는 연결납세 대상 구성기업이 그룹을 대신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할 것
 - 모든 연결납세 대상 구성기업은 연결기업이 전부 소유할 것
 - 연결납세그룹에 속한 모든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은 글로벌최저한세 규칙 적용 상 같은 소재지국에 소재할 것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4조제1항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제15호에 따라 소재지국에서 그룹 내부거래를 통합하는 연결회계조정의 적용을 선택할 것. ‘3.2.4’는 대상 사업연도 중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되거나 구성기업에서 제외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들이 연결납세그룹에 포함되어 있는지(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각 구성기업별로 작성합니다. 마찬가지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 하에서 실효세율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기업들(투자구성기업 및 보험투자기업)에 대해서도 연결납세그룹 포함 여부와 관계 없이 각 구성기업별로 ‘3.2.4’를 작성합니다.
- 3.2.4.(b).1 신고구성기업은 소재지국에서 대상조세 목적 상 사용되는 연결납세그룹의 납세자번호를 작성합니다.
- 3.2.4.(b).2 신고구성기업은 연결납세그룹에 속한 각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소재지국 납세자번호를 모두 작성합니다.

작성 방법

3.2.4.1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

(a) 회계상 순손익에 대한 조정

- 3.2.4.1.(a) 최종모기업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7조의2제2항제1호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3조가 적용되는 소유지분 보유자에게 전부 소유되어 3.2.4.1.(d).5에서 "예외, 전부소유"로 작성되는 경우, 그 최종모기업(최종모기업이 직접 또는 다른 투시과세기업을 통해 간접으로 전부 소유하는 투시과세기업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8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그 투시과세기업이 최종모기업과 같은 소재지국에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대해서는 표 3.2.4.1.(a)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 3.2.4.1.(a).1 신고구성기업은 구성기업, 공동기업, 공동기업자회사의 각 소재지국에서 대상조세 목적으로 사용하는 납세자번호를 작성합니다. 납세자번호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을 식별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번호나 법인등록번호 등 기능적으로 유사한 번호(코드)를 작성합니다.
- 3.2.4.1.(a).2 신고구성기업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본점과 고정사업장 간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의 배분,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에 따른 투과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의 배분 등을 완료한 후의 회계상 순이익을 작성합니다.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9조제5항에 따른 선택에 따라 투시과세기업으로 취급되는 투자기업 또는 보험투자기업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작성합니다.
- 3.2.4.1.(a).3.(e), (m), (u), (v), (z) 전환기 국가별 간소화 신고체계 선택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구성기업은 해당 란을 작성합니다.
- 3.2.4.1.(a).3.(n)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라 회계상 순손익에 대한 조정사항을 작성합니다. 특히, 회계상 이익으로 계상되어야 하는데 당기법인세비용의 차감으로 계상된 금액은 가산액에 작성하며, 반면 당기법인세비용 또는 다른 대상조세의 차감으로 계상되어야 하는데 회계상 이익으로 계상된 경우에는 이를 차감시키는 조정을 합니다.
- 3.2.4.1.(a).4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 금액을 작성합니다.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5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산정한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배분액을 작성합니다.

(b) 본점과 고정사업장간 손익의 국가간 배분 및 투과기업 손익의 국가간 배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6조제4항부터 제7항, 동법 시행령 제107조 및 제108조)

- 3.2.4.1.(b)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에서 이미 구분 재무제표를 유지하고 있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또는 결손이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에 이미 반영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투과기업에 적용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8조에 따른 조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9조제5항에 따른 선택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전환기 국가별 간소화 신고체계의 선택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구성기업은 이 란을 작성합니다.
- 3.2.4.1.(b).1 신고구성기업은 소재지국에서 대상조세 목적으로 사용되는 구성기업,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납세자번호를 작성하며, 납세자번호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을 식별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번호나 법인등록번호 등 유사한 기능을 가진 번호(코드)를 작성합니다.
- 3.2.4.1.(b).2 해당 조정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을 이 열에 작성합니다. 하나 이상의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 열에 작성되는 금액은 먼저 이루어지는 조정을 고려한 이후의 회계상 순손익을 반영합니다.
- 3.2.4.1.(b).3 신고구성기업은 다음 각 호의 조정사항을 확인해 각각의 조정에 대해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에 대한 가산액 혹은 차감액을 작성합니다. 여러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각 행 별로 하나의 조정사항을 작성하며, 다음 순서로 조정사항을 작성합니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조정: 해당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무국적 고정사업장에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을 배분하는 가산조정을 하거나, 해당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본점의 경우 고정사업장에 배분하는 소득·결손을 차감하는 조정사항을 작성합니다.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을 투과기업의 고정사업장에 배분하는 조정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8조제3항에 따른 조정: 그룹기업이 아닌 소유지분 보유자에게 배분된 금액에 대해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을 감액하는 경우의 조정액을 작성합니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8조제1항에 따른 조정: 투과기업에서 해당 소재지국의 고정사업장 또는 무국적 고정사업장에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을 배분(가산액으로 작성합니다)하거나, 무국적 투과기업(또는 이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최종모기업인 투과기업)에서 다른 소재지국의 고정사업장으로 배분(차감액으로 작성합니다)하는 조정사항을 작성합니다.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 최종모기업이 아닌 투시과세기업에서 해당 소재지국에 있는 주주구성기업으로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배분(가산액으로 작성합니다)하고, 최종모기업이 아닌 투시과세기업으로부터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주주구성기업으로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배분(차감액으로 작성합니다)하는 조정사항을 작성합니다.
 5. 투과기업이 일부 주주의 소재지에서는 투시과세기업으로 취급되고 다른 주주 소재지에서는 역혼성기업으로 취급될 경우 투과기업을 과세상 투시하는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주주구성기업에 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을 배분한 다음 투과기업을 과세상 투시하지 않는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주주구성기업에 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을 해당 투과기업에 배분합니다.

작성 방법

- 3.2.4.1.(b).4 신고구성기업은 소득의 배분이 이루어지는 상대방인 구성기업,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납세자번호를 작성합니다. 납세자번호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을 식별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번호나 법인등록번호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번호(코드)를 작성합니다.
- 3.2.4.1.(b).5 해당 상대방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소재지국의 ISO 3166-1 Alpha 2 표준에 따른 2자리 알파벳 국가 코드를 작성합니다. 무국적구성기업인 경우 “무국적”으로 작성합니다.
- 3.2.4.1.(b).6 3.2.4.1.(b).1에서 글로벌최저한세 소득을 증가시키는 조정금액은 이 열에 작성합니다.
- 3.2.4.1.(b).7 3.2.4.1.(b).1에서 글로벌최저한세 소득을 감소시키는 조정금액은 이 열에 작성합니다.
- 3.2.4.1.(b).8 해당 조정을 마친 후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을 이 열에 작성합니다. 여러 조정이 적용되는 경우 3.2.4.1.(b).2에 따라 작성되는 회계상 순손익은 이 란의 조정사항을 반영한 후의 금액을 작성합니다.

(c) 국가간 손익 조정

- 3.2.4.1.(c) 최종모기업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7조의2제2항제1호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3조가 적용되는 소유지분 보유자에게 전부 소유되어 3.2.4.1.(d).5에서 “예외, 전부보유”라고 작성되는 경우, 그 최종모기업(최종모기업이 직접 또는 다른 투시과세기업을 통해 전부 소유하는 투시과세기업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8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그 투시과세기업이 최종모기업과 같은 소재지국에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대해서는 표 3.2.4.1.(c)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 신고구성기업은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4조제1항제16호에 따라 조정되는 사항만을 이 표에 작성합니다. 이 경우 그룹 내 기업들의 국가 간 거래 금액이 3천5백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조정사항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전환기 국가별 간소화 신고체계를 선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표를 작성합니다.
- 3.2.4.1.(c).1 신고구성기업은 조정의 대상이 되는 기업으로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 또는 무국적 구성기업 등의 납세자번호를 작성합니다. 납세자번호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을 식별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번호나 법인등록번호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번호(코드)로 식별될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 3.2.4.1.(c).2 신고구성기업은 해당 조정의 근거를 다음 각 호 중에서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17호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9호
- 3.2.4.1.(c).3 신고구성기업은 해당 조정과 관련한 상대방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납세자번호를 작성합니다. 납세자번호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나 법인등록번호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번호(코드)로 식별될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 3.2.4.1.(c).4 신고구성기업은 해당 조정과 관련한 상대방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소재지국의 ISO 3166-1 Alpha 2 표준에 따른 2자리 알파벳 국가 코드를 작성합니다. 무국적구성기업인 경우 “무국적”으로 작성합니다.
- 3.2.4.1.(c).5 3.2.4.1.(c).1에 명시된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증가시키는 조정금액은 이 열에 작성합니다.
- 3.2.4.1.(c).6 3.2.4.1.(c).1에 명시된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감소시키는 조정금액은 이 열에 작성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9호에 따른 조정을 적용하여 비용을 부인하면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이 증가되므로 이 열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d)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7조의2에 따른 최종모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감액

- 3.2.4.1.(d)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7조의2가 적용되는 경우 신고구성기업은 전환기 국가별 간소화 신고체계 선택 여부에 관계없이 이 표를 작성합니다.
- 3.2.4.1.(d).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7조의2가 적용되는 경우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은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입니다. 이 경우 신고구성기업은 최종모기업의 납세자번호를 작성합니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7조의2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고정사업장의 납세자번호를 작성합니다.
- 납세자번호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을 식별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번호나 법인등록번호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번호(코드)를 작성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7조의2가 공동기업그룹 기업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납세자번호를 작성합니다.
- 3.2.4.1.(d).2 해당 조정 근거를 다음 각 호 중에서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7조의2제2항제1호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7조의2제2항제2호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7조의2제1항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제3항

작성 방법

- 3.2.4.1.(d).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가 적용되는 각 소유지분 보유자 또는 배당수취자 별로 행을 달리하여 작성하며, 자연인은 총계로 표시합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의 감소가 적용되는 소유지분 보유자 또는 배당수취자를 확인합니다.
1. 각 소유지분의 보유자(또는 배당수취자)에 대한 다음의 정보를 각각 작성합니다.
 - i. 해당 인의 납세자번호
 - ii. 해당 인이 세무상 거주자인 국가(국가코드)
 - iii. 해당 인에 적용되는 명목세율 또는 합리적 예상세율(소유지분 귀속소득금액에 대한 최종모기업의 조정 대상조세와 소유지분 보유자의 부담세액의 합계를 귀속소득금액으로 나눈 수치 등). 이 경우 소유지분 보유자에게 복수의 명목세율이 적용될 때에는 적용 가능한 가장 낮은 명목세율(세율이 15%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제2항제1호가 적용되고 수취인이 자연인인 경우 그 자연인이 세무상 거주자인 국가들과 각 국가에서의 해당 자연인의 수를 함께 작성합니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3조제2호 및 같은 영 제132조제2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 자연인에 대한 개별 정보가 아닌 해당하는 자연인 총수를 작성합니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3조제3호 및 같은 영 제132조제2항제3호가 적용되는 소유지분 보유자(또는 배당수취인)는
 - i. 납세자번호를 작성하며, 납세자번호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을 식별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번호나 법인등록번호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번호(코드)를 작성합니다.
 - ii. 해당 기업의 유형(정부기업,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제2항제3호의 목적상 연금서비스기업이 아닌 연금펀드)을 작성합니다.
- 3.2.4.1.(d).4 3.2.4.1.(d).3에서의 소유지분 보유자가 최종모기업의 소유지분 중 직접 보유하는 지분을 백분율로 작성합니다.
- 3.2.4.1.(d).5 이 열에는 3.2.4.1.(d).1에 명시된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감소시키는 조정 금액을 작성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7조의2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3.2.4.1.(d).4의 각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금액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77조의2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3.2.4.1.(d).3에 작성된 각 주주(배당수취인을 의미합니다)에게 분배되는 공제가능배당액을 작성합니다. 최종모기업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7조의2제2항제1호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3조가 적용되는 소유지분 보유자에게 전부 소유되는 경우에는 "제외, 전부소유"로 작성하고 조정액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최종모기업이 직접 또는 다른 투시과세기업을 통해 간접으로 전부 소유하는 투시과세기업으로 최종모기업과 같은 소재지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투시과세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3.2.4.2 조정대상조세

(a) 회계상 당기법인세비용 조정

- 3.2.4.2.(a) 최종모기업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7조의2제2항제1호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3조가 적용되는 소유지분 보유자에게 전부 소유되어 3.2.4.1.(d).5에서 "제외, 전부소유"라고 작성되는 경우, 그 최종모기업(최종모기업이 직접 또는 다른 투시과세기업을 통해 전부 소유하는 투시과세기업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8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그 투시과세기업이 최종모기업과 같은 소재지국에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대해서는 표 3.2.4.2.(a)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 3.2.4.2.(a).1 소재지국에서 대상조세 납부를 위해 사용하는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납세자번호를 작성하며, 납세자번호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을 식별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번호나 법인등록번호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번호(코드)를 작성합니다.
- 3.2.4.2.(a).2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의 작성과 관련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이 다른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으로부터 대상조세를 배분한 후 당기법인세비용을 작성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9조제5항에 따른 선택에 따라 투시과세기업으로 취급되는 투자구성기업 또는 보험투자기업에 대해서도 대상조세 배분이 적용됩니다. 이 표에 작성된 신고 후 조정은 실효세율 조정과 일치하는 신고대상 사업연도 외의 사업연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신고 후 조정은 경정대상 사업연도의 대상조세 감소액이 경미한 감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및 경미한 감액에 해당하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의 감소 조정을 의미합니다.
- 3.2.4.2.(a).3.(c)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제1호나목에 따라 당기법인세비용의 차감으로 계상된 적격환급 가능세액공제 또는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금액을 작성합니다.
- 3.2.4.2.(a).3.(f)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비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비적격양도 가능세액공제에 대해 당기법인세비용의 차감으로 계상되지 않은 경우 그 조정금액을 작성합니다.
- 3.2.4.2.(a).3.(g)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제2호라목에 따라 이전 사업연도에 대상조세로 납부했으나 해당 사업연도에 환급되었거나 공제된 대상조세 금액을 작성합니다. 이 경우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또는 적격양도가능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3.2.4.2.(a).3.(n)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이 행을 작성합니다.
- 3.2.4.2.(a).3.(p) 고정사업장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이 본점의 비용으로 처리되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6조제5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결손과 관련된 이연법인세비용은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3.2.4.2.(a).4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조정된 대상조세를 작성합니다. 투자기업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5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조정대상조세를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작성 방법

(b) 대상조세 국가간 배분

- 3.2.4.2.(b) 신고구성기업은 전환기 국가별 간소화 신고체계를 선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표를 작성합니다. 적격소재국 추가세제도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구성기업은 다음의 조정대상조세는 작성하지 않아야 합니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 적용으로 국내 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주주구성기업의 법인세비용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소재지국에 소재한 고정사업장에 배분되는 본점의 법인세비용
 3. 혼성기업 또는 역혼성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주주구성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세비용으로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3호 또는 제3호의2에 따라 혼성기업 또는 역혼성기업에 배분되는 것으로서 해당 혼성기업 또는 역혼성기업이 해당 소재지국에 위치하거나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가 무국적 투과기업에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혼성기업 또는 역혼성기업이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의 적용을 받는 경우의 것.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소재지국에 위치한 배당을 하는 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주주구성기업의 법인세비용(예: 순이익에 과세하는 대상조세), 단, 적격소재국추가세액 소재지국에서 부과된 원천징수세는 제외합니다.
- 그러나,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를 적용하는 소재지국에 소재한 주주구성기업 또는 본점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대상조세로서 조정이 필요한 금액은 작성합니다.
-
- 3.2.4.2.(b).1 신고구성기업은 해당 소재지국에서 대상조세 납부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납세자번호를 작성합니다. 납세자번호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을 식별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번호나 법인등록번호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번호(코드)를 작성합니다.
-
- 3.2.4.2.(b).2 구성기업(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조정 전 대상조세 금액을 작성합니다.
-
- 3.2.4.2.(b).3 적용 근거를 그 하위규정까지 작성합니다. 특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5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를 적용할 때는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를 적용한 결과일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5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 -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라고 작성합니다.
- 열 3.2.4.2.(b).6 및 3.2.4.2.(b).7 작성 목적 상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가 적용될 경우 각각의 열과 관련된 첫 번째 행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의 조정을 반영하기 전 금액을 작성하고(이와 관련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제1항의 관련 하위규정을 3.2.4.2.(b).3의 열의 첫 번째 행에 명시합니다.) 두 번째 행에는 조정을 반영한 후의 금액을 작성합니다(이와 관련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의 관련 하위규정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제1항의 각 관련 하위규정과 함께 3.2.4.2.(b).3의 열의 두 번째 행에 명시합니다.).
- [적용근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1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2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3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4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5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6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제1항
-
- 3.2.4.2.(b).4 상대방 구성기업이 그 소재지국에서 대상조세 납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납세자번호를 작성합니다. 납세자번호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나 법인등록번호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번호(코드)로 식별될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
- 3.2.4.2.(b).5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 간 대상조세의 배분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고구성기업은 상대방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 소재지국의 ISO 3166-1 Alpha 2 표준에 따른 2자리 알파벳 국가 코드를 작성합니다. 상대방 구성기업이 무국적구성기업인 경우 ‘무국적’으로 작성합니다.
-
- 3.2.4.2.(b).6 3.2.4.2.(b).1에 작성된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대상조세에서 가산되는 금액을 작성합니다. 이 경우 대상조세의 배분 금액에는 당기법인세비용과 이연법인세비용을 모두 포함합니다.
-
- 3.2.4.2.(b).7 3.2.4.2.(b).1에 작성된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대상조세에서 차감되는 금액을 작성합니다. 이 경우 대상조세의 배분 금액에는 당기법인세비용과 이연법인세비용을 모두 포함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작성 방법

(c) 이연법인세

3.2.4.2.(c)	최종모기업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7조의2제2항제1호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3조가 적용되는 소유지분 보유자에게 전부 소유되어 3.2.4.1.(d).5에서 "제외, 전부소유"라고 작성되는 경우, 그 최종모기업(최종모기업이 직접 또는 다른 투시과세기업을 통해 간접으로 전부 소유하는 투시과세기업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8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그 투시과세기업이 최종모기업과 같은 소재지국에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대해서는 표 3.2.4.2.(c)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3.2.4.2.(c).1	신고구성기업은 해당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납세자번호를 작성합니다. 납세자번호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을 식별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번호나 법인등록번호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번호(코드)를 작성합니다.
3.2.4.2.(c).2	신고구성기업은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기준에 따른 이연법인세비용 조정 전 금액으로서 최저한세율로 다시 계산하지 않은 금액을 작성합니다. 자산 또는 부채의 회계상 가액과 글로벌최저한세 목적의 장부가액 간 차이가 있는 경우, 이연법인세비용 해당 부분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연법인세비용이 이연법인세비용 계정의 차변에 계상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양수로 작성하며 대변에 계상되는 경우에는 음수로 작성합니다.
3.2.4.2.(c).3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이연법인세비용에 대한 조정사항으로서 최저한세율로 다시 계산하기 전의 금액을 작성합니다. 조정 결과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이 증가할 경우 해당 금액은 가산액으로 작성하며 감소할 경우에는 차감액으로 작성합니다.
3.2.4.2.(c).3.(m) 및 3.2.4.2.(c).3.(p)	전환기 국가별 간소화 신고체계 선택 여부와 관계없이 이 란을 작성합니다.
3.2.4.2.(c).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제2항에 따라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계상된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관련 이연법인세자산을 최저한세율로 재계산하고,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계상된 이연법인세비용과 최저한세율로 재계산된 이연법인세비용 간 차이를 작성합니다. 해당 차이가 글로벌최저한세결손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에 기인하여 발생할 경우 그 금액은 감소로 작성하고, 해당 차이가 이연법인세자산의 환입에 기인하여 발생할 경우 그 금액은 증가로 작성합니다.
3.2.4.2.(c).5	최저한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계상된 이연법인세비용을 최저한세율로 재계산하고, 최저한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계상된 이연법인세비용과 최저한세율로 재계산된 이연법인세비용 간의 차이를 작성합니다. 다시 계산하기 전 해당 사업연도의 이연법인세비용이 이연법인세비용 계정의 차변에 기록된 경우 해당 차이 금액은 증가로 작성하며, 이연법인세비용 계정의 차변에 계상된 경우 해당 차이 금액은 감소로 작성합니다.
3.2.4.2.(c).6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작성 방법

3.2.4.3 구성기업(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별 선택

3.2.4.3	전환기 국가별 간소화 신고체계의 선택 여부에 관계없이 이 란을 작성합니다.
3.2.4.3.4	5년선택의 경우 선택사업연도를 작성합니다.
3.2.4.3.5	5년선택 후 그 선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사업연도를 작성합니다. 취소사업연도 및 취소사업연도의 다음 4개 사업연도에 대해 제출할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에 취소사업연도를 작성합니다.
3.2.4.3.c	신고구성기업은 발생 후 5년을 초과하여 환원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연법인세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을 반영하지 않는 매년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3.2.4.3.i	신고구성기업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계정 또는 계정그룹을 단위로 이연법인세부채를 추적하는 경우 해당 계정 또는 계정그룹에 포함된 개별적인 이연법인세부채의 예상 환원 시점과 관계없이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을 반영하지 않는 5년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3.2.4.3.j	신고구성기업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3에 따라 최종모기업인 투과기업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7조제4항에 따른 결손취급특례 적용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선택은 3.2.3.1.(a).5.i의 행에 특정 소재지국에 대해 작성된 결손취급특례 적용 선택과는 구분됩니다. 또한,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에 대해 결손취급특례 적용 선택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다른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은 최종모기업인 투과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3.2.4.3.k.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6조제4항이 적용되는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을 작성합니다.
3.2.4.3.k.2	해당 조정의 계기가 되는 사건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작성합니다.
3.2.4.3.k.3	신고구성기업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9조제4항 본문에 따라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공정가액으로 조정하는 선택을 한 경우, 같은 영 같은 항 각 호에 따라 조정 전 장부가액과 조정 후 공정가액 간 차액을 자산 및 부채별로 각각 계산한 후 그 차액의 총합을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의 계산에 포함하는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9조제4항제3호가목의 방법을 적용하여 해당 선택이 이루어진 사업연도에 모두 반영하는 경우: "(i)"이라고 작성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9조제4항제3호나목의 방법을 적용하여 해당 선택이 이루어진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나누어 포함하는 경우: "(ii)"라고 작성

3.2.4.4 국제해운소득·결손 제외

(a) 국제해운소득·결손 제외

3.2.4.4.(a)	신고구성기업은 전환기 국가별 간소화 신고체계 선택 여부와 관계없이 이 표를 작성합니다.
3.2.4.4.(a).1	국제해운소득·결손 또는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결손 제외규정을 적용하는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납세자번호를 작성하며, 납세자번호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을 식별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번호나 법인 등록번호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번호(코드)를 작성합니다.
3.2.4.4.(a).2	신고구성기업은 국제해운소득·결손과 관련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된 모든 관련 활동을 작성합니다.
3.2.4.4.(a).3~5	신고구성기업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된 모든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의 총액으로 작성하고 국제해운소득·결손 금액을 계산하여 작성합니다.
3.2.4.4.(a).6	신고구성기업은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결손과 관련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된 모든 활동을 작성합니다.
3.2.4.4.(a).7~9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된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총액으로 작성하고,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결손 금액을 계산하여 작성합니다.
3.2.4.4.(a).10	신고구성기업은 국제해운소득·결손 또는 적격해운부수소득·결손에 귀속되는 인건비를 작성합니다.
3.2.4.4.(a).11	신고구성기업은 국제해운소득·결손 또는 적격해운부수소득·결손의 창출에 사용된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적격 국제해운부수소득·결손의 적용 한도를 초과하는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을 작성합니다.
3.2.4.4.(a).12	신고구성기업은 제외된 국제해운소득·결손 또는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결손과 관련된 모든 대상조세를 작성합니다.

(b)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결손에 대한 국가별 한도

3.2.4.4.(b)	신고구성기업은 전환기 국가별 간소화 신고체계의 선택 여부와 관계없이 이 표를 작성합니다.
3.2.4.4.(b).1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모든 구성기업 및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국제해운소득·결손의 합계를 작성합니다.
3.2.4.4.(b).2	신고구성기업은 50% 상한액을 작성합니다.
3.2.4.4.(b).3	신고구성기업은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모든 구성기업 및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결손의 합계를 작성합니다.
3.2.4.4.(b).4	신고구성기업은 소재지국의 모든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결손이 해당 기업들의 국제해운소득·결손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작성합니다. 해당 초과 금액은 개별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별로 배분되어 해당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 산입되므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는 비용은 해당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계산할 때 공제됩니다. 또한,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해당 초과 소득금액에 귀속되는 인건비와 유형자산장부가액은 실질기반제외소득을 계산할 때 산입됩니다.

작성 방법

3.2.4.5 과세분배방법 적용 선택 관련 정보 (해당시)

3.2.4.5.1	신고구성기업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9조제6항이 적용되는 주주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납세자번호를 작성합니다.
3.2.4.5.2	신고구성기업은 해당 선택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투자기업의 납세자번호를 작성합니다.
3.2.4.5.3	신고구성기업은 해당 주주구성기업이 투자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7조 제1항에 따른 투자기업의 분배금 등을 작성합니다.
3.2.4.5.4	신고구성기업은 투자기업이 납부하는 대상조세 금액으로서 그 주주구성기업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7조제2항에 따라 해당 분배금등과 관련한 세금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작성합니다.
3.2.4.5.5	투자기업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7조제4항에 따른 기간에 미분배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 중 해당 주주구성기업이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금액을 작성합니다.

3.2.4.6 그 밖의 회계기준

3.2.4.6.1	신고구성기업은 다음을 작성합니다. 1. 소재지국 구성기업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6조제2항에 따라 최종모기업회계기준이 아닌 인정 회계기준 또는 공인회계기준을 적용하여 회계상 순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그 구성기업 2. 소재지국 공동기업자회사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공동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사용된 회계기준이 아닌 인정회계기준 또는 공인회계기준을 적용하여 회계상 순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그 공동기업자회사 3. 소재지국 공동기업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0조제2항에 따라 최종모기업회계기준이 아닌 인정회계기준 또는 공인회계기준을 적용하여 회계상 순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그 공동기업
3.2.4.6.2	신고구성기업은 구성기업,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자회사의 회계상 순이익 계산에 사용된 인정회계기준 또는 공인회계기준을 작성합니다.

3.3 추가세액 계산

3.3.1 추가세액

3.3.1.a	신고구성기업은 소재지국에 대한 추가세액비율을 작성합니다.
3.3.1.b	신고구성기업은 소재지국에 대한 실질기반제외소득을 작성합니다.
3.3.1.c	신고구성기업은 소재지국에 대한 초과이익을 작성합니다.
3.3.1.d	신고구성기업은 소재지국에 대한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을 작성합니다.
3.3.1.e	신고구성기업은 소재지국에서 납부할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을 작성합니다.
3.3.1.f	신고구성기업은 소재지국에 대한 추가세액을 작성합니다.

3.3.2 실질기반제외소득의 계산 (해당시)

3.3.2.1 실질기반제외소득 합계

3.3.2.1	신고구성기업은 신고구성기업이 이 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3.2.3.1.(a).1.c의 실질기반제외소득을 적용하지 않는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3.3.2.1.1	소재지국에서 활동하는 적격종업원의 적격인건비에는 다음의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자본화되어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에 포함되는 인건비 2. 구성기업의 국제해운소득·결손 및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결손에 귀속되는 인건비 신고대상 사업연도 동안 소재지국의 종업원이 그 활동 중 50% 이하를 고용주의 소재지국에서 다국적기업그룹을 위해 수행하는 경우에는 고용주의 소재지국에서 사용되는 종업원의 근무시간에 귀속시킬 수 있는 적격인건비 비율만큼만 적격종업원의 적격인건비로 고려됩니다. 최종모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귀속되는 적격인건비는 적격종업원의 적절한 적격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 소유지분의 이전으로 인해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에 해당하게 되거나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해당 구성기업의 적격인건비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0조3호가목따라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되는 비용만을 고려하여 계산합니다.
3.3.2.1.2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대한 반영비율을 작성합니다.
3.3.2.1.3	소재지국에 위치하는 적격유형자산의 장부가액에는 다음의 장부가액이 모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판매, 금융리스, 또는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토지 및 건물이 포함됩니다)의 장부가액 2. 구성기업의 국제해운소득 및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의 창출에 사용되는 유형자산의 장부가액 신고대상 사업연도 기간 동안 적격유형자산이 소유자(해당 리스이용자를 포함합니다)의 소재지국에 50% 이하의 기간 동안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이 소유자(해당 리스이용자를 포함합니다)의 소재지국에 소재하던 기간에 귀속되는 유형자산 장부가액만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으로 고려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에 따라 최종모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비례적으로 귀속되는 적격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은 적절한 적격유형자산의 장부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 소유지분의 이전으로 인해 다국적기업 그룹의 구성기업에 해당하게 되거나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해당 구성기업의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0조3호나목에 따라 해당 구성기업이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이었던 사업연도 중의 적절한 기간에 상응하는 만큼 비례적으로 조정하여 계산합니다.
3.3.2.1.4	신고구성기업은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대한 반영비율을 작성합니다.
3.3.2.1.5	신고구성기업은 소재지국의 실질기반제외소득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작성 방법

3.3.2.2 실질기반제외소득 계산 목적상 적격인건비 및 적격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의 고정사업장 배분

- 3.3.2.2.1 신고구성기업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제9항 및 제10항(고정사업장에 대한 배분을 의미합니다) 전에 소재지국 내에 소재하는 모든 본점에 대한 적절한 적격인건비 총계를 작성합니다.
- 3.3.2.2.2 신고구성기업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조정(고정사업장에 대한 배분을 의미합니다) 전에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모든 본점에 대한 적절한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 총계를 작성합니다.
- 3.3.2.2.3 신고구성기업은 신고구성기업은 글로벌최저한세 목적상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소재지국의 ISO 3166-1 Alpha 2 표준에 따른 2자리 알파벳 국가 코드를 작성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적격유형자산과 적격인건비가 배분되는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소재지국별로 별도의 행을 작성합니다. 고정사업장이 글로벌최저한세 목적상 무국적인 경우 신고구성기업은 “무국적”으로 작성합니다.
- 3.3.2.2.4 신고구성기업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3.3.2.2.3에서 작성된 각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에 배분된 적격인건비의 총계를 작성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8조제3항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7조의2제2항에 따라 소득이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제외된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적격인건비는 같은 비율로 실질기반제외소득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3.3.2.2.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3.3.2.2.3에서 작성된 각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에 배분된 적격유형자산의 장부가액 총계를 작성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8조제3항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7조의2제2항에 따라 소득이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제외된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은 같은 비율로 실질기반제외소득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3.3.2.2.4 및 3.3.2.2.5 고정사업장의 적격인건비 및 적격유형자산은 본점의 적격인건비 및 적격유형자산에 고려되지 않습니다(본점의 적격인건비와 적격유형자산은 자신의 고정사업장에 배분되는 적격인건비와 적격유형자산 금액만큼 각각 감소합니다).

3.3.2.3 실질기반제외소득 계산 목적상 투과기업의 적격인건비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의 배분

- 3.3.2.3.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제9항 및 제10항 조정 후 같은조 제11항에 따른 조정 전에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모든 투과기업에 대한 적절한 적격인건비의 장부가액 총계를 작성합니다.
- 3.3.2.3.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제9항 및 제10항 조정 후 같은조 제11항에 따른 조정 전에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모든 투과기업에 대한 적절한 적격유형자산의 장부가액 총계를 작성합니다.
- 3.3.2.3.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제11항제1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글로벌최저한세 목적상 주주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이 소재하는 소재지국의 ISO 3166-1 Alpha 2 표준에 따른 2자리 알파벳 국가 코드를 작성합니다. 무국적 구성기업인 경우 “무국적”으로 작성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제11항제1호에 따라 적격인건비 및 적격유형자산이 귀속되는 주주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이 소재하는 각 소재지국별로 별도의 행을 작성합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제11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7조의2제2항의 적용 후에 최종모기업에 배분되는 적격인건비 및 적격유형자산의 경우 별도의 행에 “최종모기업”이라고 작성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제1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다국적기업의 실질기반제외소득 계산에서 제외되는 그 밖의 모든 적격인건비 및 적격유형자산에 대해 “해당되지 않음”으로 작성합니다.
- 3.3.2.3.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제11항제1호가 적용되는 경우 신고구성기업은 3.3.2.3.3에서 작성된 각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주주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에 배분되는 적절한 적격인건비 총계를 작성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제11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7조의2제2항 적용 후에 최종모기업에 귀속되는 적격인건비를 작성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제1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실질기반제외소득에서 제외되는 적격인건비를 작성합니다.
- 3.3.2.3.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제11항제1호가 적용되는 경우 3.3.2.3.3에 작성된 각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주주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에 배분되는 적격유형자산의 장부가액 총계를 작성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제11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7조의2제2항 적용 후에 최종모기업에 귀속되는 적절한 적격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을 작성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제1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실질기반제외소득에서 제외되는 적격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을 작성합니다.
- 3.3.2.3.4 및 3.3.2.3.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적격인건비 및 적격유형자산은 실질기반제외소득에서 제외됩니다.
1. 역혼성기업에 배분되는 회계상 순손익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8조제3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에서 제외되는 비그룹 구성원에게 귀속되는 회계상 순손익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7조의2제2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에서 제외되는 회계상 순손익으로서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의 순손익
 4. 적격종원 및 적격유형자산이 주주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 소재하지 않을 때 해당 주주구성기업에 귀속되는 회계상 순손익

작성 방법

3.3.3 당기추가세액가산액

3.3.3.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9조제2항 외의 당기추가세액가산액

3.3.3.1	신고구성기업은 실효세율 조정 조항을 적용하는 경우 이 표를 작성합니다.
3.3.3.1.1	신고구성기업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9조제1항에 따라 이전 사업연도에 대한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의 재계산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모든 실효세율 조정의 근거 규정을 선택합니다. [관련 근거 규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10호(총자산처분이익의 조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7조제3항(이연법인세부채를 계상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사업 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이연법인세부채와 관련된 법인세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 및 제2항(신고 후 감액 경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4항(당기법인세비용 계상 후 3년 이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8조제2항(적격분배과세제도 특례 선택을 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4조 제4항에 따라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이 설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그 후 네 번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가산한 간주분배세액에 상응하는 금액이 실제로 과세되지 아니한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제2항 및 제3항(적격분배과세제도 특례 적용 구성기업의 이탈 등의 경우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잔액)
3.3.3.1.2	신고구성기업은 3.3.3.1.1에 작성된 실효세율 조정의 근거 규정이 적용된 이전 사업연도를 작성합니다.
3.3.3.1.4~9.a	이전에 작성된 금액에 대해서는 관련 실효세율 조정의 근거 규정이 적용된 이전 사업연도(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에 적용되는 모든 조정이 고려됩니다.
3.3.3.1.4~9.b	재계산된 금액에 대해서는 관련 실효세율 조정의 근거 규정이 적용된 이전 사업연도(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및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모든 조정이 고려됩니다.
3.3.3.1.10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은 이전에 작성된 추가세액과 재계산된 추가세액 간의 차액과 동일합니다.

3.3.3.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9조제2항에 따른 당기추가세액가산액

3.3.3.2	이 표는 다국적기업그룹이 해당 소재지국에 양(+)의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3.3.3.2.1	신고구성기업은 소재지국에 대한 음(-)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을 작성합니다.
3.3.3.2.2	신고구성기업은 소재지국에 대한 글로벌최저한세결손을 작성합니다.
3.3.3.2.3	신고구성기업은 소재지국에 대한 조정대상조세예상액을 작성합니다.
3.3.3.2.4	신고구성기업은 소재지국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9조제2항에 따른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을 작성합니다.

3.3.4 적격소재국추가세액

3.3.4.1	신고구성기업은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에에서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사용된 회계기준이 아닌 회계기준을 기반으로 국내 초과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신고구성기업은 이 열을 작성합니다. 신고구성기업은 적격소재국 추가세제도에 따라 국내 초과이익 계산에 사용하기 위한 회계기준으로서 소재지국의 공인회계기준에 의해 허용되는 인정회계기준 또는 중대한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조정되는 공인회계기준을 작성합니다.
3.3.4.2	신고구성기업은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대한 소재지국의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액을 작성합니다. 이 금액은 1.2.2.3에 작성된 통화로 작성합니다. 납부할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이 현지 통화로 결정된 경우, 해당 금액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사용된 공인회계기준에 따른 외화환산 원칙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작성 통화로 변환되어야 합니다.
3.3.4.3	신고구성기업은 적격소재국추가세 목적상 적용되는 최저한세율이 15%보다 높은 경우 그 세율을 작성합니다.
3.3.4.4	신고구성기업은 실효세율 계산 목적상 소득과 세금의 합산 기준이 글로벌최저한세 규칙과 다르다면 그 기준을 작성합니다.
3.3.4.5	신고구성기업은 연결재무제표 작성 통화와 다른 경우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 목적으로 사용되는 통화를 작성합니다.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 적용면제를 적용하기 위해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를 선택하는 경우(그리고 해당 소재지국 또는 하위그룹에 대해 적격소재국추가세 적용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제3장'에 작성된 금액은 적격소재국 추가세 목적상 사용되는 통화로 작성합니다.
3.3.4.6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에에서 현지 회계기준에 따라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을 계산할 것이 요구되고 해당 소재지국 내 하나 이상의 구성기업이 현지통화가 아닌 통화를 기능통화로 사용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 통화 또는 현지 통화를 사용하여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5년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3.3.4.7	신고구성기업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제3항에 따른 실질기반제외소득이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여"로 작성합니다.
3.3.4.8	신고구성기업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른 최소적용제외 특례가 적격소재국추가세 제도 목적으로도 사용 가능한 경우 "여"로 작성합니다.

작성 방법

3.4 추가세액 배분과 귀속

3.4.1 해당 국가에 대한 소득산입규칙의 적용

3.4.1	이 정보는 저율과세되는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에 적격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에 대해 기업별로 해당 정보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1. 단일 모기업이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하고 그 모기업의 소득산입비율이 100%인 경우에는 3.4.1.3.a에 작성되는 모기업의 추가세액배분액은 3.3.1.f에 작성되는 소재지국 추가세액과 동일합니다. 2. 모든 모기업의 소득산입비율이 소재지국의 각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들에 대해 모두 동일한 경우
3.4.1.1.a	추가세액이 배분되는 그룹내 기업은 구성기업, 소수지분구성기업, 투자기업, 저율과세국가에 소재하는 공동기업 그룹 기업 또는 무국적구성기업 등으로서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 미만인 기업입니다.
3.4.1.1.b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 개별 구성기업별로 추가세액을 배분할 때 해당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는 별도의 배분 기준을 사용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1조제1항제1호가 적용되는 경우 각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은 재계산 대상인 이전 사업연도의 해당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이 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1조제1항제2호가 적용될 때에는 조정대상조세가 0보다 작고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에 최저한세율을 곱한 값보다 작은 구성기업에 대해서만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이 산정되며 해당 구성기업이 여럿인 경우에는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x 최저한세율) - 조정대상조세]를 기준으로 배분한 글로벌 최저한세소득을 비례적으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두 조항이 모두 적용되는 경우에는 상기에 서술된 각 대체 배분 기준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3.4.1.1.c	저율과세구성기업 또는 저율과세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추가세액은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이 있는 저율과세구성기업 또는 저율과세 공동기업그룹 기업에 대해 구성기업별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이 소재지국의 모든 구성기업(공동기업그룹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해당 저율과세국가의 추가세액에 곱하여 계산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저율과세구성기업 또는 저율과세 공동기업 그룹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이 아닌 3.4.1.1.b에서 설명한 대체 배분 기준을 적용하여 추가세액을 배분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9조제6항에 따른 과세분배방법이 적용될 때에는 3.4.1.1.b를 작성하지 않으며 저율과세구성기업 또는 저율과세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추가세액은 같은 항 제2호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7조제6항(그 선택의 취소사업연도 대상)에 따라 계산합니다. 투자기업이나 보험투자기업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1조 및 같은 법 제79조제6항제2호를 모두 적용하여 추가세액을 배분할 때는 3.4.1.1.a 부터 3.4.1.1.c 까지의 행을 해당 투자기업 또는 보험투자기업에 대해 두 번 작성합니다.
3.4.1.2.a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하는 모기업의 납세자번호를 작성합니다. 납세자번호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을 식별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번호나 법인등록번호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번호(코드)를 작성합니다.
3.4.1.2.b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하는 모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의 ISO 3166-1 Alpha 2 표준에 따른 2자리 알파벳 국가 코드를 작성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 신고구성기업은 해당 규정에 따라 모기업이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해야 하는 소재지국을 작성합니다.
3.4.1.2.c	해당 모기업 외의 다른 소유지분 보유자의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하여 작성합니다.
3.4.1.3.b	소유지분구조상 하위에 있는 구성기업으로서 적격소득산입규칙에 따라 부분소유모기업 또는 중간모기업에 부과되는 추가세액을 소득산입규칙 차감세액으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작성 방법

3.4.2 해당 소재지국에 대한 소득납입보완규칙 추가세액

- 3.4.2 표는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3조제3항제1호가 적용되지 않거나 공동기업그룹 기업에 대해 적격소득납입규칙을 적용한 후 남은 추가세액이 0이 되지 않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소재지국의 모든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3조제3항제1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표 3.4.2.를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공동기업그룹 기업 모두에 대해 공동기업그룹의 추가세액이 0으로 줄어드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 3.4.2.1 추가세액 계산이 이루어진 모든 저율과세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에 대해 적격소득납입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란에서 저율과세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에 대해 별도로 작성할 필요가 없고, 신고구성기업은 개별 저율과세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개별적인 납세자번호 대신 "모두"라고 작성하며 납세자번호가 없을 경우 기능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작성합니다.
- 3.4.2.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3조제3항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은 해당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에서 적격소득납입규칙을 적용하는 모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추가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공동기업그룹 기업에 대한 추가세액은 해당 기업의 추가세액 중 최종모기업의 지분에 귀속되는 금액에서 적격소득납입규칙이 적용되는 모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추가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모든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에 적격소득납입규칙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이 란은 소재지국별로 작성되므로 이에 관한 정보는 따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3.4.2.3 신고구성기업은 소재지국의 소득납입보완규칙 추가세액(합계액)을 작성합니다.
- 신고구성기업은 저율과세 구성기업 및 공동기업그룹 기업(저율과세 무국적구성기업을 포함합니다)의 3.4.2.2에 기재된 모든 금액의 합계액을 작성합니다. 추가세액이 산정된 저율과세구성기업(공동기업그룹의 저율과세 기업)에 대해 적격소득납입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3조제2항에 따른 추가세액이 곧 소재지국의 추가세액이 됩니다.

3.4.3 소득납입보완규칙 추가세액 배분

- 3.4.3 신고구성기업은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대해 하나 이상의 소재지국에서 소득납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이 있거나 열 3.4.3.2에서 작성되는 소득납입보완규칙 추가세액 이월 금액이 있으면 이 표를 작성합니다.
- 3.4.3.1 신고구성기업은 소득납입보완규칙을 시행하는 국가의 ISO 3166-1 Alpha 2 표준에 따른 2자리 알파벳 국가 코드를 작성합니다.
- 3.4.3.2 이전 사업연도에 해당 소재지국에 배분된 소득납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액이 그 국가에서 추가적인 당기법인세비용으로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3조제6항에 따라 계산되는 이월금액을 작성합니다.
- 3.4.3.3 및 3.4.3.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3조제6항에 따라 3.4.3.5의 소득납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비율이 0인 경우 해당 국가 내 구성기업의 종업원수 및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은 배분계산식의 분모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소득납입보완규칙을 적용하는 모든 국가에서 소득납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비율이 0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3조제6항).
- 3.4.3.3 고정사업장(투과기업의 고정사업장을 포함합니다)에 배분되는 종업원 수는 해당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가의 소득납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비율을 계산할 때 고려됩니다. 이 경우 구성기업의 종업원 수를 계산할 때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고려합니다.
1. 소득납입보완규칙 시행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기업의 종업원 수는 그 소재지국의 소득납입보완규칙 추가세액 배분비율을 계산할 때 제외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8조제2항제2호).
 2. 고정사업장에 배분되지 않은 투과기업의 종업원 수는 해당 투과기업이 설립된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다른 모든 구성기업에 배분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8조제2항제3호). 또한, 해당 방식으로도 종업원 수가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되지 않는다면 투과기업의 배분되지 않은 종업원 수는 추가세액배분비율 계산에서 제외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8조제2항제4호).
- 3.4.3.4 고정사업장(투과기업의 고정사업장을 포함합니다)에 배분되는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은 해당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가의 소득납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비율을 계산할 때 고려됩니다. 이 경우 구성기업의 유형자산순장부가액을 계산할 때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8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합니다.
1. 소득납입보완규칙 시행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기업이 보유한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은 소재지국의 소득납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비율을 계산할 때 제외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8조제2항제2호).
 2. 고정사업장에 배분되지 않은 투과기업의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은 해당 투과기업이 소재하는 다른 모든 구성기업에 배분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8조제2항제3호). 또한 해당 방식으로도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이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되지 않는다면 투과기업의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은 추가세액배분비율 계산에서 제외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8조제2항제4호).

작성 방법

3.4.3.5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비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3조제4항의 계산식을 준용하여 계산됩니다. 해당 국가에서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중 과세되지 않고 이월된 금액이 3.4.3.2에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모든 소득산입보완규칙 소재지국에서 0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배분비율을 가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소재지국의 소득산입보완규칙 배분비율은 0이 됩니다. 이 열에 작성되는 수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3조제6항을 적용한 후에 계산되는 소득산입보완규칙 배분비율입니다.
3.4.3.6(합계)	소득산입보완규칙을 시행하는 국가에 배분될 총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합계는 표 3.4.3에서 식별된 국가별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의 합계를 작성합니다.
3.4.3.7	소득산입보완규칙 소재지국의 구성기업이 일반 세법에 따라 납부하는 세액에 추가하여 소득산입보완규칙을 적용함에 따라 납부하는 법인세비용을 작성합니다.
3.4.3.8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이월액은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소득산입보완규칙 시행국에 배분되는 3.4.3.6에서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배분액과 소득산입보완규칙 시행으로 구성기업이 납부하는 3.4.3.7에 작성된 법인세비용 간의 차액을 말합니다. 신고대상 사업연도(3.4.3.6)에 대해 소득산입보완규칙을 적용하는 국가에 배분된 금액이 0인 경우, 이전 사업연도로부터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이월액(3.4.3.2)과 소득산입보완규칙을 적용하는 국가에 소재한 구성기업이 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라 부담하는 추가적인 당기법인세비용(3.4.3.7) 간의 차이 금액을 3.4.3.8에 양수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GloBE Information Return

※ Please fill out this form by referring to the notes and instructions on the back page, and do not fill out the shaded areas.

※ Please mark "√" in the [] where applicable.

(Front)

Receipt Number	Filing date
----------------	-------------

1. Information of Filing Entity

① Tax Identification Number		② Telephone Number	
③ Name of Filing Entity		④ E-mail	
⑤ Name of Representative		⑥ Address	
⑦ Fiscal Year	. . . ~ . . .		
⑧ Entity Type	1. Designated Local Entity (Yes / No) 2. Type of Entity (a) Parent Entity [] (b) Transparent Entity [] (c) Hybrid Entity [] (d) Permanent Establishment [] (e) Others []	⑨ Report Category	1. Regular filing [] 2. Amended filing [] 3. Late filing []

2. Information of Filing Agent(s)

⑩ Name of Agent	⑪ TIN of Agent	⑫ Contact Person	⑬ Telephone Number	⑭ E-mail

The Filing Entity confirms that the GloBE Information Return is repor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83(1) and 83(2)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nd the contents have been accurately entered and fully reviewed to the best knowledge of the Filing Entity.

Filing Entity(Corporation)
Filing Entity(Representative)

Year Month date
(Seal)
(Signature or Seal)

The Filing Agent as a qualified tax professional confirms that the tax return has been prepared diligently and in a fair manner.
Filing Agent

(Signature or Seal)

Head of Tax Office

210mm × 297mm [White paper 80g/m² or Coated paper 80g/m²]

Notes

This form and its annex(es) shall be prepared by each Constituent Entity or Designated Local Entity in accordance with Art. 83 (1) and (2)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nd submitted through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System under Art. 2 18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For any matters not specified in this form and its annex, the guidelines established in the 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on Exchange of GloBE Information (GIR MCAA) and the GIR XML Schema User Guide shall be followed.

Instructions

1. ①–⑥ should be filled based on the status as of the date of filing.
2. ⑦ Enter the start and end dates of the year that is subject to reporting.
3. ⑧ Enter an “√” if the Filing Entity is classified as a Designated Local Entity, and also enter an “√” in the relevant box according to the type of the Filing Entity.
4. ⑨ Enter an “√” in the relevant box.
5. ⑩ to ⑭ Provide information regarding the agent filing this form and its annex(es) on behalf of the Filing Entity based on the status as of the date of filing.

※ Please fill out this form by referring to the instructions below.

(Back)

Fiscal Year	. . . ~ . . .	GloBE Information Return Information of Domestic Entities Other than Designated Local Entities					Name of Filing Entity
							Tax Identification Number
No.	① Tax Identification Number	② Name of Filing Entity	③ Name of Representative	④ Address	⑤ Telephone Number	⑥ E-mail	
1							
2							
3							
4							
5							
6							
7							
8							
9							

Instructions

- ①-⑥ In the case where a Designated Local Entity submits the GloBE Information Return to the head of the relevant tax office, the information of each domestic entities other than the Designated Local Entity shall be provided as of the date of filing.

※ Please fill out this form by referring to the instructions on the back page.

(1 of 62)

Fiscal Year	. . . ~ . . .	GloBE Information Return	Name of Filing Entity	
			Tax Identification Number	

1. MNE Group Information

1.1 Identification of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1. UPE is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2. Name of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3. Tax identification number	4. Role	5. Jurisdiction where the Filing CE is located	6. Recipient Jurisdictions for Exchange of Information (if relevant)
Yes/No					

1.2 MNE Group General Information

1.2.1 MNE Group and Reporting Fiscal Year

1. Name of the MNE Group	2. Start date of the Reporting Fiscal Year	3. End date of the Reporting Fiscal Year	4. Amended Return
			Yes/No

1.2.2 MNE General accounting information

1.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of the UPE (type)	2.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used for the CFS of the UPE	3. Presentation currency used for the CFS of the UPE (ISO code)

1.3 Corporate Structure

1.3.1 Ultimate Parent Entity

1. UPE Jurisdiction	
2. Applicable rules?	
3. Name of the UPE	
4. TIN of the UPE	
5. TIN of the UPE in the Filing Jurisdiction (if different, and if any)	
6. Status for GloBE purposes	
7. If the UPE is an Excluded Entity – Type	
8. Jurisdiction under Art. 103 (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if any)	

210mm × 297mm [White paper 80g/m² or Coated paper 80g/m²]

1.3.2 Group Entities (other than the UPE) and members of JV Groups

1.3.2.1 Constituent Entities and members of JV Groups

Changes	1. Changes from previous Reporting Fiscal Year?	<i>Yes/No</i>
Jurisdiction	2. Jurisdiction	
	3. Applicable rules?	
Identification of the Constituent Entity, JV or JV Subsidiary	4. Name of Constituent Entity, JV or JV Subsidiary	<i>KR/ENG</i>
	5. TIN	
	6. TIN for filing jurisdiction (if any)	
	7. Status for GloBE purposes	
Ownership structure of the Constituent Entity, JV or JV Subsidiary	For each entity holding Ownership interests in the Constituent Entity, JV or JV Subsidiary: 8. Type 9. TIN (for CEs or members of JV Groups) 10. Ownership interest held (percentage)	
If the CE is a POPE or an Intermediate Parent Entity, is the Entity required to apply a QIIR?	11. Parent Entity Status	
	12. If the exception provided in Art. 72 (3), (4) of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shall apply, such that the UPE applies the IIR or there is another Intermediate Parent Entity required to apply the IIR, identify the UPE or the other Intermediate Parent Entity (TIN)	
	13. If the exception provided in Art. 72 (6)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shall apply, identify the other POPE required to apply a QIIR (TIN)	
Is UTPR applicable in respect of the entity?	14. Initial phase of International Activity applicable? (Art. 82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i>Yes/No</i>
	15. Aggregate Ownership Interests (respectively Allocable Share of Top-up Taxes) of Parent Entities required to apply a QIIR in respect of the CE (respectively member of JV Group) (in percentage)	
	16. Are the UPE's Ownership Interests in the CE (respectively UPE's allocable share of Top-up Tax for the member of JV Group) greater the aggregate Ownership Interests (respectively allocable share) of Parent Entities required to apply a QIIR in that CE (respectively member of JV group)?	<i>Yes/No</i>

210mm × 297mm [White paper 80g/m² or Coated paper 80g/m²]

1.3.2.2 Excluded Entities

1. Changes from previous Reporting Fiscal Year?	<i>Yes/No</i>
2. Name of the Excluded Entity	
3. Type of the Excluded Entity	

1.3.3 Changes in the corporate structure that occurred during the Reporting Fiscal Year

a.	Were changes in the corporate structure that occurred during the Reporting Fiscal Year not reported because they neither affected the ETR computation or the computation or allocation of Top-up Tax?							<i>Yes/No</i>
1. Name of the Constituent Entity (or other Entity of the MNE Group) or member of JV Group	2. TIN	3. Effective Date of the change	4. Status for GloBE purposes before the change	5. Status for GloBE purposes after the change	6. Entities holding Ownership interests in that CE (or other Entity) or member of JV Group before or after the change	7. Ownership Interests held in that CE (or other Entity) or member of JV Group before the change (Percentage)	8. Ownership Interests held in that CE (or other Entity) or member of JV Group after the change (Percentage)	

1.4 High-level summary of GloBE Information

1. Name of the jurisdiction (ISO)	2. Type of subgroup (if any)	3. Identification of subgroup (if any)(TIN)	4. Name(s) of jurisdiction(s) with taxing rights (ISO)	5. Safe harbour or exclusion applied?	6. ETR range	7. Has application of Substance-based Income Exclusion resulted in no Top-up Tax arising?	8. Top-up Tax payable (QDMTT) – range	9. Top-up Tax payable (GloBE Rules)–range
				<i>[Insert relevant option]</i>	<i>[Insert relevant option]</i>		<i>[Insert relevant option]</i>	<i>[Insert relevant option]</i>
				<i>(a) ~ (h)</i>	<i>(a) ~ (m)</i>	<i>Yes/No</i>	<i>(a) ~ (i)</i>	<i>(a) ~ (i)</i>

210mm × 297mm [White paper 80g/m² or Coated paper 80g/m²]

2. Jurisdictional Safe Harbours and Exclusions

Jurisdictional safe harbours and exclusions – Jurisdictional schedules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complete Section 2 on a jurisdictional basis, for each jurisdiction where exceptions to the GloBE computation apply.

2.1 Characteristics of the jurisdiction

1. Name of the jurisdiction	
2. Type of subgroup (if any)	
3. Identification of subgroup (if any)	
4. Jurisdiction with taxing rights	
5. Existence of reportable differences (Yes/No)	

2.2 Jurisdictional exceptions applicable in respect of this jurisdiction (Top-up Tax reduced to zero)

2.2.1 Safe harbour jurisdiction election

2.2.1.1 Safe harbour election

1. Safe Harbour elected	<i>[insert the relevant option] (a)~(h)</i>
-------------------------	---

2.2.1.2 Permanent safe harbours

(a) Simplified Calculation for Non-material Constituent Entities

	1. Total Revenue of all NMCEs in the jurisdiction	2. Aggregate Simplified Tax of all NMCEs in the jurisdiction
a. Reporting Fiscal Year		
b. 1st preceding Fiscal Year (if applicable)		<i>n.a.</i>
c. 2nd preceding Fiscal Year (if applicable)		<i>n.a.</i>
d. Average of the three Fiscal Years (if applicable)		<i>n.a.</i>

210mm × 297mm [White paper 80g/m² or Coated paper 80g/m²]

2.2.1.3 Transitional safe Harbours

(a) Transitional CbCR safe harbour

1. Total Revenue	
2. Profit (Loss) before Income Tax	
3. Simplified Covered Taxes (Art.86 (6)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b) Transitional UTPR safe harbour

1. Corporate income tax rate	
------------------------------	--

2.2.2 Election for de minimis exclusion

☐ Election to apply the de minimis exclusion for the Reporting Fiscal Year

☐ Simplified Calculations for Non-material Constituent Entities – Constituent Entities that are not NMCEs

	1. Revenue (Financial Accounts)	2. GloBE Revenue	3. Financial Accounting Net Income (or Loss)	4. GloBE Income(or Loss)
a. Reporting Fiscal Year				
b. 1st preceding Fiscal Year (if applicable)				
c. 2nd preceding Fiscal Year (if applicable)				
d. Average of the three Fiscal Years (if applicable)				

210mm × 297mm [White paper 80g/m² or Coated paper 80g/m²]

2.3 MNE Group in the initial phase of international activity (if applicable)

1. First day of the First Fiscal Year in which the MNE Group originally came within the scope of GloBE Rules	
2. Reference Jurisdiction	
3. Net Book Value of Tangible Assets in Reference Jurisdiction for the Fiscal Year in which the MNE Group originally comes within the scope of GloBE Rules	
4. Number of jurisdictions where the MNE Group has Constituent Entities for the Fiscal Year in which the MNE Group originally comes within the scope of GloBE Rules	
5. Tangible Assets of Constituent Entities located outside the Reference Jurisdiction for the Fiscal Year in which the MNE Group originally comes within the scope of GloBE Rules	a. Jurisdiction
	b. Net Book Values of Tangible Assets of all Constituent Entities located in each jurisdiction
6. Number of jurisdictions where the MNE Group has Constituent Entities during the Reporting Fiscal Year	
7. Sum of the Net Book Values of Tangible Assets of all Constituent Entities located in other jurisdictions than the Reference Jurisdiction during the Reporting Fiscal Year	

210mm × 297mm [White paper 80g/m² or Coated paper 80g/m²]

3. GloBE Computations

GloBE Computations – Jurisdictional schedules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complete Section 3 on a jurisdictional basis, for each jurisdiction (or subgroup, where relevant) where exceptions to the GloBE computation do not apply.

3.1 Characteristics of the jurisdiction

1. Name of the jurisdiction	
2. Type of subgroup (if any)	
3. Identification of subgroup (if any) for the ETR and Top-up Tax computation	
4. Jurisdictions with taxing rights	
5. ETR	
6. Adjusted Covered Taxes	
7. Net GloBE Income or Loss	
8. Substance-based Income Exclusion	
9. Additional Current Top-up Tax	
10. Top-up Tax amount under domestic legislation	
11. Elections	
12. Aggregate current tax expense with respect to Covered Taxes after allocations in Art. 11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13. Qualified Refundable Tax Credits or Marketable Transferable Tax Credits (tax expense)	
14. Other tax credits (tax expense)	
15. Deferred tax expense amount	
16. Qualified Refundable Tax Credits or Marketable Transferable Tax Credits (income)	
17. Excess Negative Tax Expense Carry Forward	
18. Transition Rules	

3.2 ETR computation

3.2.1 ETR

a. Financial Accounting Net Income or Loss	b. Net GloBE Income or Loss	c. Income tax expense	d. Adjusted Covered Taxes	e. ETR
	<i>[A]</i>		<i>[B]</i>	<i>[C]=[B]/[A]</i>

210mm × 297mm [White paper 80g/m² or Coated paper 80g/m²]

3.2.1.1 Computation of GloBE Income (Loss)

1. Aggregate FANIL amount after allocations in Art 66 (4) through (7)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ll CEs in the jurisdiction)	
2. Adjustments	Net amount
(a) Net Taxes Expense (Form ^①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b) Excluded Dividends (Form ^②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c) Excluded Equity Gain or Loss (Form ^④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d) Included Revaluation Method Gain or Loss (Form ^⑤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e) Gain or loss from disposition of assets and liabilities excluded (Art. 76 (2) through (4)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nd Art. 128 (2), 129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f) Asymmetric Foreign Currency Gains or Losses (Form ^⑥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g) Policy Disallowed Expenses (Form ^③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h) Prior Period Errors (Form ^⑭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i) Changes in Accounting Principles (Form ^⑭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j) Accrued Pension Expense (Form ^⑦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k) Debt releases (Form ^⑪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l) Stock-based compensation (Form ^⑧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m) Arm's length adjustments (Form ^⑰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n) Qualified Refundable Tax Credit or Marketable Transferable Tax Credit (Form ^⑫ , ^⑬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o) Election for Gains and losses using realisation principle (Form ^⑯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p) Election for Adjusted Asset Gain (Form ^⑩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q) Intragroup Financing Arrangement expense (Form ^⑨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r) Election for intragroup transactions in same jurisdiction (Form ^⑥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s) Insurance company taxes charged to policyholders (Form ^⑩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t) Increase/decrease to equity attributed to Additional Tier One and Restricted Tier One Capital distributions paid/payable or received/receivable (Form ^⑲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u) Constituent Entities joining and leaving an MNE Group (Art. 128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v) Reduction of GloBE Income of the UPE that is a Flow-through Entity (Art. 77-2 (2)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nd Art. 13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w) Reduction of GloBE Income of the UPE that is subject to a Deductible Dividend Regime (Art. 77-2 (1)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nd Art. 13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x) Taxable Distribution Method election (Art. 79 (6)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nd Art. 137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y) International Shipping Income (Art. 66 (3)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nd Art. 106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z) Transactions between Constituent Entities (Art. 89 2 & 4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3. Net GloBE Income (Loss) of the Jurisdiction	

3.2.1.2 Computation of Adjusted Covered Taxes

(a) Total Amount of Adjusted Covered Taxes	
1. Aggregate Current tax expense with respect to Covered Taxes after allocations in Art. 11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ll CEs in the jurisdiction)	
2. Adjustments	Net amount
(a) Covered Tax accrued as an expense in the profit before taxation in the financial accounts (Art. 110 1 a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b) GloBE Loss Deferred Tax Asset established or used (Art. 67 (4)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 113-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c) Covered Taxes for uncertain tax position recorded as a reduction to Covered Taxes in prior year (Art. 110 1 b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d) Qualified Refundable Tax Credit or Marketable Transferable Tax Credits recorded as a reduction to current tax expense (Art. 110 1 c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e) Qualified Flow-through Tax Benefits of Qualified Ownership Interests (Form 4 f through i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f) Current tax expense on income excluded from GloBE Income or Loss (Art. 110 2 a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g) Non-Qualified Refundable Tax Credit, Non-Marketable Transferable Tax Credit or Other Tax Credits not recorded as a reduction to current tax expense (Art. 110 2 b and c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h) Covered Taxes refunded or credited (except for any Qualified Refundable Tax Credit, or Marketable Transferable Tax Credits) not treated as an adjustment to current tax expense (Art. 110 2 d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i) Current tax expense related to uncertain tax position (Art. 110 2 e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j) Current tax expense not expected to be paid within three years (Art. 110 2 f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k) Post-filing adjustments (Art. 68 (1) and (2)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l) Covered Taxes relating to Net Asset Gain or Net Asset Loss (Form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m) Reduction of Covered Taxes of the UPE that is a Flow-through Entity (Art. 133 (3),(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n) Covered Taxes for GloBE Income of the UPE that is reduced under a Deductible Dividend Regime (Art. 13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o) Deemed Distribution Tax (Art. 134 (7)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p) Taxable Distribution Method election (Art. 137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q) Total Deferred Tax Adjustment Amount (Art. 67 (2), (3), (7)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r) Increase or decrease in Covered Taxes recorded in equity or Other Comprehensive Income relating to amounts included in GloBE Income or Loss that will be subject to tax under local tax rules (Art. 110 3 b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s) Excess Negative Tax Expense Carry Forward generated (Art. 116-2 and Art. 119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t) Decrease in Covered Taxes (but not below zero) by the remaining balance of the Excess Negative Tax Expense Carry-forward (Art. 116-2 and Art. 119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3. Adjusted Covered Taxes	

210mm × 297mm [White paper 80g/m² or Coated paper 80g/m²]

(b) Excess Negative Tax Expense Carry-forward

1. Balance from prior years	<i>[A]</i>
2. Excess Negative Tax Expense Carry-forward generated in the reporting fiscal year	<i>[B]</i>
3. Excess Negative Tax Expense Carry-forward utilised for the reporting fiscal year	<i>[C]</i>
4. Excess Negative Tax Expense Carry-forward remaining for subsequent years	<i>[D]=[A]+[B]-[C]</i>

(c) Transitional Blended CFC Regime calculation (if any)

1. CFC Jurisdictions	2. Subgroup	3. Aggregated taxes allocated to that subgroup under a Blended CFC Tax Regime
Total		

3.2.2 Jurisdictional computations relating to deferred tax accounting**3.2.2.1 Deferred Tax adjustments****(a) High-level summary**

1. Deferred tax expense for GloBE purposes before recasting and adjustments (Art. 112 (1)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 Deferred tax expense in the financial accounts	<i>[A]</i>
	b. Deferred tax expense in relation to assets or liabilities for which the GloBE carrying value is different to the accounting carrying value	<i>[B]</i>
	c. Deferred tax expense based on the GloBE carrying value of assets or liabilities	<i>[C]</i>
	d. Deferred tax expense for GloBE purposes before recasting and adjustments	<i>[D]=[A]-[B]+[C]</i>
2. Total amount of the adjustments		<i>[E]</i>
3. Recasting the deferred tax expense to the Minimum Rate	e. Deferred Tax expense for GloBE purposes before recasting	<i>[F]=[D]+[E]</i>
	f. Difference between deferred tax expense recorded at a lower tax rate than the Minimum Rate and recast at Minimum Rate	<i>[G]</i>
	g. Difference between the deferred tax expense recorded at a higher tax rate than the Minimum Rate and recast at Minimum Rate	<i>[H]</i>
4. Total Deferred Tax Adjustment Amount		<i>[I]=[F]+[G]-[H]</i>

210mm × 297mm [White paper 80g/m² or Coated paper 80g/m²]

(b) Breakdown of the adjustments	
1. Adjustments to deferred tax expense	Net Amount
(a) Deferred tax expense related to items excluded from GloBE Income or Loss (Art. 112 (1) 2 a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b) Deferred tax expense related to Disallowed Accruals (Art. 112 (1) 1–2 c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nd Art. 71 (4)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c) Deferred tax expense related to Unclaimed Accruals (Art. 112 (1) 1–2 b 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d) Valuation adjustment or accounting recognition adjustment related to a deferred tax asset (Art. 112 (1) 1–2 b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e) Deferred tax expense arising from a re-measurement related to changes in the tax rate (Art. 112 (1) 1–2 b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f) Deferred tax expense related to the generation and use of tax credits (Art. 112 (1) 1–2 b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g) Substitute Loss Carry Forward DTA or deemed Substitute Loss Carry Forward DTA (Art. 71 (1) through (3)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h) Disallowed Accruals or Unclaimed Accruals paid during the fiscal year (Art. 112 (1) 2 a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i) Recapture Deferred Tax Liability paid during the fiscal year (Art. 112 (1) 2 b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j) Recognition of a loss Deferred Tax Asset not included in the financials (Art. 112 (1)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k) Deferred tax expense adjustment resulting from a reduction to a tax rate (Art. 116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l) Deferred tax expense adjustment resulting from an increase to a tax rate (Art. 116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m) Constituent Entities joining and leaving an MNE Group (Art. 80 4 through 5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n) Deferred tax expense of the UPE that is a Flow-through Entity (Art. 13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o) Deferred tax expense of the UPE that is subject to Deductible Dividend Regime (Art. 13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p) Deferred tax adjustment resulting from transactions between Constituent Entities (Art. 89 3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2. Total amount of the adjustments	[E]

210mm × 297mm [White paper 80g/m² or Coated paper 80g/m²]

(c) Loss carry backs

	1. Deemed deferred tax assets attributable to loss carry backs	2. Covered Tax refund relating to loss carry backs
a. Amount attributed to Prior Fiscal Year X		
b. Amount attributed to Prior Fiscal Year Y, etc.		
:		
c. Total		

3.2.2.2 Recapture mechanism**(a) Annual amounts of DTLs subject to recapture rule**

1. Amount of DTLs subject to recapture rule claimed in the fifth Fiscal Year preceding the Reporting Fiscal Year	<i>[A]</i>
2. Amount of Recaptured Deferred Tax Liability determined in the Reporting Fiscal Year in relation to the fifth Fiscal Year preceding the Reporting Fiscal Year	<i>[B]</i>
3. Amount of DTLs subject to recapture rule claimed for the Reporting Fiscal Year	<i>[C]</i>

(b) Aggregate DTL Recapture accounts

	1. Reporting Fiscal Year	2. Prior Fiscal Year
a. Amount of pre-Transition Year DTLs (Art. 113-2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 74-2 (3)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b. Amount of Outstanding Balance (Art. 113-2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 74-2 (3)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c. Amount of Unjustified Balance (Art. 113-2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210mm × 297mm [White paper 80g/m² or Coated paper 80g/m²]

3.2.2.3 Transition rules

1. Transition Year

(a) Application of Art. 81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 Art. 139 (1) through (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Deferred tax liabilities

1. Deferred tax liabilities at the beginning of the Transition Year	2. Deferred tax liabilities recast at the Minimum Rate (if applicable)

Deferred tax assets

3. Deferred tax assets at the beginning of the Transition Year	4. Deferred tax assets recast at the Minimum Rate (if applicable)	5. Deferred tax assets arising from excluded items under Art. 89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6. Deferred tax assets taken into account for GloBE purposes
<i>[A]</i>	<i>[B]</i>	<i>[C]</i>	<i>[D] = [[A] or [B], if applicable] - [C]</i>

(b) Application of Art. 89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1. Jurisdiction of the disposing entities	2. Tax paid in respect of the transaction(s)	3. Net Deferred tax asset or liability reflected in the financial accounts of the disposing CE(s)	4. Carrying Value of the transferred assets for GloBE purposes	5. Net Deferred tax asset or liability is determined with respect to the transferred assets for GloBE purposes for acquiring CE(s)

210mm × 297mm [White paper 80g/m² or Coated paper 80g/m²]

3.2.3 Jurisdictional elections (if any)

3.2.3.1 Jurisdictional elections (other than Art. 78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 Elections

1. Annual elections		
a. Aggregate asset gain election (Form ¹⁰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b. Immaterial decrease in Covered Taxes election (Art. 68 (2)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c. Election not to apply the Substance-based Income Exclusion (Art. 75 (13)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d. Negative Tax Expense Carry-forward (Art. 119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2. Five-year Elections	3. Election Year	4. Revocation Year
e. Equity Investment Inclusion Election (Form ⁴ d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f. Stock-based compensation election (Form ⁸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g. Realisation principle election (Form ¹⁶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h. Intra-group transactions election (Form ¹⁵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i. Election not to allocate cross-border deferred tax		
5. Other elections	6. Election Year	7. Revocation Year
j. GloBE Loss Election (Art. 67 (4)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nd Art. 113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210mm × 297mm [White paper 80g/m² or Coated paper 80g/m²]

(b) Information requirements related to jurisdictional elections

1. Inclusion of equity gain or loss with respect to an Equity Investment Inclusion Election	
2. Balance of the owner's investment in a Qualified Ownership Interest from prior years	<i>[A]</i>
3. Additions to the owner's investment in a Qualified Ownership Interest	<i>[B]</i>
4. Reductions to the owner's investment in a Qualified Ownership Interest	<i>[C]</i>
5. Outstanding balance of the owner's investment in a Qualified Ownership Interest	<i>[D]=[A]+[B]-[C]</i>

3.2.3.2 Election for Art. 78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1. Deemed Distribution Tax election (Art. 78 (1)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
--	--------------------------

(a) Recapture mechanism for Art. 134 (2), (4) through (8)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 83 (1)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1. Fiscal Year	2. Deemed Distribution Tax determined under Art. 134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3. Deemed Distribution Tax paid or used				4. Outstanding balance of a Deemed Distribution Tax Recapture Account
		3 rd preceding Fiscal Year	2 nd preceding Fiscal Year	1 st preceding Fiscal Year	Reporting Fiscal Year	
4 th preceding Fiscal Year						
3 rd preceding Fiscal Year		Not applicable				
2 nd preceding Fiscal Year		Not applicable	Not applicable			
1 st preceding Fiscal Year		Not applicable	Not applicable	Not applicable		
Reporting Fiscal Year		Not applicable	Not applicable	Not applicable	Not applicable	Not applicable

210mm × 297mm [White paper 80g/m² or Coated paper 80g/m²]

(b) Application of Art. 83 (2) through (4)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1. Reduction to the Adjusted Covered Taxes for a prior Fiscal Year	2. Incremental Top-up tax	3. Disposition Recapture Ratio
<i>[A]</i>	<i>[B]</i>	<i>[C]</i>

3.2.4 Constituent Entity Computations**(a) Election for the transitional simplified jurisdictional reporting framework**

1. Does the MNE Group elect to apply the transitional simplified jurisdictional reporting framework?	<i>Yes/No</i>
--	---------------

(b) Aggregated Reporting for Tax Consolidated Groups

1. Tax Consolidated Group (TIN)	2. Consolidated Entities (TIN)

210mm × 297mm [White paper 80g/m² or Coated paper 80g/m²]

3.2.4.1 GloBE Income of Loss

(a) Adjustments to the Financial Accounts Net Income or Loss

1. CE or member of JV Group (TIN)		
2. FANIL amount after allocations in Art. 66 (4) through (7)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nd Art. 107 & 108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3. Adjustments	Additions	Reductions
(a) Net Taxes Expense (Form ^①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b) Excluded Dividends (Form ^②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c) Excluded Equity Gain or Loss (Form ^④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d) Included Revaluation Method Gain or Loss (Form ^⑤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e) Gain or loss from disposition of assets and liabilities excluded (Art. 76 (2) through (4)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nd Art. 129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f) Asymmetric Foreign Currency Gains or Losses (Form ^⑥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g) Policy Disallowed Expenses (Form ^③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h) Prior Period Errors (Form ^④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i) Changes in Accounting Principles (Form ^④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j) Accrued Pension Expense (Form ^⑦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k) Debt releases (Form ^⑪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l) Stock-based compensation (Form ^⑧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m) Arm's length adjustments (Form ^⑪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n) Qualified Refundable Tax Credit or Marketable Transferable Tax Credits (Form ^⑫ , ^⑬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o) Election for Gains and losses using realisation principle (Form ^⑫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p) Election for Adjusted Asset Gain (Form ^⑩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q) Intragroup Financing Arrangement expense (Form ^⑨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r) Election for intragroup transactions in same jurisdiction (Form ^⑤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s) Insurance company taxes charged to policyholders (Form ^⑩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t) Increase/decrease to equity attributed to Additional Tier One and Restricted Tier One Capital distributions paid/payable or received/receivable (Form ^⑨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u) Constituent Entities joining and leaving an MNE Group (Art. 128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v) Reduction of GloBE Income of the UPE that is a Flow-through Entity (Art. 77-2 (2)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nd Art. 13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w) Reduction of GloBE Income of the UPE that is subject to a Deductible Dividend Regime (Art. 77-2 (1)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nd Art. 13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x) Taxable Distribution Method election (Art. 79 (6)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nd Art. 137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y) International Shipping Income (Art. 66 (3)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nd Art. 106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z) Transactions between Constituent Entities (Art. 89 2 & 4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4. GloBE Income (Loss) of the CE or member of JV Group		

(b) Cross-border allocation of income or loss between a Main Entity and a PE and from an FTE (Art. 66 (4) through (7)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nd Art. 107&108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1. CE or members of JV Groups located in this jurisdiction or stateless CE (TIN)	2. FANIL before the adjustment	3. Basis for the adjustment	4. Other CE or member of JV Group (TIN)	5. Jurisdiction of other CE or member of JV Group (ISO)	6. Additions to this CE	7. Reductions to this CE	8. FANIL after the adjustment

(c) Cross-border adjustments

1. CE or member of JV Group (TIN)	2. Basis for the adjustment	3. Other CE or member of JV Group (TIN)	4. Jurisdiction of other CE (ISO)	5. Additions to this CE	6. Reductions to this CE

(d) Adjustments to the GloBE Income of the UPE under Art. 77-2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1. CE (or member of JV Group) located in this jurisdiction (TIN)	2. Basis for reduction	3. Identification of holders of Ownership Interests or dividend recipients (see note)	4. Ownership interest directly held (in percentage)	5. Reductions for this CE

210mm × 297mm [White paper 80g/m² or Coated paper 80g/m²]

3.2.4.2 Adjusted Covered taxes

(a) Adjustments to the Current tax expense in the Financial Accounts

1. CE or member of JV Group (TIN)		
2. Current tax expense with respect to Covered Taxes after allocations in Art. 11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3. Adjustments	Additions	Reductions
(a) Covered Tax accrued as an expense in the profit before taxation in the financial accounts (Art. 110 1 a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b) Covered Taxes for uncertain tax position recorded as a reduction to Covered Taxes in prior year (Art. 110 1 b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c) Qualified Refundable Tax Credit or Marketable Transferable Tax Credits recorded as a reduction to current tax expense (Art. 110 1 c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d) Qualified Flow-through Tax Benefits of Qualified Ownership Interests (Form④ f through i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e) Current tax expense on income excluded from GloBE Income or Loss (Art. 110 2 a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f) Non-Qualified Refundable Tax Credit Non-Marketable Transferable Tax Credits or Other Tax Credits not recorded as a reduction to current tax expense (Art. 110 2 b and c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g) Covered Taxes refunded or credited (except for any Qualified Refundable Tax Credit, or Marketable Transferable Tax Credits) not treated as an adjustment to current tax expense (Art. 110 2 d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h) Current tax expense related to uncertain tax position (Art. 110 2 e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i) Current tax expense not expected to be paid within three years (Art. 110 2 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j) Post-filing adjustments (Art. 68 (1) and (2)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k) Covered Taxes relating to Net Asset Gain or Net Asset Loss (Form⑩ a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l) Reduction of Covered Taxes of the UPE that is a Flow-through Entity (Art. 133 (5)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m) Covered Taxes for GloBE Income of the UPE that is reduced under a Deductible Dividend Regime (Art. 13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n) Deemed Distribution Tax (Art. 134 (7)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o) Taxable Distribution Method election (Art. 137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p) Total Deferred Tax Adjustment Amount (Art. 67 (2) through (4)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q) Increase or decrease in Covered Taxes recorded in equity or Other Comprehensive Income relating to amounts included in GloBE Income or Loss that will be subject to tax under local tax rules (Art. 110 3 b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4. Adjusted Covered Taxes		

210mm × 297mm [White paper 80g/m² or Coated paper 80g/m²]

(b) Cross allocation of taxes

1. CE located in this jurisdiction or stateless CE (or member of JV Group) (TIN)	2. Covered Taxes of the CE (or member of JV Group) before the adjustment	3. Basis for the adjustment	4. Other CE (or member of JV Group) (TIN)	5. Jurisdiction of other CE (or member of JV Group) (ISO)	6. Additions to this CE	7. Reductions to this CE	8. Covered Taxes of the CE (or member of JV Group) after the adjustment

(c) Deferred tax expense

1. CE or member of JV Group (TIN)		
2. Deferred tax expense amount for GloBE purposes		
3. Adjustments to deferred tax expense	Additions	Reductions
(a) Deferred tax expense related to items excluded from GloBE Income or Loss (Art. 112 (1) 1–2 a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b) Deferred tax expense related to Disallowed Accruals (Art. 112 (1) 1–2 c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c) Deferred tax expense related to Unclaimed Accruals (Art. 112 (1) 1–2 b 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d) Valuation adjustment or accounting recognition adjustment related to a deferred tax asset (Art. 112 (1) 1–2 b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e) Deferred tax expense arising from a re-measurement related to changes in the tax rate (Art. 112 (1) 1–2 b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f) Deferred tax expense related to the generation and use of tax credits (Art. 112 (1) 1–2 b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g) Substitute Loss Carry Forward DTA or deemed Substitute Loss Carry Forward DTA (Art. 71 (1) through (3)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h) Disallowed Accruals or Unclaimed Accruals paid during the fiscal year (Art. 112 (1) 2 a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i) Recapture Deferred Tax Liability paid during the fiscal year (Art. 112 (1) 2 b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j) Recognition of a loss Deferred Tax Asset not included in the financials (Art. 112 (1)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k) Deferred tax expense adjustment resulting from a reduction to a tax rate (Art. 116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l) Deferred tax expense adjustment resulting from an increase to a tax rate (Art. 116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m) Constituent Entities joining and leaving an MNE Group (Art. 80 4 and 5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n) Deferred tax expense of the UPE that is a Flow-through Entity (Art. 13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o) Deferred tax expense of the UPE that is subject to Deductible Dividend Regime (Art. 13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p) Deferred tax adjustment resulting from transactions between Constituent Entities (Art. 89 (3)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4. Difference between deferred tax expense recorded at a lower tax rate than the Minimum Rate and recast at Minimum Rate		
5. Difference between the deferred tax expense recorded at a higher tax rate than the Minimum Rate and recast at Minimum Rate		
6. Total Deferred Tax Adjustment Amount		

3.2.4.3 Constituent Entity elections (or elections that apply to a JV Group)

1. Constituent Entities (or member of JV Group) for which an election is made (TIN)			
2. Annual Elections	a. Election to apply the Simplified Calculations for NMCEs (Simplified Calculations Safe Harbour)		
	b. Debt Release election (Form ^①)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c. Unclaimed Accrual Election (Art. 112 (1) 1–2 b 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3. Five-Year Elections		4. Election Year	5. Revocation Year
	d. Not treating an Entity as an Excluded Entity election (Art. 62 (4)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e. Inclusion of all dividends with respect to Portfolio Shareholdings (Form ^② c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f. Treating foreign exchange gains or losses attributable to hedging as an Excluded Equity Gain or Loss (Form ^④ b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g. Investment entity tax transparency election (Art. 79 (5)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nd Art. 136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h. Taxable distribution method election (Art. 79 (6)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nd Art. 137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i. Unclaimed Accrual Five-Year election (Art. 112 (1) 1–2 b)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4. Other Elections	j. GloBE Loss Election (Art. 67 (4)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 113–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k. Fair value election (Art. 76 (4)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 129 (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1. Constituent Entities (members of JV Groups) for which the election is made (TIN)	2. Fiscal Year of the triggering event	3. Inclusion in the Fiscal Year of the triggering event as provided under Art. 129 (4) 3 a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or 5-year inclusion (as provided under Art. 129 (4) 3 b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210mm × 297mm [White paper 80g/m² or Coated paper 80g/m²]

3.2.4.4 International shipping income exclusion

(a) International shipping income exclusion

1. CE or member of JV Group located in this jurisdiction (TIN)		
International shipping income	2. Category (Art. 106 (1) 1 through 6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3. Revenue	$[A]$
	4. Costs	$[B]$
	5. International Shipping Income	$[C]=[A]-[B]$
Qualified Ancillary International Shipping Income	6. Category (Art. 106 (2) 1 through 5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7. Revenue	$[D]$
	8. Costs	$[E]$
	9. Qualified Ancillary International Shipping Income	$[F]=[D]-[E]$
Effect on substance-based income exclusion	10. Payroll costs attributable to the excluded International Shipping Income or Qualified Ancillary International Shipping Income	
	11. Carrying value of tangible assets used in the generation of the excluded International Shipping Income or Qualified Ancillary International Shipping Income	
Covered taxes	12. Covered taxes attributable to the excluded International Shipping Income or Qualified Ancillary International Shipping Income	

(b) Jurisdictional cap for the qualified ancillary international shipping income exclusion

1. Total International Shipping Income for all CEs (or members of JV Group)	$[A]$
2. 50% cap	$50\% \times [A]$
3. Total Qualified Ancillary International Shipping Income for all CEs (or members of JV Group)	$[B]$
4. Excess of the cap if B exceeds 50% of A	$[B]-50\% \times [A]$

210mm × 297mm [White paper 80g/m² or Coated paper 80g/m²]

3.2.4.5 Information for purposes of Taxable Distribution Method Election (if applicable)

Taxable Distribution Method Election				
1. Constituent Entity-owner (or member of JV Group) for which an election is made (TIN)	2. Investment Entity for which the election is made (TIN)	3. Actual and deemed distributions of the Investment Entity's GloBE Income received by the Constituent Entity-owner	4. Local Creditable Tax Gross-up incurred by the Investment Entity	5. Constituent Entity-owner's proportionate share of the Investment Entity's Undistributed Net GloBE Income

3.2.4.6. Other Accounting Standard

1. Constituent Entity (or member of JV Group) with FANIL based on a different accounting standard (TIN)	2. Acceptable or Authorised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210mm × 297mm [White paper 80g/m² or Coated paper 80g/m²]

3.3 Top-up Tax computation

3.3.1 Top-up Tax

a. Top-up Tax Percentage	b. Substance-based Income Exclusion	c. Excess Profits	d. Additional Current Top-up Tax	e. QDMTT payable	f. Top-up Tax
$[A] = 15\% - ETR$	$[B]$	$[C] = \text{Net GloBE Income or Loss} - [B]$	$[D]$	$[E]$	$=\{[A] \times [C]\} + [D] - [E]$

3.3.2 Computation of Substance-based Income Exclusion (if applicable)

3.3.2.1 Total amount of Substance Based Income Exclusion

Payroll carve-out		Tangible Assets carve-out		Total
1. Relevant Eligible Payroll Costs of Eligible Employees performing activities in the Jurisdiction	2. Application of relevant mark-up percentage for the Reporting Fiscal Year	3. Carrying value of relevant Eligible Tangible Assets located in the jurisdiction	4. Application of relevant mark-up percentage for the Reporting Fiscal Year	5. Substance-based Income Exclusion
$[A]$	$[B]$	$[C]$	$[D]$	$[E] = [A] \times [B] + [C] \times [D]$

3.3.2.2 Allocation of Eligible Payroll Costs and carrying value of Eligible Tangible Assets to Permanent Establishments for purposes of the Substance Based Income Exclusion

1. Relevant Eligible Payroll Costs	2. Carrying value of relevant Eligible Tangible Assets	3. Jurisdiction of PEs	4. Relevant Eligible Payroll Costs allocated to PEs	5. Carrying value of relevant Eligible Tangible Assets allocated to PEs

3.3.2.3 Allocation of Eligible Payroll Costs and carrying value of Eligible Tangible Assets of a Flow-through Entity for purposes of the Substance Based Income Exclusion

1. Relevant Eligible Payroll Costs	2. Carrying value of relevant Eligible Tangible Assets	3. Jurisdiction of CE owners (or members of JV Group)	4. Relevant Eligible Payroll Costs allocated to CE owner (or excluded)	5. Carrying value of relevant Eligible Tangible Assets allocated to CE owner (or excluded)

210mm × 297mm [White paper 80g/m² or Coated paper 80g/m²]

3.3.3 Additional Current Top-up Tax

3.3.3.1 Additional Current Top-up Tax for purposes other than Art. 119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1. Relevant Articles	2. Relevant year	3. As previously reported or recalculated	4. Net GloBE Income/Loss	5. Adjusted Covered Taxes	6. ETR	7. Excess Profit	8. Top-up Tax Percentage	9. Top-up Tax	10. Additional Current Top-up Tax
	Prior Fiscal Year X	a. Previously Reported							
		b. Recalculated							

3.3.3.2 Additional Current Top-up Tax for purposes of Art. 119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1. Adjusted Covered Taxes for the jurisdiction (if negative)	<i>[A]</i>
2. GloBE Loss for the Jurisdiction	<i>[B]</i>
3. Expected Adjusted Covered Taxes	<i>[C]=[B]×15%</i>
4. Additional Current Top-up Tax	<i>[D]=[C]−[A]</i>

3.3.4 QDMTT

1.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2. QDMTT amount payable			
3. QDMTT Minimum Rate (if higher than 15%)			
4. Basis for the blending of income and taxes (if different from the GloBE Rules)			
5. Currency used (if different from CFS presentation currency)			
6. Five-year election to use the CFS presentation currency or the local currency	a. Currency	b. Election Year	c. Revocation Year
7. SBIE available?	Yes / No		
8. De-minimis available?	Yes / No		

210mm × 297mm [White paper 80g/m² or Coated paper 80g/m²]

3.4 Top-up Tax allocation and attribution (if any)

3.4.1 Application of the IIR in respect of this jurisdiction

1. Group Entity allocated Top-up Tax	a. LTCE or member of JV Group (TIN)		
	b. GloBE Income of the LTCE or member of JV Group	$[A]$	
	c. Top-up Tax of the Low-Taxed CE or the member of the JV Group	$[C] = [T] \times [A]/[A+B \text{ etc}]$	
2. Parent Entities required to apply a QIIR	a. Parent Entity (TIN)	$[Parent \text{ Entity } 1]$	
	b. Parent Entity Jurisdiction	$Jurisdiction \ B$	
	c. The amount of GloBE Income attributable to Ownership Interests held by other owners	$[D]$	
	d. Parent Entity's Inclusion Ratio	$[F]=([A]-[D])/[A]$	
3. IIR Top-up Tax	a. Parent Entity's Allocable Share of the Top-up Tax	$[G]=[C] \times [F]$	
	b. IIR Offset	$[H]$	
	c. Top-up Tax payable by Parent Entity	$[I]=[G]-[H]$	

3.4.2 Total UTPR Top-up Tax amount in respect of this jurisdiction

1. LTCE (or member of JV Group) for which Art. 73 (3) 1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does not apply (TIN)	
2. Top-up Tax taken into account for Art. 73 (3) 2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3. Total UTPR Top-up Tax Amount in respect of this jurisdiction	

3.4.3 Attribution of Top-up Tax under the UTPR

1. UTPR Jurisdictions	2. UTPR Top-up Tax carry-forward	3. Number of Employees	4. Net Book Value of Tangible Assets	5. UTPR Percentage	6. UTPR Top-up Tax Amount attributed for the Reporting Fiscal Year	7. Additional cash tax expense incurred by CEs in UTPR jurisdiction	8. UTPR Top-up tax left to be carried forward
Total							

210mm × 297mm [White paper 80g/m² or Coated paper 80g/m²]

Guidance

1. MNE Group Information

1.1 Identification of Filing Constituent Entity

1.1.1 and 1.1.2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is the one that files this GloBE Information Return.
1.1.2	If multiple Filing Constituent Entities file the GloBE Information Return, each of them shall file a separate GloBE Information Return.
1.1.2 ~ 1.1.5	These columns shall not be completed if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is the UPE.
1.1.3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identify its TIN used for purposes of Covered Taxes in the Filing Jurisdiction or, where a TIN is unavailable, a functional equivalent, such as a business/company registration code/number.
1.1.4	The relevant option shall be selected: • Designated Filing Entity • Designated Local Entity • Constituent Entity
1.1.5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2-character alphabetic country code based on the ISO 3166-1 Alpha 2 standard for the jurisdiction where it is located.
1.1.6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identify the jurisdictions in which filing obligations of Constituent Entities are intended to be met through exchange of information under Art. 83 (3)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1.2 MNE Group General Information

1.2.1 MNE Group and Reporting Fiscal Year

1.2.1.1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name of the MNE Group that is commonly used in the preparation of th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1.2.1.2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start date of the Reporting Fiscal Year.
1.2.1.3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end date of the Reporting Fiscal Year.
1.2.1.4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Yes" if the GloBE Information Return being filed is an amended return.

1.2.2 MNE General accounting information

1.2.2.1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relevant Subparagraph 1 to 4 of the definition of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in Art. 100 (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that applies to th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of the UPE. When Subparagraph 4 applies,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use reasonable diligence and good faith efforts for purposes of the identification of the UPE.
1.2.2.2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that is used for th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of the UPE. If the UPE does not prepar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Authorised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that is used for purposes of the GloBE Rules. (In other words,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prepares accounting standards used in financial statements in accordance with each item of Art. 100 (4) 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1.2.2.3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ISO code of the currency that is used for th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of the UPE. If the UPE does not prepar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ISO code of the currency that is used for purposes of the GloBE Rules. (In other words,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prepares accounting standards used in financial statements in accordance with each item of Art. 100 (4) 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1.3 Corporate Structure

1.3.1 Ultimate Parent Entity

1.3.1	The information in the table shall be reported as of last day of the Reporting Fiscal Year. If the MNE Group is a Multi-Parented MNE Group,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complete this table for each UPE.
1.3.1.1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2-character alphabetic country code based on the ISO 3166-1 Alpha 2 standard for the jurisdiction where the UPE is located for GloBE purposes.

210mm×297mm [White paper 80g/m² or Coated paper 80g/m²]

Guidance

1.3.1.2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whether the UPE jurisdiction has a QIIR, QUTPR and/or QDMTT in force for the Reporting Fiscal Year. The relevant option(s) shall be selected: (i) QIIR applicable to Low-Taxed Constituent Entities located in other jurisdictions only; (ii) QIIR applicable to both Low-Taxed Constituent Entities located in other jurisdictions and in the jurisdiction of the Parent Entity; (iii) QUTPR (iv) QDMTT If more than one option is relevant,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select all relevant options.
1.3.1.1 and 1.3.1.2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not report this information if the UPE is an Excluded Entity.
1.3.1.3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name of the UPE.
1.3.1.4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TIN of the UPE used for purposes of Covered Taxes in the jurisdiction where the UPE is located for GloBE purposes or, where a TIN is unavailable, a functional equivalent, such as a business/company registration code/number.
1.3.1.5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TIN (if any) issued to the UPE by the jurisdiction where filing takes place ("the Filing Jurisdiction").
1.3.1.6	The relevant option(s) shall be selected; • Constituent Entity • Flow-Through Entity – Tax Transparent • Flow-Through Entity – Reverse Hybrid • Hybrid Entity • Main Entity • Investment Entity • Insurance Investment Entity • Excluded Entity. If more than one option is relevant,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select all relevant options.
1.3.1.7	If the UPE is an Excluded Entity,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whether the UPE is: • a Governmental Entity; • an International Organisation; • a Non-profit Organisation; • a Pension Fund; • an Investment Fund that is the UPE; • a Real Estate Investment Vehicle that is the UPE
1.3.1.8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jurisdiction that requires the UPE to apply is QIIR under Art. 103 (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1.3.2 Group Entities (other than the UPE) and members of JV Groups

1.3.2.1 Constituent Entities and members of JV Groups

1.3.2.1	The information reported in the table shall be reported as of last day of the Reporting Fiscal Year.
1.3.2.1.1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No" if the information reported in rows 1.3.2.1.2 to 1.3.2.1.16 of the GIR filed for the preceding Reporting Fiscal Year is still valid and complete for the Reporting Fiscal Year. • If the answer is No,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not complete rows 1.3.2.1.2 to 1.3.2.1.16. • If the answer is Yes,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complete all rows 1.3.2.1.2 to 1.3.2.1.16 with respect to all Constituent Entities and members of JV Groups.
1.3.2.1.2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2-character alphabetic country code based on the ISO 3166-1 Alpha 2 standard for the jurisdiction where the Constituent Entity (other than the UPE), the JV or the JV Subsidiary is located for GloBE purposes. This row could include the UPE jurisdiction if Constituent Entities other than the UPE, JVs or JV Subsidiaries are located in the UPE jurisdiction.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insert "Stateless" for Stateless Constituent Entities.
1.3.2.1.3	The relevant rules applicable in the jurisdiction shall be selected: (i) QIIR applicable to Low-Taxed Constituent Entities located in other jurisdictions only; (ii) QIIR applicable to both Low-Taxed Constituent Entities located in other jurisdictions and in the jurisdiction of the Parent Entity; (iii) QUTPR; (iv) QDMTT. If more than one option is relevant,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select all relevant options. If the rule applies to all Constituent Entities or members of JV Groups located in the jurisdiction,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complete this row only once (irrespective of the number of Constituent Entities or member of JV Groups in the jurisdiction).

210mm×297mm[White paper 80g/m² or Coated paper 80g/m²]

Guidance

1.3.2.1.4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name of the Constituent Entity, JV or JV Subsidiary.
1.3.2.1.5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TIN of the Constituent Entity, JV or JV Subsidiary used for purposes of Covered Taxes in the jurisdiction or, where a TIN is unavailable, a functional equivalent, such as a business/company registration code/number. For the identification of Stateless Constituent Entities,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TIN or its functional equivalent used for purposes of Covered Taxes in the jurisdiction where the Entity was created.
1.3.2.1.6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TIN of the relevant Constituent Entity, JV or JV Subsidiary issued (if any) by the jurisdiction where the filing of the GloBE Information Return takes place.
1.3.2.1.7	The relevant option(s) shall be selected: • Constituent Entity • Flow-Through Entity – Tax Transparent • Flow-Through Entity – Reverse Hybrid • Hybrid Entity • Permanent Establishment • Main Entity • Minority-Owned Parent Entity • Minority-Owned Subsidiary • Minority-Owned Constituent Entity • Investment Entity • Insurance Investment Entity • Securitisation Entity • Joint Venture (JV) • JV Subsidiary • Non-Material Constituent Entity. If more than one option is relevant,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select all relevant options.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complete table 1.3.2.1 separately with respect to Constituent Entity-owners (if any) for which the status of the Constituent Entity, Joint Venture or JV Subsidiary is different from the status reported in 1.3.2.1.7 (e.g. if a Flow-through Entity is treated as a Tax Transparent Entity by one of its Constituent Entity owners and a Reverse Hybrid Entity by the other,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complete table 1.3.2.1 twice for the same Flow-Through Entity: once with respect to the owner that treats the Flow-through Entity as a Tax Transparent Entity and another time with respect the owner that treats it as a Reverse Hybrid Entity).
1.3.2.1.8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type of Entity that holds direct Ownership Interests in the Constituent Entity or member of a JV Group or indirect Ownership Interests in the Constituent Entity or member of a JV Group through Excluded Entities or non-Group members. The relevant option shall be selected (only one applicable): • UPE • Constituent Entities • Joint Ventures • JV Subsidiaries • Excluded Entities (aggregate) • Non-Group members (aggregate). “Excluded Entities (aggregate)” and “Non-Group members (aggregate)” are reported in the aggregate. Non-Group members are Entities that are not Group Entities or members of a JV Group.
1.3.2.1.9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TIN (or, where a TIN is unavailable, a functional equivalent, such as a business/company registration code/number) of the Constituent Entities, JVs or JV Subsidiaries that hold Ownership Interests in the Constituent Entity, JV or JV Subsidiary. No TIN shall be reported for Excluded Entities that are not the UPE and non-Group members as they are reported in the aggregate (i.e., “Excluded Entities (aggregate)” and “Non-Group members (aggregate)”).
1.3.2.1.10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in percentage) the Ownership Interests directly held in the Constituent Entity, JV or JV Subsidiary by the Constituent Entities, JV, JV subsidiaries, Excluded Entities and non-Group members identified in 1.3.2.1.8.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Ownership Interests held by non-Group members in the aggregate. When several Excluded Entities hold direct Ownership Interest in a Constituent Entity, JV or JV Subsidiary, the aggregate amount held by all Excluded Entities shall be reported. When a Group Entity, Joint Venture or JV Subsidiary holds indirect Ownership Interest in a Constituent Entity, Joint Venture or JV subsidiary through one or more Excluded Entities or through non-Group members,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in addition to any Ownership Interest that this Group Entity, Joint Venture or JV Subsidiary holds directly, the Ownership Interests that it holds indirectly through Excluded Entities or non-Group members. To avoid double counting, in this case, the Ownership Interests directly held in the Constituent Entity, Joint Venture or JV subsidiary by such Excluded Entities or non-Group members taken into account in computing that Group Entity's Ownership Interest shall not be reported separately. If the Constituent Entity is a Permanent Establishment,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identify the Main Entity in 1.3.2.1.8 and report 100% in 1.3.2.1.10.
1.3.2.1.11 ~ 1.3.2.1.13	This information shall only be reported in respect of the CE if a QIIR applies in the jurisdiction where the CE is located and if the CE is a POPE or an Intermediate Parent Entity. This information shall not be reported in respect of members of JV Groups or Entities that do not own any Ownership Interest (direct or indirect) in another CE as those Group Entities are not potential Parent Entities.

210mm×297mm [White paper 80g/m² or Coated paper 80g/m²]

Guidance

1.3.2.1.11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type of Parent Entity that applies. The relevant option shall be selected (if any): • POPE • Intermediate Parent Entity • Parent Entity required to apply a QIIR under Art. 103 (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Pursuant to the definition of the Partially-Owned Parent Entity, the Parent Entity is a Partially-Owned Parent Entity if it has more than 20% of the Ownership Interests in its profits held (directly or indirectly) by persons that are not Constituent Entities of the MNE Group and if it owns (directly or indirectly) an Ownership Interest in another Constituent Entity of the same MNE Group.
1.3.2.1.12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TIN used for Covered Taxes in the jurisdiction where the other Intermediate Parent Entity is located for GloBE purposes or, where a TIN is unavailable, a functional equivalent, such as a business/company registration code/number.
1.3.2.1.13	Pursuant to Art. 72 (6)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 POPE is not required to apply the IIR if it is wholly owned (directly or indirectly) by another POPE that is required to apply a Qualified IIR for the Reporting Fiscal Year. If the exception in Art. 72 (6)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pplies,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TIN used for Covered Taxes in the jurisdiction where the other Partially-Owned Parent Entity is located for GloBE purposes or, where a TIN is unavailable, a functional equivalent, such as a business/company registration code/number.
1.3.2.1.14 ~ 1.3.2.1.16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not complete these rows in cases where no jurisdiction has taxing rights under the UTPR with respect to the jurisdiction where the Constituent Entity is located or where the UTPR Safe Harbour applies with respect to that jurisdiction.
1.3.2.1.14	If the answer is “Yes”,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not complete rows 1.3.2.1.15 and 1.3.2.1.16.
1.3.2.1.15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aggregate Ownership Interests in percentage over the total of Ownership Interests held in that Constituent Entity. The aggregate (direct and indirect) Ownership Interests of Parent Entities required to apply a QIIR is the sum of the Ownership Interests held by each Parent Entity that is required to apply a QIIR with respect to the Low-Taxed Constituent Entities. The aggregate amount shall be zero if no Parent Entity is required to apply a QIIR in respect of the low taxed income of the Low-Taxed Constituent Entity. If a Parent Entity (that owns an Ownership Interest in a Low-Taxed Constituent Entity indirectly through an Intermediate Parent Entity or a Partially-Owned Parent Entity that is not eligible for an exclusion from the IIR under Art. 72 (4) through (5)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is required to apply the IIR, the relevant Ownership Interests shall be counted only once for purposes of computing the aggregate amount.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aggregate Allocable Share of Top-up Taxes of the member of the JV Group in percentage over the total amount of Top-up Tax for that member of a JV Group. The aggregate Allocable Share of Top-up Taxes of Parent Entities required to apply a QIIR is the sum of the Allocable Share of Top-up Taxes of each Parent Entity that is required to apply a QIIR with respect to the Low-Taxed Joint Venture or JV Subsidiary. The aggregate amount shall be zero if no Parent Entity is required to apply a QIIR in respect of the low-taxed income of the Joint Venture or JV Subsidiary. If a Parent Entity holds an Ownership Interest in a Low-Taxed Joint Venture or JV subsidiary indirectly through another other Parent Entity that is required to apply the IIR, the Allocable Share of Top-up Taxes shall be counted only once for purposes of computing the aggregate amount.
1.3.2.1.16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whether the UPE’s Ownership Interests in the CE are held directly or indirectly by Parent Entities required to apply a QIIR in that CE (or whether the aggregate Allocable Shares of Top-up Taxes of Parent Entities required to apply a QIIR for the member of JV Group reduces to zero the JV Group Top-up Tax).
1.3.2.1.15 and 1.3.2.1.16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not complete these rows in cases where the UPE is required to apply a QIIR with respect to the relevant Constituent Entities (which could include Constituent Entities located in the UPE jurisdiction). In all other cases,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only complete these rows when a Parent Entity required to apply a QIIR with respect to a Constituent Entity holds an Ownership Interest lower than 100% in that Constituent Entity.

210mm×297mm[White paper 80g/m² or Coated paper 80g/m²]

Guidance

1.3.2.2 Excluded Entities

- 1.3.2.2 The information reported in the table shall be reported for each Excluded Entity as of last day of the Reporting Fiscal Year.
An Excluded Entity is a Group Entity that is defined in Art. 62 (3)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
- 1.3.2.2.1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No" if the information reported in 1.3.2.1.3, 1.3.2.2.2 and 1.3.2.2.3 of the GIR filed for the preceding Reporting Fiscal Year is still valid and complete for the Reporting Fiscal Year.
If the answer is No,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not complete 1.3.2.2.2 and 1.3.2.2.3.
If the answer is Yes,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complete 1.3.2.2.2 and 1.3.2.2.3 with respect to all Excluded Entities.
-
- 1.3.2.2.2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identify the name of each Excluded Entity.
-
- 1.3.2.2.3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the type of each Excluded Entity.
The relevant option shall be selected (only one applicable):
• Governmental Entity • International Organisation • Non-profit Organisation • Pension Fund • Investment Fund that is an UPE • Real Estate Investment Vehicle that is an UPE • Entity owned by Excluded Entities under Art. 102 (1) 7 a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 Entity owned by Excluded Entities under Art. 102 (1) 7 b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1.3.3 Changes in the corporate structure that occurred during the Reporting Fiscal Year

- 1.3.3.a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Yes" if any changes occurred during the Reporting Fiscal Year were not reported in table 1.3.3 because they did not affect the ETR computation, the Top-up Tax computation or the allocation of Top-up Tax at any time during the Reporting Fiscal Year (e.g. where a Constituent Entity that was not involved in any cross-border allocation of income or taxes was directly and wholly-owned by the UPE prior to the change and it is transferred to another Constituent Entity that is directly and wholly-owned by the UPE).
-
- 1.3.3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not complete the table Constituent Entity (or other Entity of the MNE Group) or member of a JV Group was subject to changes during the Reporting Fiscal Year.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complete these table only with respect to changes that at any time during the Reporting Fiscal Year affected the ETR computation (e.g., for Constituent Entities involved in the cross-border allocation of income or taxes) or the computation or allocation of Top-up Tax (e.g., the extent to which the IIR applies to a Constituent Entity).
-
- 1.3.3.1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all Constituent Entities (or other Entity of the MNE Group, e.g., Excluded Entities) or members of JV Groups that were subject to changes in their ownership structure or in their status during the Reporting Fiscal Year.
-
- 1.3.3.2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TIN used for purposes of Covered Taxes in the jurisdiction where the Constituent Entity (or other Entity of the MNE Group) or member of a JV Group is located for GloBE purposes or, where a TIN is unavailable, a functional equivalent, such as a business/company registration code/number.
-
- 1.3.3.3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effective date (using dd-mm-yyyy format) of any changes in the ownership structure or any changes in the status of the Constituent Entity (or other Entity of the MNE Group) or member of a JV Group.
If a Constituent Entity (or other Entity of the MNE Group) or a member of a JV Group was subject to more than one change during the Reporting Fiscal Year,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complete a separate row for each of such changes.
-
- 1.3.3.4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relevant status for GloBE purposes of the Constituent Entity (or other Entity of the MNE Group) or member of JV Group on the day immediately preceding the date of the change. The relevant option(s) shall be selected:
• Constituent Entity • Flow- Through Entity – Tax Transparent • Flow-Through Entity – Reverse Hybrid • Hybrid Entity • Permanent Establishment • Main Entity • Minority-Owned Parent Entity • Minority-Owned Subsidiary • Minority-Owned Constituent Entity • Investment Entity • Insurance Investment Entity • Securitisation Entity • Joint Venture (JV) • JV Subsidiary • Non-Material Constituent Entity • POPE • Intermediate Parent Entity • Ultimate Parent Entity • Parent Entity required to apply a QIIR under Art. 103 (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 Excluded Entity • Non-Group member.
If more than one option is relevant,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select all relevant options.

210mm×297mm[White paper 80g/m² or Coated paper 80g/m²]

Guidance

1.3.3.5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relevant status for GloBE purposes of the Constituent Entity (or other Entity of the MNE Group) or member of JV Group on the day of the change after the transaction. The relevant option(s) shall be selected: • Constituent Entity • Flow-Through Entity – Tax Transparent • Flow-Through Entity – Reverse Hybrid • Hybrid Entity • Permanent Establishment • Main Entity • Minority-Owned Parent Entity • Minority-Owned Subsidiary • Minority-Owned Constituent Entity • Investment Entity • Insurance Investment Entity • Securitisation Entity • Joint Venture (JV) • JV Subsidiary • Non-Material Constituent Entity • POPE • Intermediate Parent Entity • Ultimate Parent Entity • Parent Entity required to apply a QIIR under Art. 103 (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 Excluded Entity • Non-Group member. If more than one option is relevant,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select all relevant options.
1.3.3.5 ~ 1.3.3.8	If a Constituent Entity (or other Entity of the MNE Group) or member of a JV Group is wound up during the Reporting Fiscal Year,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relevant status for GloBE purposes on the day of the change before the transaction in 1.3.3.4 and “Non-group Member” in 1.3.3.5.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then identify the Entities holding Ownership Interests in the Constituent Entity (or other Entity of the MNE Group) or member of a JV Group on the day of the change before the transaction in 1.3.3.6 and report the Ownership Interests held in the Constituent Entity (or other Entity of the MNE Group) or member of a JV Group by any of such Entities in 1.3.3.7.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however, shall not complete 1.3.3.8.
1.3.3.6 ~ 8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not complete the 1.3.3.6 and 1.3.3.7 columns with respect to Excluded Entities that were Excluded Entities before the change.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not complete the 1.3.3.6 and 1.3.3.8 columns with respect to Excluded Entities that were Excluded Entities after the change.
1.3.3.6	If the Constituent Entity (or other Entity of the MNE Group) or member of a JV Group is a Permanent Establishment,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identify its Main Entity in the 1.3.3.6 column and report 100% in the 1.3.3.7 or 1.3.3.8 column.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all Constituent Entities, Group Entities, Excluded Entities, members of JV Groups or non-Group members that directly held Ownership Interests in the Constituent Entity (or other Entity of the MNE Group) or member of a JV Group on the day immediately preceding the date of the transaction or on the day of the change after the transaction. Excluded Entities that are not the UPE and non-Group members should be reported in the aggregate (i.e., “Excluded Entities (aggregate)” and “Non-Group members (aggregate)”).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also report any Group Entity that indirectly held Ownership Interests in the Constituent (or other Entity of the MNE Group) through Excluded Entities or non-Group members on the day immediately preceding the date of the transaction or on the day of the change after the transaction.
1.3.3.7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in percentage) the Ownership Interests held in the Constituent Entity (or other Entity of the MNE Group) or member of a JV Group by the Constituent Entities, Excluded Entities, members of JV Groups and non-Group members identified in 1.3.3.6 on the day immediately preceding the date of change in accordance with the guidance provided in Note 1.3.2.1.10.
1.3.3.8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in percentage) the Ownership Interests held in the Constituent Entity (or other Entity of the MNE Group) or member of a JV Group by the Constituent Entities, Excluded Entities, members of JV Groups and non-Group members identified in 1.3.3.6 on the day of the change after the transaction in accordance with the guidance provided in Note 1.3.2.1.10.

1.4 High-level summary of GloBE Information

1.4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not complete columns 1.4.2 to 1.4.9 in cases where no jurisdiction has taxing rights (i.e., column 1.4.4 would be empty) with respect to the jurisdiction identified in 1.4.1
1.4.1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information reflected in the summary table in respect of each jurisdiction where the MNE Group has Constituent Entities or where members of JV Groups are located and each subgroup for which a separate ETR or Top-up Tax computation applies.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2-character alphabetic country code for the jurisdiction where the MNE Group has Constituent Entities or where members of JV Groups are located based on the ISO 3166-1 Alpha 2 standard.
1.4.2	If applicable,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identify each subgroup, as reported in 2.1.2 and/or 3.1.2.
1.4.3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TIN of the entity at the top of the ownership structure of each subgroup identified in 1.4.2.

210mm×297mm[White paper 80g/m² or Coated paper 80g/m²]

Guidance

1.4.4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names of the jurisdiction(s) with taxing rights in respect of the jurisdiction identified in 1.4.1 and, if applicable, the relevant subgroup identified in 1.4.3 in the form of 2-character alphabetic country codes based on the ISO 3166-1 Alpha 2 standard. A jurisdiction with taxing rights may include a jurisdiction requiring a Parent Entity to apply a QIIR under Art. 103 (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even if that Parent Entity is located in another jurisdiction for GloBE purposes. A jurisdiction has taxing rights in respect of another, where, under the rule order provided in the GloBE rules, the Jurisdictional Top-up Tax computed in respect of the latter jurisdiction would result in a Top-up Tax liability due by a Constituent Entity located in the former jurisdiction under the charging provisions in the former jurisdiction. Specifically, a QDMTT Safe Harbour jurisdiction or a jurisdiction with an Income Inclusion Rule that applies to domestic entities will have taxing rights in respect of itself. Further, several jurisdictions may have taxing rights in respect of the same other jurisdiction. This may be the case, for instance, when both the UPE and a Partially-Owned Parent Entity are required to apply the IIR in respect of a Constituent Entity located in a third jurisdiction. In that case, both the UPE jurisdiction and the Partially-Owned Parent Entity jurisdiction need to be reported under 1.4.4. Equally, UTPR jurisdictions would have taxing rights in respect of the jurisdictions for which the Top-up Tax is not reduced to zero under Art 72 (8)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1.4.5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whether the Top-up Tax has been reduced to zero in respect of the jurisdiction identified in 1.4.1 or relevant subgroup identified in 1.4.3 (if any) because of the application of either a Safe Harbour or the de minimis exclusion as reported in 2.2.1 and 2.2.2 respectively.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relevant option applied for purposes of the Safe Harbour in accordance with Note 2.2.1.1.1.														
1.4.6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range in which the ETR of the jurisdiction identified in 1.4.1 or relevant subgroup identified in 1.4.3 (if any) and as reported in 3.2.1.e falls. The options are: <table data-bbox="375 1043 1284 1352"> <tr> <td>(a) below 2.5%</td><td>(h) 17.5% or above but below 20%</td></tr> <tr> <td>(b) 2.5% or above but below 5%</td><td>(i) 20% or above but below 22.5%</td></tr> <tr> <td>(c) 5% or above but below 7.5%</td><td>(j) 22.5% or above but below 25%</td></tr> <tr> <td>(d) 7.5% or above but below 10%</td><td>(k) 25% or above but below 27.5%</td></tr> <tr> <td>(e) 10% or above but below 12.5%</td><td>(l) 27.5% or above but below 30%</td></tr> <tr> <td>(f) 12.5% or above but below 15%</td><td>(m) 30% or above</td></tr> <tr> <td>(g) 15% or above but below 17.5%</td><td></td></tr> </table>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not complete this column if the MNE Group (or the relevant subgroup) has a GloBE Loss in the jurisdiction. Furthermore,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not complete this column for those jurisdictions (or subgroups) in respect of which Section 3 of the GIR does not need to be completed.	(a) below 2.5%	(h) 17.5% or above but below 20%	(b) 2.5% or above but below 5%	(i) 20% or above but below 22.5%	(c) 5% or above but below 7.5%	(j) 22.5% or above but below 25%	(d) 7.5% or above but below 10%	(k) 25% or above but below 27.5%	(e) 10% or above but below 12.5%	(l) 27.5% or above but below 30%	(f) 12.5% or above but below 15%	(m) 30% or above	(g) 15% or above but below 17.5%	
(a) below 2.5%	(h) 17.5% or above but below 20%														
(b) 2.5% or above but below 5%	(i) 20% or above but below 22.5%														
(c) 5% or above but below 7.5%	(j) 22.5% or above but below 25%														
(d) 7.5% or above but below 10%	(k) 25% or above but below 27.5%														
(e) 10% or above but below 12.5%	(l) 27.5% or above but below 30%														
(f) 12.5% or above but below 15%	(m) 30% or above														
(g) 15% or above but below 17.5%															
1.4.7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whether the application of the Substance-based Income Exclusion in respect of the jurisdiction identified in 1.4.1 or relevant subgroup identified in 1.4.3, if any, has resulted in no Top-Up Tax arising in the jurisdiction. Where there is no SBIE calculated for the jurisdiction or the subgroup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indicate "n/a".														
1.4.8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range in which the QDMTT Top-up Tax payable falls, in respect of the jurisdiction identified in 1.4.1 or relevant subgroup identified in 1.4.3 (if any), as reported in 3.3.1.e, if any. The options are: <table data-bbox="375 1733 1364 1944"> <tr> <td>(a) no Top-up Tax payable</td><td>(f) EUR 50 million to below EUR 75 million</td></tr> <tr> <td>(b) below EUR 1 million</td><td>(g) EUR 75 million to below EUR 100 million</td></tr> <tr> <td>(c) EUR 1 million to below EUR 5 million</td><td>(h) EUR 100 million to below EUR 250 million</td></tr> <tr> <td>(d) EUR 5 million to below EUR 25 million</td><td>(i) EUR 250 million or above</td></tr> <tr> <td>(e) EUR 25 million to below EUR 50 million</td><td></td></tr> </table>	(a) no Top-up Tax payable	(f) EUR 50 million to below EUR 75 million	(b) below EUR 1 million	(g) EUR 75 million to below EUR 100 million	(c) EUR 1 million to below EUR 5 million	(h) EUR 100 million to below EUR 250 million	(d) EUR 5 million to below EUR 25 million	(i) EUR 250 million or above	(e) EUR 25 million to below EUR 50 million					
(a) no Top-up Tax payable	(f) EUR 50 million to below EUR 75 million														
(b) below EUR 1 million	(g) EUR 75 million to below EUR 100 million														
(c) EUR 1 million to below EUR 5 million	(h) EUR 100 million to below EUR 250 million														
(d) EUR 5 million to below EUR 25 million	(i) EUR 250 million or above														
(e) EUR 25 million to below EUR 50 million															

210mm×297mm[White paper 80g/m² or Coated paper 80g/m²]

Guidance

1.4.9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range in which the GloBE Top-up Tax payable, if any, falls, in respect of the jurisdiction identified in 1.4.1 or relevant subgroup identified in 1.4.3 (if any) and as reported in 3.3.1.f. The options are:

- | | |
|--|--|
| (a) no Top-up Tax payable | (f) EUR 50 million to below EUR 75 million |
| (b) below EUR 1 million | (g) EUR 75 million to below EUR 100 million |
| (c) EUR 1 million to below EUR 5 million | (h) EUR 100 million to below EUR 250 million |
| (d) EUR 5 million to below EUR 25 million | (i) EUR 250 million or above |
| (e) EUR 25 million to below EUR 50 million | |

If a different amount to the amount reported in 3.3.1.f is reported in 3.1.10,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both the range in which the GloBE Top-up Tax payable falls as reported in 3.3.1.f and the range in which the average amount of Top-up Tax payable under the domestic legislation of each jurisdiction with taxing rights, if any, falls, in respect of the jurisdiction identified in 1.4.1 or the relevant subgroup identified in 1.4.3 (if any) and as reported in 3.1.10 with the same options. For purpose of the average, the amounts reported in 3.1.10 are weighted by the relevant jurisdiction's Allocable Share of the Top-up Tax (after deducting any reduction for the offset mechanism in Art. 72 (8)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or UTPR percentage as computed under the GloBE Model Rules and Commentary.(Art. 73 (4)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210mm×297mm[White paper 80g/m² or Coated paper 80g/m²]

Guidance

2. Jurisdictional Safe Harbours and Exclusion

2.1 Characteristics of the jurisdiction

2.1.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information in respect of each jurisdiction where the MNE Group has Constituent Entities or where members of JV Groups are located.
2.1.1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2-character alphabetic country code based on the ISO 3166-1 Alpha 2 standard for the jurisdiction.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Stateless" for each Stateless Constituent Entity.
2.1.2	Several subgroups can be identified in this row. The relevant option(s) shall be selected from the following list: • Constituent Entities • Minority-Owned Subgroup (specify which Minority-Owned Subgroup) • Standalone MOCEs • Investment Entities • Joint Venture Group (specify which JV Group) • Stateless Constituent Entity • Transitional CbCR Safe Harbour-Constituent Entities • Transitional CbCR Safe Harbour- Joint Venture Group (specify which JV Group) • Transitional UTPR Safe Harbour. Standalone MOCEs are Minority-Owned Constituent Entities that are not part of any Minority-Owned Group. Investment Entities also include JVs or JV subsidiaries that qualify as Investment Entities but do not include Investment Entities for which an election is made under Art. 79 (5)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Minority-Owned Subgroups may be made of members of JV Groups. Stateless Constituent Entities also include members of JV Groups that are Stateless.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relevant information for each subgroup.
2.1.3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TIN of the entity at the top of the ownership structure of each subgroup identified in row 2.1.3.
2.1.4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names of the jurisdiction(s) with taxing rights in respect of the jurisdiction identified in 2.1.1 and, if applicable, the relevant subgroup identified in 2.1.3 in the form of 2-character alphabetic country codes based on the ISO 3166-1 Alpha 2 standard. A jurisdiction has taxing rights in respect of another, where, under the rule order provided in the GloBE Rules, the Jurisdictional Top-up Tax computed in respect of the latter jurisdiction would result in a Top-up Tax liability due by a Constituent Entity located in the former jurisdiction under the charging provisions in the former jurisdiction. Specifically, a QDMTT Safe Harbour jurisdiction or a jurisdiction with an Income Inclusion Rule that applies to domestic Entities will have taxing rights in respect of itself. Further, several jurisdictions may have taxing rights in respect of the same other jurisdiction. This may be the case, for instance, when both the UPE and a Partially-Owned Parent Entity are required to apply the IIR in respect of a Constituent Entity located in a third jurisdiction. In that case, both the UPE jurisdiction and the Partially-Owned Parent Entity jurisdiction need to be reported under 2.1.4. Equally, UTPR jurisdictions would all have taxing rights in respect of the jurisdictions for which the Top-up Tax is not reduced to zero under Art. 73 (3) 1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When multiple jurisdictions are reported in 2.1.4,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also complete 2.1.5 in respect of each of them.
2.1.5	This row shall be completed separately for each jurisdiction with taxing rights identified in 2.1.4.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Yes' for a jurisdiction when either the MNE Group has reported that it is eligible for a safe harbour or exclusion in Section 2 when it is not eligible for the same safe harbour or exclusion under the domestic law of the relevant jurisdiction with taxing rights or, conversely, the MNE Group has reported that it is not eligible for a safe harbour or exclusion in Section 2 when it is eligible for the same safe harbour or exclusion under the domestic law of the relevant jurisdiction with taxing rights. Where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reports 'Yes', it should both: (i) complete Section 2 with respect to the relevant safe harbour or exclusion; and (ii) report in Section 3 the jurisdictional computations for that jurisdiction or subgroup.

2.2 Jurisdictional exceptions applicable in respect of this jurisdiction (Top-up Tax reduced to zero)

2.2.1 Safe harbour jurisdiction election

2.2.1	Where a safe harbour reduces the top-up tax to zero for Constituent Entities or members of JV Groups,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not complete any tables in Section 3 with respect to those Constituent Entities or members of JV Groups (except otherwise indicated in the notes below).
-------	--

210mm×297mm [White paper 80g/m² or Coated paper 80g/m²]

Guidance

2.2.1.1 Safe harbour election

2.2.1.1.1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identify the test that it elects to apply for this jurisdiction. An MNE Group that qualifies for more than one test may choose which test to apply for that jurisdiction.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select the relevant option:

- (a) permanent safe harbour – De minimis test;
- (b) permanent safe harbour – ETR test;
- (c) permanent safe harbour – routine profits test;
- (d) QDMTT safe harbour;
- (e) Transitional CbCR Safe Harbour – De minimis test;
- (f) Transitional CbCR Safe Harbour – Simplified ETR test;
- (g) Transitional CbCR Safe Harbour – Routine profits test; or
- (h) Transitional UTPR safe harbour.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not select option (e), (f) or (g) for a jurisdiction for a Reporting Fiscal Year if it did not elect to apply a safe harbour or selected an option other than (e), (f) or (g) for the preceding Reporting Fiscal Year. Option (h) can only be selected if the jurisdiction is the UPE jurisdiction, in accordance with the agreed safe harbour.

2.2.1.1.1 If option (a), (b) or (c) is selected, and Simplified Calculations only apply to a portion of the GloBE calculations,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also complete relevant portions of Section 3 that are not covered by the Simplified Calculations.

2.2.1.1.1 If option (a), (b) or (c) is selected, and only a portion of Constituent Entities or members of JV Groups in the subgroup identified in 2.1.3 are covered by the Simplified Calculations,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also complete Section 3 for all Constituent Entities or members of JV Groups located in the safe harbour jurisdiction as provided in the explanatory guidance.

2.2.1.1.1 If option (a), (b) or (c) is selected, and Additional Current Top-up Tax arises in the jurisdiction,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also complete columns 1.4.8 to 1.4.9, columns 3.3.1.d to 3.3.1.f, Section 3.3.3 and Section 3.4 with respect to the relevant Constituent Entities or members of JV Groups located in the jurisdiction.

2.2.1.1.1 Option (d) shall not be selected when the switch-off rule applies to the QDMTT Safe Harbour in respect of the jurisdiction or the relevant subgroup. If option (d) is selected,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may also select one of the other options. If no other option is selected,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also complete Section 3 for all Constituent Entities or members of JV Groups located in the safe harbour jurisdiction with the calculations undertaken for QDMTT purposes (or for the Stateless Constituent Entities if the QDMTT is imposed on the Stateless Constituent Entities in the safe harbour jurisdiction). If the MNE Group elects to apply the QDMTT safe harbour together with another safe harbour (or the de-minimis exclusion, respectively) available under the QDMTT legislation,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complete the relevant portions of Section 3 (or Table 2.2.2, respectively) with the calculations undertaken for QDMTT purposes. As an exception, however,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not complete Section 3.4 unless the QDMTT legislation allocates the QDMTT among Constituent Entities (or members of JV Groups) based on their GloBE Income. If the QDMTT legislation allocates the QDMTT among Constituent Entities (or members of JV Groups) based on their GloBE Income,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complete rows 3.4.1.1.a to 3.4.1.1.c.

2.2.1.1.1 If option (c) or (g) is selected,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also complete Section 3.3.2 (relating to the Substance-based Income Exclusion) with respect to the relevant Constituent Entities or members of JV Groups in accordance with agreed safe harbours. Nevertheless,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does not need to complete Section 3.3.2 if option (g) is selected and the MNE Group reported zero profit or a loss for the jurisdiction in 2.2.1.3.(a).2.

210mm×297mm [White paper 80g/m² or Coated paper 80g/m²]

Guidance

2.2.1.2 Permanent safe harbours

(a) Simplified Calculation for Non-material Constituent Entities

2.2.1.2.(a).1.a–d If Simplified Calculation for Non-material Constituent Entities is utilised under option (a), (b) or (c) in 2.2.1.1.1,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also report the Total Revenue, as defined in the Safe Harbours and Penalty Relief document, of all Non-material Constituent Entities located in the jurisdiction for which the election to apply the Simplified Calculations for Non-Material Constituent Entities is made for the Reporting Fiscal Year, the first preceding fiscal year (if applicable) and the second preceding fiscal year (if applicable), as well as the average of the three Fiscal Years respectively. If Simplified Calculation for Non-material Constituent Entities is utilised under option (a) in 2.2.1.1 and the Simplified Calculations for Non-Material Constituent Entities apply only to some of the Constituent Entities in the subgroup identified in 2.1.3,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also complete table 2.2.2.

2.2.1.2.(a).2 If Simplified Calculation for Non-material Constituent Entities is utilised under option (b) in 2.2.1.1.1,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aggregate Simplified Tax, as defined in the Safe Harbours and Penalty Relief document, of all Non-material Constituent Entities located in the jurisdiction for which the election to apply the Simplified Calculations for Non-Material Constituent Entities is made for the Reporting Fiscal Year.

2.2.1.3 Transitional safe harbours

(a) Transitional CbCR Safe Harbour

2.2.1.3.(a) Where the Qualified Financial Statements used to complete this table are the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of a Constituent Entity or a member of a JV Group and are based on an accounting standard that differs from the accounting standard used in th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of the Ultimate Parent Entity,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complete Table 3.2.4.6.

2.2.1.3.(a).1 If option (e) is selected in 2.2.1.1.1,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Total Revenue for the jurisdiction as reported in the Qualified CbC Report of the MNE Group (or Qualified Financial Statements for members of JV Groups) for the Reporting Fiscal Year.
Option (e) cannot be selected if the sum of the total revenue of entities that are held for sale when combined with the CbCR Total Revenue in that jurisdiction (as reported in the MNE's Qualified CbC Report) equals or exceeds EUR 10 million.

2.2.1.3.(a).2 If option (e), (f) or (g) is selected in 2.2.1.1.1,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Profit (Loss) before Income Tax for the jurisdiction as reported in the Qualified CbC Report of the MNE Group (or Qualified Financial Statements for members of JV Groups) for the Reporting Fiscal Year and in accordance with the methodologies set out in the Safe Harbours and Penalty Relief document.

2.2.1.3.(a).3 If option (f) is selected in 2.2.1.1.1,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Simplified Covered Taxes of the relevant Constituent Entities or members of JV Groups, as defined in the Art. 86 (6)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for the Reporting Fiscal Year.

(b) Transitional UTPR Safe Harbour

2.2.1.3.(b).1 If option (h) is selected in 2.2.1.1.1,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corporate income tax rate of the UPE jurisdiction in accordance with the agreed safe harbour.

2.2.2 Election for de minimis exclusion

2.2.2 Investment Entities and Stateless Constituent Entities are not eligible for the de minimis exclusion. The GloBE Revenue and GloBE Income or Loss of both types of entities are excluded from the computation in Art. 126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The GloBE Revenue and the GloBE Income or Loss of the Minority-Owned Constituent Entities is taken into account together with those of other Constituent Entities for purposes of determining the Average GloBE Revenue and the Average GloBE Income or Loss of the jurisdiction where they are located.

Where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elects to apply the de minimis exclusion with respect to an eligible jurisdiction,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complete Section 3.2.4.6 (where applicable) for the jurisdiction. If Additional Current Top-up Tax arises in the jurisdiction,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also complete columns 1.4.8 to 1.4.9, columns 3.3.1.d to 3.3.1.f, Section 3.3.3 and Section 3.4 for the jurisdiction.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select whether this table is completed for purpose of the application of the de minimis exclusion or to provide computations with respect to Constituent Entities that are not Non-material Constituent Entities if Simplified Calculation for Non-material Constituent Entities is utilised under option (a) in 2.2.1.1 and the Simplified Calculations for Non-Material Constituent Entities apply only to a portion of the Constituent Entities in the subgroup identified in 2.1.3.

210mm×297mm[White paper 80g/m² or Coated paper 80g/m²]

Guidance

2.2.2.1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here the sum of the revenue of Constituent Entities or members of JV Groups located in the jurisdiction before any adjustments under Chapter 3.
2.2.2.2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here the sum of the GloBE Revenue of Constituent Entities or members of JV Groups located in the jurisdiction.
2.2.2.3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here the aggregate FANIL of Constituent Entities or members of JV Groups located in the jurisdiction.
2.2.2.4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here the sum of the GloBE Income or Loss of Constituent Entities or members of JV Groups located in the jurisdiction.
2.2.2.a ~ c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relevant amounts in respect of the Reporting Fiscal Year, the first preceding fiscal year (if applicable) and the second preceding fiscal year (if applicable), respectively.
2.2.2.d	Where appropriate, the Average of the three Fiscal Years shall be computed by adjusting the corresponding revenue and income (or loss) calculations in proportion to the period covered by the preceding Fiscal Year over a calendar year.

2.3 MNE Group in the initial phase of international activity (if applicable)

2.3	When Art. 82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pplies, and no Group Entity is required to apply a QIIR,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does not need to complete Sections 2.1, 2.2 or Section 3 for the relevant jurisdictions for which the Top-up Tax is reduced to zero.
2.3.1	Art. 82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does not apply for any Fiscal Year that starts later than five years after the first day of the Fiscal Year reported in 2.3.1. For MNE Groups in scope of the GloBE Rules when they come into effect, the date reported in 2.3.1 shall be replaced with the date when the UTPR rules come into effect.
2.3.2	The Reference Jurisdiction is defined in Art. 140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2.3.3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Net Book Values of Tangible Assets of all Constituent Entities located in the jurisdiction for the Fiscal Year in which the MNE Group originally comes within the scope of the GloBE Rules.
2.3.4	The location of Joint Ventures and JV Subsidiaries or Investment Entities that are not Excluded Entities is not taken into account to determine the number of jurisdictions where the MNE Group has Constituent Entities.
2.3.5.a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2-character alphabetic country code based on the ISO 3166-1 Alpha 2 standard of each jurisdiction, other than the Reference Jurisdiction, where Constituent Entities are located for the Fiscal Year in which the MNE Group originally comes within the scope of the GloBE Rules. The number of jurisdictions other than the Reference Jurisdiction shall be up to five.
2.3.5.b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for each jurisdiction, the Net Book Values of Tangible Assets of all Constituent Entities located in each of jurisdiction other than the Reference Jurisdiction for the Fiscal Year in which the MNE Group originally comes within the scope of GloBE Rules. Tangible Assets of Stateless Constituent Entities are considered held by Constituent Entities located in a jurisdiction other than the Reference Jurisdiction, except to the extent that the MNE Group demonstrates that those Tangible Assets are physically located in the Reference Jurisdiction. Tangible Assets of Joint Ventures and JV Subsidiaries or Investment Entities that are not Excluded Entities, are not taken into account to determine the Sum of the Net Book Values of Tangible Assets of all Constituent Entities located in other jurisdictions than the Reference Jurisdiction.
2.3.6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Number of jurisdictions where the MNE Group has Constituent Entities during the Reporting Fiscal Year. If the Reporting Fiscal Year is the Fiscal Year in which the MNE Group originally comes within the scope of GloBE Rules, this information shall not be reported as it can be derived from the information reported under 2.3.4.
2.3.7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sum of the Net Book Values of Tangible Assets of all Constituent Entities located in all jurisdictions other than the Reference Jurisdiction during the Reporting Fiscal Year. If the Reporting Fiscal Year is the Fiscal Year in which the MNE Group originally comes within the scope of GloBE Rules, this information shall not be reported as it can be derived from the information reported under 2.3.5.

210mm×297mm[White paper 80g/m² or Coated paper 80g/m²]

Guidance

3. GloBE Computations

3.1 Characteristics of the Jurisdiction

3.1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information in respect of each jurisdiction where the MNE Group has Constituent Entities or where members of JV Groups are located.
3.1.1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2-character alphabetic country code based on the ISO 3166-1 Alpha 2 standard for the jurisdiction.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Stateless” for each Stateless Constituent Entity.
3.1.2	A “subgroup” shall be identified for each perimeter of GloBE computation. Several subgroups can be identified in this row. The relevant option(s) shall be selected: • Constituent Entities • Minority-Owned Subgroup (specify which Minority-Owned Subgroup) • Standalone MOCEs • Investment Entities • Joint Venture Group (specify which JV Group) • Stateless Constituent Entity. Standalone MOCEs are Minority-Owned Constituent Entities that are not part of any Minority-Owned Group. Investment Entities also include JVs or JV subsidiaries that qualify as Investment Entities but do not include Investment Entities for which an election is made under Art. 79 (5)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Minority-Owned Subgroups may be made of members of JV Groups. Stateless Constituent Entities also include members of JV Groups that are Stateless.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relevant information in Sections 3.2 for each subgroup.
3.1.3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TIN of the entity at the top of the ownership structure of each subgroup identified in row 3.1.2.
3.1.4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names of the jurisdiction(s) with taxing rights in respect of the jurisdiction identified in 3.1.1 and, if applicable, the relevant subgroup identified in 3.1.2 in the form of 2-character alphabetic country codes based on the ISO 3166-1 Alpha 2 standard. A jurisdiction has taxing rights in respect of another, where, under the rule order provided in the GloBE rules, the Jurisdictional Top-up Tax computed in respect of the latter jurisdiction would result in a Top-up Tax liability due by a Constituent Entity located in the former jurisdiction under the charging provisions in the former jurisdiction. Specifically, a QDMTT Safe Harbour jurisdiction or a jurisdiction with an Income Inclusion Rule that applies to domestic entities will have taxing rights in respect of itself. Further, several jurisdictions may have taxing rights in respect of the same other jurisdiction. This may be the case, for instance, when both the UPE and a Partially-Owned Parent Entity are required to apply the IIR in respect of a Constituent Entity located in a third jurisdiction. In that case, both the UPE jurisdiction and the Partially-Owned Parent Entity jurisdiction need to be reported under 3.1.4. Equally, UTPR jurisdictions would all have taxing rights in respect of the jurisdictions for which the Top-up Tax is not reduced to zero under Art. 73 (3) 1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3.1.5 ~ 3.1.10	These data points do not need to be reported if only a single jurisdiction is reported as having taxing rights in 3.1.4 or if the QDMTT Safe Harbour applies with respect to the jurisdiction (in 3.1.1) or subgroup (in 3.1.3). Each data point should be reported separately for each jurisdiction with taxing rights identified under 3.1.4 (“the relevant jurisdiction with taxing rights”). If there is no difference,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No difference”.
3.1.5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Effective Tax Rate for a jurisdiction identified in 3.1.1 or a subgroup identified in 3.1.3 on the basis of the domestic legislation of the relevant jurisdiction with taxing rights identified in 3.1.4 if this Effective Tax Rate is different to the Effective Tax Rate reported in 3.2.1.e.
3.1.6	This data point should only be reported if a different Effective Tax Rate is reported in 3.1.5 for a jurisdiction identified in 3.1.1 or a subgroup identified in 3.1.3.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aggregate Adjusted Covered Taxes calculated for that jurisdiction or subgroup on the basis of the domestic legislation of the relevant jurisdiction with taxing rights identified in 3.1.4 if this amount is different to the amount reported in 3.2.1.d.
3.1.7	This data point should only be reported if a different Effective Tax Rate is reported in 3.1.5 for a jurisdiction identified in 3.1.1 or a subgroup identified in 3.1.3.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Net GloBE Income calculated for that jurisdiction or subgroup on the basis of the domestic legislation of the relevant jurisdiction with taxing rights identified in 3.1.4 if this amount is different to the amount reported in 3.2.1.b.
3.1.8	This data point should only be reported if a different Top-up Tax payable is reported in 3.1.10 for a jurisdiction identified in 3.1.1 or a subgroup identified in 3.1.3.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Substance-based Income Exclusion for that jurisdiction or subgroup on the basis of the domestic legislation of the relevant jurisdiction with taxing rights identified in 3.1.4 if this amount is different to the amount reported in 3.3.1.b.
3.1.9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Additional Current Top-up Tax Amount for the jurisdiction identified in 3.1.1 or the subgroup identified in 3.1.3 on the basis of the domestic legislation of the relevant jurisdiction with taxing rights identified in 3.1.4 if this amount is different to the amount reported in 3.3.1.d.

Guidance

3.1.10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Top-up Tax payable for the jurisdiction identified in 3.1.1 or the subgroup identified in 3.1.3 on the basis of the domestic legislation of the relevant jurisdiction with taxing rights identified in 3.1.4 if this amount is different to the amount reported in 3.3.1.f.
3.1.11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applicability of the elections reported under 3.2.3 for a jurisdiction identified in 3.1.1 or a subgroup identified in 3.1.3 and those elections under the domestic legislation of the relevant jurisdiction with taxing rights identified in 3.1.4.
3.1.12 ~ 3.1.15	These data points should be reported separately for each jurisdiction with taxing rights identified under 3.1.4 ("the relevant jurisdiction with taxing rights"). The questions should only be answered if a difference has been reported in 3.1.6. If there is no difference for a given question,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No difference".
3.1.12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Aggregate current tax expense with respect to Covered Taxes after allocations in Art. 11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see 3.2.1.2.(a).1) for the jurisdiction identified in 3.1.1 or the subgroup identified in 3.1.3 on the basis of the domestic legislation of the relevant jurisdiction with taxing rights identified in 3.1.4.
3.1.13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adjustment made under Art. 110 1 c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in relation to Qualified Refundable Tax Credits or Marketable Transferable Tax Credits in the computation of Adjusted Covered Taxes (see 3.2.1.2.(a).2.d) for the jurisdiction identified in 3.1.1 or the subgroup identified in 3.1.3 on the basis of the domestic legislation of the relevant jurisdiction with taxing rights identified in 3.1.4.
3.1.14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adjustment made in the computation of Adjusted Covered Taxes under Art. 110 2 b and c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in relation to Non-Qualified Refundable Tax Credits or Non-Marketable Transferable Tax Credits or Other Tax Credits not recorded as a reduction to current tax expense (see 3.2.1.2.(a).2.(g)) for the jurisdiction identified in 3.1.1 or the subgroup identified in 3.1.3 on the basis of the domestic legislation of the relevant jurisdiction with taxing rights identified in 3.1.4.
3.1.15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Deferred tax expense amount (see 3.2.2.1.(a).1) for the jurisdiction identified in 3.1.1 or the subgroup identified in 3.1.3 on the basis of the domestic legislation of the relevant jurisdiction with taxing rights identified in 3.1.4.
3.1.16 ~ 3.1.18	These data points should be reported separately for each jurisdiction with taxing rights identified under 3.1.4 ("the relevant jurisdiction with taxing rights").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No difference" if there is no difference.
3.1.16	This data point should only be reported if a difference has been reported in 3.1.7.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adjustment made under Form ¹² and ¹³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in relation to Qualified Refundable Tax Credits or Marketable Transferable Tax Credits in the computation of GloBE Income or Loss (see 3.2.1.2.(n)) for the jurisdiction identified in 3.1.1 or the subgroup identified in 3.1.3 on the basis of the domestic legislation of the relevant jurisdiction with taxing rights identified in 3.1.5.
3.1.17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Excess Negative Tax Carry-forward Balance remaining for subsequent years for the jurisdiction identified in 3.1.1 or the subgroup identified in 3.1.3 on the basis of the domestic legislation of the relevant jurisdiction with taxing rights identified in 3.1.4 if this amount is different to the amount reported in 3.2.1.2.(b).4.
3.1.18	The information should only be reported if the Reporting Fiscal Year is the Transition Year for the jurisdiction identified in 3.1.1 or subgroup identified in 3.1.3.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complete 3.2.2.3 on the basis of the domestic legislation of the relevant jurisdiction with taxing rights identified in 3.1.4 if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is information and the information reported in 3.2.2.3.

3.2 ETR computation

3.2.1 ETR

3.2.1.a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aggregate amount of Financial Accounting Net Income or Loss determined for all Constituent Entities (or members of JV Group) located in the jurisdiction in preparing th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of the UPE.
3.2.1.b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Net GloBE Income or Loss for the jurisdiction. If there is more than one Investment Entity located in the jurisdiction,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sum of the MNE Group's Allocable Shares of each Investment Entity's GloBE Income or Loss as determined under Art. 79 (1)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nd Art. 135 (2) 2 and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3.2.1.c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aggregate amount of income tax expense that is recorded in the financial accounts of Constituent Entities (or members of JV Group) located in the jurisdiction.
3.2.1.d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aggregate amount of Adjusted Covered Taxes of all Constituent Entities (or members of JV Groups) located in the jurisdiction. If there is more than one Investment Entity located in the jurisdiction,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sum of the Adjusted Covered Taxes of each Investment Entity as determined under Art. 79 (1)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nd Art. 135 (1)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3.2.1.e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Effective Tax Rate for the jurisdiction.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not complete this column if the MNE Group (or the relevant subgroup) has a GloBE Loss in the jurisdiction.

210mm×297mm[White paper 80g/m² or Coated paper 80g/m²]

Guidance

3.2.1.1 Computation of GloBE Income (Loss)

3.2.1.1.1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aggregate FANIL of Constituent Entities or members of JV Groups located in the jurisdiction after the allocation of GloBE Income or Loss between Main Entities and Permanent Establishments under Art. 66 (5) and (6)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nd the allocation of GloBE Income or Loss from Flow-through Entities. Art. 79 (5)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lso covers the allocation of GloBE Income or Loss from an Investment Entity or an Insurance Investment Entity that is treated as a Tax Transparent Entity as a result of the election.
3.2.1.1.2.(b)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adjustments related to Excluded Dividends. Where a movement in an insurance company's reserve economically matches an Excluded Dividend (net of the investment management fee) from a security held on behalf of a policyholder, the movement in the insurance reserves shall be reported as a positive adjustment (addition to the FANIL) in row 3.2.1.1.2.(b).
3.2.1.1.2.(c)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adjustments related to Excluded Equity Gain or Loss. The amount of those adjustments shall also include foreign exchange gains or losses attributable to hedging instruments when the election to treat those foreign exchange gains or losses as an Excluded Equity Gain or Loss has been made. The expense from movements in insurance reserves related to Excluded Equity Gains or Losses from securities held on behalf of policyholders shall be reported as a positive adjustment (addition to the FANIL) in row 3.2.1.1.2.(c). The amount of the adjustments shall not include equity gain or loss that are not excluded pursuant to an Equity Investment Inclusion Election.
3.2.1.1.2.(k)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reductions made to the Financial Accounting Net Income or Loss of the Constituent Entities where the Entities are subject to a debt release and the income is excluded from the GloBE Income pursuant to Art. 66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nd Form¹¹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3.2.1.1.2.(n)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adjustments made to the Financial Accounting Net Income or Loss pursuant to form¹² and form¹³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In particular, any amount that is recorded as a reduction in current income tax expense (or other Covered Taxes) in the financial accounts and that should be treated as income, is included as a positive adjustment and any amount that is recorded as income in the financial accounts and that should be treated as a reduction in current income tax expense (or other Covered Taxes), is included as a negative adjustment.
3.2.1.1.2.(z)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adjustments made to the Financial Accounting Net Income or Loss of the Constituent Entities where the entities are subject to an adjustment under Art. 89 2 and Art. 89 4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3.2.1.1.3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Net GloBE Income (Loss) of the Jurisdiction.

3.2.1.2 Computation of Adjusted Covered Taxes

(a) Total amount of Adjusted Covered Taxes

3.2.1.2.(a).1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aggregate current tax expense (with respect to Covered Taxes accrued in Financial Accounting Net Income or Loss of all the Constituent Entities or members of JV Groups located in the jurisdiction) after the allocation of Covered Taxes from one Constituent Entity to another Constituent Entity. (Art. 11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 79 (5)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lso covers the allocation of Covered Taxes from an Investment Entity or an Insurance Investment Entity that is treated as a Tax Transparent Entity as a result of the election. Post-filing adjustments identified in this table do not include the adjustments made for a Fiscal Year other than the Reporting Fiscal Year in accordance with an ETR Adjustment Article. (Art. 68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The post-filing adjustments related to Art. 68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e the adjustments resulting in a material decrease in Covered Taxes for a previous Fiscal Year and the adjustments resulting in an immaterial decrease when an election is not made under Art. 68 (2)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3.2.1.2.(a).2.(d)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amount of the adjustment made pursuant to Art. 110 1 c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in respect of a Qualified Refundable Tax Credit or Marketable Tax Credit that is recorded as a reduction in current income tax expense (or other Covered Taxes) in the financial accounts.

Guidance

- 3.2.1.2.(a).2.(g)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amount of the adjustment made pursuant to Art 110 2 b and c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in respect of a non-Qualified Refundable Tax Credit, non-Marketable Transferable Tax Credit or Other Tax Credit that is recorded as income and not as a reduction in current income tax expense (or other Covered Taxes) in the financial accounts.
- 3.2.1.2.(a).2.(h) Pursuant to Art. 110 2 d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amount of Covered Taxes which were claimed as Covered Tax in a previous fiscal year (subject to GloBE rules) and that is refunded or credited in the current fiscal year. Qualified Refundable Tax Credits and Marketable Transferable Tax Credits are excluded from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is rule.
- 3.2.1.2.(a).2.(s)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Excess Negative Tax Expense Carry-Forward generated for the reporting Fiscal Year pursuant to Art. 116-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or an election under Art 119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in accordance with related agreed Administrative Guidance. The same amount shall also be reported in 3.2.1.2.(b).2.
- 3.2.1.2.(a).2.(t)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decrease in Adjusted Covered Taxes in relation to the remaining balance of the Excess Negative Expense Carry-forward pursuant to Art. 116-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or an election under Art. 119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in accordance with related agreed Administrative Guidance. The decrease is the same amount as reported in 3.2.1.2.(b).3. but cannot exceed the amount of Adjusted Covered Taxes obtained as a result of the other adjustments.
- 3.2.1.2.(a).3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Adjusted Covered Taxes of all Constituent Entities or members of JV Groups located in the jurisdiction.

(b) Excess Negative Tax Expense Carry-forward

- 3.2.1.2.(b).1 The Balance from prior years is the remaining amount of Excess Negative Tax Expense Carry-forward for the jurisdiction that has not yet effectively reduced the amount of Adjusted Covered Taxes for the jurisdiction.
- 3.2.1.2.(b).2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Excess Negative Tax Expense Carry-forward generated for the Reporting Fiscal Year for the jurisdiction. The Excess Negative Tax Expense Carry-forward generated for the jurisdiction equals the Additional Current Top-up Tax under Art.119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for the jurisdiction reported under 3.3.3.2.4 if the election for the Excess Negative Tax expense administrative procedure is made for the Reporting Fiscal Year, pursuant to Art.119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nd related agreed Administrative Guidance. The Excess Negative Tax Expense attributable to an amount of a loss that is carried back and applied against income for prior taxable years must be deducted from the amount of Excess Negative Tax Expense Carry-forward. Under Art 116-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the Excess Negative Tax Expense Carry-forward generated for the jurisdiction is computed for a Fiscal Year in which the MNE Group has a Top-up Tax Percentage for a jurisdiction that exceeds the Minimum Rate due to negative Adjusted Covered Taxes. In such a case, the Excess Negative Tax Expense Carry-forward for the jurisdiction is equal to the absolute amount of negative Adjusted Covered Taxes.
- 3.2.1.2.(b).3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Excess Negative Tax Expense Carry-forward utilized for the Reporting Fiscal Year for the jurisdiction. The Excess Negative Tax Expense Carry-forward utilised for the jurisdiction shall be the lower of the remaining balance of the Excess Negative Tax Expense Carry-forward and the Adjusted Covered Taxes computed for the reporting Fiscal Year.
- 3.2.1.2.(b).4 The Negative Tax Expense Carry-forward remaining for subsequent years is the sum of the Balance from prior years and the Excess Negative Tax Expense Carry-forward generated for the Reporting Fiscal Year for the jurisdiction after deducting the Excess Negative Tax Expense Carry-forward utilised for the reporting Fiscal Year.

(c) Transitional Blended CFC Regime calculation (if any)

- 3.2.1.2.(c)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complete this table if Blended CFC Tax is allocated (i) from a Constituent Entity-owner located in this jurisdiction and belonging to this subgroup or (ii) to Constituent Entities located in this jurisdiction and belonging to this subgroup pursuant to Art 111 (1) 5 b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nd the related Administrative Guidance.

210mm×297mm [White paper 80g/m² or Coated paper 80g/m²]

Guidance

- 3.2.1.2.(c).1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jurisdictions where the Constituent Entities which were allocated Blended CFC Tax under the Blended CFC Tax Regime are located.
The jurisdictions shall be reported in the form of 2-character alphabetic country code based on the ISO 3166-1 Alpha 2 standard.
- 3.2.1.2.(c).2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subgroup of the Constituent Entities which were allocated Blended CFC Tax under the Blended CFC Tax Regime.
This subgroup is the same as the one identified in 3.1.3.
- 3.2.1.2.(c).3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Blended CFC Tax allocated for the Fiscal Year from the Constituent Entity-owner to Constituent Entities located in the jurisdiction identified in the first column.

3.2.2 Jurisdictional computations relating to deferred tax accounting

3.2.2.1 Deferred Tax adjustments

(a) High-level summary

- 3.2.2.1.(a).1.a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aggregate deferred tax expense amount in the Financial Accounts for all Constituent Entities or members of JV Groups located in the jurisdiction. If the deferred tax expense is recorded as a debit to the deferred tax expense account, the amount shall be presented as a positive number. If the deferred tax expense is recorded as credit to the deferred tax expense account, the amount shall be presented as a negative amount.
- 3.2.2.1.(a).1.b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deferred tax expense included in the financial accounts in relation to assets or liabilities for which the GloBE carrying value is different to the accounting carrying value for all Constituent Entities or members of JV Groups located in the jurisdiction.
- 3.2.2.1.(a).1.c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deferred tax expense based on the GloBE carrying value of assets or liabilities for which the GloBE carrying value is different to the accounting carrying value for all Constituent Entities or members of JV Groups located in the jurisdiction.
- 3.2.2.1.(a).1.d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deferred tax expense for GloBE purposes before any recasting and adjustments.
- 3.2.2.1.(a).2 The total amount of the adjustments shall be the total amount of the adjustments in 3.2.2.1.(b).2.
- 3.2.2.1.(a).3.e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deferred tax expense for GloBE purposes before any recasting.
- 3.2.2.1.(a).3.f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cast at the Minimum Rate any deferred tax asset attributable to a GloBE Loss (Art. 112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that was recorded at a lower tax rate and report the amount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deferred tax expense recorded at a lower tax rate than the Minimum Rate and the deferred tax expense based on the Minimum Rate. The difference shall be presented as a negative amount when it is attributable to the recognition of a GloBE Loss deferred tax asset, and the difference shall be presented as a positive amount when it is attributable to the reversal of such deferred tax asset.
- 3.2.2.1.(a).3.g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cast at the Minimum Rate any deferred tax expense that has been recorded (Art. 67 (2)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t a higher tax rate than the Minimum Rate and report the amount of difference between the deferred tax expense recorded at a higher tax rate than the Minimum Rate and the deferred tax expense based on the Minimum Rate. If the deferred tax expense for the Fiscal Year before any recasting is taken into account as a credit to the deferred tax expense account, the amount of the difference shall be presented as a positive amount. If the deferred tax expense before any recasting for the Fiscal Year is taken into account as a debit to the deferred tax expense account, the amount of the difference shall be presented as a negative amount.
- 3.2.2.1.(a).4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Total Deferred Tax Adjustment Amount for the jurisdiction.

(b) Breakdown of the adjustments

- 3.2.2.1.(b)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adjustments determined before any recasting as broken down in the table. If the adjustment leads to an increase to the Total Deferred Tax Adjustment Amount, the amount shall be presented as a positive number. If the adjustment leads to a decrease to the Total Deferred Tax Adjustment Amount, the amount shall be presented as a negative number.
- 3.2.2.1.(b).1.(f)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adjustments of deferred tax expense in the Financial Accounts related to tax credits before any adjustments for Substitute Loss Carry-forward DTA and deemed Substitute Loss Carry-forward DTA.

210mm×297mm[White paper 80g/m² or Coated paper 80g/m²]

Guidance

3.2.2.1.(b).1.(g)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adjustments related to Substitute Loss Carry-forward DTA and deemed Substitute Loss Carry-forward DTA pursuant to the related Administrative Guidance.
3.2.2.1.(b).1.(p)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adjustments to the deferred tax expense resulting from transactions between Constituent Entities and the application of Art. 89 3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3.2.2.1.(b).2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total amount of the adjustments. This total amount shall be the same amount reported in 3.2.2.1.(a).2.

(c) Loss carry backs

3.2.2.1.(c).1.a,b,etc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amount of deferred tax assets that shall be treated as reversed for a prior Fiscal Year to which the domestic tax loss has been carried back.
3.2.2.1.(c).2.a,b,etc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refund of Covered Taxes relating to a domestic tax loss carried back to a prior Fiscal Year. The amount of the refund shall match with the domestic tax loss that has been carried back to the prior Fiscal Year.
3.2.2.1.(c).1.c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total amount of deemed deferred tax assets that shall be treated as reversed for prior Fiscal Years. This total amount should be capped at an amount equal to the domestic tax loss multiplied by the Minimum Rate as provided in paragraphs 124 through 126 of the Commentary under Art. 68 (1)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3.2.2.1.(c).2.c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total amount of refund of Covered Taxes. This total amount shall be the amount of refund of tax with respect to loss carry backs issued in the Reporting Fiscal Year.
3.2.2.1.(c).1.c and 3.2.2.1.(c).2.c	The difference between the 3.2.2.1.(c).1.c and 3.2.2.1.(c).2.c would be the adjustment to the Covered Tax for the Reporting Fiscal Year with respect to loss carry backs. The amount shall be taken into account for the adjustment under Art. 68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for the Reporting Fiscal Year reported in 3.2.1.2.(a).1.(k).

3.2.2.2 Recapture mechanism

3.2.2.2.(a).1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total amount of DTLs(Art. 11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except for Recapture Exception Accruals, taken into account under Art. 67 (2)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in computing Adjusted Covered Taxes for the fifth Fiscal Year preceding the Reporting Fiscal Year.
3.2.2.2.(a).2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total amount of Recaptured Deferred Tax Liability determined in the Reporting Fiscal Year in relation to the fifth Fiscal Year preceding the Reporting Fiscal Year. This amount will be used in connection with the reporting requirements related to the Additional Current Top-up Tax are identified in 3.3.3.
3.2.2.2.(a).3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total amount of DTLs, except for Recapture Exception Accruals(Art. 11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taken into account under Art. 67 (2)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for the Reporting Fiscal Year.
3.2.2.2.(b)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complete this table with respect to the DTLs tracked on an aggregated basis, i.e. on the basis of a General Ledger account or of an Aggregate DTL Category, excluding DTLs tracked on an item-by-item basis.
3.2.2.2.(b).a.1 and 3.2.2.2.(b).a.2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amount of pre-Transition Year DTLs after reversals allocated to pre-Transition Year DTLs for the Reporting Fiscal Year and immediately Prior Fiscal Year.(Art. 113-2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nd Art. 74-2 (3)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3.2.2.2.(b).b.1 and 3.2.2.2.(b).b.2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amount of Outstanding Balance for the Reporting Fiscal Year and immediately Prior Fiscal Year.(Art. 113-2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nd Art. 74-2 (1)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3.2.2.2.(b).c.1 and 3.2.2.2.(b).c.2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amount of Unjustified Balance for the Reporting Fiscal Year and immediately Prior Fiscal Year.(Art. 113-2 (1) 2 a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210mm×297mm[White paper 80g/m² or Coated paper 80g/m²]

Guidance

3.2.2.3 Transition rules

- 3.2.2.3 Row 3.2.2.3.1 (i.e. the Transition Year) shall be reported every year, whereas all the other information of this section shall be reported in the GloBE Information Return only when the Reporting Fiscal Year is also the Transition Year.

(a) Application of Art. 81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 139 (1) through (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 3.2.2.3.(a).1 The Deferred tax liabilities at the beginning of the Transition Year is the aggregate amount of Deferred tax liabilities that have been recorded in the financial accounts at the beginning of the Transition Year for a jurisdiction, which shall not include any deferred tax liability arising from a transfer of assets between Constituent Entities or members of JV Groups after 30 November 2021 and before the commencement of a Transition Year.
- These deferred tax liabilities shall be reflected in the table that relates to the application of Art. 139 (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 3.2.2.3.(a).2 The recast at the Minimum Rate does not apply if the applicable domestic tax rate is lower than the Minimum Rate.
- 3.2.2.3.(a).3 The deferred tax assets at the beginning of the Transition Year is the aggregate amount of Deferred tax assets that have been recorded in the financial accounts at the beginning of the Transition Year for a jurisdiction, which shall not include any deferred tax assets arising from a transfer of assets between Constituent Entities or members of JV Groups after 30 November 2021 and before the commencement of a Transition Year.
- These deferred tax assets shall be reflected in the table that relates to the application of Art. 89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 3.2.2.3.(a).4 The recast at the Minimum Rate does not apply if the applicable domestic tax rate is lower than the Minimum Rate, unless it could be demonstrated that the deferred tax asset is attributable to a GloBE Loss, in this case, the deferred tax asset that has been recorded at a rate lower than the Minimum Rate could be recast at the Minimum Rate.
- 3.2.2.3.(a).5 Deferred tax assets arising from items excluded from the computation of GloBE Income or Loss under "3. GloBE Computations" should be excluded if such deferred tax assets are generated in a transaction that takes place after 30 November 2021.(Art. 66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 3.2.2.3.(a).6 Deferred tax assets taken into account for GloBE purposes is the aggregate amount of deferred tax assets that should be recognized for purposes of the GloBE Rules at the beginning of the Transition Year.

(b) Application of Art. 89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 3.2.2.3.(b).1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list all jurisdictions in which disposing Constituent Entities or members of JV Groups are located when such Constituent Entities or members of JV Groups have disposed assets to Constituent Entities or members of JV Groups located in this jurisdiction after 30 November 2021 and before the commencement of a Transition Year. Those jurisdictions in which disposing Constituent Entities or members of JV Group are located could be the same jurisdiction of the acquiring entities.
-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identify the jurisdiction (in the form of a 2-character alphabetic country code based on the ISO 3166-1 Alpha 2 standard) of the disposing Constituent Entity or member of JV Group.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Stateless" for Stateless Constituent Entities.
- 3.2.2.3.(b).2 The filing CE shall report the amount of tax paid in respect of the transaction(s).
- 3.2.2.3.(b).3 The filing CE shall report the net amount of the aggregate pre-existing deferred tax assets or liabilities on the transferred asset(s) reflected in the financial accounts of the disposing Constituent Entity (or Constituent Entities). Deferred tax assets shall be reported as a positive number and deferred tax liabilities shall be reported as a negative number.
- 3.2.2.3.(b).4 The Carrying Value of the transferred assets for GloBE purposes is the aggregate amount of the Carrying Value of the transferred assets that should be recognised for purposes of the GloBE Rules at the beginning of the Transition Year.
- This amount shall be determined by adjusting the financial accounting carrying value upon disposition of the transferred asset on the day of the transfer.
- The financial accounting carrying value upon disposition shall be adjusted as appropriate pursuant to Art. 89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nd further adjusted for capital expenditures, amortization or depreciation that were recorded after the transaction and before the beginning of the Transition Year.

210mm×297mm [White paper 80g/m² or Coated paper 80g/m²]

Guidance

- 3.2.2.3.(b).5 The net deferred tax asset or liability with respect to the transferred assets for GloBE purposes is the net amount of the aggregate deferred tax assets and liabilities that should be recognised for purposes of the GloBE Rules at the beginning of the Transition Year with respect to the transferred assets. This amount shall be determined by adjusting the net amount of the aggregate pre-existing deferred tax assets and liabilities as accrued in the financial accounts of the disposing entity prior to the transfer, in relation to the transferred assets.
- The net amount of the aggregate pre-existing deferred tax assets and liabilities shall be adjusted as appropriate pursuant to Art. 89 3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 Deferred tax assets shall be reported as a positive number and deferred tax liabilities shall be reported as a negative number.

3.2.3 Jurisdictional elections (if any)

3.2.3.1. Jurisdictional elections (other than Art. 78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 3.2.3.1 Jurisdictional elections are elections that apply to all Constituent Entities (or members of a JV Group) located in the jurisdiction

(a) Elections

- 3.2.3.1.(a).1.c If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does not complete table 3.3.2 for the jurisdiction, it is assumed that the election in 3.2.3.1.(a).1.c to not apply the Substance Based Income Exclusion has been made for the jurisdiction.
- 3.2.3.1.(a).3 For Five-year Elections,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Election Year.
- 3.2.3.1.(a).4 For Five-year Elections,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year where the election was revoked (if any).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revocation year in the GloBE Information Return filed for the revocation year and in the GloBE Information Returns filed for the four Fiscal Years succeeding the revocation year.
- 3.2.3.1.(a).5.j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can only make the GloBE Loss Election with the first GloBE Information Return that includes the jurisdiction for which the election is made. If the election is subsequently revoked,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cannot make a new election for the same jurisdiction.
- 3.2.3.1.(a).6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year where the election was revoked (if any).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revocation year in the GloBE Information Return filed for the revocation year and in the GloBE Information Returns filed for all Fiscal Years succeeding the revocation year.

(b) Information requirements related to jurisdictional elections

- 3.2.3.1.(b).1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equity gain or loss that is included in the GloBE Income or Loss when the Equity Investment Inclusion Election is made.
- 3.2.3.1.(b).2 The Balance of the owner's investment in a Qualified Ownership Interest from prior years is the remaining amount of the owner's investment in Qualified Ownership Interest for the jurisdiction that has not yet reduced by receipts.
- 3.2.3.1.(b).3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increase in the owner's investment in a Qualified Ownership Interest for the Reporting Fiscal Year for the jurisdiction.
- 3.2.3.1.(b).4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decrease in the owner's investment in a Qualified Ownership Interest for the Reporting Fiscal Year for the jurisdiction pursuant to the related Administrative Guidance. The decrease cannot exceed the owner's investment and cause the investment below zero.
- 3.2.3.1.(b).5 The outstanding balance of owner's investment in a Qualified Ownership Interest is the sum of the balance from prior years and additions to the owner's investment in a Qualified Ownership Interest after deducting the receipts with respect to the Qualified Ownership Interest for the Reporting Fiscal Year.

3.2.3.2. Election for Art. 78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 Recapture mechanism for Art. 134 (2), (4) through (8)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 83 (1)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 3.2.3.2.(a).2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amount of the Deemed Distribution Tax determined under Art. 78 (1)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for the Fiscal Year for which it was established.
- 3.2.3.2.(a).3 At the end of each succeeding Fiscal Year, the outstanding balances of Deemed Distribution Tax Recapture Accounts are reduced in chronological order but not below zero, as provided under Art. 83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by the tax paid by the Constituent Entities (or members of JV Groups), by the amount of any Net GloBE Loss of the jurisdiction multiplied by the Minimum Rate and then by the amount of Recapture Account Loss Carry-forward applied to the current Fiscal Year.

Guidance

- 3.2.3.2.(a).4 If there is an outstanding balance on the last day of the fourth Fiscal Year after the Fiscal Year for which the account was established (first row of this table), Art. 78 (2)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pplies.
- In the Fiscal Year a Departing Constituent Entity (or member of a JV Group) leaves the MNE Group or transfers substantially all of its assets, Art. 83 (2) through (4)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pplies.
- The amount is to be used to determine whether the additional Current Top-up Tax is generated and the result will be presented in 3.3.3.1.

(b) Application of Art 83 (2) through (4)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 3.2.3.2.(b).1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identify all Prior Fiscal Years for which a Deemed Distribution Tax Recapture Account is outstanding is re-calc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Art. 119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 3.2.3.2.(b).2 The incremental top up tax is the total amount of Top-up Tax determined under Art. 119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if Art. 83 (2)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pplies.
- 3.2.3.2.(b).3 The Disposition Recapture Ratio is defined in Art. 83 (2) 2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nd determined for each Departing Constituent Entity (member of JV Group) using the following formula: *GloBE Income of the CE(or member of JV Group)/Net Income of the jurisdiction*.

3.2.4 Constituent Entity Computations

(a) Election for the transitional simplified jurisdictional reporting framework

- 3.2.4.(a).1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Yes” if it elects to apply the transitional simplified jurisdictional reporting framework during the transitional period.
- If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elects for the transitional simplified jurisdictional reporting framework, it shall:
- (i) Complete section 3.2.4 for Constituent Entities or members of JV Groups located in this jurisdiction (and part of subgroup, where relevant) if Top-up Tax liability arises in respect of this jurisdiction and needs to be allocated on a Constituent Entity by Constituent Entity basis (see exceptions where Top-up Tax does not need to be allocated provided in note 3.4.1); and
 - (ii) In any case, report specific information included in the tables below as provided in the explanatory guidance (see note 3.2.4.1.(a).3.(e), 3.2.4.1.(a).3.(m), 3.2.4.1.(a).3.(u), 3.2.4.1.(a).3.(v) and 3.2.4.1.(a).3.(z), note 3.2.4.1.(c), note 3.2.4.1.(d), note 3.2.4.2.(c).3.(m), note 3.2.4.2.(c).3.(p), note 3.2.4.3, note 3.2.4.4.(a) and Note 3.2.4.4.(b)), for Constituent Entities or members of JV Groups located in this jurisdiction (and part of subgroup, where relevant);
 - (iii) Report the net amount of the adjustments identified in tables 3.2.4.1.(a). and 3.2.4.2.(c). If the net amount for the relevant adjustment is a positive amount,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it in the “additions”.
- If the net amount for the relevant adjustment is a negative amount,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it in the “reductions”.
- The transitional simplified jurisdictional reporting framework shall not be elected in respect of a QDMTT Safe Harbour if the QDMTT jurisdiction chose to not apply the transitional simplified jurisdictional reporting framework as provided in the QDMTT Safe Harbour guidance.

(b) Aggregated Reporting for Tax Consolidated Groups

- 3.2.4.(b)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may elect for aggregate reporting for tax consolidated groups (i.e., treat a tax consolidated group as a single CE for purposes of section 3.2.4) where all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met:
- (i) The taxable profits and losses of the consolidated entities are aggregated for purposes of computing a single tax liability (irrespective of the fact that the consolidated entities might b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for the tax charge on behalf of the group);
 - (ii) All consolidated entities are wholly-owned by the consolidating entity;
 - (iii) All Constituent Entities or members of a JV Group within the tax consolidated group are located in the same jurisdiction for GloBE purposes; and
 - (iv)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made an election under Art. 104 (1) 1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nd Form¹⁶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to consolidate intra-group transactions in the jurisdiction.
- Section 3.2.4 shall be completed on a CE-by-CE basis with respect to Entities that either joined or left the MNE Group during the Reporting Fiscal Year, irrespective of whether those Entities are (or were) included in a tax consolidation group. Equally, Section 3.2.4 shall be completed on a CE-by-CE basis with respect to Entities that are subject to separate ETR computations under the GloBE Model Rules (e.g., Investment Entities and Insurance Investment Entities), irrespective of whether those Entities are included in a tax consolidated group.

210mm×297mm[White paper 80g/m² or Coated paper 80g/m²]

Guidance

3.2.4.(b).1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TIN of the tax consolidated group used for purposes of Covered Taxes in the jurisdiction.

3.2.4.(b).2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TIN of the Constituent Entities or members of a JV Group that are aggregated in the tax consolidated group used for purposes of Covered Taxes in the jurisdiction.

3.2.4.1 GloBE Income or Loss

(a) Adjustments to the Financial Accounts Net Income or Loss

3.2.4.1.(a) When the UPE is wholly owned by holders of Ownership Interests in respect of which Art. 77–2 (2) a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nd Art. 13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pplies, and reported “exception, wholly-owned” in column 3.2.4.1.(d).5, the Filing CE shall not complete Table 3.2.4.1.(a) with respect to the UPE (and with respect to Tax Transparent Entities wholly owned by the UPE through a Tax Transparent Structure and located in the UPE jurisdiction to which Art. 108 (1) 1 b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pplies).

3.2.4.1.(a).1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TIN of the Constituent Entity, JV or JV Subsidiary used for purposes of Covered Taxes in the jurisdiction or, where a TIN is unavailable, a functional equivalent, such as a business/company registration code/number.

3.2.4.1.(a).2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FANIL of the Constituent Entity or member of a JV Group after the allocation of GloBE Income or Loss between Main Entities and Permanent Establishments (Art. 107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nd the allocation of GloBE Income or Loss from Flow-through Entities (Art. 108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 107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lso covers the allocation of GloBE Income or Loss from an Investment Entity or an Insurance Investment Entity that is treated as a Tax Transparent Entity as a result of the election under Art. 79 (5)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3.2.4.1.(a).3. (e), (m), (u), (v), (z) The Filing CE shall complete these rows irrespective of whether it elects for the transitional simplified jurisdictional reporting framework.

3.2.4.1.(a).3.(n)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adjustments made to the Financial Accounting Net Income or Loss pursuant to form^② and form^③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In particular, any amount that is recorded as a reduction in current income tax expense (or other Covered Taxes) in the financial accounts and that should be treated as income, is included as a positive adjustment and any amount that is recorded as income in the financial accounts and that should be treated as a reduction in current income tax expense (or other Covered Taxes), is included as a negative adjustment.

3.2.4.1.(a).4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GloBE Income (Loss) of the Constituent Entity or member of a JV Group. For Investment Entities,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MNE Group’s Allocable Share of the Investment Entity’s GloBE Income as determined under Art. 135 (3) 2 or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b) Cross-border allocation of income or loss between a Main Entity and a PE and from an FTE (Art. 66 (4) through (7)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nd Art. 107 & 108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3.2.4.1.(b) No adjustments are required under Art. 107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if, by virtue of maintaining its own (separate) financial accounts in the jurisdiction, the FANIL of the CE (or members of JV Groups) located in the jurisdiction already reflects income or losses attributable to Permanent Establishments in such jurisdiction.

Adjustments under Art. 108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pply to Flow-Through Entities as well as Constituent Entities or members of JV Groups in respect of which an election is made under Art. 79 (5)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The Filing CE shall complete this table irrespective of whether it elects for the transitional simplified jurisdictional reporting framework.

3.2.4.1.(b).1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TIN of the Constituent Entity, JV or JV Subsidiary used for purposes of Covered Taxes in the jurisdiction or, where a TIN is unavailable, a functional equivalent, such as a business/company registration code/number.

210mm×297mm [White paper 80g/m² or Coated paper 80g/m²]

Guidance

3.2.4.1.(b).2	The FANIL of the CE or member of JV Group before the relevant adjustment shall be reported under this column. In the case where multiple adjustments apply, the FANIL to be reported under 3.2.4.1.(b).2 should reflect the FANIL taking into account the preceding adjustment(s).
3.2.4.1.(b).3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identify the relevant adjustment from the following list: Art. 107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 108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 108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nd/or Art. 108 (1)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For each type of adjustment, the respective addition or reduction to FANIL of the Constituent Entity or member of JV Group shall be reported. In the case where multiple adjustments apply, one row shall be reported for each option and the relevant options shall be reported in the following order: Art. 107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 108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 108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nd/or Art. 108 (1)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 The adjustments under Art. 107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shall include the adjustments made to allocate GloBE Income or Loss to PEs located in this jurisdiction or Stateless PEs (additions) as well as to allocate GloBE Income or Loss from a Main Entity located in this jurisdiction to a PE (reductions). • The adjustments under Art. 108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shall include the reductions to the GloBE Income or Loss of the amount allocated to other owners that are not Group Entities. • The adjustments under Art. 108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shall include the reductions to the GloBE Income or Loss of the amount allocated to other owners that are not Group Entities. • The adjustments under Art. 108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shall include the allocation of GloBE Income or Loss from a Flow-through Entity to a PE in this jurisdiction or to this Stateless PE (additions) and the allocation from this Stateless Flow-through Entity (or a Flow-through Entity located in this jurisdiction if it is the UPE) to a PE in another jurisdiction (reductions). • When a Flow-through Entity is treated as a Tax Transparent Entity by some of its owners and a Reverse Hybrid Entity by its other owners,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allocation of GloBE Income or Loss to CE owners that are located in a jurisdiction where the Flow-through Entity is treated as fiscally transparent.(Art. 108 (1)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The GloBE Income or Loss attributable to Ownership Interests held by CE owners that are located in a jurisdiction where the Flow-through Entity is not treated as fiscally transparent is then allocated to the Flow-through Entity under Art. 108 (1)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3.2.4.1.(b).4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TIN of the other Constituent Entity, JV or JV Subsidiary used for purposes of Covered Taxes in the jurisdiction or, where a TIN is unavailable, a functional equivalent, such as a business/company registration code/number
3.2.4.1.(b).5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identify the jurisdiction (in the form of a 2-character alphabetic country code based on the ISO 3166-1 Alpha 2 standard) of the other Constituent Entity or member of JV Group.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Stateless" for Stateless Constituent Entities.
3.2.4.1.(b).6	The amount of any adjustment that increases the GloBE Income of the CE or member of JV Group identified in column 3.2.4.1.(b).1 shall be reported under this column.
3.2.4.1.(b).7	The amount of any adjustment that decreases the GloBE Income of the CE or member of JV Group identified in column 3.2.4.1.(b).1 shall be reported under this column.
3.2.4.1.(b).8	The FANIL of the CE or member of JV Group after the relevant adjustment shall be reported under this column. In the case where multiple adjustments apply, the FANIL to be reported under 3.2.4.1.(b).2 should reflect the FANIL taking into account the adjustment identified in the same row.

210mm×297mm[White paper 80g/m² or Coated paper 80g/m²]

Guidance

(c) Cross-border adjustments

3.2.4.1.(c)	When the UPE is wholly owned by holders of Ownership Interests in respect of which Art. 77-2 (2) a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nd Art. 13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pplies, and reported "exception, wholly-owned" in column 3.2.4.1.(d).5, the Filing CE shall not complete Table 3.2.4.1.(c) with respect to the UPE (and with respect to Tax Transparent Entities wholly owned by the UPE through a Tax Transparent Structure and located in the UPE jurisdiction to which Art. 108 (1) 1 b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pplies).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only report in this table adjustments under Art. 104 (1) 16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that relate to transactions between Constituent Entities located in different jurisdictions.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not report the cross-border adjustments under Art. 104 (1) 16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when they relate to intragroup transactions that do not exceed EUR 35 million in aggregate during the Reporting Fiscal Year. The Filing CE shall complete this table irrespective of whether it elects for the transitional simplified jurisdictional reporting framework.
3.2.4.1.(c).1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TIN of the Constituent Entity or member of JV Group located in this jurisdiction (or Stateless CE where relevant) for which an adjustment applies. Where a TIN is unavailable,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a functional equivalent, such as a business/company registration code/number.
3.2.4.1.(c).2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identify whether the adjustment relates to: 1. Form¹⁷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2. Form¹⁹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3.2.4.1.(c).3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TIN of the other CE or member of JV Group involved in the adjustment identified. Where a TIN is unavailable,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a functional equivalent, such as a business/company registration code/number.
3.2.4.1.(c).4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identify the jurisdiction (in the form of a 2-character alphabetic country code based on the ISO 3166-1 Alpha 2 standard) of the other Constituent Entity or member of JV Group involved in the adjustment.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Stateless" for Stateless Constituent Entities.
3.2.4.1.(c).5	The amount of any adjustment that increases the GloBE Income of the CE or member of JV Group identified in column 3.2.4.1.(c).1 shall be reported under this column.
3.2.4.1.(c).6	The amount of any adjustment that decreases the GloBE Income of the CE or member of JV Group identified in column 3.2.4.1.(c).1 shall be reported under this column. The adjustment under Form⁹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that excludes expenses will result in an addition to the GloBE Income. Therefore, column 6 is not likely to be used for purposes of those adjustments.

(d) Adjustments to the GloBE Income of the UPE under Art. 77-2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3.2.4.1.(d)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complete this table in cases where Art.77-2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pplies. The Filing CE shall complete this table irrespective of whether it elects for the transitional simplified jurisdictional reporting framework.
3.2.4.1.(d).1	When Art.77-2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pplies, the CE located in this jurisdiction is the UPE of the MNE Group. In that case,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UPE". If Art.77-2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pplies,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TIN of the Permanent Establishments to which Article Art.77-2 (2)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pplies or, where a TIN is unavailable, a functional equivalent, such as a business/company registration code/number. If Art.77-2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pplies,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TIN of the Constituent Entities to which Art. 77-2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pplies or, where a TIN is unavailable, a functional equivalent, such as a business/company registration code/number. When Art. 77-2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pplies to a members of a JV Group,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TIN of the JV Group members.
3.2.4.1.(d).2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Article (i.e) 1. Art. 77-2 (2) 1,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2. Art. 77-2 (2) 2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3. Art. 77-2 (1)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4. ACT, UPE that reduces its GloBE income shall its Covered Taxes(other than the Taxes for which the dividend deduction was allowed) proportionally and shall reduce it GloBE income by the same amount. that applies, together with the relevant subparagraph letter and number.

Guidance

- 3.2.4.1.(d).3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complete a separate row for each holder of Ownership Interests (respectively, dividend recipient) in respect of Art. 132 (2) 1 or Art. 132 (2)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identify the Natural Persons in the aggregate.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identify the holders of Ownership Interests (respectively, dividend recipients) for which a reduction of the GloBE Income applies as follows:
- (a) Each holder of Ownership Interests (respectively, dividend recipient) in respect of Art. 77–2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respectively, dividend recipient) applies, is identified through the reporting of:
 - (i) Its TIN;
 - (ii) The jurisdiction where it is a tax resident; and
 - (iii) The nominal tax rate or the expected aggregate tax rate (percentage) applicable when comparing the aggregate amount of Adjusted Covered Taxes of the UPE and taxes of the holder of the Ownership Interest on the excluded income (respectively, the taxes paid by the dividend recipient on the dividend income) with the amount of excluded income.

In the situation where multiple nominal tax rates apply to the holder of the Ownership Interest,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may report in (iii) the lowest nominal tax rate applicable (provided that rate exceeds 15%) instead of the nominal tax rate. If the dividend recipient is a natural person, the jurisdictions where the natural persons are tax resident shall be reported instead, together with the number of natural persons that are tax resident in each jurisdiction. (Art. 132 (2)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 (b) The total number of Natural Persons shall be reported instead of identifying such Natural Persons. (Art. 133 (2) and 132 (2)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 (c) Each holder of Ownership Interests (respectively, dividend recipient) is identified through the reporting of (Art. 133 (3), Art. 132 (2)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 (i) Its TIN (or, where a TIN is unavailable, a functional equivalent, such as a business/company registration code/number); and
 - (ii) the type of entity (Governmental Entity, International Organisation, Non-profit Organisation, Pension Fund or, for purposes of Art. 132 (2)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Pension Fund that is not a Pension Services Entity).
-
- 3.2.4.1.(d).4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in percentage) the Ownership Interests directly held in the UPE by each holder identified in 3.2.4.1.(d).3.
-
- 3.2.4.1.(d).5 The amount of any adjustment that decreases the GloBE Income of the CE or member of JV Group identified in column 3.2.4.1.(d).1 shall be reported under this column. If Art. 77–2 (2)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pplies,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GloBE Income or (Loss) attributable to each Ownership Interest in 3.2.4.1.(d).4. If Art. 77–2 (1)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pplies,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amount of Deductible Dividends distributed to each shareholder (i.e., dividend recipient) identified in 3.2.4.1.(d).3.
- When the UPE is wholly owned by holders of Ownership Interests (identified in column 3.2.4.1.(d).3 in respect of which Art. 77–2 (2) 1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nd Art. 13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pplies,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only report “exception, wholly-owned” in this column (and shall not report the amount of any adjustment). The same exception could apply in respect of Tax Transparent Entities wholly owned by the UPE through a Tax Transparent Structure and located in the UPE jurisdiction.
-
- 3.2.4.2 Adjusted Covered taxes**
-
- (a) Adjustments to the Current tax expense in the Financial Accounts**
-
- 3.2.4.2.(a) When the UPE is wholly owned by holders of Ownership Interests in respect of which Art. 77–2 (2) 1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nd Art. 13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pplies, and reported “exception, wholly-owned” in column 3.2.4.1.(d).5, the Filing CE shall not complete Table 3.2.4.2.(a) with respect to the UPE (and with respect to Tax Transparent Entities wholly owned by the UPE through a Tax Transparent Structure and located in the UPE jurisdiction to which Art. 108 (1) 1 b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pplies).
-
- 3.2.4.2.(a).1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TIN of the Constituent Entity or member of JV Group used for purposes of Covered Taxes in the jurisdiction or, where a TIN is unavailable, a functional equivalent, such as a business/company registration code/number.
-

Guidance

3.2.4.2.(a).2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current tax expense (with respect to Covered Taxes accrued in Financial Accounting Net Income or Loss of the Constituent Entity or member of a JV Group) after the allocation of Covered Taxes from one Constituent Entity or member of JV Group to another Constituent Entity or member of JV Group (Art. 67 (1)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 67 (1)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lso covers the allocation of Covered Taxes from an Investment Entity or an Insurance Investment Entity that is treated as a Tax Transparent Entity as a result of the election under Art. 79 (5)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Post-filing adjustments identified in this table do not include the adjustments made for a Fiscal Year other than the Reporting Fiscal Year in accordance with an ETR Adjustment Article. The post-filing adjustments related to Art. 68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e the adjustments resulting in a material decrease in Covered Taxes for a previous Fiscal Year and the adjustments resulting in an immaterial decrease when an election is not made under Art. 68 (2)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3.2.4.2.(a).3.(c)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amount of the adjustment made pursuant to Art. 110 1 c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in respect of a Qualified Refundable Tax Credit or Marketable Tax Credit that is recorded as a reduction in current income tax expense (or other Covered Taxes) in the financial accounts.
3.2.4.2.(a).3.(f)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amount of the adjustment made pursuant to Art. 110 2 b and c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in respect of a non-Qualified Refundable Tax Credit, non-Marketable Transferable Tax Credit or Other Tax Credit that is recorded as income and not as a reduction in current income tax expense (or other Covered Taxes) in the financial accounts.
3.2.4.2.(a).3.(g)	Pursuant to Art. 110 2 d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amount of Covered Taxes which were claimed as Covered Tax in a previous fiscal year (subject to GloBE rules) and that is refunded or credited in the current fiscal year. Qualified Refundable Tax Credits and Marketable Transferable Tax Credits are excluded from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is rule.
3.2.4.2.(a).3.(n)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only complete this row when Art. 83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pply.
3.2.4.2.(a).3.(p)	Total Deferred Tax Adjustment Amount should not include any deferred tax expense arising in the jurisdiction of the Permanent Establishment with respect to losses for which the GloBE Loss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is treated as an expense of the Main Entity pursuant to Art. 66 (5)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3.2.4.2.(a).4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Adjusted Covered Taxes of the Constituent Entity or member of a JV Group. For Investment Entities,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Investment Entity's Adjusted Covered Taxes as determined under Art. 135 (3)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b) Cross allocation of taxes

3.2.4.2.(b)	The Filing CE shall complete this table irrespective of whether it elects for the transitional simplified jurisdictional reporting framework. When the GIR is filed for QDMTT purposes,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not report the Covered Tax expense of: (i) A Constituent Entity-owner under a CFC Tax Regime that is allocable to a domestic Constituent Entity under Art. 111 (1) 5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ii) A Main Entity that is allocable under Art. 111 (1)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located in the jurisdiction; (iii) A Constituent Entity-owner on income of a Hybrid Entity or a Reverse Hybrid Entity that is allocable under Art. 111 (1) 3 or 3-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to a Hybrid Entity or Reverse Hybrid Entity that is either located in the jurisdiction or is included in the scope of the QDMTT because the QDMTT applies to stateless Flow-through Entities created in the QDMTT jurisdiction; and (iv) A Constituent Entity-owner (e.g. net basis taxes), other than a withholding tax imposed by the QDMTT jurisdiction, that is allocable to a distributing Constituent Entity located in the jurisdiction under Art. 111 (1) 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However,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ose amounts with respect to the Covered Tax Expense that is included in the financial accounts of a Constituent Entity-owner or Main Entity located in the QDMTT jurisdiction and for which an adjustment has to be made.
-------------	--

Guidance

3.2.4.2.(b).1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TIN of the Constituent Entity (or member of JV Group) or, where a TIN is unavailable, a functional equivalent, such as a business/company registration code/number.
3.2.4.2.(b).2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Covered Taxes of the Constituent Entity (or member of JV Group) before the adjustment.
3.2.4.2.(b).3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identify the relevant subparagraph of Art. 111 (1) 5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 69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that applies.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identify separately the allocation results from the application of a Blended CFC regime – Blended CFC regime”. When Art. 111 (1) 3 or Art. 111 (1) 5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pplies, for purpose of columns 3.2.4.2.(b).6 and 3.2.4.1.(b).7,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complete a first row with the amount before the adjustment under Art. 70 (1)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indicating the relevant Art. 111 (1)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in column 3.2.4.2.(b).3.) and a second row with the amount after the adjustment under Art. 70 (1)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indicating the relevant Art. in column 3.2.4.2.(b).3, as well as the relevant Art. 111 (1)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 Art. 111 (1)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 Art. 111 (1)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 Art. 111 (1)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 Art. 111 (1) 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 Art. 111 (1) 5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 Art. 111 (1) 6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 Art. 70 (1)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3.2.4.2.(b).4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TIN of the other Constituent Entity (or member of JV Group) or, where a TIN is unavailable, a functional equivalent, such as a business/company registration code/number.
3.2.4.2.(b).5	For allocation of Covered Tax from a Constituent Entity (or member of JV Group) to another Constituent Entity (or member of JV Group),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identify the jurisdiction (in the form of a 2-character alphabetic country code based on the ISO 3166-1 Alpha 2 standard) of the other Constituent Entity (or member of JV Group). If the other Constituent Entity is a Stateless Constituent Entity,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Stateless".
3.2.4.2.(b).6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additions to Covered Taxes of the Constituent Entity (or member of JV Group) identified in column 3.2.4.2.(b).1. The cross-allocation of taxes covers both current tax expense and deferred tax expense.
3.2.4.2.(b).7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reductions to Covered Taxes of the Constituent Entity (or member of JV Group) identified in column 3.2.4.2.(b).1. The cross-allocation of taxes covers both current tax expense and deferred tax expense.

(C) Deferred tax expense

3.2.4.2.(c)	When the UPE is wholly owned by holders of Ownership Interests in respect of which Art. 77-2 (2) 1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nd Art. 13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pplies, and reported “exception, wholly-owned” in column 3.2.4.1.(d).5, the Filing CE shall not complete Table 3.2.4.2.(c) with respect to the UPE (and with respect to Tax Transparent Entities wholly owned by the UPE through a Tax Transparent Structure and located in the UPE jurisdiction to which Art. 108 (1) 1 b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pplies).
3.2.4.2.(c).1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TIN of the Constituent Entity (or member of JV Group) or, where a TIN is unavailable, a functional equivalent, such as a business/company registration code/number.
3.2.4.2.(c).2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Deferred tax expense amount for GloBE purposes for the Constituent Entity (or member of JV Group) before any recasting and adjustments. In case there is a divergence between the carrying value of an asset or liability for financial accounting and GloBE purposes, the portion of the deferred tax expense must be calculated on the basis of the GloBE carrying value pursuant to the Art. 112 (1)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If the deferred tax expense is taken into account as a debit to the deferred tax expense account, the amount shall be presented as a positive number. If the deferred tax expense is taken into account as credit to the deferred tax expense account, the amount shall be presented as a negative amount.
3.2.4.2.(c).3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amount of each adjustment to the Constituent Entity (or member of JV Group)’s Deferred tax expense before any recasting. If the adjustment leads to an increase to the Total Deferred Tax Adjustment Amount, the amount shall be presented as an addition. If the adjustment leads to a decrease to the Total Deferred Tax Adjustment Amount, the amount shall be presented as a reduction.
3.2.4.2.(c).3.(m) and 3.2.4.2.(c).3.(p)	The Filing CE shall complete these rows irrespective of whether it elects for the transitional simplified jurisdictional reporting framework.

Guidance

3.2.4.2.(c).4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cast at the Minimum Rate any deferred tax asset attributable to a GloBE Loss (Art. 112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that was recorded at a lower tax rate and report the amount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deferred tax expense recorded at a lower tax rate than the Minimum Rate and the deferred tax expense based on the Minimum Rate. The difference shall be presented as a reduction when it is attributable to the recognition of a GloBE Loss deferred tax asset, and the difference shall be presented as an addition when it is attributable to the reversal of such deferred tax asset.
3.2.4.2.(c).5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cast at the Minimum Rate any deferred tax expense that has been recorded at a higher tax rate than the Minimum Rate and report the amount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deferred tax expense recorded at a higher tax rate than the Minimum Rate and the deferred tax expense based on the Minimum Rate. If the deferred tax expense for the Fiscal Year before any recasting is taken into account as a credit to the deferred tax expense account, the amount of the difference shall be presented as an addition. If the deferred tax expense before any recasting for the Fiscal Year is taken into account as a debit to the deferred tax expense account, the amount of the difference shall be presented as a reduction.
3.2.4.2.(c).6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Total Deferred Tax Adjustment Amount for the Constituent Entity (or member of JV Group).

3.2.4.3 Constituent Entity elections (or elections that apply to a JV Group)

3.2.4.3	The Filing CE shall complete this table irrespective of whether it elects for the transitional simplified jurisdictional reporting framework.
3.2.4.3.4	For Five-year Elections,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Election Year.
3.2.4.3.5	For Five-year Elections,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year where the election was revoked (if any).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revocation year in the GloBE Information Return filed for the revocation year and in the GloBE Information Returns filed for the four Fiscal Years succeeding the revocation year.
3.2.4.3.c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can make an Unclaimed Accrual Annual Election with respect to DTLs that it expects will reverse in more than five years after accrual.
3.2.4.3.i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can make an Unclaimed Accrual Five-Year Election under Art. 112–2 (2) 2 through 3 with respect to a DTL for a GL account or an Aggregated DTL Category irrespective of any expectations about the reversal time period of such DTLs.
3.2.4.3.j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can make a GloBE Loss Election (Art. 67 (4)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under Art. 113–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with respect to a Flow-through Entity that is the UPE. An election under Art. 113–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is independent of the GloBE Loss Election made for any jurisdiction in row 3.2.3.1.(a).5.i. Other Entities are not aggregated with the Flow-through Entity that is a UPE for purposes of calculating the GloBE Loss even if a GloBE Loss Election has been made under Art. 67 (4)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for the jurisdiction in which the UPE is located.
3.2.4.3.k.1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Constituent Entities (or members of JV Groups) for which the election under Art. 76 (4)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pplies.
3.2.4.3.k.2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Fiscal Year of the event that triggered the tax adjustment (i.e. triggering event).
3.2.4.3.k.3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i) if the net of the total amounts determined under Art. 76 (4)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is included in the computation of the GloBE Income or Loss in the Fiscal Year in which the triggering event (Art. 129 (4) 3 a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occurs.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ii), if amount equal to the net total of the amounts divided by five is included in the computation of the GloBE Income or Loss in the Fiscal Year in which the triggering event (Art. 129 (4) 3 b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occurs and in each of the immediate four subsequent Fiscal Years.

3.2.4.4 International shipping income exclusion

(a) International shipping income exclusion

3.2.4.4.(a)	The Filing CE shall complete this table irrespective of whether it elects for the transitional simplified jurisdictional reporting framework.
3.2.4.4.(a).1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TIN (or, where a TIN is unavailable, a functional equivalent, such as a business/company registration code/number) of the Constituent Entity, or the member of a JV Group to which the International Shipping Income or Qualified Ancillary International Shipping Income exclusion applies.

Guidance

3.2.4.4.(a).2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all of the relevant activities specified in Art. 106 (1) 1 to 6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in respect of which International Shipping Income was obtained (several options can apply).
3.2.4.4.(a).3~5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aggregate revenue derived from and costs attributable to all relevant activities specified in Art. 106 (1) 1 through 6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s well as the aggregate International Shipping Income of the Constituent Entity.
3.2.4.4.(a).6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all of the relevant activities specified in Art. 106 (2) 1 through 6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in respect of which Qualified Ancillary Shipping Income was obtained (several options can apply).
3.2.4.4.(a).7~9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aggregate revenue derived from and costs attributable to each relevant activity specified in Art. 106 (2) 1 through 5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s well as the aggregate Qualified Ancillary International Shipping Income of the Constituent Entity (or member of JV Group).
3.2.4.4.(a).10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payroll costs attributable to International Shipping Income or Qualified Ancillary International Shipping Income.
3.2.4.4.(a).11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carrying value of tangible assets used in the generation of International Shipping Income or Qualified Ancillary International Shipping Income (other than attributable to excess income over the cap for Qualified Ancillary International Shipping Income).
3.2.4.4.(a).12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any Covered Taxes associated with the excluded International Shipping Income or Qualified Ancillary International Shipping Income.

(b) Jurisdictional cap for the qualified ancillary international shipping income exclusion

3.2.4.4.(b)	The Filing CE shall complete this table irrespective of whether it elects for the transitional simplified jurisdictional reporting framework.
3.2.4.4.(b).1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total International Shipping Income for the CEs or members of JV Group of the relevant subgroup identified in Section 3.1.3 and located in the jurisdiction.
3.2.4.4.(b).2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amount of the 50% cap.
3.2.4.4.(b).3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total Qualified Ancillary International Shipping Income for all CEs or members of JV Group of the relevant subgroup identified in Section 3.1.3 and located in the jurisdiction.
3.2.4.4.(b).4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excess of the cap if the Total Qualified Ancillary International Shipping Income for all CEs or members of JV Group of the relevant subgroup identified in Section 3.1.3 exceeds 50% of the Total International Shipping Income for all CEs or members of JV Group of the relevant subgroup identified in Section 3.1.3, such excess income being included in the GloBE Income. To the extent that direct or indirect costs are attributable to income from qualified ancillary activities in excess of the 50% limitation under Art. 106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those costs are taken into account in the computation of a CE's GloBE Income (or the GloBE Income of a member of a JV Group) because the related income is included in the computation as well. The payroll costs and the carrying value of tangible assets attributable to a Constituent Entity's excess income (or the excess income of a member of a JV Group) over the cap for the Qualified Ancillary International Shipping Income shall be included in the payroll carve-out and the tangible asset carve-out computation.

3.2.4.5 Information for purposes of Art. 79 (6)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if applicable)

3.2.4.5.1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TIN of the Constituent Entity-owner (or member of JV Group) for which the election under Art. 79 (6)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pplies.
3.2.4.5.2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TIN of the Investment Entity in which the Constituent Entity-owner (or member of JV Group) has an Ownership Interest and for which the election under Art. 79 (6)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is made.
3.2.4.5.3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amount of distributions and deemed distributions of the Investment Entity's GloBE Income received by the Constituent Entity-owner. (Art. 137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3.2.4.5.4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Local Creditable Tax Gross-up incurred by the Investment Entity that is allowed as a credit against the Constituent Entity-owner's tax liability arising in connection with a distribution from the Investment Entity. (Art. 137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Guidance

- 3.2.4.5.5 If the Investment Entity has an Undistributed Net GloBE Income for the Tested Year,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Constituent Entity-owner's proportionate share of the Investment Entity's Undistributed Net GloBE Income for the Tested Year.
- (Art. 137 (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3.2.4.6 Other Accounting Standard

- 3.2.4.6.1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 (i) The Constituent Entities located in the jurisdiction for which the Financial Accounting Net Income or Loss is based on an Acceptable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or an Authorised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other than the accounting standard used for th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of the UPE as provided under Art. 66 (2)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 (ii) The JV Subsidiaries located in the jurisdiction for which the Financial Accounting Net Income or Loss is based on an Acceptable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or an Authorised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other than the accounting standard used for th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of the Joint Venture as provided under Art. 105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nd
 - (iii) The Joint Venture located in the jurisdiction for which the Financial Accounting Net Income or Loss is based on an Acceptable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or an Authorised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other than the accounting standard used for th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of the UPE as a result of Art. 130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 3.2.4.6.2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Acceptable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or the Authorised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that is used for the computation of the Financial Accounting Net Income or Loss of the Constituent Entity, Joint Venture or JV Subsidiary.

3.3 Top-up Tax computation

3.3.1 Top-up Tax

- 3.3.1.a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Top-up Tax Percentage for the jurisdiction.
- 3.3.1.b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Substance-based Income Exclusion for the jurisdiction.
- 3.3.1.c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Excess Profit for the jurisdiction.
- 3.3.1.d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Additional Current Top-up Tax for the jurisdiction.
- 3.3.1.e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QDMTT payable in the jurisdiction.
- 3.3.1.f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Jurisdictional Top-up Tax.

3.3.2 Computation of Substance-based Income Exclusion (if applicable)

3.3.2.1 Total amount of the Substance Based Income Exclusion

- 3.3.2.1 If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does not complete the table for the jurisdiction, it is assumed that the election to not apply the Substance Based Income Exclusion in 3.2.3.1.(a).1.c has been made.

- 3.3.2.1.1 The relevant Eligible Payroll Costs of Eligible Employees performing activities in the jurisdiction shall not include payroll costs that are:
- (i) capitalised and included in the carrying value of Eligible Tangible Assets; or
 - (ii) attributable to a Constituent Entity's International Shipping Income and Qualified Ancillary International Shipping Income.

Where the employee undertakes 50% or less of their activities for the MNE Group during the Reporting Fiscal Year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employer, the relevant Eligible Payroll Costs of Eligible Employees shall only take into account the proportion of the payroll costs attributable to the employee's working time spent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employer pursuant to the related Administrative Guidance.

The relevant Eligible Payroll Costs of Eligible Employees shall not include an amount of Eligible Payroll Cost attributable to the income excluded from the GloBE Income of the Ultimate Parent Entity under Art. 80 3 a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pursuant to the related Administrative Guidance.

When an Entity becomes or ceases to be a Constituent Entity of an MNE Group as a result of a transfer of direct or indirect Ownership Interests in such Entity, the computation of the target's Eligible Payroll Costs shall take into account only those costs reflected in th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of the Ultimate Parent Entity as provided under Art. 80 3 a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Guidance

3.3.2.1.2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application of the relevant mark-up percentage for the Reporting Fiscal Year.
3.3.2.1.3	The carrying value of relevant Eligible Tangible Assets located in the jurisdiction shall not include: (i) the carrying value of property (including land or buildings) that is held for sale, finance lease or investment; and (ii) the carrying value of tangible assets used in the generation of the Constituent Entity's International Shipping Income and Qualified Ancillary International Shipping Income. Where the tangible asset is located within the jurisdiction of its owner (or lessee, if applicable) 50% or less of the time during the Reporting Fiscal Year, the carrying value of relevant Eligible Tangible Assets shall only take into account the carrying value of the asset attributable to the time the asset was located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owner (respectively the lessee, if applicable) pursuant to the related Administrative Guidance. The carrying value of relevant Eligible Tangible Assets shall not include the carrying value of Eligible Tangible Assets proportionately attributable to the income excluded from the GloBE Income of the Ultimate Parent Entity under 80 3 b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pursuant to the related Administrative Guidance.. When an Entity becomes or ceases to be a Constituent Entity of an MNE Group as a result of a transfer of direct or indirect Ownership Interests in such Entity, the computation of carrying value of the target's Eligible Tangible Assets shall be adjusted proportionally to correspond with the length of the relevant Fiscal Year that the target was a member of the MNE Group as provided under Art. 80 3 b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3.3.2.1.4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application of the relevant mark-up percentage for the Reporting Fiscal Year.
3.3.2.1.5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Substance-based Income Exclusion for the jurisdiction.
3.3.2.2. Allocation of Eligible Payroll Costs and carrying value of Eligible Tangible Assets to Permanent Establishments for purposes of the Substance Based Income Exclusion	
3.3.2.2.1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aggregate Relevant Eligible Payroll Costs for all Main Entities located in the jurisdiction before any adjustment under Art. 75 (9) and Art. 75 (10)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i.e. allocation to Permanent Establishments).
3.3.2.2.2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aggregate carrying value of the Relevant Eligible Tangible Assets for all Main Entities located in the jurisdiction before any adjustment under Art. 75 (9) and Art. 75 (10)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i.e. allocation to Permanent Establishments).
3.3.2.2.3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identify the jurisdiction (in the form of a 2-character alphabetic country code based on the ISO 3166-1 Alpha 2 standard) where the Permanent Establishments are located for GloBE purposes.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complete a separate row for each jurisdiction where Permanent Establishments that are allocated Eligible Payroll Costs and carrying value of Eligible Tangible Assets under Art. 75 (9) and Art. 75 (10)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e located.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Stateless" if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tateless for GloBE purposes.
3.3.2.2.4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aggregate relevant Eligible Payroll Costs allocated to Permanent Establishments located in each jurisdiction identified in the 3.3.2.2.3 column under Art. 75 (9) and Art. 75 (10)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Eligible Payroll Costs of Constituent Entities or members of JV Groups whose income has been wholly or partly excluded in accordance with Art. 108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or Art. 77-2 (2) of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e excluded from the Substance-based Income Exclusion computations in the same proportion.
3.3.2.2.5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aggregate carrying value of the relevant Eligible Tangible Assets allocated to Permanent Establishments located in each jurisdiction identified in the 3.3.2.2.3 column under Art. 75 (9) and Art. 75 (10)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The carrying value of Eligible Tangible Assets of Constituent Entities or members of JV Groups whose income has been wholly or partly excluded in accordance with Art. 108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or Art. 77-2 (2) of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e excluded from the Substance-based Income Exclusion computations in the same proportion.
3.3.2.2.4 and 3.3.2.2.5	The Eligible Payroll Costs and Eligible Tangible Assets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are not taken into account for the Eligible Payroll Costs and Eligible Tangible Assets of the Main Entity (i.e. the Eligible Payroll Costs and Eligible Tangible Assets of the Main Entity are reduced, respectively, by the Eligible Payroll Costs and Eligible Tangible Assets allocated to its Permanent Establishments).

Guidance

3.3.2.3. Allocation of Eligible Payroll Costs and carrying value of Eligible Tangible Assets of a Flow-through Entity for purposes of the Substance Based Income Exclusion

3.3.2.3.1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aggregate relevant Eligible Payroll Costs for all Flow-through Entities located in the jurisdiction after any adjustments under Art. 75 (9) and Art. 75 (10)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nd before any adjustments under Art. 75 (11)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3.3.2.3.2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aggregate carrying value of the relevant Eligible Tangible Assets for all Flow-through Entities located in the jurisdiction after any adjustments under Art. 75 (9) and Art. 75 (10)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nd before any adjustments under Art. 75 (11)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3.3.2.3.3	If Art. 75 (11) 1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pplies,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2-character alphabetic country code based on the ISO 3166-1 Alpha 2 standard for the jurisdiction where the Constituent Entity-owners (or members of JV Group) are located for GloBE purposes.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Stateless" for each Stateless Constituent Entity-owner.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complete a separate row for each jurisdiction where Constituent Entity-owners (or members of JV Group) that are attributed Eligible Payroll Costs and Eligible Tangible Assets under Art. 75 (11) 1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e located. If Art. 75 (11) 2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pplies,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UPE" in a separate row (for Eligible Payroll Costs and Eligible Tangible Assets that are allocated to the UPE after the application of Art. 77-2 (2)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Not applicable" for all other Eligible Payroll Costs and Eligible Tangible Assets that are excluded from the Substance-based Income Exclusion computations of the MNE Group under Art. 75 (11) 2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3.3.2.3.4	If Art. 75 (11) 1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pplies,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aggregate relevant Eligible Payroll Costs allocated to Constituent Entity-owners (or members of JV Groups) located in each jurisdiction identified in the 3.3.2.3.3 column. If Art. 75 (11) 2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pplies,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Eligible Payroll Costs that are attributed to the UPE after the application of Art. 77-2 (2)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Eligible Payroll Costs that are excluded under Art. 75 (11) 3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from the Substance-based Income Exclusion.
3.3.2.3.5	If Art. 75 (11) 1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pplies,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aggregate carrying value of the relevant Eligible Tangible Assets allocated to Constituent Entity-owners (or members of JV Groups) located in each jurisdiction identified in the 3.3.2.3.3 column. If Art. 75 (11) 2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pplies,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carrying value of the relevant Eligible Tangible Assets that are attributed to the UPE after the application of Art. 77-2 (2)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carrying value of the relevant Eligible Tangible Assets that are excluded under Art. 75 (11) 3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from the Substance-based Income Exclusion.
3.3.2.3.4 and 3.3.2.3.5	Eligible Payroll Costs and Eligible Tangible Assets are excluded under Art. 75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from the Substance-based Income Exclusion to the extent that they are associated with: (i) FANIL allocated to a Reverse Hybrid Entity; (ii) FANIL excluded from the GloBE Income or Loss under Art. 108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i.e. attributable to non-Group members); (iii) FANIL excluded from the GloBE Income or Loss under Art. 77-2 (2)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i.e. UPE Flow-through Entities); and (iv) FANIL attributed to a Constituent Entity-owner (or member of JV Group) when the Eligible Employees and Eligible Tangible Assets are not located in the jurisdiction of the CE-owner.

210mm×297mm[White paper 80g/m² or Coated paper 80g/m²]

Guidance

3.3.3 Additional Current Top-up Tax

3.3.3.1. Additional Current Top-up Tax for purposes other than Art. 119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3.3.3.1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complete this table if an ETR Adjustment Article applies.
3.3.3.1.1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select all the ETR Adjustment Articles that require or permit a recalculation of the ETR and Top-up Tax for a prior Fiscal Year under Art. 119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The relevant option(s) should be selected from the following list: • Form¹⁰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 Art. 67 (3)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 Art. 68 (1) and Art. 68 (2)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 Art. 68 (4)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 Art. 78 (2)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 Art. 83 (2) & (3)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ACT
3.3.3.1.2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prior Fiscal Year(s) to which the ETR Adjustment Articles reported in 3.3.3.1.1 apply.
3.3.3.1.4 ~ 9.a	The amount as previously reported shall take into account any adjustments required by the relevant ETR Adjustment Articles in a prior Fiscal Year (if any).
3.3.3.1.4 ~ 9.b	The amount recalculated shall take into account any adjustments required by the relevant ETR Adjustment Articles applied in a prior Fiscal Year (if any) and in the Reporting Fiscal Year.
3.3.3.1.10	The Additional Current Top-up Tax is equal to the difference between the Top-up Tax as previously reported and Top-up Tax as recalculated.

3.3.3.2. Additional Current Top-up Tax for purposes of Art. 119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TERNATIONAL TAXES ACT

3.3.3.2	This Table does not need to be completed if the MNE Group has a positive amount of Net GloBE Income in the jurisdiction.
3.3.3.2.1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negative amount of Adjusted Covered Taxes for the jurisdiction.
3.3.3.2.2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GloBE Loss for the Jurisdiction.
3.3.3.2.3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Expected Adjusted Covered Taxes for the jurisdiction.
3.3.3.2.4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Additional Current Top-up Tax under Art. 119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for the jurisdiction.

3.3.4 QDMTT

3.3.4.1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complete this column if the QDMTT computes Domestic Excess Profits based on a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other than the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used in preparing th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of the UPE.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Acceptable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permitted by the Authorised Accounting Body in the jurisdiction or the Authorised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adjusted to prevent any Material Competitive Distortions that is used for the computation of Domestic Excess Profits under the QDMTT.
3.3.4.2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amount payable under the QDMTT of the jurisdiction for the Reporting Fiscal Year. This amount shall be provided in the currency reported in 1.2.2.3. If the QDMTT amount payable is determined in local currency, such amount shall be translated to the presentation currency pursuant to the relevant currency translation principles of the Authorised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used to prepare th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3.3.4.3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Minimum Rate applicable for QDMTT purposes, if higher than 15%.
3.3.4.4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basis for the blending of income and taxes for purposes of the ETR computation, if different from the GloBE Rules.

210mm×297mm[White paper 80g/m² or Coated paper 80g/m²]

Guidance

3.3.4.5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currency being used for purposes of the QDMTT, if different from the CFS presentation currency. If the QDMTT is elected to be applied as a QDMTT Safe Harbour (and the switch-off rule does not apply with respect to the relevant jurisdiction or subgroup), the amounts reported in section 3 shall be reported in the currency used for purposes of the QDMTT.
3.3.4.6	When the QDMTT legislation requires QDMTT computations to be made using the local accounting standard and one or more Constituent Entities in the jurisdiction use a currency other than the local currency as their functional currency,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can make a Five-year Election to undertake the QDMTT computations using the presentation currency of th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or the local currency.
3.3.4.7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Yes” if the Substance-based Income Exclusion under Art. 70 (3)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is also available for QDMTT purposes.
3.3.4.8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Yes” if the de minimis exclusion under Art. 74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is also available for QDMTT purposes.

3.4 Top-up Tax allocation and attribution (if any)

3.4.1 Application of the IIR in respect of this jurisdiction

3.4.1	This information is only required if a QIIR applies in respect of the relevant Low-Taxed Constituent Entities or members of JV Groups. The information relating to Constituent Entities or members of JV Group does not need to be reported on an entity-by-entity basis if, for those Constituent Entities or members of JV Group: (i) a single Parent Entity applies a QIIR and the Parent’s Entity Allocable Share is 100%. In that situation, the Parent Entity’s Allocable Share of the Top-up Tax reported in 3.4.1.3.a shall equal the Jurisdictional Top-up Tax reported in 3.3.1.f; or (ii) the Inclusion Ratio of all the Parent Entities required to apply a QIIR is the same with respect to each relevant Constituent Entity or member of JV Group in the jurisdiction.
3.4.1.1.a	The Group Entities that are allocated Top-up Tax are Constituent Entities, MOCes, Investment Entities, members of JV Groups located in Low-Tax Jurisdictions or Stateless Constituent Entities with an ETR below the Minimum Rate.
3.4.1.1.b	In those situations where Art. 121 (1) 1 or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pply, the GloBE Income of each CE (or member of JV Group) shall not be used to allocate the relevant Top-up Tax but alternative allocation factors shall apply, as provided under those Articles and as clarified in this note. In those situations where applies, the GloBE Income of each CE (or member of JV Group) shall be equal to the GloBE Income of those CEs (or members of JV Groups) in the Fiscal Years for which the recalculations as provided in Art. 121 (1)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In those situations where Art. 121 (1)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pplies, the GloBE Income of each CE (or member of JV Group) shall be reported only for those CEs (or members of JV Groups) that record an Adjusted Covered Taxes amount that is less than zero and less than the GloBE Income or Loss of such CE (or member of JV Group) multiplied by the Minimum Rate and shall be computed as per the following formula: (GloBE Income or Loss x Minimum Rate) – Adjusted Covered Taxes. If both Art. 121 (1) 1 and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pply, each of the alternative factors outlined in this note should be reported separately.
3.4.1.1.c	The Top-up Tax of the LTCE (or member of JV Group) is the share of the relevant amount of the Jurisdictional Top-up Tax allocated in proportion to the GloBE Income of the LTCE (or member of JV Group), obtained by multiplying the amount of the Jurisdictional Top-up Tax by the ratio of GloBE Income of the LTCE (or member of JV Group) over the aggregate GloBE Income of all LTCEs (or members of JV Groups). In those situations where Art. 121 (1) 1 or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pply, the aggregate GloBE Income of all LTCEs (or members of JV Groups) with GloBE Income in the jurisdiction shall not be used for purposes of allocating Top-up Tax. The relevant alternative allocation factors identified in 3.4.1.1.b shall be used instead (see Note 3.4.1.1.b). If Art. 79 (6)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pplies,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not complete row 3.4.1.1.b and the Top-up Tax of the LTCE (or member of JV Group) shall be the amount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Art. 79 (6) 2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or Art. 137 (6)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for the revocation year). If an Investment Entity or Insurance Investment Entity is allocated Top-up Tax both under Art. 71 and 79 (6) 2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complete rows 3.4.1.1.a to 3.4.1.1.c twice with respect to this Investment Entity or Insurance Investment Entity.

Guidance

3.4.1.2.a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TIN (or, where a TIN is unavailable, a functional equivalent, such as a business/company registration code/number) of the Parent Entity.
3.4.1.2.b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jurisdictions where Parent Entities of the MNE Group are required to apply a QIIR in the form of 2-character alphabetic country code based on the ISO 3166-1 Alpha 2 standard. When Art. 103 (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pplies,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jurisdiction that requires the Parent Entity to apply its QIIR.
3.4.1.2.c	The amount of GloBE Income attributable to Ownership Interests held by other owners than the relevant Parent Entity is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Art. 72 (2)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3.4.1.3.b	The IIR Offset is the amount of Top-up Tax that is brought into charge under a Qualified IIR by a POPE or Intermediate Parent Entity located in a lower tier of the ownership chain.

3.4.2 Total UTPR Top-up Tax amount in respect of this Jurisdiction

3.4.2	Table 3.4.2 only needs to be completed in respect of LTCEs for which Art. 73 (3) 1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does not apply and members of JV Groups in respect of which the JV Group Top-up Tax is not reduced to zero after the application of Qualified Income Inclusion Rules. If Art. 73 (3) 1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pplies for all LTCEs, Table 3.4.2 does not need to be completed for any LTCE. If the JV Group Top-up Tax is reduced to zero for all JV Group members of a given JV Group, Table 3.4.2 does not need to be completed for any JV Group member of that JV Group.
3.4.2.1	If no QIIR applies in respect of any LTCE (or member of JV Group) for which the Top-up Tax calculation is made, this table does not need to be filled in on an LTCE (or member of JV Group) basis and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all” instead of the TIN of each LTCE (or member of JV Group) or, where a TIN is unavailable, a functional equivalent, such as a business/company registration code/number.
3.4.2.2	When Art. 73 (3) 1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does not apply, the Top-up Tax for each LTCE shall be computed by deducting the Top-up Tax payable under the QIIR by the Parent Entity from the Top-up Tax of the LTCE. The Top-up Tax for each member of a JV Group shall be computed by deducting the Top-up Tax payable under the QIIR by The Parent Entity from the UPE’s Allocable Share of the Top-up Tax of the JV Member. If no QIIR applies in respect of any LTCE (or member of JV Group) for which the Top-up Tax calculation is made and the table is filled in on a jurisdictional basis, this information does not need to be reported.
3.4.2.3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Total UTPR Top-up Tax Amount in respect of the jurisdiction.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sum of all amounts reported in 3.4.2.2 (Top-up Tax taken into account for Art. 73 (2)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for each Low-Taxed Constituent Entity and member of a JV Group located in a Low-Tax Jurisdiction as well as for each Stateless Constituent Entity that has an amount reported in 3.4.2.2. If no QIIR applies in respect of any LTCE (or member of JV Group) for which the Top-up Tax calculation is made, the Top-up Tax taken into account for Art. 73 (2)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is the Jurisdictional Top-up Tax computed.

3.4.3 Attribution of Top-up Tax under the UTPR

3.4.3.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complete this table if there is a UTPR Top-up Tax Amount for at least one jurisdiction for the Reporting Fiscal Year or if there is a UTPR Top-up Tax carry-forward reported in column 3.4.3.2.
3.4.3.1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the UTPR Jurisdictions of the MNE Group in the form of 2-character alphabetic country code based on the ISO 3166-1 Alpha 2 standard.
3.4.3.2	If the UTPR Top-up Tax Amount allocated to a jurisdiction in a prior Fiscal Year has not yet resulted in an equivalent additional cash tax expense for the Constituent Entities located in that jurisdiction, the amount to be carried forward in accordance with Art. 73 (6)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shall be reported in 3.4.3.7.
3.4.3.3 and 3.4.3.4 (Total)	If the UTPR Percentage in 3.4.3.5 is zero for a UTPR jurisdiction as a result of the application of Art. 73 (6)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the Number of Employees and Tangible Assets of the Constituent Entities located in the jurisdiction are excluded from the total (i.e. denominator of the formula for purposes of the allocation key). This exclusion from the total (and the denominator) does not apply if all UTPR jurisdictions have a UTPR Percentage of zero in the Reporting Fiscal Year (Art. 73 (6)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Guidance

3.4.3.3	The Number of Employees allocated to Permanent Establishments (including those of Flow through Entities) shall be taken into account for computing the UTPR Percentage of the jurisdiction where such PEs are located. Further, the Number of Employees of Constituent Entities is subject to two exclusions under Art. 78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Firstly, the number of Employees of Investment Entities in the UTPR jurisdiction shall be excluded for purposes of computing a jurisdiction's UTPR percentage. (Art. 78 (2) 2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Secondly, in instances where a Flow-through Entity's employees are not allocated to PEs, they shall be allocated to any Constituent Entities that are located in the jurisdiction where the Flow-through Entity was created, irrespective of whether they are the Constituent Entity-owners of the Entity. (Art. 78 (2) 3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The Number of Employees employed by a Flow-through Entity that are not otherwise allocated shall be excluded as provided under Art. 78 (2) 4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3.4.3.4	The Net Book Value of Tangible Assets allocated to PEs (including those of Flow-through Entities) shall be taken into account for computing the UTPR Percentage of the jurisdiction where such PEs are located. Further, the Net Book Value of Tangible Assets of Constituent Entities is subject to two exclusions under Art. 78-2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Firstly, the Net Book Value of Tangible Assets held by Investment Entities in the UTPR jurisdiction shall be excluded for purposes of computing a jurisdiction's UTPR percentage. (Art. 78 (2) 2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Secondly, in instances where a Flow-through Entity's Tangible Assets are not allocated to PEs, they shall be allocated to any Constituent Entities that are located in the jurisdiction where the Flow-through Entity was created, irrespective of whether they are the Constituent Entity-owners of the Entity. (Art. 78 (2) 3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The Net Book Value of the Tangible Assets held by a Flow-through Entity that are not otherwise allocated shall be excluded as provided under Art. 78 (2) 4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3.4.3.5	The UTPR Percentage is computed in accordance with Art. 73 (6)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If there is a UTPR Top-up Tax carry-forward for a UTPR jurisdiction in 3.4.3.2, the UTPR percentage of the jurisdiction shall be zero, unless all UTPR jurisdictions have a UTPR Percentage of zero in the Reporting Fiscal Year. The UTPR Percentage reported in this column shall be the UTPR Percentage computed after the application of Art. 73 (6)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3.4.3.6(Total)	The total UTPR Top-up Tax Amount to be attributed among UTPR Jurisdictions is the sum of each Total UTPR Top-up Tax Amount in respect of each jurisdiction identified in table 3.4.3.
3.4.3.7	The additional cash tax expense incurred by CEs in the UTPR jurisdiction is the amount of tax due under the UTPR in addition to the amount of tax that would otherwise be payable under normal tax rules.
3.4.3.8	The UTPR Top-up tax left to be carried forward is the positive difference between the UTPR Top-up Tax amount attributed to the UTPR jurisdiction for the Reporting Fiscal Year and the additional cash tax expense incurred by CEs in the UTPR jurisdiction reported in 3.4.3.7. When the amount attributed to the UTPR jurisdiction for the Reporting Fiscal Year (3.4.3.6) is zero, the Filing Constituent Entity shall report in column 3.4.3.8 the positive difference between the UTPR Top-up Tax carry-forward from previous Fiscal Years (3.4.3.2) and the additional cash tax expense incurred by Constituent Entities located in the UTPR jurisdiction (3.4.3.7).

210mm×297mm[White paper 80g/m² or Coated paper 80g/m²]

국외 소재 구성기업 정보신고서

※ 뒤쪽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	------

① 신고인 정보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상 호
③ 전 화 번 호	④ 전 자 우 편 주 소
⑤ 대 표 자 성 명	⑥ 소 재 지

② 다국적기업그룹 정보

⑦ 그룹명(명칭)	소재지/국 언어 영문
-----------	----------------

③ 국내구성기업 정보

구분	⑧법인명(상호)	⑨소재지(주소)	⑩사업자등록번호	⑪담당자성명	⑫담당자직위	⑬전화번호	⑭전자우편주소	⑮지정국내기업 여부
1								여/부
2								여/부
3								여/부

④ 최종모기업 정보

⑯ 법 인 명 (상 호)	⑰ 소재지국(코드)
⑱ 소재 지 (주 소)	⑲ 납 세 자 번 호
소재지/국 언어 영문	
⑳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접수국가에서 부여된 납세자번호 (⑲의 납세자번호와 다른 번호가 부여된 경우)	㉑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의 정보교환을 통해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통보 여부
	여/부

⑤ 지정 국외 신고구성기업 정보

㉒ 법 인 명 (상 호)	㉓ 소재지국(코드)
㉔ 소재 지 (주 소)	㉕ 납 세 자 번 호
소재지/국 언어 영문	

⑥ 국외 소재 구성기업 정보신고서의 대상 기간

㉖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대상 사업연도 개시일
㉗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대상 사업연도 종료일

⑦ 신고 대리인 정보

㉘ 법 인 명 (상 호)	㉙ 사 업 자 등 록 번 호	㉚ 담 당 자 성 명	㉛ 전 화 번 호	㉜ 전 자 우 편 주 소
-----------------	-----------------	-------------	-----------	---------------

신고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3조제4항에 따라 위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법인명)

(인)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신고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신고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 고 안 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3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에 해당하는 신고서(이하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라 한다)를 동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국외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이 그 소재지국에 제출하는 경우, 각 국내구성기업 또는 지정국내기업이 동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국외 소재 구성기업 정보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내구성기업이 관련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대상 사업연도에 복수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되고 해당 각 다국적기업그룹에 다른 지정국내기업이 없을 경우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각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하여 ‘국외 소재 구성기업 정보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작 성 방 법

-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상호, ③전화번호, ④전자우편주소, ⑤대표자 성명 및 ⑥소재지는 신고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⑦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대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연결재무제표 작성에서 사용하는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소재지국 언어가 영어가 아닌 경우에는 영문을 추가로 작성합니다.
- ⑧~⑮ 국내에 소재한 각 구성기업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각 국내구성기업에 대하여 관련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대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해당 사업연도 중에 국내구성기업이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그 제외된 날의 직전일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단, ⑨‘소재지(주소)’는 ‘국외 소재 구성기업 정보신고서’의 제출일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국내구성기업이 해당 사업연도에 복수의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된 경우,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정보는 해당 각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국외 소재 구성기업 정보신고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⑯~⑰ 국내구성기업 또는 지정국내기업의 담당자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작성합니다.
- ⑱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지정국내기업인 경우에는 “여”로 표시합니다.
- ⑲~㉑ 최종모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 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복수 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의 경우에는 각각의 최종모기업에 대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최종모기업 정보는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대상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단, ⑳‘소재지(주소)’ 및 ㉑‘최종모기업 소재지국의 정보교환을 통해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통보 여부’는 ‘국외 소재 구성기업 정보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㉒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의 ISO 3166-1 Alpha 2 표준에 따른 두 글자의 알파벳 국가 코드를 작성합니다.
- ㉓ 소재지국 언어가 영어가 아닌 경우에는 영문 주소를 추가로 작성합니다.
- ㉔ 최종모기업의 소재지국에서 대상조세 목적으로 사용되는 납세자번호를 작성하되, 납세자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회사 등록번호와 같이 납세자번호와 동일한 기능을 가진 번호를 작성합니다.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항목 1.3.1.4와 같습니다.
- ㉕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접수하는 국가에서 최종모기업에 대하여 달리 부여한 납세자번호가 있는 경우에 해당 번호를 작성합니다.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항목 1.3.1.5와 같습니다.
- ㉖ 최종모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그 소재지국에 제출하고 우리나라 과세당국이 해당 소재지국 과세당국으로부터 정보교환으로 해당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수보할 것이 예정된 경우 “여”로 표시합니다.
- ㉗~㉙ 최종모기업이 아닌 지정 국외 신고구성기업(이하 “지정 국외신고구성기업”이라 한다)이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그 소재지국에 제출하고 우리나라 과세당국이 해당 소재지국 과세당국으로부터 정보교환으로 해당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수보할 것이 예정된 경우, 해당 지정 국외신고구성기업에 대하여 작성하며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대상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단, ㉘‘소재지(주소)’는 ‘국외 소재 구성기업 정보신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㉚ 지정 국외신고구성기업 소재지국의 ISO 3166-1 Alpha 2 표준에 따른 두 글자의 알파벳 국가 코드를 작성합니다.
- ㉛ 소재지국 언어가 영어가 아닌 경우에는 영문 주소를 추가로 작성합니다.
- ㉜ 지정 국외신고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대상조세 목적으로 사용되는 납세자번호를 작성하되, 납세자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회사 등록번호와 같이 납세자번호와 동일한 기능을 가진 번호를 작성합니다.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항목 1.1.3과 같습니다.
- ㉝~㉟ ‘국외 소재 구성기업 정보신고서’와 관련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대상 사업연도 개시일 및 종료일을 작성합니다.
- ㊱~㊳ 국내구성기업 또는 지정국내기업을 대리하여 ‘국외 소재 구성기업 정보신고서’를 제출하는 신고 대리인에 대한 정보를 작성합니다.

추가세액신고서
[소득산입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

※ 뒤쪽의 신고안내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	------

① 신고인 정보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상 호
③ 전 화 번 호	④ 전 자 우 편 주 소
⑤ 대 표 자 성 명	⑥ 신 고 인 유 형
	최종 모기업 []
	중간 모기업 []
	부분소유모기업 []
⑦ 소 재 지	
⑧ 사 업 연 도	⑨ 수시부과기간

② 신고 기본사항

⑩ 신 고 구 분	1. 정 기 신 고 [] 2. 수 정 신 고 [] 3. 기한후신고 [] 4. 경 정 청 구 []	최 종 모 기 업 보	⑪ 상 호
			⑫ 납 세 자 번 호
			⑬ 소재지국(코드)
⑭ 신 고 대 상 하위그룹유형	(일 반) 소 수 지 분 (독 립 형) 투 자 공 동 기 업 (독 립 형) 무국적구성기업 구 성 기 업 하 위 그 룹 소수지분구성기업 구 성 기 업 그 공 동 기 업 공 동 기 업		

③ 추가세액배분액 납부금액 계산

구 분	글 로 벌 최 저 한 세
⑮ 추 가 세 액 배 분 액	
⑯ 기 납 부 추 가 세 액 배 분 액	
⑰ 가 산 세 액	
⑱ 차감납부할추가세액배분액 (⑮ - ⑯ + ⑰)	
⑲ 분 납 할 추 가 세 액 배 분 액	
⑳ 차 감 납 부 추 가 세 액 배 분 액 (⑱ - ⑲)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⑳ 예 입 처	은행 (본)지점	㉑ 계 좌 번 호
------------	---------	----------	-----------

④ 신고 대리인 정보

㉒ 법 인 명 (상 호)	㉓ 사 업 자 등 록 번 호	㉔ 담 당 자 성 명	㉕ 전 화 번 호	㉖ 전 자 우 편 주 소
-----------------	-----------------	-------------	-----------	---------------

신고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4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법인명)

(인)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신고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신고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별지 제56호서식 부표1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신 고 안 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2조의 소득산업규칙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을 우리나라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은 각 사업연도의 추가세액신고서(소득산업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최초 적용연도의 경우에는 18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작 성 방 법

1.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상호, ③전화번호, ④전자우편주소, ⑤대표자 성명 및 ⑦소재지는 신고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⑥ 신고인이 속한 다국적기업그룹 내에서 신고인이 어떠한 지위에서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는지 관련하여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3. ⑧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 회계연도의 개시일과 종료일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4. ⑨ 신고대상 사업연도 개시일과 수시부과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을 적습니다.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구성기업은 수시부과 기간란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5. ⑩ 해당번호에 "√"표시를 합니다.
6. ⑪~⑬ 신고인이 속한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에 대하여 ⑪상호, ⑫납세자번호 ⑬소재지국(코드)을 작성합니다.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의 ISO 3166-1 Alpha 2 표준에 따른 두 글자의 알파벳 국가 코드를 기재합니다.) ⑥에 기재한 신고인 유형이 최종모기업이면 기재하지 않습니다.
7. ⑭ 소재지국별로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및 조정대상조세가 합산되어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이 산출되는 단위의 유형 중 신고인에게 해당되는 모든 란에 "√"표시를 합니다. 다른 하위그룹 유형에 속하지 않는 구성기업을 '(일반)구성기업', 어느 소수지분하위그룹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소수지분구성기업을 '(독립형)소수지분구성기업', 어느 공동기업그룹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공동기업을 '(독립형)공동기업'이라합니다. 신고대상 하위그룹 유형이 하나 이상인 경우 해당 유형 모두에 표시합니다.
8. ⑮ 「별지 제56호 서식. 추가세액신고서(부표1)」의 ❶추가세액배분액 계산명세서 ⑰의 합계란 금액을 작성합니다.
9. ⑯ 추가세액배분액 중 기납부세액이 있을 경우 해당 금액을 작성합니다.
10. ⑰ 「별지 제56호 서식. 추가세액신고서(부표1)」의 ❷가산세명세서 상 가산세액 합계 금액을 작성합니다.
11. ⑱ ⑮의 금액에서 ⑯의 금액을 차감하고 ⑰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작성합니다.
12. ⑲ ⑱의 금액 중 분납할 금액을 작성합니다.
13. ⑳ ⑱의 금액에서 ⑲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작성합니다.
14. ㉓~㉗ 신고인을 대리하여 이 서식 및 부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신고 대리인에 대한 정보를 작성합니다.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3쪽 중 제1쪽)

사업연도	. . . ~ . . .	추가세액 계산명세서 [소득산입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① 추가세액배분액 계산명세서

① 구 분	저울과세국가명												...	합 계				
	하 위 그 룹 유 형 (해당하는 경우)																	
저 울 과 세 국 가 정 보	②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③	조정대상조세금액의 합계																
	④	실 효 세 율 (%)																
	⑤	실 질 기 반 제 외 소 득																
	⑥	초 과 이 익 (② - ⑤)																
	⑦	추가세액비율(15%-④)																
	⑧	당기 추가세액가산액																
	⑨	적격소재국추가세액																
	⑩	추가세액 (⑥ X ⑦ + ⑧ - ⑨)																
	추 가 세 액 배 분 액 계 산	⑪	저울과세 구성기업1 납세자번호	저울과세 구성기업2 납세자번호			소계	저울과세 구성기업3 납세자번호	저울과세 구성기업4 납세자번호			소계	저울과세 구성기업5 납세자번호	저울과세 구성기업6 납세자번호			소계	...
⑫		저울과세기업 글로벌최저한세소득																
⑬		저울과세기업 추가세액																
⑭		소득산입비율																
⑮		차감전추가세액 배분액 (⑬ x ⑭)																
⑯		다른소유지분보유자에게 귀속되는추가세액차감액																
⑰		차감후추가세액배분액(⑮-⑯)																

① 추가세액배분액 계산명세서 작성방법

※ 추가세액배분액 계산명세서는 신고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별지 제56호서식. 추가세액신고서」 ③추가세액배분액 납부금액 계산'의 '⑥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하기 위한 세부 명세'이므로 모든 저율과세국가 및 저율과세기업(저율과세구성기업, 저율과세 공동기업그룹 기업(공동기업그룹 기업이란 공동기업그룹에 속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이하 이 서식에서 같습니다.) 및 저율과세 공동기업을 말함)에 대하여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른 적격소득납입규칙을 적용한 결과 신고인이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그 대상이 되는 저율과세국가 및 저율과세기업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 따라서 해당 저율과세국가가 적용면제에 해당하여 추가세액이 '0(영)'인 경우는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기재하여야 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페이지를 달리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1. ①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 공동기업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 등의 소재지국 중 하위그룹 유형별로 15% 미만의 실효세율이 계산된 저율과세국가명을 작성합니다. 저율과세국가는 「별지 제53호서식.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3.1.1에 신고한 국가를 작성하고, 하위그룹 유형은 3.1.1과 관련하여 해당하는 경우 3.1.2에 신고한 유형을 작성합니다. 동일한 국가가 여러 하위그룹 유형에 대해 저율과세국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옆으로 별도 열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ISO 3166-1 Alpha 2 표준에 따른 2자리 알파벳 국가 코드를 작성할 것)
2. ② 「별지 제53호서식.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3.2.1.b에 신고한 금액을 각각 작성합니다. 해당 저율과세국가에 순글로벌최저한세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괄호를 만들어 그 금액을 작성합니다. 이와 같이 순글로벌최저한세결손이 경우 ③에서 ⑦까지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3. ③ 「별지 제53호서식.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3.2.1.d에 신고한 금액을 각각 작성합니다.
4. ④ 「별지 제53호서식.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3.2.1.e에 신고한 수치를 각각 작성합니다. 이때 실효세율이 음수이면 영으로 작성합니다.
5. ⑤ 「별지 제53호서식.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3.3.1.b에 신고한 금액을 각각 작성합니다.
6. ⑥ ②에서 ⑤를 차감한 금액을 작성합니다.
7. ⑦ 최저한세율(15%)에서 ④를 차감한 수치를 작성합니다.
8. ⑧ 「별지 제53호서식.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3.3.1.d에 신고한 금액을 각각 작성합니다.
9. ⑨ 「별지 제53호서식.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3.3.1.e에 신고한 금액을 각각 작성합니다.
10. ②~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9조제6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해당 선택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재하되 ②에서 ⑩까지는 작성하지 아니하고 ⑫에서 ⑰까지를 작성합니다.
11. ⑪ 추가세액 산출 하위그룹별 저율과세국가에 소재하는 저율과세구성기업, 공동기업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동기업, 공동기업그룹 기업 등의 납세자번호를 작성합니다. 납세자번호가 없으면 사업자등록번호나 법인등록번호와 같이 납세자번호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코드(번호)를 작성합니다.
12. ⑫ 해당 저율과세 구성기업(공동기업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동기업,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을 작성합니다.
14. ⑮ ⑬의 금액에 ⑭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작성합니다.
15. ⑯ 저율과세기업에 대해 그 소유지분을 보유하는 해당 모기업 외의 모기업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작성합니다.
16. ⑰ ⑮의 금액에서 ⑯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작성합니다.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3쪽 중 제3쪽)

② 가산세명세서

① 구 분		② 계산기준	③ 기준 금액	④ 가산세율	⑤ 가산세액
⑥ 무 신 고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20(10)/100	
	부당	무신고납부세액		40(20)/100	
		무신고납부세액		60(30)/100	
⑦ 과 소 신 고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부당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	
		과소신고납부세액		60/100	
⑧ 납 부 지 연	납부	(일수) 미납세액	()	2.2/10,000	
합 계					

② 가산세명세서 작성방법

- ⑥ 일반무신고와 부정무신고를 구분하여 무신고납부세액에 ④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기재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른 전환기사업연도의 추가세액배분액을 우리나라에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에 대해서는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⑦ 가. 과소신고납부세액을 일반과소, 부정과소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나. 과소신고납부세액에 ④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액의 90%(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른 전환기사업연도의 추가세액배분액을 우리나라에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에 대해서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⑧ 미납세액에 가산세율(2.2/10,000)과 미납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른 전환기사업연도의 추가세액배분액을 우리나라에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에 대해서는 상기와 같이 계산된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추가세액신고서
[소득산업보완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

※ 뒤쪽의 신고안내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	------

① 신고인 정보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상 호				
③ 전 화 번 호		④ 전자우편주소				
⑤ 대 표 자 성 명		⑥ 신 고 인 유 형	최종 모기업	중간 모기업	부분소유 모기업	그 외 구성기업
			[]	[]	[]	[]
⑦ 소 재 지						
⑧ 사 업 연 도	. . . ~ . . .	⑨ 수시부과기간	. . . ~ . . .			

② 신고 기본사항

⑩ 신고구분	1. 정 기 신 고 [] 2. 수 정 신 고 [] 3. 기 한 후 신 고 [] 4. 경 정 청 구 []	최 종 모 기 업 정	⑪ 상 호	
			⑫ 납 세 자 번 호	
			⑬ 소재지국(코드)	

③ 추가세액배분액 납부금액 계산

구 분		글 로 벌 최 저 한 세	
⑭ 추 가 세 액 배 분 액			
⑮ 기 납 부 추 가 세 액 배 분 액			
⑯ 가 산 세 액			
⑰ 차감납부할추가세액배분액 (⑭ - ⑮ + ⑯)			
⑱ 분 납 할 추 가 세 액 배 분 액			
⑲ 차감납부추가세액배분액 (⑰ - ⑱)			
국제환급금 계좌신고	⑳ 예 입 처	은행 (본)지점	㉑ 계 좌 번 호

④ 신고 대리인 정보

㉒ 법 인 명 (상 호)	㉓ 사 업 자 등 록 번 호	㉔ 담 당 자 성 명	㉕ 전 화 번 호	㉖ 전 자 우 편 주 소

신고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4조 및 「국제기본법」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법인명)

(인)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신고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신고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별지 제57호서식 부표1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신 고 안 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 제73조의 소득산업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을 우리나라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은 각 사업연도의 추가세액신고서(소득산업보완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최초 적용연도의 경우에는 18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조법 제82조에서 규정한 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까지는 소득산업보완 규칙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국적기업그룹이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의 적용 대상이 되는 첫 번째 연도에 국가별 유형자산의 순장부가액의 합계가 가장 큰 국가가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작 성 방 법

1.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상호, ③전화번호, ④전자우편주소, ⑤대표자 성명 및 ⑦소재지란은 신고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⑥ 신고인이 최종모기업, 중간모기업 또는 투과기업인 경우 해당 란에 "√"표시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외 구성기업’ 란에 표시합니다
3. ⑧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 회계연도의 개시일과 종료일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4. ⑨ 신고대상 사업연도 개시일과 수시부과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을 적습니다.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구성기업은 수시 부과기간란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5. ⑩ 해당번호에 "√"표시를 합니다.
6. ⑪~⑬ 신고인이 속한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에 대하여 ⑪상호, ⑫납세자번호, ⑬소재지국(코드)를 작성합니다.(최종 모기업 소재지국의 ISO 3166-1 Alpha 2 표준에 따른 두 글자의 알파벳 국가 코드를 기재합니다.) ⑥에 기재한 신고인 유형이 최종모기업이면 기재하지 않습니다.
7. ⑭ 별지 제57호 서식 부표1의 ㉠소득산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의 국내구성기업 배분 명세서에서 신고인에게 배분된 소득산업보완규칙 추가세액 배분액을 작성합니다.
8. ⑮ 추가세액배분액 중 기납부세액이 있을 경우 해당 금액을 작성합니다.
9. ⑯ 별지 제57호 서식 부표1의 ㉡가산세명세서 상 가산세액 합계 금액을 작성합니다.
10. ⑰ ⑭의 금액에서 ⑮의 금액을 차감하고 ⑯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작성합니다.
11. ⑱ ⑰의 금액 중 분납할 금액을 작성합니다.
12. ⑲ ⑰의 금액에서 ⑱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작성합니다.
13. ㉔~㉖ 신고인을 대리하여 이 서식 및 부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신고 대리인에 대한 정보를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아래의 신고안내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중 제1쪽)

사업연도 . . . ~ . . .	추가세액 계산명세서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① 국내구성기업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계산서

① 구 분	국내 구성기업			국내 공동기업	국내 공동기업그룹 기업			. . .	① 합 계
② 상 호	구성기업1	구성기업2	...	기업1	기업1	기업2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추가세액 (작성방법 참조)									
⑤ 추가세액에서 차감하는 금액 (작성방법 참조)									
⑥ 추가세액 차감 후 금액(④-⑤)									

① 국내구성기업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계산서 작성방법

- ※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에서 우리나라가 저율과세국가인 경우에만 저율과세구성기업인 국내 구성기업 또는 국내 공동기업 또는 국내 공동기업그룹 기업(공동기업그룹 기업이란 공동기업그룹에 속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에 대해 ①표를 작성하며, 이에 해당되는 기업이 없으면 ①표는 작성하지 아니하고 ②표와 ③표만 작성합니다. 그리고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 제82조에 따른 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이고 ②표의 서식 (2)를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①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①, ②, ③ 국내구성기업과 국내 공동기업 또는 국내 공동기업그룹 기업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국내구성기업의 경우에는 국조법 제7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구성기업만 작성합니다.
 - ④ ②와 ③의 국내구성기업에 대해서는 국조법 제71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④추가세액으로 기재합니다.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조령') 제130조제3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최종모기업의 추가세액배분액을 작성합니다.
 - ⑤ 국내구성기업의 경우에는 ④추가세액에서 국조법 제73조제3항제2호에 따라 차감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경우에는 국조령 제130조제3항제2호를 적용하여 적격소득산입규칙에 따라 모기업에 부과되는 금액을 차감하는 금액을 작성합니다.
 - ⑥ ④에서 ⑤를 차감한 금액을 작성합니다.
 - ⑦ ④,⑤,⑥에 기재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작성합니다. 특히 ⑥에 기재된 금액을 합한 금액은 국내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이 되어 ②표의 '①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합계)'을 구할 때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②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의 국가별 배분액 계산 명세서

(1)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배분액의 계산(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으로 국조법 제8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①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합계)							
② 국가(코드)	③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액 전기이월액	④ 종업원수	⑤ 유형자산 순장부가액	⑥ 소득산입보완규칙 배분비율	⑦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배분액	⑧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에 따라 부과 하는 법인세비용	⑨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차기이월액
우리나라							
A국							
B국							
⑩ 합계액							

(2) 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으로 국조법 제8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법을 적용하여 국내배분액 계산

⑪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배분액 (작성방법 참조)

②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가별 배분액 계산 명세서 작성방법

※ 이 표는 국조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배분액을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②-(1)표는 ②-(2)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일반적인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배분액을 구하기 위한 서식이고,

②-(2)표는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국조법 제82조에 따른 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별지 제53호서식.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2.3이 적용되는 경우의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면서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이 적용되는 첫 번째 사업연도에 국가별 유형자산의 순장부가액의 합계가 가장 큰 국가(「별지 제53호서식.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2.3.2에서 보고된 국가)가 우리나라인 경우 같은 항 각 호에 따라 국내 배분액을 구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 ① 다국적기업그룹이 소재한 국가별로 소득산입보완규칙이 적용되는 추가세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합계액을 계산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①표 ⑥의 금액이 소득산입보완규칙이 적용되는 추가세액이고,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인 「별지 제53호서식.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3.4.2.3의 금액이 소득산입보완규칙이 적용되는 추가세액입니다. 그리고 국조법 제80조제3항에 따른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적용면제가 적용될 때에는 해당 국가에서 소득산입보완규칙이 적용되는 추가세액은 영으로 하여 합계액을 계산합니다.
- ②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소재한 국가 중에서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을 시행하는 국가 코드(ISO 3166-1 Alpha 2 표준에 따른 두 글자의 알파벳 국가 코드를 기재)를 모두 기재합니다.
- ③~⑨ 「별지 제53호서식.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3.4.3에 신고한 내용을 각각 작성합니다. ④종업원수와 ⑤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은 국조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계산한 수치를 기재합니다. 이 경우 ③의 전기이월 금액이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국조법 제73조제6항에 따라 ④와 ⑤를 각각 0으로 보아 그 국가의 ⑥과 ⑦은 0으로 기재합니다. ⑦에서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란의 금액이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배분액이 됩니다.
- ⑩ 표 (1)에서 ①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을 계산할 때 소득산입보완규칙이 적용되는 우리나라의 추가세액은 0으로 하여 나머지 국가들의 소득산입보완규칙이 적용되는 추가세액을 합계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③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의 국내구성기업 배분 명세서**①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1)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의 국내구성기업 배분 방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3조제5항제1호)**

□ (3)에서 최종모기업이 국내에 소재하지 않아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을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하는 경우

상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소유지분 비율		현금및현금성자산		⑥배분비율	⑦추가세액배분액
		②소유지분 비율	③소유지분 비율 비중	④현금및현금성자산금액	⑤현금및현금성자산금액 비중		
합	계						

(2)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의 국내구성기업 합의 기준 배분 방법 (국조법 제73조제5항제2호)

상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배분액	
합	계		

(3)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의 국내에 소재한 최종모기업에 배분 방법 (국조법 제73조제5항 각 호 외)

상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배분액	

㉓ 소득산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의 국내구성기업 배분 명세서 작성방법

※ 국내구성기업별 소득산업보완규칙 추가세액 배분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작성합니다.

- ㉓-(1) 표는 국내에 배분된 소득산업보완규칙 추가세액을 국조법 제73조제5항제1호에 따라 각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㉓-(2) 표는 국내에 배분된 소득산업보완규칙 추가세액을 국조법 제73조제5항제2호에 따라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모든 국내구성기업의 합의로 하나 이상의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이 경우 국조법 시행령 제142조제1항제2호나목 따른 추가세액신고서 및 추가세액배분지정서 및 지정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㉓-(3) 표은 이전 사업연도에 대한 소득산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액의 국내배분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신고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 납부되지 아니하여 국조법 제7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㉑소득산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배분액' 전부를 국내구성기업인 최종모기업에 배분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이 경우 국내에 최종모기업이 소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㉓-(1) 표를 작성하고 박스에 '√'를 표시합니다.
1. ㉑ ㉒-(1)표 또는 ㉒-(2)표에 따라 작성되는 소득산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을 작성합니다.
 2. ㉒ 국조법 시행령 제125조의2에 따라 각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최종모기업의 소유지분 비율을 계산하여 작성합니다.
 3. ㉓ 국조법 시행령 제125조의2에 따라 각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최종모기업의 소유지분 비율을 모든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최종모기업의 소유지분 비율의 합계로 나눈 비율로서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계산한 수치를 작성합니다.
 4. ㉔ 국조법 시행령 제125조의2에 따라 각 국내구성기업의 현금및현금성자산 기초가액과 기말가액의 평균금액을 계산하여 작성합니다.
 5. ㉕ 국조법 시행령 제125조의2에 따라 각 국내구성기업의 현금및현금성자산 기초가액과 기말가액의 평균금액을 모든 국내구성기업의 현금및현금성자산 기초가액과 기말가액의 평균금액의 합계로 나눈 비율로서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계산한 수치를 작성합니다.
 6. ㉖ 각 국내구성기업에 대해 국조법 시행령 제125조의2에 따라 배분비율($㉒ \times 50 / 100 + ㉔ \times 50 / 100$)을 계산하여 작성합니다.
 7. ㉗ 각 국내구성기업에 대해 ㉑소득산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에 ㉖배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중 제6쪽)

④ 가산세명세서

① 구 분		② 계산기준	③ 기준 금액	④ 가산세율	⑤ 가산세액
⑥ 무 신 고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20(10)/100	
	부당	무신고납부세액		40(20)/100	
		무신고납부세액		60(30)/100	
⑦ 과 소 신 고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부당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	
		과소신고납부세액		60/100	
⑧ 납 부 지 연	납부	(일수) 미납세액	()	2.2/10,000	
합 계					

④ 가산세명세서 작성방법

- ⑥ 일반무신고와 부정무신고를 구분하여 무신고납부세액에 ④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기재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에는 해당 가산세의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른 전환기사업연도의 추가세액배분액을 우리나라에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에 대해서는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⑦ 가. 과소신고납부세액을 일반과소, 부정과소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나. 과소신고납부세액에 ④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액의 90%(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른 전환기사업연도의 추가세액배분액을 우리나라에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에 대해서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⑧ 미납세액에 가산세율(2.2/10,000)과 미납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른 전환기사업연도의 추가세액배분액을 우리나라에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에 대해서는 상기와 같이 계산된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거래가격 조정신고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u><신 설></u>	제2조(정상가격에 의한 경정청구 시 제출서류) ① ----- ----- 제6조제2항제1호에----- ----- ----. ② 법 제6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입증서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제5호에 따른 서류는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제2조의2(채무자의 신용 정도 평가 시 고려사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정상가격으로서의 이자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신용 정도를 판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 3. (생 략)	제2조의2(채무자의 신용 정도 평가 시 고려사항) 영 제11조----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제10조(기능 평가를 위한 위험 분석) ① (생략)

제12조(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등)

① 영 제20조제2항, 제37조제2항 및 제75조제9항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② (생략)

제38조(잉여금의 조정) ① (생략)

제45조(정기적인 금융정보등의 교환) ① 영 제75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2. (생략)

<신설>

② 영 제75조제5항에 따른 정보제공명세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기능 평가를 위한 위험 분석) (현행 제1항과 같음)

제12조(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등)

① -----
--- 제75조제12항-----

-----.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잉여금의 조정) (현행 제1항과 같음)

제45조(정기적인 금융정보등의 교환) ① 영 제75조제5항제1호-----

-----.

1.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

② 영 제75조제8항에 따른 정보제공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36조제6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거래: 별지 제36호 서식

2. 법 제36조제6항제2호에 따른 거래: 별지 제36호의2서식

제58조(그룹에 포함되는 기업의 범위) 영 제100조제1항에서 “기업의 규모가 작은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2. (생략)

제61조(특수관계자의 범위) 영 제102조제1항제5호나목1)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란 국제적으로 합의한 소득과 자본에 관한 경제협력개발기구모델조세조약(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 제5조제8항에 따른 관계기업이 되는 자를 말한다.

제62조(기타제외기업의 기준 등)

① (생략)

② 영 제102조제1항제7호가목2) 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업”이란 해당 기업을 포함하는 그룹의 매출액 합계에서 다음 각 호의 매출액 합계를 제외한 금액이 7억5천만유로보다 적고 해당 다

제58조(그룹에 포함되는 기업의 범위) 영 제100조제1항제2호---

-----.

1. 2. (현행과 같음)

제61조(특수관계자의 범위) ----

-----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채택된 「소득과 자본에 관한 표준조세조약(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 제5조제8항-----

--.

제62조(기타제외기업의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국적기업그룹의 매출액 합계의 2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적은 기업을 말한다.

1. (생략)

2. 비영리기구가 지배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의 매출액

가. 영 제102조제1항제7호가 목1) 전단에 따른 기업의 매출액

나. 영 제102조제1항제7호가 목2) 전단의 “부수적 활동만을 수행하는 기업”에 따른 기업의 매출액

다. 영 제102조제1항제7호가 목3)에 따른 기업의 매출액[같은 목 2) 후단에 해당하는 부수적 활동에 따른 매출액은 제외한다]

라. 영 제102조제1항제7호나 목에 따른 기업의 매출액
제67조(비적격환급가능귀속세액의 의의) ① (생략)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적격귀속세액”이란 다음 각 호

-----.

1. (현행과 같음)

2. -----

--

가. -----
----- 기업

나. -----
-- 전단에 따른 부수적 --
----- 기업

다. 영 제102조제1항제7호가 목3)에 따른 기업. 이 경우 해당 기업의 매출액에서 같은 목 2) 후단에 따른 부수적 활동에서의 매출액은 제외한다.

라. -----
----- 기업

제67조(비적격환급가능귀속세액의 의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세액을 말한다.

1. (생략)

2. 해당 구성기업에 대해 세액을 부과한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해당 배당이 그 수익적 소유자에게 최저한세율 이상의 명목세율로 당기 과세될 것

3. 4. (생략)

제69조(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
의 의의) 영 제111조제1항제5호
에서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
득에 대한 합산과세 제도 등 기
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제도”
란 다음 각 호의 제도를 말한다.

1. 주주가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외국에
소재하는 기업(이하 “피지배
외국법인”이라 한다)의 소득
중 그 소유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한 대상조세를 해당
주주가 그 소득의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세금으로
납부하는 제도

2. 전 세계에 소재하는 피지배

-----.

1. (현행과 같음)

2. -----

----- 과세될 -----
--

3. 4. (현행과 같음)

<삭 제>

외국법인의 소유지분 중 주주가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소득과 결손을 모두 통산하고 피지배외국법인이 납부하는 세액(해당 주주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중 주주가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세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한 세율이 해당 제도에서 정하는 기준세율에 미달하는 경우 그 세율차이에 상당하는 세액을 해당 주주의 소재지국에서 과세하는 제도(이하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라 한다)

<신 설>

제70조의2(글로벌최저한세가액 기준) 영 제112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금액이 조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6조제1항 단서
2. 법 제76조제3항
3. 법 제76조제4항
4. 영 제104조제1항제7호

제71조(대체이월결손금이연법인세자산 등) ① 영 제112조제1항제1호나목3)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국내원천결손(세무상 국외에 원천을 둔 해당 구성기업의 소득을 제외하면 결손인 경우 그 결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국내원천결손 또는 외국납부세액과 관련하여 설정하는 이연법인세자산으로서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에 포함되는 것(이하 이 조에서 “대체이월결손금이연법인세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5. 영 제104조제1항제8호
6. 영 제104조제1항제15호
7. 영 제104조제1항제16호
8. 제80조제1호(다만, 제80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방회계가액이 사용된 경우로 한정한다)

제71조(대체이월결손금이연법인세자산 등) ① 영 제112조제1항제1호의2나목3)에서 “국내원천결손 또는 외국납부세액과 관련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국내원천결손[국외원천소득(해당 구성기업 소재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피지배외국법인, 고정사업장, 혼성기업 또는 역혼성기업의 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외하면 결손인 경우의 그 결손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것과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하여 당해 사업연도로 이월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1. 구성기업의 <u>소재지국 세법</u>에 <u>서 국내원천결손이</u> 있는 경우에 <u>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기 이전에 국외원천소득 금액을 국내원천결손 금액과 상계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것</u> 2. 해당 사업연도에 제1호에 따라 <u>국외원천소득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와 상계할 수 있는 국내원천결손이</u> 구성기업에 <u>발생할 것</u> 3. 구성기업의 <u>소재지국 세법</u>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상계로 인해 <u>국내원천결손이 발생한</u> 사업연도에 공제되지 않은 외국납부세액은 그 후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u>글로벌최저한세소득</u>	<u>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사업연도에 국내원천결손 및 외국납부세액과 관련하여 설정하는 글로벌최저한세 목적상 이연법인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대체이월결손금이연법인세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u> 1. ----- <u>국내원천결손</u>----- ----- -- <u>그 소재지국 세법상 과세소득 및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계산에서</u> ----- ----- -- <u>그 국내원천결손 금액</u>----- ----- 2. 해당 사업연도에 제1호에 따른 <u>국내원천결손이 있을 것</u> 3. ----- ----- ----- <u>있는</u> ----- ----- -----
---	--

· 결손의 계산에 포함되는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총이연법인세 조정금액의 계산에 포함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설정하고 영 제13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조정한다.

1. 국내원천결손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으로서 세법상 이월공제되는 금액

2. 국내원천결손 금액(국외원천소득과 상계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에 국내 세율을 곱한 금액

③ 구성기업의 소재지국 세법에서 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지만 국내원천결손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국외원천소득과 상계된 국내원천결손 금액만큼 그 후

----- 세액-----

② 대체이월결손금이연법인세 자산-----
----- 작은 금액으로 산정한
다.

1. ----- 있는 -----

2. -----

-----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다시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세율-----
--

③ -----

----- 있는 사업연도에 제1항제1호 -----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국내원천
소득의 원천을 국외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이 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해당 사업연
도의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외국
납부세액의 공제를 허용하는 경
우에는 국내원천결손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국외원천소득과 상
계되는 국내원천결손 금액에 대
해 대체이월결손금이연법인세
자산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상 해당 구성기업의 이연법
인세비용의 산정에 적용되는 세
율이 최저한세율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최저한세율을 적용하여
다시 계산한다.

④ 영 제112조 제1항 제1호다목에서 “불확실한 세무처리 항목에 따른 이연법인세비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연법인세비용이 변동되는 금액을 말한다.

1. · 2. (생 략)

<신 설>

----- 있는 사
업연도에 국의원천소득-----

④ 영 제112조제1항제1호의2다
 목-----

1. 2. (현행과 같음)

3. 영 제111조제1항제5호나목에

<신 설>

다른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
세제도의 적용

제74조의2(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
의 계산 등) ① 영 제113조의2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단위(이
하 이 항에서 “계정”이라 한다)
또는 영 제113조의2제2항제3호
에 해당하는 단위(이하 이 항에
서 “계정그룹”이라 한다)로 사
업연도별 이연법인세부채의 변
동 금액을 추적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이연법
인세부채 잔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이연법인세부채 잔액
에 비하여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액을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최
초적용연도 개시 전 발생한 이
연법인세부채 금액을 포함한다)
이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환원된 것
으로 본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
연도 종료일의 이연법인세부
채 잔액 중 먼저 발생한 이연
법인세부채부터 환원되는 것

으로 보는 방법. 다만, 최초적
용연도 개시 전 발생한 이연
법인세부채가 모두 환원된 이
후의 환원 금액은 직전 다섯
번째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연
법인세부채가 환원된 것으로
본다.

2.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
연도 종료일의 이연법인세부
채 잔액 중 나중에 발생한 이
연법인세부채부터 환원되는
것으로 보는 방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제1
항제1호에 따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계정 단위로 이연법인세부채
를 추적하는 경우

2. 계정그룹 단위로 이연법인세
부채를 추적하는 경우로서 개
별 자산 및 부채 또는 계정에
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
가 환원되는 기간의 차이가 2
년 미만인 경우

3. 계정그룹 단위로 이연법인세
부채를 추적하는 경우(제2호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계정그룹에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그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전부 환원되지 아니하는 이연법인세부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이연법인세부채”라 한다)가 적정하게 환입될 것으로 관련 거래의 성격 및 세법에 따라 소명될 수 있는 경우

③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는 영 제113조의2제2항 각 호의 단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계정그룹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계정그룹의 각 계정 또는 개별 자산 및 부채는 같은 재무상태표계정(재무상태표에서 구분되어 표시되는 자산 및 부채의 단위를 말한다)에 속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재무상태표계정에 하위 재무상태

표계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정
그룹의 각 계정 또는 개별 자
산 및 부채는 같은 하위 재무
상태표계정에 속하여야 한다.

2. 계정그룹에는 그 발생한 날
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전부
환원되는 이연법인세부채(이
하 이 조에서 “단기이연법인
세부채”라 한다)를 발생시키
는 개별 자산 및 부채 또는 계
정과, 장기이연법인세부채를
발생시키는 개별 자산 및 부
채 또는 계정이 포함될 수 있
다.

3. 계정그룹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정
또는 개별 자산 및 부채는 포
함될 수 없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산 또는 부채가 포
함되어 있는 계정과 그 외
의 계정

1) 회계상 상각 대상이 아
닌 무형자산

2) 회계상 상각 대상인 무

형자산으로서 내용연수

가 5년을 초과하는 것

3)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발생하는 채권 및 채무

나. 이연법인세자산만 발생하

는 계정 또는 개별 자산 및

부채

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

인세부채를 상계한 순액이

시점에 따라 이연법인세자

산 또는 이연법인세부채로

상호 교차할 수 있는 계정

(swinging accounts)

⑤ 계정 또는 계정그룹의 구성

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동 전의 계정 또는 계정그룹

에 대하여 산정된 다음 각 호의

금액이 중복하여 산입되거나 누

락되지 않도록 해당 금액을 변

동 후의 계정 또는 계정그룹에

배분하여야 한다.

1. 비적격잔액

2. 영 제113조의2제1항의 계산

식 중 “A”금액

3. 최초적용연도 개시 전 발생

한 이연법인세부채로서 환원

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으로
보는 금액

4. 변동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5개 사업연도 중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 금액

⑥ 영 제113조의2제3항에서 “기
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계정 또는 계정그룹에 속한
자산 및 부채의 성격과 경제적
특성 등을 기초로 해당 이연법
인세부채가 모두 단기이연법인
세부채임을 소명할 수 있는 경
우를 말한다.

⑦ 단기이연법인세부채 및 단기
이연법인세자산(그 발생한 날부
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사
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전부 환원
되는 이연법인세자산을 말한다)
만 발생하는 계정 또는 계정그
룹에 대해서는 영 제113조의2제
3항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제3호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같은 호 나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계정그룹이 제4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제6

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영 제113조의2제3항을 적용한
경우에는 해당 계정그룹의 이연
법인세부채와 관련된 이연법인
세비용을 조정대상조세에 산입
할 수 없다.

⑨ 영 제112조제1항제1호의2나
목4) 후단의 5년선택 적용은 다
음 각 호에 따른다.

1. 계정 또는 계정그룹 단위별
로 각각 그 이연법인세부채
전체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여
야 한다.

2. 직전 사업연도까지 5년선택
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나 해
당 사업연도부터 5년선택을
적용하는 경우 그 이후 사업
연도에 환원되는 이연법인세
부채 금액이 해당 5년선택이
적용되지 아니하였던 이연법
인세부채의 환원인 경우에는
이를 그 환원 사업연도의 조
정대상조세에 산입한다.

3. 최초적용연도부터 5년선택을
적용한 경우 그 선택을 취소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

도까지에 대해서는 해당 5년 선택이 적용되는 계정 또는 계정그룹의 모든 이연법인세 부채의 발생 금액과 환원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5년선택이 적용되는 계정 또는 계정그룹의 이연법인세부채에 최초적용연도 개시 전에 발생한 이연법인세 부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정 또는 계정그룹에서 환원되는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은 최초적용연도 개시 전에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부터 환원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그 환원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 산입한다.

4. 직전 사업연도까지 5년선택을 적용하였으나 해당 사업연도에 5년선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 사업연도에 환원되는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이 해당 5년선택이 적용되었던 이연법인세부채의 환원인 경우에는 이를 그 환원 사

	<u>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 산입하지 아니한다.</u>
제75조(적격종업원의 범위 등) ① ~ ⑩ (생략)	제75조(적격종업원의 범위 등)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투과기업인 구성기업에 대해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고정사업장에 배분되지 않은 투과기업의 적격인건비 금액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이하 이 조에서 “잔여 적격인건비 금액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⑪ ----- ----- ----- ----- ----- ----- ----- ----- -----.
1. 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이 <u>영 제108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주주구성기업에 배분되는 경우에는 그 배분비율에 따라 해당 주주구성기업에 배분할 것(해당 주주구성기업이 해당 적격근로자 및 적격유형자산의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u>	1. ----- <u>영 제108조제1항제2호</u> ----- -- <u>적격지분보유자에게 배분되는</u> ----- ----- ----- ----- ----- -----
2. 투과기업이 최종모기업인 경우에는 그 금액 중 최종모기업의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적	2. ----- ----- -----

격근로자 및 적격유형자산에
 관련된 금액으로 한정하여 해
 당 최종모기업에 배분할 것.
 다만, 법 제77조의2제2항에 따
 라 해당 최종모기업의 글로벌
 최저한세소득이 차감되는 경
 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실질기반제외금액을
 해당 최종모기업의 실질기반
제외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
 는다.

3. (생략)

<신설>

 -----.

 ----- 잔여 적격
 인건비 금액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
 --.

3. (현행과 같음)

⑫ 법 제7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구성기업이 같은 항에 따라 글
 로벌최저한세소득을 차감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실질기반제외금액을 해
 당 구성기업의 적격인건비 금액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에 포
 함하지 않는다.

$$\text{실질기반제외금액} = A \times B \div C$$

A: 해당 구성기업의 적격인건비 금액
또는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

B: 법 제7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차감되는 글로벌 최저한세소득 금액

C: 법 제7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차감되기 전의 글로벌 최저한세소득 금액

⑫ (생략)

<신설>

⑬ (현행 제12항과 같음)

⑭ 제70조의2에 따라 재무제표에 계상된 자산 및 부채의 가액과 다른 가액으로서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에 반영된 금액은 적격인건비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7조(소득산입비율의 계산) ①
영 제122조제1항의 계산식에서
“저울과세구성기업의 글로벌최
저한세소득 금액 중 모기업 외
의 다른 소유지분 보유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
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고 가
정했을 때 해당 저울과세구성기
업의 회계상 순이익 금액 중 해
당 모기업 외의 다른 소유지분

제77조(소득산입비율의 계산) ①

보유자에게 귀속될 금액을 말한다.

1. ~ 3. (생략)

4. 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의 클로벌최저한세소득 전부가 그룹(해당 모기업을 최종모기업 또는 가상의 최종모기업으로 하는 그룹을 말한다. 이하 항에서 같다)에 속하지 않은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할 것

5. 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소유지분 중 해당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지 않은 것은 그 그룹에 속하지 않은 자가 보유할 것

② (생략)

<신설>

제79조(매출액 평균금액 등의 계산방법) 영 제126조제2항 및 제3항의 평균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직전 또는 그 직전 사업

--.

1. ~ 3. (현행과 같음)

4. -----

----- 이
항-----

5. -----
----- 해당 모기업-----

② (현행과 같음)

제78조의2(소득산입보완규칙의
소유지분 비율) 영 제125조의2
의 계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란 제60조에 따라 계산
된 비율을 말한다.

제79조(매출액 평균금액 등의 계
산방법) -----

연도에 매출액 또는 글로벌최저
한세소득·결손이 있는 구성기
업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
도는 제외하고 해당 국가의 매
출액 평균 및 글로벌최저한세소
득·결손 금액의 평균을 계산한
다.

제82조(협동조합의 의의) 영 제13
2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
로 정하는 협동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1.·2. (생략)

제86조(전환기 적용면제 요건) ①
영 제138조제1항제1호에서 “기
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무제
표”란 다음 각 호의 재무제표를
말한다. <단서 신설>

----- 글로벌최저
한세결손이 -----

--.

제82조(협동조합의 의의) 영 제13
2조제1항제1호-----

-----.

1.·2. (현행과 같음)

제86조(전환기 적용면제 요건) ①

----- 재무제표(이
하 이 장에서 “적격재무제표”라
한다)를 ---. 다만, 해당 재무제
표에 하방회계가액 조정이 포함
되어 있는 경우에는 2023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각 사업연
도에 대한 해당 재무제표에도
하방회계가액 조정이 포함되어
이를 기초로 국가별보고서가 작
성되었거나 해당 재무제표의 대

1. ~ 3. (생략)

<신설>

② (생략)

상 전환기 사업연도에 대하여 해당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하방회계가액 조정이 의무화된 경우로 한정하여 해당 재무제표를 적격재무제표로 인정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재무제표가 적격 재무제표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2021년 12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소유지분 이전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업권의 손상이 해당 구성기업의 해당 재무제표에 이익의 감소로 계상된 때에는 영 제138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요건을 적용할 때 그 금액을 세전손익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38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적용할 때 해당 영업권의 손상과 관련하여 이연법인세부채의 환원이 있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또는 증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신 설>

③ (생 략)

④ 적격재무제표의 사용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138조를 적용할 때 필요한 정보는 구성기업별 또는 국가별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는 적격재무제표에서 추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격재무제표가 아닌 자료(재무보고, 규제당국보고, 세무신고 또는 내부관리목적의 재무자료를 말한다)에서 추출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가. 제58조제1호의 사유로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 구성기업의 경우

나. 고정사업장의 경우

2. 영 제138조를 적용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에 대한 정보는 제1항 각 호의 서로 다른 호에 해당하는 적격재무제표에서 추출할 수 있다.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영 제1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효세율은 제1호의 금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한다.

1. 해당 구성기업의 제1항에 따른 재무제표(이하 “적격재무제표”라 한다)에 따른 해당 국가의 법인세비용 합계액에서 다음 각 목의 비용을 차감한 금액

가.·나. (생략)

2. (생략)

<신설>

⑥ ----- 다른
간이 -----

-----.

1. ----- 적격재무제
표-----

-- 법인세비용(직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추정액과 해당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확정액
의 차이를 포함한다) --- 금
액(이하 이 조에서 “간이대상
조세”라 한다)

가.·나.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⑦ 2022년 12월 16일 이후 체결
된 약정[2022년 12월 15일 이전
에 체결된 약정(이하 이 호에
서 “기존약정”이라 한다)이 202
2년 12월 16일 이후 변경 또는
이전되는 경우 및 2022년 12월
16일 이후 기존약정상의 권리
및 의무의 이행이 그 전에 비
하여 달라지거나 기존약정에 관
한 회계처리가 그 전에 비하여
달라지는 경우의 해당 약정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이하 이 조에서 “혼성거래약정”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구성기업, 공동기업, 공동기업자회사 및 적격채무제표가 있는 구성기업이 아닌 기업(이하 이 조에서 “구성기업등”이라 한다)이 다른 구성기업등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신용을 공여하거나 투자하는 약정으로서 해당 다른 구성기업등이 비용 또는 손실(이하 이 조에서 “비용등”이라 한다)을 인식하지만 해당 구성기업등은 해당 비용등에 상응하는 수익 또는 이익을 인식하지 않거나 해당 약정 기간 동안 해당 비용등에 상응하는 과세소득의 증가가 없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약정. 다만, 영 제104조제1항제18호에 따른 기타기본자본 또는 제한기본자본과 관련된 약정은 제외한다.

2. 비용등을 서로 다른 구성기

업등이 중복하여 인식하는 약정. 다만, 비용등을 인식하는 구성기업등 모두가 해당 비용등에 상응하는 수익을 인식하여 해당 수익이 해당 비용등과 상계되는 경우의 해당 약정은 제외한다.

3. 구성기업등이 인식한 비용등이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등의 과세소득에서 공제되는 약정. 다만, 비용등을 인식하는 구성기업등이 해당 비용등에 상당하는 수익을 인식하고 해당 비용등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다른 구성기업등이 해당 비용등에 상당하는 과세소득을 산입하는 경우의 해당 약정은 제외한다.

4. 법인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둘 이상의 구성기업등의 조정대상조세 또는 간이대상조세에 중복하여 산입되는 약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약정은 제외한다.

가. 해당 법인세비용의 산출

<신 설>

<신 설>

과 관련된 이익이 해당 둘
이상의 구성기업등에게 인
식되는 경우

나. 법 제6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른 구성기업등에게
배분될 법인세비용이 해당
구성기업등의 간이실효세
율 계산에서 간이대상조세
에 산입되는 경우

⑧ 제7항의 혼성거래약정이 있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정한다.

1. 제7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등을 세전손익금액에 가
산한다. 다만, 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
등을 인식한 어느 한 구성기
업등의 해당 비용등은 세전손
익금액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2. 제7항제4호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비용을 해당
국가의 제6항제1호의 법인세
비용에서 차감한다.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7항제1호의

“해당 약정 기간 동안 해당 비용등에 상응하는 과세소득의 증가가 없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소득이 이월결손금이나 해당 구성기업등의 소재지국 세법에 따른 이자비용공제한도를 초과하여 해당 사업연도로 이월된 이자비용과 상계되는 등의 경우

가. 해당 이연법인세자산이 평가 조정 또는 인식 조정이 된 경우

나. 해당 과세소득이 없었던라면 해당 이연법인세자산이 해당 사업연도에 평가 조정 또는 인식 조정이 되었을 경우

2. 어느 한 구성기업등의 비용등으로 인식되는 지급이 그 거래 상대방인 구성기업등이 소재하는 다른 국가의 세전손익금액 산정에서 공제되지는 않지만 해당 거래 상대방인 구성기업등과 같은 국가에 소

<신 설>

제88조(공동기업에 대한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의 적용방법) 영 제138조제5항에 따른 공동기업에 대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이하 이 조에서 “전환기적용면제요건”이라 한다)의 적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3. 전환기적용면제요건을 적용할 때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최종모기업의 세전손익은 같은 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 세소득에서 감액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하고, 대상조세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

재하는 다른 구성기업등의 과세소득에서 공제되는 경우

⑩ 제9항제2호를 적용할 때 투시과세기업의 비용등을 그 투시과세기업의 주주인 구성기업등이 인식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시과세기업은 해당 비용등을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88조(공동기업에 대한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의 적용방법) ①

-----.

1. 2. (현행과 같음)

3. -----
---- 법 제77조의2제1항제1호-----

정할 것. 이 경우 해당 차감액은 최종모기업의 세전손익에서도 감액한다.

4. 전환기적용면제요건을 적용할 때 국가별보고서에 해당 국가의 구성기업에 투자구성기업 또는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투자구성기업(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투자구성기업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79조에 따라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을 계산할 것

- 1) 투자구성기업이 법 제79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선택을 하지 않을 것
- 2) (생략)

5. 제4호에 따라 투자구성기업에 대해 법 제79조에 따라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투자구성기업 소재지국과 그 주주구성기업 소재지국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전환기적용면제요건을 적용할 수 있을

-----.

-----.

4. -----

- 1) 투자구성기업에 대하여

- 2) (현행과 같음)

5. -----

것

가. (생략)

나. 주주구성기업 소재지국에
전환기적용면제요건을 적
용할 때 투자구성기업의
매출액 및 세전손익 금액
에 주주구성기업의 해당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직접
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투자구성기업의 제
86조제4항제1호에 따른 금
액에 주주구성기업의 해당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직접
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고려할 것

6. (생략)

7. 법 제80조에 따른 전환기 적
용면제(이하 이 호에서 “전환
기적용면제”라 한다)가 이루
어지는 경우 법 제81조제1항
에 따른 최초적용연도(이하
“최초적용연도”라 한다)는 해
당 국가가 전환기적용면제를
적용받지 못하거나 선택하지
않은 최초의 사업연도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

가. (현행과 같음)

나. -----

----- 제8
6조제6항제1호-----

6. (현행과 같음)

7. -----

----- 법 제67조제5항-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국적 기업그룹의 최초적용연도는 해당 국가에 대해 법 제5장 또는 그에 상응하는 다른 국가의 법령이 적용되는 첫 번째 사업연도로 한다.

가. ~ 라. (생략)

<신설>

제89조(최초적용연도 실효세율의 계산) 영 제139조제4항에 따른 최초적용연도 실효세율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생략)
2. 2021년 12월 1일부터 최초적

-----.

가. ~ 라. (현행과 같음)

② 법 제62조에 해당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이 적격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적격재무제표를 기초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적격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있었다면 포함하였을 총수입금액 및 세전손익금액을 포함한 글로벌 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법 제83조에 따라 제출한 경우에는 적격국가별보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보아 영 제138조제1항을 적용한다.

제89조(최초적용연도 실효세율의 계산) -----

-----.

1. (현행과 같음)
2. -----

용연도 개시일 전일까지 구성
 기업(해당 거래일 직전에 글
 로벌최저한세제도가 적용되었
 다면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한 구성기업이었을 기업을
 말한다) 간에 자산(재고자산
 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자산의 매각 및
 회계상 이와 유사하게 처리되
 는 거래 등으로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취득하는 구성기업(이
 하 이 조에서 “취득구성기업”
 이라 한다)은 그 자산의 취득
 가액을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구성기업(이하 이 조에서 “처
 분구성기업”이라 한다)의 처
 분 당시 장부가액(이하 이 조
 에서 “처분당시장부가액”이라
 한다)을 기초로 최초적용연도
 및 그 후 사업연도의 글로벌
 최저한세소득·결손 금액을
 계산할 것

가. ~ 라. (생략)

마. 기초자산을 이전하되 해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u>당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또는 처분에 따른 손익이 기초자산을 이전한 양도자에게 귀속되게 하는 총수익스왑</u> 바.·사. (생략) 3.·4. (생략) 제91조(추가세액신고서) <u>영 제142조제1항 전단</u>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세액신고서”란 별지 제56호서식을 말한다. <u><신설></u>	<u>수익 또는 처분 손익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기업에게 해당 기초자산이 회계상 이전되는 것으로 취급되는 총수익스왑</u> 바.·사. (현행과 같음) 3.·4. (현행과 같음) 제91조(추가세액신고서) ① <u>영 제142조제1항제1호</u>----- ----- ----- --. ② <u>영 제142조제1항제2호가목2)</u>에서 “<u>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세액계산내역서</u>” 및 같은 호 나목2)에서 “<u>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세액배분지정서 및 지정합의서</u>”란 별지 제57호서식을 말한다.
---	--